

연구총서 16-AB-06

# 한국범죄분류 개발 기초연구

장다혜 | 임석순 | 자유미

Framework Research for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Classification of Crime

---

# 발간사

국제표준범죄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s, 이하 ICCS)는 범죄 통계의 일관성과 국제 비교성을 높이고, 국내 및 국제적 차원의 분류 해석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념, 정의 및 원칙에 근거한 범죄 분류체계입니다. ICCS가 2015년 3월 개최된 제46차 유엔 통계 위원회(United Nations Statistical Commission) 및 같은 해 5월에 개최된 제24차 유엔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에 의해 승인됨에 따라, 한국 역시 ICCS에 대한 이행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범죄통계를 생산하는 기관의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상이한 범죄분류체계를 마련하여 사용하고 있어, 범죄분류의 국제적 기준 도입을 검토하는 과정이 한국의 범죄통계분류체계를 점검·검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통계목적에 위한 국제표준분류(ICCS)에 기준한 한국범죄분류의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를 통해, 향후 한국범죄분류와 통계를 표준화하기 위해 ICCS의 분류체계가 한국의 범죄분류 및 통계의 특성에 비추어볼 때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다면 ICCS에 따른 분류에 있어 쟁점들이 무엇인지를 검토함으로써 향후 ICCS의 이행과 한국범죄분류와 통계에 관한 장기 로드맵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또한 본 연구는 ICCS의 이행을 위해 마련된 통계청 및 치안정책연구소,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한국범죄분류 개발 기초연구 T/F> 활동의 일환이며, ICCS의 이행을 위한 기초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향후 한국범죄분류 개발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그동안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ICCS의 도입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왔습니다. 특히 이번 연구는 통계청과의 협력 속에서 ICCS의 국내 공식 번역작업을 수행하고, 한국범죄통계분류의 기초단위인 죄명코드를 ICCS에 따라 분류하여 연계성을 검토하고 쟁점을 도출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죄명코드와 행위와의 연계 결과에 따라 연계가 되지 않는 죄명에 대해 원인분석, 규칙성 발견 및 분류체계 적용 가능한 범위를 추론한 것을 바탕으로 한국범죄분류 개발을 위한 쟁점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연구가 향후 ICCS의 국내 이행과 표준화된 한국범죄분류의 개발을 추진하는 데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연구진으로 참여하여 연구를 수행해 준 대구대학교 법학과 지유미 교수와 본 연구원의 임석순 부연구원, 장다혜 부연구위원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2016년 12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김진환**

## 〈약 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약칭: 성매매처벌법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성폭력특별법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신용정보보호법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아동법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아동학대처벌법 )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약칭: 장기이식법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통신망법 )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 약칭: 특정강력범죄법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정범죄가중법 )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약칭: 폭력행위처벌법 )

# 목 차

국문요약 .....	1
제1장   서 론 (장다혜) .....	3
제1절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 목적 .....	5
1. 연구 배경 및 관련 정책현안 .....	5
2. 연구 목적 및 기대 효과 .....	7
제2절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 방향 .....	7
1. 선행연구 검토 .....	7
2. 본 연구의 방향 .....	9
제3절 연구 범위 및 주요 연구 내용 .....	10
1. 연구의 범위 .....	10
2. 연구 내용 및 방법 .....	11
제4절 연구 대상인 국제표준범죄분류(ICC) 및 한국범죄분류의 기초분류단위 ...	12
1. 국제표준범죄분류(ICC)의 기초분류단위인 ‘범죄행위’ .....	12
2. 한국범죄분류의 기초분류단위인 ‘죄명코드’ .....	13
제5절 본 연구에서 수행한 ICCS 번역의 원칙 및 한국어 표현 .....	15
1. homicide/murder/manslaughter/killing .....	15
2. death inflicted by ~ .....	16
3. unlawful/illegal .....	16
4. intent/purpose .....	17
5. vehicle .....	17
6. force .....	17
7. abduction .....	17
8. professional negligence .....	18

9. invasion/intrusion .....	18
10. property .....	18
제6절 본 보고서의 구성 .....	19

## | 제2장 | ICCS에 따른 죄명코드의 연계성 분석 (대분류01-05)(장다혜·임석순·지유미) ..... 21

제1절 다른 사람의 사망을 초래하거나 의도한 행위(01) .....	23
1. 고의에 의한 살인(Intentional homicide, 0101) .....	25
2.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Attempted intentional homicide, 0102) .....	29
3. 고의에 의하지 않은 살인(Non-intentional homicide, 0103) .....	32
4. 자살 방조 또는 교사(Assisting or instigating suicide, 0104) .....	39
5. 안락사(Euthanasia, 0105) .....	43
6. 불법 낙태(Illegal feticide, 0106) .....	45
7. 무력 분쟁 관련 불법 살해(Illegal killing associated with armed conflict, 0107) .....	46
8. 기타 다른 사람의 사망을 초래하거나 의도한 행위(Other acts leading to death or intending to cause death, 0109) .....	48
제2절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초래하거나 의도한 행위(02) .....	50
1. 폭행과 협박(Assaults and threats, 0201) .....	54
2. 자유에 반하는 행위(Acts against liberty, 0202) .....	67
3. 노예 행위 및 착취(Slavery and exploitation, 0203) .....	77
4. 인신매매(Trafficking in persons(TIP), 0204) .....	81
5. 강요(Coercion, 0205) .....	84
6. 과실(Negligence, 0206) .....	87
7. 위험행위(Dangerous acts, 0207) .....	99
8. 공포감 또는 정서적 고통을 유발할 의도로 하는 행위(Acts intended to induce fear or emotional distress, 0208) .....	106
9. 명예훼손 또는 모욕(Defamation or insult, 0209) .....	114
10. 차별(Discrimination, 0210) .....	122
11. 사람에게 대한 침해행위(Acts that trespass against the person, 0211)	

및 기타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초래하거나 의도한 행위(Other acts causing harm or intending to cause harm to the person, 0219) … 129

제3절 성적 성격의 유해행위(03) …………… 137

    1. 성폭력(sexual violence, 0301) …………… 138

    2. 성적 착취(Sexual exploitation, 0302) …………… 162

제4절 다른 사람에게 폭력이나 협박을 가한 재산 침해행위(04) …………… 180

    1. 강도(Robbery, 0401) …………… 181

    2. 기타 사람에 대한 폭력 또는 협박을 수반한 재산침해행위(Other acts against property involving violence or threat against a person, 0409) · 187

제5절 단순한 재산 침해행위(05) …………… 188

    1. 절도목적 침입(Burglary, 0501) …………… 190

    2. 절도(Theft, 0502) …………… 194

    3. 지적재산 범죄(Intellectual property offences, 0503) …………… 201

    4. 재물손괴(Property damage, 0504) …………… 202

    5. 기타 재산침해행위(Other acts against property only, 0509) …………… 210

**| 제3장 | 결 론: 한국범죄분류 개발 관련 쟁점 및 과제**  
**(장다혜·임석순·지유미) …………… 213**

제1절 결합범의 분류 문제 …………… 215

    1. [중분류 0101]의 고의에 의한 살인과 결합범 …………… 216

    2. [중분류 0102]의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와 결합범 …………… 217

    3. [세분류 020111]의 중한 폭행과 결합범 …………… 217

    4. 강도와 관련한 결합범 분류 …………… 219

    5. 절도(0502)와 관련한 결합범 분류 …………… 220

    6. 한국범죄분류상에서의 강도·절도 등과 성폭력범죄의 결합범 분류 혼란 · 221

제2절 결과적 가중범의 분류 문제 …………… 222

    1. [소분류 02019]의 기타 폭행과 협박과 결과적 가중범의 분류 …………… 223

    2. 위험행위로 인한 결과적 가중범 …………… 224

    3. 강도와 관련한 결과적 가중범 …………… 226

제3절 침해범과 구체적 위험범의 분류 문제 …………… 227

제4절 미수와 예비·음모죄 분류 문제 .....	227
제5절 교사범과 방조범의 분류 문제 .....	229
제6절 고의범과 과실범 분류 문제 .....	230
제7절 ICCS의 범죄행위 분류에 부합하지 않는 우리 범죄 개념 .....	231
1. 낙태의 죄 .....	231
2. 협박죄 .....	232
3. 특정 목적 없는 인신매매죄 .....	232
4. 강요죄 .....	234
5. 과실의 층위 .....	234
6. 유기죄의 보호할 책임 .....	235
7. 위험행위 .....	236
8. 공연음란죄 .....	237
9. 아동·청소년 유희 및 성매매 행위 .....	239
10. 강도죄 .....	240
11. 절도목적 침입 .....	241
제8절 형법체계상 ICCS와 상이한 분류기준 .....	242
1. 절도목적 침입(0501)과 절도(0502)의 포섭관계 .....	242
2. 재물손괴와 관련해 포섭관계가 불분명한 범죄코드 .....	244
제9절 위법행위를 포괄하는 ICCS 범죄행위 개념의 문제 .....	245
제10절 ICCS 기타 분류의 문제 .....	246
1. [중분류 0109]의 기타 다른 사람의 사망을 초래하거나 의도한 행위의 보충적 분류 항목 .....	246
2. 의미 없는 보충적 분류인 기타 사람에 대한 폭력 또는 협박을 수반한 재산침해행위위험행위(0409) .....	247
제11절 지나치게 포괄적인 분류인 지적재산 범죄 .....	247
 <b>참고문헌</b> .....	 <b>249</b>
 <b>Abstract</b> .....	 <b>251</b>

**부록** ..... **253**

[부록1] 통계 목적 국제 범죄 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s, ICCS) 번역(대분류01-05) ..... 253

[부록2] 용어집 ..... 279

## 표 차례

〈표 2-1-1〉 ICCS [대분류01] 다른 사람의 사망을 초래하거나 의도한 행위 세부 분류	24
〈표 2-1-2〉 고의에 의한 살인(0101)과의 죄명코드 연계	26
〈표 2-1-3〉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0102)와의 죄명코드 연계	30
〈표 2-1-4〉 살인 고의 및 중한 상해 고의 이외의 고의에 의한 살인(01031)과의 죄명코드 연계	33
〈표 2-1-5〉 과실에 의한 살인(01032)과의 죄명코드 연계	38
〈표 2-1-6〉 자살 방조 또는 교사(0104)와의 죄명코드 연계	41
〈표 2-1-7〉 위계·위력자살결의예비·음모죄에 해당하는 죄명코드	42
〈표 2-1-8〉 안락사(0105)와의 죄명코드 연계	43
〈표 2-1-9〉 불법 낙태(0106)와의 죄명코드 연계	44
〈표 2-1-10〉 무력 분쟁 관련 불법 살해(0107)와의 죄명코드 연계	46
〈표 2-1-11〉 [중분류 0107]로의 분류가 문제될 여지 있는 죄명코드	47
〈표 2-1-12〉 기타 다른 사람의 사망을 초래하거나 의도한 행위(0109)와의 죄명코드 연계	48
〈표 2-2-1〉 ICCS [대분류 02]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초래하거나 의도한 행위 세부 분류	50
〈표 2-2-2〉 폭행(02011)과의 죄명코드 연계	57
〈표 2-2-3〉 협박(02012)과의 죄명코드 연계	61
〈표 2-2-4〉 기타 폭행과 협박(02019)과의 죄명코드 연계	63
〈표 2-2-5〉 폭행과 협박(0201)으로의 분류여부가 쟁점이 되는 결과적 가중범의 예	67
〈표 2-2-6〉 미성년자 약취/유인(02021)과의 죄명코드 연계	70
〈표 2-2-7〉 자유의 박탈(02022)과의 죄명코드 연계	71
〈표 2-2-8〉 기타 자유에 반하는 행위(02029)와의 죄명코드 연계	73
〈표 2-2-9〉 노예 행위 및 착취(0203)와의 죄명코드 연계	79
〈표 2-2-10〉 인신매매(0204)와의 죄명코드 연계	82
〈표 2-2-10〉 강요(0205)와의 죄명코드 연계	85
〈표 2-2-11〉 과실행위(0206)의 죄명코드 분류	91
〈표 2-2-12〉 위협행위(0207)의 죄명코드 분류	101
〈표 2-2-13〉 공포감 또는 정서적 고통을 유발할 의도로 하는 행위(0208)과의 죄명코드 연계성	109
〈표 2-2-14〉 정서적 학대에 대해 처벌규정을 둔 특별법	112

〈표 2-2-15〉 ICCS [소분류02082,02089]와의 연계를 위해 세분화가 필요한 죄명코드 … 113

〈표 2-2-16〉 명예훼손 또는 모욕(0209)과의 죄명코드 연계성 …………… 115

〈표 2-2-17〉 ICCS [소분류02099]와의 연계를 위해 세분화가 필요한 죄명코드 …… 120

〈표 2-2-18〉 차별(0210)과의 죄명코드 연계성 …………… 123

〈표 2-2-19〉 차별행위에 대해 처벌규정을 둔 특별법 …………… 124

〈표 2-2-20〉 ICCS [소분류02101, 02102]와의 연계를 위해 세분화가 필요한 죄명코드 … 128

〈표 2-2-21〉 사람에 대한 침해행위(0211) 및 기타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초래하거나 의도한 행위(2019)와의 죄명코드 연계성 …………… 131

〈표 2-2-22〉 ICCS [소분류02111, 20119]와의 연계를 위해 세분화가 필요한 죄명코드 … 135

〈표 2-3-1〉 ICCS [대분류 03] 성적 성격의 유해행위 세부 분류 …………… 137

〈표 2-3-2〉 강간(03011)과의 죄명코드 연계 …………… 141

〈표 2-3-3〉 성폭행(03012)과의 죄명코드 연계 …………… 148

〈표 2-3-4〉 성희롱 처벌규정을 둔 특별법 …………… 152

〈표 2-3-5〉 강간(03011)과 성폭행(03012)으로 분류되지 않는 죄명코드 …………… 159

〈표 2-3-6〉 유형력에 의한 강간(03011)과 유형력에 의하지 않은 강간(03012)로  
분류되지 않는 죄명코드 …………… 160

〈표 2-3-7〉 성적 착취(0302)의 세분류별 죄명코드 연계 …………… 165

〈표 2-3-8〉 성인에 대한 성적착취(03021)와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03022)로  
구분되지 않는 죄명코드 …………… 174

〈표 2-3-9〉 성적착취(0302) 이외에 다른 분류에 해당하는 죄명코드 …………… 176

〈표 2-4-1〉 ICCS [대분류 04] 다른 사람에게 폭력이나 협박을 가한 재산  
침해행위 세부 분류 …………… 180

〈표 2-4-2〉 강도(0401)의 죄명코드 분류 …………… 185

〈표 2-4-3〉 기타 사람에 대한 폭력 또는 협박을 수반한 재산침해행위(0409)의  
죄명코드 분류 …………… 187

〈표 2-5-1〉 ICCS [대분류 05] 단순한 재산침해행위 세부 분류 …………… 188

〈표 2-5-2〉 절도목적 침입(0501)의 죄명코드 분류 …………… 193

〈표 2-5-3〉 절도(0502)의 죄명코드 분류 …………… 198

〈표 2-5-4〉 지적재산 범죄(0503)의 죄명코드 분류 …………… 202

〈표 2-5-5〉 절도(0502)의 죄명코드 분류 …………… 204

〈표 2-5-6〉 군용물범죄법 별표: 군용물의 범위 …………… 207

〈표 2-5-7〉 기타 재산침해행위(0509)의 죄명코드 분류 …………… 210

〈표 3-1-1〉 고의에 의한 살인(0101)으로의 분류여부가 쟁점이 되는 결합범 ……… 216

〈표 3-1-2〉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0102)로의 분류여부가 쟁점이 되는 결합범 …… 217

<표 3-1-3> 중한 폭행(020111)으로의 분류여부가 쟁점이 되는 결합범 ..... 218

<표 3-1-4> 강도(0401)의 분류여부가 쟁점이 되는 결합범 ..... 219

<표 3-1-5> 절도(0502)의 분류여부가 쟁점이 되는 결합범 ..... 220

<표 3-1-6> 2014년도 경찰의 『범죄통계』상 성폭력범죄 결합범 범죄분류 ..... 222

<표 3-2-1> 폭행과 협박(0201)으로의 분류여부가 쟁점이 되는 결과적 가중범의 예 .. 223

<표 3-2-2> 위험행위(0207)로 분류하기 어려운 결과적 가중범 ..... 225

<표 3-2-3> 강도(0401)와 관련한 결과적 가중범 ..... 226

<표 3-4-1> 살인예비·음모죄에 해당하는 죄명코드 ..... 228

<표 3-4-2> 약취·유인·국외이송의 예비 음모 ..... 229

<표 3-7-1> [중분류 0106] 및 [소분류 02071]로 분류될 수 있는 죄명코드 ..... 231

<표 3-7-2> 특정 목적 없는 인신매매죄의 죄명코드 ..... 233

<표 3-7-3> 위험행위(0207)로 분류하기 어려운 “위험한 행위” 및 그 결과적 가중범 .. 236

<표 3-7-4> 절도목적 침입(0501)과 관련하여 포섭관계가 불분명한 범죄유형 ..... 241

<표 3-8-1> 손괴의 죄에서 포섭관계가 불분명한 범죄코드 ..... 244

**그림 차례**

[그림 1-1] <한국범죄분류 개발 기초연구 T/F>의 체계 및 역할 분담 ..... 10

[그림 1-2] 대검찰청 죄명코드 체계 ..... 14

---

## 국문요약

국제표준범죄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s, 이하 ICCS)는 범죄 통계의 일관성과 국제 비교성을 높이고, 국내 및 국제적 차원의 분류 해석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념, 정의 및 원칙에 근거한 범죄 분류체계이다. ICCS가 2015년 3월 개최된 제46차 유엔 통계 위원회(United Nations Statistical Commission) 및 같은 해 5월에 개최된 제24차 유엔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에 의해 승인됨에 따라, 한국 역시 ICCS에 대한 이행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범죄통계를 생산하는 기관의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상이한 범죄분류체계를 마련하여 사용하고 있어, 범죄분류의 국제적 기준 도입을 검토하는 과정이 한국의 범죄통계분류체계를 점진적으로 검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통계목적에 위한 국제표준분류(ICCS)에 기준한 한국범죄분류의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를 통해, 향후 한국범죄분류와 통계를 표준화하기 위해 ICCS의 분류체계가 한국의 범죄분류 및 통계의 특성에 비추어볼 때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다면 ICCS에 따른 분류에 있어 쟁점들이 무엇인지를 검토함으로써 향후 ICCS의 이행과 한국범죄분류와 통계에 관한 장기 로드맵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본 연구는 ICCS의 이행을 위해 마련된 통계청 및 치안정책연구소,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한국범죄분류 개발 기초연구 T/F> 활동의 일환이며, ICCS의 이행을 위한 기초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향후 한국범죄분류 개발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방향은 크게 다음과 같다. 첫째, ICCS에 대한 국내 공식 번역작업을 수행한다. 이 때 행위 기반인 ICCS의 특징을 반영하기 위해 법률용어의 사용을 지양하고 되도록 일상용어를 사용하여 행위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한국범죄통계분류의 기초단위인 죄명코드를 ICCS에 따라 분류하여 연계성을 검토하고 쟁점을

## 2 한국범죄분류 개발 기초연구

도출한다. 셋째, 죄명코드와 행위와의 연계 결과에 따라 연계가 되지 않는 죄명에 대해 원인분석, 규칙성 발견 및 분류체계 적용 가능한 범위를 추론한 것을 바탕으로 한국범죄분류 개발을 위한 쟁점과 과제를 제시한다.

---

# 제1장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서론

---

### 제1절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 목적

#### 1. 연구 배경 및 관련 정책현안

국제표준범죄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s, 이하 ICCS)<sup>1)</sup>는 멕시코통계청(INEGI)과 유엔마약범죄사무국(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이하 UNODC)가 공동 개발하여 제46차 유엔통계위원회(15. 3.)에서 채택되었다. 범죄분류 국제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이미 1951년 유엔사회위원회(the Social Commission of the United Nations)에서 제기된 바 있으나, 본격적으로 국제표준범죄분류가 개발되기 시작한 것은 2009년부터였다. UNODC와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onomic Commission of Europe, 이하 UNECE)에서 구성된 전담반(Task Force)은 유럽통계기관장회의(Conference of European Statisticians)의 감독 하에 법률 조문이 아닌 (범죄)행위 기술에 기반을 둔 범죄 분류틀 개발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였고, 2012년 6월에 열린 유럽통계기관장회의 제60차 세션에서 승인받았다.<sup>2)</sup> 이후 2012년 9월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은 정책개발을 위한 범죄 및 형사사법에 관한 통계의 질과 가용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결의안 2012/18<sup>3)</sup>을 채택하고, 유럽통계기관장회의에서 국제표준범죄분류의 개발을 포함한 향후 10년간의

1) 이에 대한 소개와 자료는 <https://www.unodc.org/unodc/en/data-and-analysis/statistics/iccs.html> 참조

2) 이하의 내용은 김한균, 이창진, 조성현, 박소영, 백혜원, 동북아지역 국제형사법 통계기준 실행 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4쪽 이하 참조.

3) [https://www.unodc.org/documents/commissions/CCPCJ/Crime\\_Resolutions/2010-2019/2012/ECOSOC\\_Resolution-2012-18.pdf](https://www.unodc.org/documents/commissions/CCPCJ/Crime_Resolutions/2010-2019/2012/ECOSOC_Resolution-2012-18.pdf)

## 6 한국범죄분류 개발 기초연구

로드맵을 설정한 ‘국제표준 범죄통계분류 원칙 및 프레임워크’를 마련, 유엔통계위원회(The United Nations Statistical Commission)와 유엔경제사회이사회에서 승인하였다. 2013년부터 UNODC 통계국과 회원국 통계기관 등의 협력 하에 국제범죄분류 전문가그룹(Expert Group on International Statistical Classifications)이 ICCS의 초안을 마련하고 두 차례 시험조사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여 2014년 8월 회원국에 회람한 결과, 2015년 3월 1수준에서 4수준의 위계 및 상세내용에 대한 ICCS 버전 1.0이 발표되었다.

ICCS는 범죄 통계의 일관성과 국제 비교성을 높이고, 국내 및 국제적 차원의 분류 해석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념, 정의 및 원칙에 근거한 범죄 분류체계이다.<sup>4)</sup> ICCS의 목적은 나라마다 상이한 법률체계 때문에 각 국가가 생산하는 범죄통계의 품질뿐만 아니라 자료집계 기준 및 방법이 달라 범죄수준에 대한 국제 비교 및 공유가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하므로, 여러 국가가 서로 협의를 통해 범죄행위를 명확히 정의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국제분류에 가까운 분류체계를 공유 및 공동 수정함으로써 가급적 표준화된 방식의 범죄분류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ICCS가 2015년 3월 개최된 제46차 유엔 통계 위원회(United Nations Statistical Commission) 및 같은 해 5월에 개최된 제24차 유엔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에 의해 승인됨에 따라, 한국 역시 ICCS에 대한 이행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범죄통계를 생산하는 기관의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상이한 범죄분류체계를 마련하여 사용하고 있어, 범죄분류의 국제적 기준 도입을 검토하는 과정이 한국의 범죄통계분류체계를 점검·검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2015년 11월 6일 국내통계분류기준을 관리하는 통계청의 주도로 국내 공식범죄통계생산기관인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과 범죄피해자조사를 담당하는 형사정책연구원, 그리고 관련 연구기관인 치안정책연구원이 ICCS의 국내 이행을 위한 한국범죄분류 개발에 대해 통계청의 추진계획과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회의를 통해 한국범죄통계분류와 ICCS 성격의 상이함을 확인하고, 우선 ICCS에

---

4) UNODC,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s(ICCS) VERSION 1.0(2015.3)*, 2015, p. 7.

기반하여 한국범죄통계 및 분류체계의 마련 가능성에 대해서부터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협의하였다. 이에 따라 2016년도 통계청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치안정책연구소이 전담반을 구성하고, ICCS의 번역과 한국범죄통계분류의 기초단위인 죄명코드와 연계가능성의 점검 및 쟁점분석 등 관련 기초연구를 우선 수행하기로 협의하였다.

## 2. 연구 목적 및 기대 효과

본 연구는 통계목적에 위한 국제표준분류(ICCS)에 기준한 한국범죄분류의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를 통해, 향후 한국범죄분류와 통계를 표준화하기 위해 ICCS의 분류체계가 한국의 범죄분류 및 통계의 특성에 비추어볼 때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다면 ICCS에 따른 분류에 있어 쟁점들이 무엇인지를 검토함으로써 향후 ICCS의 이행과 한국범죄분류와 통계에 관한 장기 로드맵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본 연구는 ICCS의 이행을 위해 마련된 통계청 및 치안정책연구소,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한국범죄분류 개발 기초연구 T/F> 활동의 일환이며, ICCS의 이행을 위한 기초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향후 한국범죄분류 개발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 제2절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 방향

### 1. 선행연구 검토

ICCS에 대한 국내 연구로는 2015년 김한균외 4인이 수행한 『동북아시아 국제형사법 통계기준 실행방안 연구』<sup>5)</sup>와 2016년 대검찰청의 수탁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수행한 『국제표준범죄분류체계(ICCS) 국내적용방안 기초연구』<sup>6)</sup>가 있다.

김한균외(2015)는 동북아시아 형사사법통계 협력방안의 일환으로 ICCS의 국내 도

5) 김한균외, 위의책, 2015.

6) 황지태, 김지영, 박희정(2016), 국제표준범죄분류체계(ICCS) 국내적용방안 기초연구, 검찰.

입을 위한 이행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ICCS의 제정과정과 ICCS의 소개, ICCS의 이행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김한균외는 ICCS의 목적이 국제범죄통계의 비교가능성을 위해 회원국에게 공통적으로 적용가능한 범죄통계분류체계를 마련하는 것에 있으며, 이를 위해 2012년부터 UNODC가 주도한 ICCS의 제정과정 및 이행을 위한 로드맵에 대해, 특히 ‘국제표준 범죄통계분류 원칙 및 프레임워크’에 초점을 두고 소개하고 있다. 또한 아태지역 상사사법 통계 발전을 위한 워크숍에서 논의된 범죄통계 역량 구축에 대한 논의와 ICCS 이행을 위한 UNODC의 비공식자문회의에서 진행된 논의 결과에 대해 소개하고, 국내 이행을 위한 관련기관협의회 진행사항을 보고하고 있다. 김한균외의 연구는 ICCS의 제정 및 이행에 관련된 UN, 아태지역 등 국제사회의 논의 지형을 설명하고 국내 이행논의과정을 소개하는 등 ICCS의 이행에 관한 기본적인 연구자료로 의의를 가진다. 또한 ICCS의 특징 및 내용에 대해 국내에서는 처음을 소개하였으며, 추가적으로 한국 경찰범죄통계상 살인죄와 성폭력범죄 분류와의 연계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ICCS의 도입시 쟁점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고 있다.

황지태외(2016)은 ICCS에 대한 소개 및 국내적용의 의미에 대한 점검을 목적으로, ICCS의 국내적용방안에 대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 김한균외가 ICCS의 제정배경과 관련 기관들의 이행에 초점을 두고 설명을 하였다면, 황지태외는 ICCS 제정의 배경이 되는 UNODC의 국제범죄통계와 각국의 범죄통계자료를 수집하는 절차인 UN-CTS(United Nations Surveys on Crime Trends and the Operations of Criminal Justice Systems)를 소개하고 UNODC의 국제범죄통계상 한국자료와 검찰청 범죄분석 자료와의 양적 비교(폭행, 절도, 강도, 침입절도, 주거침입절도, 성범죄, 강간, 살인)를 통해 ICCS 적용시 나타날 쟁점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황지태외는 김한균외가 검토하였던 살인 및 성폭력 이외에 세 개의 ICCS 대분류를 추가하여 ICCS의 번역과 경찰청 「2014범죄통계」 죄명분류표와의 연계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또한 UNODC의 국제범죄통계에서 제시되고 있는 한국 범죄통계자료를 검토함으로써, 한국의 범죄통계분류와 국제범죄통계분류의 차이를 확인하고 한국의 범죄원표의 입력방식 등 통계자료의 생산과 관리과정에서의 한계 역시 밝혔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두 연구는 ICCS와 한국범죄통계분류와의 연계가능성을 경찰청 범죄통계분류를 기준으로 검토하고 있을 뿐이어서, 실제 ICCS 기반으로 한국범죄통계자료를 분류할 때에 발생하는 쟁점에 대해 구체적으로는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 또한 국내 범죄통계분류는 경찰청 이외에도 대검찰청에서 사용하는 통계분류체계가 공존하고 있고 각 기관별로 그 분류체계가 상이하므로, 한 기관의 범죄분류에 기초하여 ICCS와의 연계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은 한국범죄통계분류와 관련된 전체적인 쟁점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 2. 본 연구의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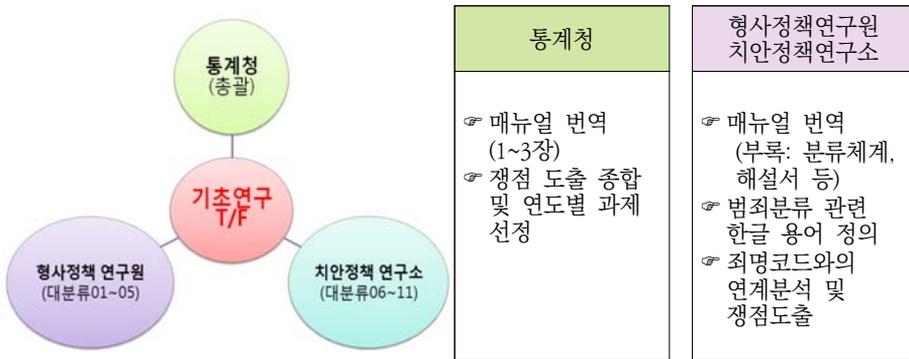
본 연구는 ICCS의 국내 이행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ICCS에 따라 국내의 범죄통계자료를 분류할 때에 도출되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ICCS의 이행 사항 후 검토해야 할 쟁점에 대해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ICCS에서 제시하고 있는 4수준(세분류)에 따라 국내 범죄통계자료를 분류하며, ICCS을 기반으로 한 한국범죄통계분류체계 마련의 전반적인 쟁점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 범죄통계생산기관에서 범죄통계자료 생산과 분류의 기초단위로 사용하는 죄명코드와의 연계성을 검토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방향은 크게 다음과 같다. 첫째, ICCS에 대한 국내 공식 번역작업을 수행한다. 이 때 행위 기반인 ICCS의 특징을 반영하기 위해 법률용어의 사용을 지양하고 되도록 일상용어를 사용하여 행위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한국범죄통계분류의 기초단위인 죄명코드를 ICCS에 따라 분류하여 연계성을 검토하고 쟁점을 도출한다. 셋째, 죄명코드와 행위와의 연계 결과에 따라 연계가 되지 않는 죄명에 대해 원인분석, 규칙성 발견 및 분류체계 적용 가능한 범위를 추론한 것을 바탕으로 한국범죄분류 개발을 위한 쟁점과 과제를 제시한다.

### 제3절 연구 범위 및 주요 연구 내용

####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 ICCS의 분류체계가 한국의 범죄분류 및 통계의 특성에 비추어볼 때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다면 ICCS에 따른 분류에 있어 쟁점들이 무엇인지를 검토하기 위한 것에 있으므로, 주된 연구의 내용은 ICCS 매뉴얼에 대한 번역 및 체계에 대한 분석, 대검찰청에서 범죄통계를 위한 기본단위로 활용하는 죄명코드와 ICCS와의 연계성 검토이다. 본 연구는 통계청 및 치안정책연구소,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공동연구활동으로, 매뉴얼 번역과 연계분석 및 쟁점의 도출은 기관별로 담당하여 동시 진행하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한국범죄분류 개발 기초연구 T/F>에서 장기 로드맵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진행하는 본 연구는 ICCS 대분류01~05를 중심으로 번역 및 연계성 검토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그림1-1] <한국범죄분류 개발 기초연구 T/F>의 체계 및 역할 분담

통계청, 치안정책연구소,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참여하는 <한국범죄분류 개발 기초연구 T/F>의 2016년 추진업무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표준범죄분류 (ICCS) 체계 및 매뉴얼에 대한 공식번역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2015년 3월 UNODC에서 제출하고 UN 총회에서 결의된 ICCS를 국문으로 번역하고, 한국의 법률용어와의 비교검토를 통해 명확한 번역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다. 둘째, ICCS와 대검찰청

죄명코드와의 연계분석을 진행한다. 셋째, 한국범죄분류 개발을 위한 장기 로드맵 개발을 위한 워크숍 및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한국범죄분류 개발을 위한 장기 로드맵을 개발한다.

## 2. 연구 내용 및 방법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ICCS 번역을 진행하고, 대분류 내 체계 및 한글용어의 정의에 대해 설명한다. ICCS의 이행을 위한 1단계는 공식적인 번역문의 제공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대분류 01-05까지 공식번역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각 분류에 포함된 위법행위가 하나의 항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상호 배타적이고 중복되지 않는 분류체계 정립에 필요한 대분류(section), 중분류(division), 소분류(group), 세분류(classes)별 범죄행위를 해석, 정의, 범주화 하는 번역 및 분석 작업을 수행한다. 이러한 번역의 과정은 ICCS의 분류체계에 대한 이해와 각 분류별 범죄행위에 대한 정의 및 범위를 확정하는 일종의 분석과정이기도 하다. 번역의 원칙과 공통된 표현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별도로 소개한다.

둘째, ICCS와 대검찰청 죄명코드와의 연계작업을 수행한다. 우선 한글용어로 정의된 국제분류에 따라 죄명코드의 연계작업을 수행함으로써, ICCS 적용 및 이행 가능성과 방식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이때 ICCS 세분류에 해당하는 행위와 대검찰청의 죄명코드를 연계하고 그 연계 결과에 따라 연계가 되지 않는 죄명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분류체계 적용 가능한 범위를 추론한다. 이를 통해 죄명코드의 상세화를 통해 분류가능한 죄명코드와 추가 정보수집이 필요한 분류, ICCS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가 불가능한 죄명코드 등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ICCS와 대검찰청 죄명코드 연계성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범죄분류 개발 관련 쟁점 및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ICCS와 한국범죄분류체계와의 비교를 통해, 구성요건 및 법익침해 유형으로 분류된 한국의 범죄지표를 행위 중심의 ICCS로 분류할 때에 발생하는 쟁점과 관련 과제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 제4절 연구 대상인 국제표준범죄분류(ICC) 및 한국범죄분류의 기초분류단위

### 1. 국제표준범죄분류(ICC)의 기초분류단위인 ‘범죄행위’

ICC는 법률체계에 따른 분류체계가 아닌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유형에 따른 분류이다. ICC 매뉴얼<sup>7)</sup>에 따르면, ICC는 범죄 통계의 일관성과 국제 비교성을 높이고, 국내 및 국제적 차원의 분류 해석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념, 정의 및 원칙에 근거한 범죄 분류체계이다. 현재 각국의 범죄통계는 자국의 형법 체계에서 정의하는 범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가 간 법률적인 조화를 이루지 않는 한 각 국가 간 범죄 정의의 차이가 불가피하므로, 이러한 차이점을 극복하기 위해 ICC는 법률 기반이 아닌 행위 기반의 범죄 정의에 기초하도록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ICC가 채택한 접근방식은 국내법 및 국제법상의 “범죄”를 ICC의 하나로 분류할 수 있는 “행위영역”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ICC 상 범죄행위의 분류는 형법에 따른 절대적인 법률적 정의보다는 행위 내용을 구체화하고 이를 분석형 범주로 할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류가 가능한 것은 각 국가의 형법에서 정의하는 범죄는 폭행이나 절도와 같이 보편적으로 침해라고 여겨지는 행위나 행태적 및 맥락적 속성 등을 추출하여 처벌가능한 인간행동과 관련된 실질적 범죄 개념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는 전제에 따른 것이다. ICC는 사건(행위) 기반으로 범죄의 개념을 접근함으로써, 법의 복잡성으로 인해 기인되는 문제점을 피하고 단순하고 모든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분류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ICC의 기초적인 분류단위는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이다. 범죄는 그 범죄를 행한 가해자의 행위를 기준으로 표현될 수 있으므로, ICC 분류에 기초가 되는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한 내용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가해자의 고의성 등 인식이나 의욕, 미성년자 등 피해자의 상황이나 신분 등 추가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범죄들은 이러한 요소들을 포함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에 대해 설명한다. 이를 통해 ICC는 범죄통계의 분석에 필요한 범죄사건에

7) 이하 ICC 매뉴얼(2015)의 서론 참조.

대한 속성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방식에 기초하여 ICCS의 범주와 그에 대한 설명은 전통적인 범죄개념으로 국내법에서 광범위하게 언급되는 ‘강간’, ‘폭력’, ‘절도’ 등 특정 용어를 제외하고 가급적이면 법률용어보다는 일상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ICCS에 따른 통계분류 원칙은 상호배타성, 포괄성 및 통계타당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호배타성의 원칙에 따라 ICCS의 기본 분류단위인 범죄행위가 중복없이 하나의 분류에만 할당되어야 한다. 포괄성의 원칙에 따라 모든 범죄현상이 ICCS에 포함되어야 하나, 국내법과 사법판결에 따라 범죄로 구분되는 행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범법행위의 전체목록을 작성하기보다는 많은 국가들에 의해 보편적으로 범법행위로 간주되는 행위나 사건을 포괄하는 것에 한한다. 그러므로 교통 위반 등 행정 위반에 속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ICCS에서 포함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항목 간 구분을 효과적이고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통계타당성의 원칙에 따라 ICCS는 범죄행위를 행위 내용에 근거하여 신중하게 정의하고, 이에 따라 분류항목별로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법률적 사례들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2. 한국범죄분류의 기초분류단위인 ‘죄명코드’

한국 범죄통계의 분류는 ICCS와 달리 법률상 죄명 및 위반법률 중심의 분류체계이다. 현재 한국의 공식적인 범죄통계는 범죄사건이나 행위가 아닌 해당 행위에 대한 적용법조(죄명)를 기본으로 하여 범죄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이 때 기본이 되는 적용법조에 대한 분류는 ‘죄명코드’이다. 비록 현재 사법기관별로 통일된 범죄분류체계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나, 경찰청과 대검찰청은 범죄분류를 위한 공식 범죄통계의 기본 단위로 죄명코드를 사용하고 있다.

현행 국가범죄통계의 분류체계는 기본적으로 「검찰통계사무규정」(법무부훈령 제 821호, 2011.5.4., 일부개정)의 죄명구분에 근거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형법범과 특별법범을 구분하고, 형법범의 죄명구분은 형법각칙의 순서에 따라 1. 내란의 죄, 2. 외환의 죄, 3. 국기에 관한 죄 등 44번까지 나누고 있다(동 규정 별표2). 이러한

죄명구분방식은 앞서 살펴본 죄명코드와 연관되어 있다.

죄명코드는 법무부 훈령인 「검찰통계사무규정」에 근거를 두고 대검찰청에서 작성·관리한다. 이러한 죄명코드는 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범죄분석』과 경찰청에서 발간하는 『범죄통계』등의 한국의 범죄관련 공식통계상 분류를 위한 기본단위가 된다. 「검찰통계사무규정」의 별표와 대검찰청의 예규에 따라, 형법범 및 특별법범의 죄명구분과 죄명별 미수, 예비, 음모, 교사 및 방조 등의 구분에 따라 죄명코드가 구성되며(제5조), 새로이 입법된 신규 죄명의 경우에는 앞의 원칙에 따라 대검찰청에서 죄명코드를 추가한다. 사건이 접수되면 통계표에 사용할 죄명은 처리죄명(단, 미제사건인 경우 접수죄명)에 따르며(제7조), 처리된 사건의 처리죄명이 수개인 경우 통계표에 사용할 죄명은 검사의 처분, 법정형, 죄질과 범정이 가장 중한 죄에 해당하는 죄명에 따르므로(제8조, 제9조)<sup>8)</sup>, 범죄행위 하나에 수개의 적용범조가 있더라도 하나의 죄명코드로 분류된다.

자리수	1(VERSION)	2(법률성격)	3~4	5~8	9	10
변인	죄명개정버전 (0~9)	형법 1 특별법 2 과태료 3 군형법 4	형법 각칙순서대로 01~42장	고유번호 (일련번호체계)	미수 1 예비 2 음모 3 선동 4 선전 5	교사 1 방조 2
			특별법의 경우 (임의적 번호체계)			

\* 출처: 김지선, <한국범죄분류 개발 공동세미나>(2016.12.16.) 토론 ppt

[그림 1-2] 대검찰청 죄명코드 체계

8) 검찰통계사무규정 제8조(처리된 사건의 죄명) ①처리된 사건의 처리죄명이 수개인 경우 통계표에 사용할 죄명은 다음 순서에 따라 최선순위의 처리사유에 해당하는 죄명을 따른다.

1. 구공판
2. 구약식명령
3. 소년보호사건 송치
4. 가정보호사건 송치
5. 불기소
6. 타관송치

②수개의 처리죄명이 제1항 각호중의 동일한 처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형이 가장 중한 죄에 해당하는 죄명에 따르고 법정형의 경중이 동일한 때에는 죄질과 범정이 가장 중한 죄에 해당하는 죄명에 따른다.

제9조(미제사건의 죄명) 미제사건의 접수죄명이 수개인 경우에는 법정형이 가장 중한 죄에 해당하는 죄명에 따르고 법정형의 경중이 동일한 때에는 죄질과 범정이 가장 중한 죄에 해당하는 죄명에 따른다.

죄명코드는 전체 10자리의 숫자로 구성되며, 각 자리수가 죄명코드 분류의 변인을 의미한다. 죄명코드의 첫번째 숫자는 해당죄명이 포함된 법률개정버전을 의미하며, 두 번째 숫자는 법률의 성격에 따라 형법(1), 특별법(2), 과태료(3), 균형법(4)를 표시한다. 세 번째에서 여덟 번째 자리 숫자는 형법범과 특별법범의 분류에 따라 다르게 구분되는데, 형법범인 경우에는 세,네번째 자리 숫자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형법 각칙의 44개의 장을 표시한 것이며 다섯 번째에서 여덟 번째까지의 숫자는 대검찰청에서 구축한 고유번호로 분류한다. 특별법범인 경우에는 세 번째에서 여덟 번째까지의 숫자는 대검찰청에서 부여한 임의적 번호를 의미한다. 아홉 번째 숫자는 미수, 예비, 음모, 선동, 선전의 구분을 표현하며, 마지막 열 번째 숫자는 교사와 방조를 구분한다.

## 제5절 본 연구에서 수행한 ICCS 번역의 원칙 및 한국어 표현

본 연구에서는 행위 기반으로 구축된 ICCS의 특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번역 원칙을 마련하였다. 첫째, 최대한 한국어 관습에 맞게 자연스럽게 번역한다. 둘째, 행위명인 경우 결과가 아닌 ‘행위’가 중심에 오도록 번역한다. 셋째, 한국 형사법에서 쓰이는 개념과 일치하는 개념의 경우 한국 형사법 용어를 사용한다.

ICCS의 매뉴얼과 범죄분류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영어로 된 법률용어의 한국어 표현이 쟁점으로 제기되었다. 다양한 한국어 번역용어가 존재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번역의 원칙을 마련하였다.

### 1. homicide/murder/manslaughter/killing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또는 사망을 야기할 의도로 하는 행위”에 대한 [대분류01] 및 그 하위분류에서는 사람의 사망과 관련된 다양한 행위 개념을 나타내는 용어가 쓰이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homicide, murder, manslaughter, killing 이 있다. 이 중 homicide, murder, manslaughter는 본래 영미법에서의 살인 행위에 대한 분류로서, homicide는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 일반에 대한 것으로서 보통 “살인”으로 번역하고, murder는 homicide 중에서도 계획이나 사전의 의도에 의한 행위로서

대부분 “모살”로 번역하며, manslaughter의 경우 우발적이거나 격정적인 살인으로서 “고살”로 번역하는 예가 많다. 이렇듯 각 용어에 대하여 기존의 번역어가 존재하나 각 번역어는 우리나라 형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으로서, ICCS의 범죄분류와 한국 형법의 비교(mapping)이라는 본 번역의 목적을 비추어볼 때 기존 번역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ICCS 매뉴얼의 분류상 manslaughter는 voluntary manslaughter와 involuntary manslaughter로 나뉘어지는데, 후자의 경우 “사람에게 해악을 가하려는 일반적인 목적은 있으나 사망 또는 중상해에 이르게 하려는 목적 없이 사람을 불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즉 (다른 고의는 있으되) 살인의 고의는 없는 행위로서, “고살”이라는 단어와는 의미가 맞지 않는다. 따라서 homicide, murder, manslaughter의 경우 각각 “살인”으로 번역 하되, 0101번 분류에 포함되는 여러 세부항목에 포함된 “murder”의 경우는 예시로 포함된 것으로서 고유한 행위명이기 때문에 “모살”이라는 단어를 유지하는 것으로 하였다. 더불어 “killing”의 경우 단어 자체로만 본다면 행위의 대상은 포함되지 않은 개념으로서, 살인 대신 “살해”로 번역하였다.

## 2. death inflicted by ~

ICCS 매뉴얼의 각 분류의 경우 각 분류의 제목은 “행위”를 중심으로 표현되어있으나 그에 대한 해설의 경우 “death inflicted by~”와 같은 식으로 행위의 “결과”를 중심에 놓는 듯하게 표현한 경우가 발견되었다. 다만 이 경우 범죄 분류에 있어 행위에 중심을 둔다는 원래 목적, 그리고 다른 부분의 번역과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행위를 중심에 둔 것으로 표현하였다. 다만 이 경우 “death”가 중심에 놓임으로써 죽음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의미가 포함되므로, (사망을 “의도한” 행위가 아니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로 번역하여 사망이라는 결과가 포함되도록 하였다.

## 3. unlawful/illegal

ICCS 매뉴얼 전반에 걸쳐 unlawful은 대부분 행위 정의에 쓰이고, illegal은 포함되

거나 제외되는 행위의 예로 열거된 행위명에 쓰이는 경향을 보인다. 이 점에서 볼 때 전자는 행위가 법에 위반됨을 의미함으로써 행위의 범위를 규정하는 목적으로 쓰이며, 후자는 세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전자는 “위법” 또는 “위법한”으로, 후자는 “불법”으로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 4. intent/purpose

행위의 주관적 요소와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intent”와 “purpose”라는 두 가지 표현이 주로 쓰이고 있는데, 전자의 경우는 해당 행위 자체를 저지르고자 하는 “의도” 또는 “고의”로 번역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행위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라는 의미에서 “목적”으로 번역하였다.

#### 5. vehicle

vehicle의 경우 통상적으로 “차량”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으나, ICCS 매뉴얼에서는 지상 차량만이 아닌 선박, 항공기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운송수단”으로 번역하였다.

#### 6. force

폭행 및 협박에 대한 정의에서 쓰이는 “force”라는 단어의 경우 상해 또는 해악을 일으키는 힘의 사용으로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는 행위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 아닌, 실제적인 힘의 행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력 대신 ‘유형력’으로 번역하였다. 이는 우리 형법의 범리상 폭행을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이해하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판단된다.

#### 7. abduction

보통 abduction은 “납치”로 번역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해당 분류에서 정의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그 개념상 강제성을 포함하는 “납치” 외에도 기망 등의 수단에 의한 “유인”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우리 형법에서 타인을 행위자 자신이나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두는 행위로 약취 및 유인을 규정하고 있고 두 행위는 그 수단에 있어 구별되므로(전자는 폭행 및 협박, 후자는 기망 및 유혹), 본 매뉴얼에서의 abduction은 약취 및 유인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 형법과 매뉴얼과의 비교에 도움이 되리라고 여겨진다.

## 8. professional negligence

우리 형법상 “업무상 과실”이라는 개념이 적용되므로 professional negligence를 업무상 과실로 번역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나, ICCS 매뉴얼에서 사용된 이 표현의 경우 그에 포함되는 개별 행위에서 알 수 있듯이 주로 의사, 조종사 등 각 직종의 종사자가 행하는 직무에 관련된 것으로서, 보다 넓은 “업무상” 보다는 각 직종에서의 업무를 의미하는 “직무상”이라는 번역어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9. invasion/intrusion

두 개념 모두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행위 개념으로서, 전자의 경우 “침해”로, 후자의 경우 “간섭”으로 번역하였다.

## 10. property

property의 경우 보통 “재산”으로 번역하나, ICCS 매뉴얼에서는 이 단어가 물리적인 행위 객체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따라서 property가 행위가 침해하는 이익, 즉 “법익”을 의미하는 경우이거나 행위의 객체가 무형의 재산을 포함하는 경우 “재산”으로 번역하고, 물리적인 행위 객체를 의미하는 경우 “재물”로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 제6절 본 보고서의 구성

본 보고서의 2장 각 절은 ICCS 1수준인 대분류에 따라 구성이 되었으며, 그 하위 목차는 ICCS 2수준인 중분류를 의미한다. 각 절 이하에서는 ICCS 매뉴얼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 분류의 개념과 포섭 내지 배제 범죠행위에 대한 한국어 번역에 대한 소개, 대검찰청 죄명코드와의 연계성 분석, 그리고 연계분석을 통해 도출된 쟁점에 대해 검토하였다.

3장에서는 ICCS에 대한 죄명코드와의 연계분석으로 확인된 쟁점에 대해 종합적으로 서술하고 향후 ICCS의 국내 이행 시 도출되는 과제에 대해 제시하였다.

별도로 ICCS 대분류1에서 대분류5까지의 한글 번역과 번역 용어집을 정리하여 부록으로 제시하였다.

---

## 제2장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ICCS에 따른 죄명코드의 연계성 분석(대분류01-05)

---

# ICCS에 따른 죄명코드의 연계성 분석(대분류01-05)

## 제1절 다른 사람의 사망을 초래하거나 의도한 행위(01)

[대분류 01]은 다른 사람의 사망을 초래하거나 의도한 행위로, 크게 고의에 의한 살인(intentional homicide),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attempted intentional homicide), 고의에 의하지 않은 살인(non-intentional homicide), 자살 방조 또는 교사(assisting or instigating suicide), 안락사(euthanasia), 불법낙태(illegal feticide), 무력 분쟁 관련 불법 살해(unlawful killing associated with armed conflict), 그리고 이상의 행위들 이외에 다른 사람의 사망을 초래하거나 의도한 기타 행위로 구분된다. ICCS는 중분류에 해당하는 고의에 의하지 않은 살인을 다시 살인이나 중한 상해 고의 이외의 고의에 의한 살인과 과실에 의한 살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중분류에 해당하는 자살 방조 또는 교사도 자살 방조와 기타 자살 방조 또는 교사로 분류하고 있다. ICCS [대분류 01]의 세부 분류는 다음과 같다.

〈표 2-1-1〉 ICCS [대분류01] 다른 사람의 사망을 초래하거나 의도한 행위 세부 분류

2수준/중분류		3수준/소분류		4수준/세분류	
0101	고의에 의한 살인 (intentional homicide)	-	-	-	-
0102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attempted intentional homicide)	-	-	-	-
0103	고의에 의하지 않은 살인 (non-intentional homicide)	01031	살인 고의 및 중한 상해 고의 이외의 고의에 의한 살인 (non-negligent manslaughter)	-	-
		01032	과실에 의한 살인 (negligent manslaughter)	010321	운송수단에 의한 살인 (vehicular homicide)
010322	운송수단에 의하지 않은 살인 (non-vehicular homicide)				
0104	자살 방조 또는 교사 (assisting or instigating suicide)	01041	자살 방조 (assisting suicide)	-	-
		01042	기타 자살 방조 또는 교사 행위 (other acts of assisting or instigating suicide)	-	-
0105	안락사 (euthanasia)	-	-	-	-
0106	불법 낙태 (illegal feticide)	-	-	-	-
0107	무력 분쟁 관련 불법 살해 (unlawful killing associated with armed conflict)	-	-	-	-
0109	기타 다른 사람의 사망을 초래하거나 의도한 행위 (other acts leading to death or intending to cause death)	-	-	-	-

## 1. 고의에 의한 살인(Intentional homicide, 0101)

### 가. 개념 및 행위

중분류인 고의에 의한 살인(0101)은 “사망 또는 중한 상해에 이르게 하려는 의도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위법한 행위”를 의미한다. 즉, 살인의 고의를 갖고 행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물론이고, 중한 상해<sup>9)</sup>의 고의를 갖고 행한 행위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도 고의에 의한 살인(0101)에 해당한다. 여기에는 i) 사전 계획이나 살의에 의한 경우를 포함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중한 상해에 이르게 할 의도로 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인 모살(murder), ii) 전투원이 아닌 자(즉, 분쟁의 당사자가 아닌 자)가 다른 사람을 사망이나 중한 상해에 이르게 할 의도로 행한 행위로 인해 그 사람을 불법적으로 살해하는 행위로, 그 성격 또는 맥락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행위가 특정 집단을 위협하거나 또는 특정 국가 기관 또는 국제기구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테러 활동으로 인한 살해, iii) 만 1세 미만의 아동을 살해하는 행위인 영아살해, iv) 도발 등 책임감경사유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람의 사망을 유발하려는 의도로 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인 자의에 의한 살인(voluntary manslaughter) 등이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사망이나 중한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행한 폭행에 의해 사람을 불법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인 사망을 야기한 중한 폭행(serious assault leading to death)도 고의에 의한 살인(0101)에 해당한다.

반면, i) 경찰 또는 기타 (임무 수행 중인 군인을 포함하여) 법집행인이 범법자 체포 또는 체포 시도, 소요 진압, 질서 유지 활동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명 보호를 위해 필요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인 법적 개입에 의한 사망, ii) 자기 또는 타인에 대한 임박한 사망이나 중한 상해의 위협에 직면하여 살해

9) ICCS 매뉴얼은 “중한 신체 상해”(serious bodily injury)와 “중한 상해”(serious injury)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근거는 [중분류 0101]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로서 테러 활동으로 인한 사망(death as a result of terrorist activities)을 정의하면서는 행위자에게 사망이나 중한 신체 상해(serious bodily injury)에 대한 고의가 있을 것을 요구하면서, 또 다른 대표적 예에 해당하는 사망을 야기한 중한 폭행(serious assault leading to death)에서는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사망이나 중한 상해(serious injury)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했음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보다 덜 극단적인 방법으로는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충분하지 않은 경우 자기 또는 타인을 방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살해행위인 정당방위에 의한 살인은 고의에 의한 살인(0101)에서 제외된다. 이에 더하여, 사망 또는 중한 상해에 이르려는 의도를 갖고 행위를 하였지만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고의에 의한 살인(0101)이 아닌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0102)로 분류된다. 또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발생했어도 행위자에게 살인이나 중한 상해에 대한 고의가 없는 경우도 고의에 의한 살인(0101)이 아니라 고의에 의하지 않은 살인(0103)에 해당하게 되고, 안락사는 고의에 의한 살인(0101)이 아니라 별도로 [중분류 0105]의 안락사로 분류된다.

### 나. 죄명코드 연계성 분석

〈표 2-1-2〉 고의에 의한 살인(0101)과의 죄명코드 연계

2수준/중분류	죄명코드
0101	<p>고의에 의한 살인</p> <p>[형법범]</p> <p>내란목적살인(0101020000; 0101020100), 살인(0124010000; 0124010100), 존속살인(0124020000), 존속살해(0124020100), 영아살해(0124030000; 0124030100), 촉탁살인(0124040100), 승낙살인(0124040200), 위계촉탁살인(0124060100), 위력촉탁살인(0124060200), 위계승낙살인(0124060300), 위력승낙살인(0124060400), 상해치사(0125050000; 0125050100), 존속상해치사(0125060000; 01250601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력행위처벌법위반:</li> </ul> <p>단체등의살인(0206044700), 단체등의촉탁살인(0206044800), 단체등의승낙살인(0206044900), 단체등의위계촉탁살인(0206045000), 단체등의위계승낙살인(0206045100), 단체등의위력촉탁살인(0206045200), 단체등의위력승낙살인(02060453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범죄가중법위반:</li> </ul> <p>보복살인등(0209010900)</p> <p>[특별법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균형법위반:</li> </ul> <p>적전상관상해치사(0409054500), 상관상해치사(0409054600), 전시상관상해치사(0409055800), 사변상관상해치사(0409055900), 계엄지역상관상해치사(0409056000), 상관살해(0409060100), 적전초병상해치사(0409115300), 초병상해치사(0409115400), 전시초병상해치사(0409116100), 사변초병상해치사(0409116200), 계엄지역초병상해치사(0409116300), 초병살해(0409120100), 적전직무수행자상해치사(0409132900), 직무수행자상해치사(0409133000), 적전직무수행군인등상해치사(0409136000), 전시직무수행군인등상해치사(0409136100), 사변직무수행군인등상해치사(0409136200), 계엄지역직무수행군인등상해치사(0409136300)</p>

ICCS 매뉴얼에 따를 때 [중분류 0101]인 고의에 의한 살인에 해당하는 우리 형법상의 대표적인 범죄 유형으로는 살인죄 및 상해치사죄<sup>10)</sup>를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형법전 및 특별형법에 규정된 살인죄 및 상해치사죄는 모두 [중분류 0101]로 분류된다.

먼저, 「형법」 제88조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살해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국토참절 또는 국헌문란이란 특별한 목적을 요구하긴 하나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사람을 살해한 경우이므로 [중분류 0101]의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분류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형법」 제250조 제1항은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그 사람이 행위자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를 가중처벌하고 있다. 「형법」 제251조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으폐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또는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를 가지고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영아살해의 경우에는 보통살인(제250조 제1항)의 경우보다 경하게 처벌된다. 뿐만 아니라, 「형법」 제252조 제1항은 행위자가 피해자의 부탁을 받거나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얻고 그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에도 행위자를 촉탁·승낙살인죄로 처벌하고 있고, 「형법」 제253조는 만약 이와 같은 촉탁 또는 승낙이 행위자의 위계나 위력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보통살인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형법」 제259조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약칭) 제4조는 동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집단을 구성하거나 이와 같은 단체나 집단에 가입한 사람이,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을 범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중에서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형법」

10) 상해치사죄(예컨대, 형법 제259조)란, 고의로 상해죄를 범하였으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까지 발생하게 되었고, 행위자에게 중한 결과인 사망에 대해 과실, 즉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ICCS는 “중한 신체 상해”를 총상, 탄환에 의한 부상, 자상, 신체 절단, 골절, 치아탈락, 의식 상실 등으로 정의하고 있고, ICCS에 의해 “중한 신체 상해”로 인정되는 이와 같은 결과들은 우리 형법상 상해죄에서의 상해로 인정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결국 [중분류 0101]에서 요구하는 고의는 살인이나 상해의 고의라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제250조 제1항의 보통살인죄를 범하거나, 「형법」 제252조 제1항의 촉탁·승탁살인죄를 범하거나, 또는 동법 제253조 중 위계나 위력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촉탁 또는 승낙을 얻은 뒤 그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는 [중분류 0101]로 분류된다.

다음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약칭) 제5조의9 제1항은 i) 자기 또는 타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하거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또는 ii)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도 보복목적과 같은 특별한 목적이 요구되기는 하나, 결국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중분류 0101]의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분류된다.

마지막으로, 「균형법」 제53조 제1항과 제59조 제1항은 각각 상관과 초병을 살해한 경우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법은 상관과 초병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제52조의6, 제58조의6), 특히 그 상황(적전·전시·사변·계엄지역·그 밖의 경우)에 따라 처벌을 달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법은 적전직무수행군인등(제60조의5 1호)·전시직무수행군인등(제60조의5 2호)·사변직무수행군인등(제60조의5 2호)·계엄지역직무수행군인등(제60조의5 2호)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 다. 죄명코드 분류상의 쟁점

### 1) 결합법의 분류 문제

결합법을 이루는 범죄구성요건들 중 하나가 살인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중분류 0101]의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예컨대, 강도살인죄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 「형법」 제338조 전문은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강도살인죄는 강도죄와 살인죄가 결합된 결합범인 것이다. 하지만 ICCS는 통계 목적으로 범죄를 분류함에 있어 이와

같은 결합범을 예상하고 있지 않아, 우리 형법전상의 강도살인죄에 해당하는 죄명코드인 강도살인(0138130000; 0138130100)이 ICCS의 [중분류 0101]의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중분류 0401]의 강도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그도 아니라면 이를 ICCS의 분류체계상 어떻게 분류해야 하는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 2) ICCS 분류를 위해 상세화가 필요한 죄명코드

[중분류 0101]의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분류될 수 있는 범죄행위 뿐 아니라 다른 중분류, 소분류, 또는 세분류로 분류될 수 있는 범죄행위까지 함께 포함하고 있는 죄명코드가 발견된다. 예컨대, 「군형법」 위반의 죄명코드 중 폭행·협박·상해·살인의죄(0409000000)는 [중분류 0101]의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살인행위도 포함하고 있지만, 이 외에도 [대분류 02]로 분류될 수 있는 폭행·협박·상해행위도 포함하고 있어 ICCS의 분류체계에 따라서는 분류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쟁점으로 제기된 바 있는) 결합범을 이루는 범죄구성요건들 중 하나가 살인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중분류 0101]의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분류한다 하더라도, 하나의 죄명코드가 [중분류 0101]의 고의에 의한 살인에 해당하는 범죄유형뿐 아니라 ICCS상의 다른 중분류, 소분류, 또는 세분류에 해당하는 범죄유형까지 포함하는 경우에도 이를 ICCS의 매뉴얼에 따라 분류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예컨대,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명코드인 ‘강간등살인·치사’(0206031200)는 [중분류 0101]인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분류할 수 있는 강간살인의 범죄유형 뿐 아니라, [중분류 0103]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살인, 더 구체적으로는 [소분류 01031]의 살인 고의 및 중한 상해 고의 이외의 고의에 의한 살인에도 해당하는 강간치사의 범죄유형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 2.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Attempted intentional homicide, 0102)

### 가. 개념 및 행위

중분류인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0102)는 “사망 또는 중한 상해에 이르게 하려는

의도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려 시도하는 위법한 행위”를 의미한다. 즉, 행위자가 갖는 고의는 고의에 의한 살인(0101)에서와 동일하나, [중분류 0101]의 고의에 의한 살인과 달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분류 0102]의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로 분류된다. 따라서 [중분류 0102]에는 모살 미수, 테러 활동에 의한 살해 미수, 영아살해 미수 등이 포함된다.

### 나. 죄명코드 연계성 분석

〈표 2-1-3〉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0102)와의 죄명코드 연계

2수준/중분류		죄명코드
0102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p>[형법범]</p> <p>내란목적살인미수(0101020110), 살인미수(0124010110), 존속살해미수(0124020110), 영아살해미수(0124030110), 촉탁살인미수(0124040110), 승낙살인미수(0124040210), 위계촉탁살인미수(0124060110), 위력촉탁살인미수(0124060210), 위계승낙살인미수(0124060310), 위력승낙살인미수(0124060410)</p> <p>[특별범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형법위반: 상관살해미수(0409060110), 초병살해미수(0409120110)</li> </ul>

이와 같은 [중분류 0102]에는 「형법」 및 「군형법」상 살인죄의 미수범들이 해당될 수 있다. 「형법」은 제89조에 내란목적살인죄의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고, 제254조는 보통살인죄(제250조 제1항), 존속살해죄(제250조 제2항), 영아살해죄(제251조), 촉탁·승낙살인죄(제252조 제1항), 그리고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촉탁·승낙살인죄(제253조)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뿐만 아니라 「군형법」 제63조는 상관살해죄(제53조 제1항) 및 초병살해죄(제59조 제1항)에 대한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 다. 죄명코드 분류상의 쟁점

#### 1) 결합범의 분류

[중분류 0101]의 고의에 의한 살인에서 결합범의 분류가 문제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로, [중분류 0102]의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에서도 결합범의 분류가 문제된다. 예컨대, 강도살인죄의 미수범(형법 제342조, 제338조)은 강도가 살인의 고의를 갖고 살해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지만 i) 아직 살해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ii) 살해행위는 종료했지만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거나, 또는 iii) 살해행위도 종료되고 피해자도 사망했지만 그 살해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다.<sup>11)</sup> 따라서 우리 형법전상 강도살인죄의 미수범에 해당하는 죄명코드인 강도살인미수(0138130110)가 ICCS의 분류체계상 [중분류 0102]의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로 분류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분류 0401]의 강도로 분류되어야 하는 것인지, 혹은 둘 다 아니라면 이를 어떻게 분류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 2) 예비·음모죄의 분류

우리 형법은 살인죄의 미수범을 처벌할 뿐 아니라, 살인예비·음모죄(형법 제255조)도 처벌하고 있다. 살인의 고의를 갖고 살해행위에 착수했지만 i) 살해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경우나, ii) 살해행위는 종료했지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또는 iii) 살해행위도 종료되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도 발생했지만 살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살인죄의 미수범에 해당하고 ICCS [중분류 0102]의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로 분류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ICCS는 살인의 예비 또는 음모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류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지 않아, 행위자가 살해행위의 착수에까지는 나아가지 않았지만 살인을 목적으로 외부적 준비행위를 하거나(예비) 다른 사람과 살인죄를 범하기로 합의(음모)<sup>12)</sup>한 경우를 ICCS의 분류체계상 어떻게 분류해야 할지에 관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11) 이처럼 강도살인죄의 기수 또는 미수의 성립여부를 강도죄의 기수 또는 미수의 성립여부가 아닌, 살인죄의 기수 또는 미수의 성립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 학계의 다수 견해이다(대표적으로 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2013, 370쪽). 우리 대법원도 (물론 강도살인죄가 아닌 강도상해죄에 관한 판례이긴 하나) “강도의 범인이 강도의 기회에 사람을 상해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면 「형법」 제337조 전단의 강도상해죄의 기수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반드시 재물탈취의 목적달성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대법원 1988.2.9. 선고 87도 2492 판결)고 하여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12) 예비와 음모는 모두 아직 실행의 착수 전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예비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기 전 범죄를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외부적인 준비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음모는 범죄를 실현하기로 다른 사람과 모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비와 음모의 의미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김성돈, 『형법각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4, 61쪽 참조.

### 3. 고의에 의하지 않은 살인(Non-intentional homicide, 0103)

중분류인 고의에 의하지 않은 살인(0103)은 “타인을 고의 없이 위법하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즉, 고의에 의한 살인(0101)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사망을 현실적으로 야기하긴 했지만, 고의에 의한 살인(0101)에서와 같이 행위자에게 살인이나 중한 상해에 대한 의도가 없었던 경우에는 [중분류 0103]인 고의에 의하지 않은 살인으로 분류될 수 있다. [중분류 0103]은 다시 크게 행위자에게 살인이나 중한 상해에 대한 고의는 없지만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하고자 하는 일반적인 의도에서 행한 행위로 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살인 고의 및 중한 상해 고의 이외의 고의에 의한 살인(non-negligent manslaughter)과 과실에 의한 살인(negligent manslaughter)으로 분류된다.

#### 가. 개념 및 행위

##### 1) 살인 고의 및 중한 상해 고의 이외의 고의에 의한 살인(Non-negligent manslaughter, 01031)

소분류인 살인 고의 및 중한 상해 고의 이외의 고의에 의한 살인(01031)은 “사람에게 해악을 가하려는 일반적인 의도는 있지만 사망이나 중한 상해를 유발하려는 의도는 없이 그 사람을 불법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해 해악을 가하려는 의도는 있지만 사망이나 중한 상해를 야기하려는 의도는 없이 행한 행위로 인해 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인 자의에 의하지 않은 살인(involuntary manslaughter), 상해의 고의 없이 야기된 신체 상해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가 포함된다.

##### 2) 과실에 의한 살인(Negligent manslaughter, 01032)

소분류인 과실에 의한 살인(01032)은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그 대상으로 하지 않은 과실 행위 또는 비자의적 행위로 고의 없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여기서 과실이란, 동일한 상황에서 합리적이거나 신중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에 대하여 기울였을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또는 합리적이거나 신중한 사람이라면 하지 않았을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분류 01032]에는 형사상의 과실에 의한 살인, 기업 살인(corporate manslaughter) 등이 포함된다.

소분류인 과실에 의한 살인(01032)은 다시 2개의 세분류로 분류된다.

첫 번째 세분류는 운송수단에 의한 살인(vehicular homicide, 010321)으로, 운송수단을 운전하는 과정에서 과실행위, 무모한 행위, 또는 비자발적 행위에 의해 고의 없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서 운송수단은 승용차, 오토바이, 트럭, 버스, 기차, 선박, 항공기, 자전거, 말, 트랙터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최소한 사람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장치나 구조물을 의미한다. [세분류 010321]에는 예컨대, 위험한 운전으로 인한 사망의 야기, 교통 안전 법규 위반을 통한 사망의 야기, 약물이나 알코올의 영향 하에서 운전을 함으로써 사망을 야기한 행위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행위자에게 교통 관련 과실이 있어도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거나 (02063), 단순히 향정신성 물질의 영향 하에서 운송수단을 운전하였을 뿐 이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을 야기하지 않은 경우(02072) 등은 [세분류 010321]에 해당하지 않는다.

두 번째 세분류는 운송수단에 의하지 않은 살인(non-vehicular homicide, 010322)으로,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그 대상으로 하지 않은 과실이나 비자발적 행위로 고의 없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 중 운송수단에 의한 살인(010321)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중과실에 의한 살인이나 사망을 야기한 직무상의 과실이 포함된다.

## 나. 죄명코드 연계성 분석

### 1) 살인 고의 및 중한 상해 고의 이외의 고의에 의한 살인(01031)과의 죄명코드 연계성 분석

〈표 2-1-4〉 살인 고의 및 중한 상해 고의 이외의 고의에 의한 살인(01031)과의 죄명코드 연계

3수준/소분류	죄명코드
	[형법범] 폭행치사(0125110000; 0125110100), 존속폭행치사(0125130000; 0125130100), 특수폭행치사(0125150000; 0125150100), 특수존속폭행치

3수준/소분류	죄명코드
<p>01031</p> <p>살인고의 및 중한 상해 고의 이외의 고의에 의한 살인</p>	<p>사(0125250100), 동의낙태치사(0127040000), 촉탁낙태치사(0127040100), 승낙낙태치사(0127040200), 업무상낙태치사(0127080000; 0127080100), 부동의낙태치사(0127100000; 0127100100), 업무상촉탁낙태치사(0127120000; 0127120100), 업무상승낙낙태치사(0127140000; 0127140100), 유기치사(0128100000; 0128100100), 존속유기치사(0128120000; 0128120100), 증유기치사(0128140100), 중존속유기치사(0128160100), 영아유기치사(0128180100), 학대치사(0128200100), 존속학대치사(0128220100), 체포치사(0129150000; 0129150100), 감금치사(0129170000; 0129170100), 존속체포치사(0129190100), 존속감금치사(0129210100), 중체포치사(0129230100), 중감금치사(0129250100), 중존속체포치사(0129270100), 중존속감금치사(0129290100), 특수체포치사(0129310100), 특수감금치사(0129330100), 특수존속체포치사(0129350100), 특수존속감금치사(0129370100), 특수중체포치사(0129390100), 특수중감금치사(0129410100), 특수중존속체포치사(0129430100), 특수중존속감금치사(0129450100), 상습체포치사(0129470100), 상습감금치사(0129490100), 상습존속체포치사(0129510100), 상습존속감금치사(0129530100), 상습중체포치사(0129550100), 상습중감금치사(0129570100), 상습중존속체포치사(0129590100), 상습중존속감금치사(0129610100), 피약취자치사(0131111500), 피유인자치사(0131111600), 피해매자치사(0131111700), 피국외이송자치사(0131111800), 강간치사(0132050000; 0132050100), 유사강간치사(0132050400), 준유사강간치사(0132050600), 강제추행치사(0132070000; 0132070100), 준강간치사(0132090000; 0132090100), 준강제추행치사(0132110000; 0132110100), 미성년자의제강간치사(0132170400),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사(0132170600), 상습미성년자의제강간치사(0132181700), 상습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사(0132182100), 인질치사(0137010700), 강도치사(0138140000; 0138140100), 해상강도치사(0138200000; 01382001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범죄가중법위반: 독직폭행치사(0206028700), 운전자폭행치사(0206043000)</li> <li>• 성폭력처벌법위반: 강간등치사(0206057700)</li> <li>• 청소년성보호법위반: 강간등치사(0216070800)</li> <li>• 성폭력특례법위반: 강간등치사(0206033400)</li> </ul> <p>[특별법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아동학대치사(0209910200), 상습강간치사(0209919600), 상습유사강간치사(0209919800), 상습강제추행치사(0209920100), 상습준강간치사(0209920300), 상습준유사강간치사(0209920500), 상습준강제추행치사(0209920700), 상습미성년자의제강간치사(0209922300), 상습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사(0209922700), 업무수행등방해치사(0209925600)</li> <li>• 균형법위반: 적전상관폭행치사(0409050100), 적전상관협박치사(0409050300), 상관폭행치사(0409050500), 상관협박치사(0409050700), 적전상관집단폭행수괴치사(0409050900), 적전상관집단협박수괴치사(0409051100), 적전상관집</li> </ul>

3수준/소분류	죄명코드
<p>01031</p> <p>살인고의 및 중한 상해 고의 이외의 고의에 의한 살인</p>	<p>단폭행치사(0409051300), 적전상관집단협박치사(0409051500), 상관집단 폭행수괴치사(0409051700), 상관집단협박수괴치사(0409051900), 상관집 단폭행치사(0409052100), 상관집단협박치사(0409052300), 적전상관특수 폭행치사(0409052500), 적전상관특수협박치사(0409052700), 상관특수폭 행치사(0409052900), 상관특수협박치사(0409053100), 적전상관집단특수 폭행치사(0409053300), 적전상관집단특수협박치사(0409053500), 상관집 단특수폭행치사(0409053700), 상관집단특수협박치사(0409053900), 적전 초병폭행치사(0409110100), 적전초병협박치사(0409110300), 초병폭행치 사(0409110500), 초병협박치사(0409110700), 적전초병집단폭행수괴치사 (0409110900), 적전초병집단협박수괴치사(0409111100), 적전초병집단폭 행치사(0409111300), 적전초병집단협박치사(0409111500), 초병집단폭행 수괴치사(0409111700), 초병집단협박수괴치사(0409111900), 초병집단폭 행치사(0409112100), 초병집단협박치사(0409112300), 적전초병특수폭행 치사(0409112500), 적전초병특수협박치사(0409112700), 초병특수폭행치 사(0409112900), 초병특수협박치사(0409113100), 적전초병집단특수폭행 수괴치사(0409113300), 적전초병집단특수협박수괴치사(0409113500), 적 전초병집단특수폭행치사(0409113700), 적전초병집단특수협박치사(0409113900), 초병집단특수폭행수괴치사(0409114100), 초병집단특수협박수괴치사(0409114300), 초병집단특수폭행치사(0409114500), 초병집단특수협박치사(0409114700), 적전직무수행자폭행치사(0409130900), 직무수행자폭행치사(0409131000), 적전직무수행자집단폭행치사(0409132100), 직무수행자집단폭행치사(0409132300), 적전직무수행군인등폭행치사(0409134700), 전시직무수행군인등폭행치사 (0409134800), 사변직무수행군인등폭행치사(0409134900), 계엄지역직무 수행군인등폭행치사(0409135000), 적전상관공동폭행치사(0409160100), 적전상관공동협박치사(0409160200), 전시적전상관폭행치사(0409160300), 전시적전상관협박치사(0409160400), 전시상관폭행치사(0409160500), 전시 상관협박치사(0409160600), 전시적전상관집단폭행수괴치사(0409160700), 전시적전상관집단협박수괴치사(0409160800), 전시적전상관집단폭행치사 (0409160900), 전시적전상관집단협박치사(0409161000), 전시상관집단폭 행수괴치사(0409161100), 전시상관집단협박수괴치사(0409161200), 전시 상관집단폭행치사(0409161300), 전시상관집단협박치사(0409161400), 전시적 전상관특수폭행치사(0409161500), 전시적전상관특수협박치사(0409161600), 전시상관특수폭행치사(0409161700), 전시상관특수협박치사(0409161800), 전시적전상관공동폭행치사(0409161900), 전시적전상관공동협박치사 (0409162000), 전시상관공동폭행치사(0409162100), 전시상관공동협박치 사(0409162200), 사변적전상관폭행치사(0409162300), 사변적전상관협박 치사(0409162400), 사변상관폭행치사(0409162500), 사변상관협박치사 (0409162600), 사변적전상관집단폭행수괴치사(0409162700), 사변적전상관 집단협박수괴치사(0409162800), 사변적전상관집단폭행치사(0409162900), 사변적전상관집단협박치사(0409163000), 사변상관집단폭행수괴치사 (0409163100), 사변상관집단협박수괴치사(0409163200), 사변상관집단폭 행치사(0409163300), 사변상관집단협박치사(0409163400), 사변적전상관 특수폭행치사(0409163500), 사변적전상관특수협박치사(0409163600), 사 변상관특수폭행치사(0409163700), 사변상관특수협박치사(0409163800), 사변적전상관공동폭행치사(0409163900), 사변적전상관공동협박치사 (0409164000), 사변상관공동폭행치사(0409164100), 사변상관공동협박치 사(0409164200), 계엄지역적전상관폭행치사(0409164300), 계엄지역적전</p>

3수준/소분류	죄명코드
<p>01031</p> <p>살인고의 및 중한 상해고의 이외의 고의에 의한 살인</p>	<p>상관협박치사(0409164400), 계엄지역상관폭행치사(0409164500), 계엄지역상관협박치사(0409164600), 계엄지역적전상관집단폭행수괴치사(0409164700), 계엄지역적전상관집단협박수괴치사(0409164800), 계엄지역적전상관집단폭행치사(0409164900), 계엄지역적전상관집단협박치사(0409165000), 계엄지역상관집단폭행수괴치사(0409165100), 계엄지역상관집단협박수괴치사(0409165200), 계엄지역상관집단폭행치사(0409165300), 계엄지역상관집단협박치사(0409165400), 계엄지역적전상관특수폭행치사(0409165500), 계엄지역적전상관특수협박치사(0409165600), 계엄지역상관특수폭행치사(0409165700), 계엄지역상관특수협박치사(0409165800), 계엄지역적전상관공동폭행치사(0409165900), 계엄지역적전상관공동협박치사(0409166000), 계엄지역상관공동폭행치사(0409166100), 계엄지역상관공동협박치사(0409166200), 상관공동폭행치사(0409166300), 상관공동협박치사(0409166400), 전시적전초병폭행치사(0409180100), 전시적전초병협박치사(0409180200), 전시초병폭행치사(0409180300), 전시초병협박치사(0409180400), 전시적전초병집단폭행수괴치사(0409180500), 전시적전초병집단협박수괴치사(0409180600), 전시적전초병집단폭행치사(0409180700), 전시적전초병집단협박치사(0409180800), 전시초병집단폭행수괴치사(0409180900), 전시초병집단협박수괴치사(0409181000), 전시초병집단폭행치사(0409181100), 전시초병집단협박치사(0409181200), 전시적전초병공동폭행치사(0409181300), 전시적전초병공동협박치사(0409181400), 전시초병공동폭행치사(0409181500), 전시초병공동협박치사(0409181600), 사변적전초병폭행치사(0409181700), 사변적전초병협박치사(0409181800), 사변초병폭행치사(0409181900), 사변초병협박치사(0409182000), 사변적전초병집단폭행수괴치사(0409182100), 사변적전초병집단협박수괴치사(0409182200), 사변적전초병집단폭행치사(0409182300), 사변적전초병집단협박치사(0409182400), 사변초병집단폭행수괴치사(0409182500), 사변초병집단협박수괴치사(0409182600), 사변초병집단폭행치사(0409182700), 사변초병집단협박치사(0409182800), 사변적전초병공동폭행치사(0409182900), 사변적전초병공동협박치사(0409183000), 사변초병공동폭행치사(0409183100), 사변초병공동협박치사(0409183200), 계엄지역적전초병폭행치사(0409183300), 계엄지역적전초병협박치사(0409183400), 계엄지역초병폭행치사(0409183500), 계엄지역초병협박치사(0409183600), 계엄지역적전초병집단폭행수괴치사(0409183700), 계엄지역적전초병집단협박수괴치사(0409183800), 계엄지역적전초병집단협박치사(0409183900), 계엄지역적전초병집단협박치사(0409184000), 계엄지역초병집단폭행수괴치사(0409184100), 계엄지역초병집단협박수괴치사(0409184200), 계엄지역초병집단폭행치사(0409184300), 계엄지역초병집단협박치사(0409184400), 계엄지역적전초병공동폭행치사(0409184500), 계엄지역적전초병공동협박치사(0409184600), 계엄지역초병공동폭행치사(0409184700), 계엄지역초병공동협박치사(0409184800), 군용물강도치사(0411082300), 군용물해상강도치사(0411082900), 주민재물약탈치사(0413020200), 전사자재물약탈치사(0413020400), 전상병자재물약탈치사(0413020600), 군인등강간치사(0415320100), 군인등강제추행치사(0415330100), 군인등준강간치사(0415340100), 군인등준강제추행치사(0415350100), 군인등강간미수치사(0415360100), 군인등강제추행미수치사(0415370100), 군인등준강간미수치사(0415380100), 군인등준강제추행미수치사(0415390100), 군인등유사강간치사(0415450100), 군인등준유사강간치사(0415490100)</p>

이와 같은 [소분류 01031]에는 형법전과 특별형법상 사망을 중한 결과로 하는 결과적 가중범 중에서도 고의의 기본범죄가 사망한 피해자를 객체로 하는 결과적 가중범이 포함된다. 사망을 중한 결과로 하는 결과적 가중범 중 고의의 기본범죄가 사망한 피해자를 객체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위자에게 살인 또는 중한 상해 고의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해 일반적으로 해악을 가하려는 고의도 없는 경우이므로 [소분류 01031]에 해당할 수 없고 아래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중분류 [0109]의 기타 다른 사람의 사망을 초래하거나 의도한 행위로 분류될 수 있을 뿐이다.

「형법」은 사람에 대하여 폭행죄, 동의낙태·부동의낙태죄, 유기·학대죄, 체포·감금죄, 약취·유인·인신매매·국외이송죄,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죄, 강도·해상강도죄 등을 범하여 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제262조, 제269조 제3항, 제270조 제3항, 제275조, 제281조, 제291조 제2항, 제301조의2 등)을 두고 있다.

특정범죄가중범은 제5조의10 제1항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자를, 그리고 동조 제2항에서는 그 결과 폭행 피해자인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가중처벌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특례법”으로 약칭)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약칭)은 특수강간등(제4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제5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등(제6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등(제7조)을 범하거나 그 미수범(제15조)이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제9조 제2항, 제3항)에 대해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 다. 과실에 의한 살인(01032)과의 죄명코드 연계성 분석

〈표 2-1-5〉 과실에 의한 살인(01032)과의 죄명코드 연계

3수준/소분류		4수준/세분류		죄명코드
01032	과실에 의한 살인	010321	운송수단에 의한 살인	[형법법] 과실치사(0126020000; 0126020100), 업무상과실치사(0126040000; 0126040100), 중과실치사(0126040200)
		010322	운송수단에 의하지 않은 살인	

ICCS 매뉴얼에 따르면 우리 형법전상의 과실치사죄(제267조), 업무상과실치사죄(제268조), 중과실치사죄(제268조)의 범죄유형이 [소분류 01032]의 과실에 의한 살인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소분류 01032]를 다시 [세분류 010321]의 운송수단에 의한 살인과 [세분류 010322]의 운송수단에 의하지 않은 살인으로 분류하고 있는 ICCS의 분류체계와는 달리, 우리 「형법」의 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치사죄, 그리고 중과실치사죄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의 종류<sup>13)</sup>만을 문제 삼는 것일 뿐, 그와 같은 과실이 운송수단을 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그 외의 상황에서 발생한 것인지는 문제 삼지 않는다. 물론, 운송수단 운행 중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에 대부분 문제되는 업무상과실치사죄(형법 제268조)도 - 예컨대, 의사가 치료행위 중에 과실로 환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를 포함하는 등으로 - 운송수단 운행 중 과실의 경우로만 국한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 형법전상의 과실치사죄(제267조), 업무상과실치사죄(제268조), 그리고 중과실치사죄(제268조)는 [소분류 01032]의 과실에 의한 살인으로만 분류될 수 있을 뿐이고, 보다 구체적으로 [세분류 010321]의 운송수단에 의한 살인과 [세분류 010322]의 운송수단에 의하지 않은 살인으로까지 분류되지 않는다.

#### 라. 죄명코드 분류상의 쟁점

##### 1) 죄명코드 상세화를 통해 ICCS 분류가능한 죄명코드

##### 가) 과실행위의 결과로서 사망 및 상해를 모두 포함하는 죄명코드

특정범죄가중범 위반에 해당하는 죄명코드 중 ‘위험운전치사상’(0206055400)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동차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i)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ii)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제5조의11). 이 중 두 번째 유형(ii)의 행위, 즉, 음주 운전이나

13) 단순 과실과 달리 i) 업무상 과실은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로서, 여기서의 업무는 “사람의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대법원 2009.5.28. 선고 2009도1040 판결)를 의미하고, ii) 중과실은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결과의 발생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주의를 다하지 않아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것”(대법원 1997.4.22. 선고 97도538 판결)을 의미한다.

약물의 영향 하에서의 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전형적으로 [세분류 010321]의 운송수단에 의한 살인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지만 ‘위험운전치사상’(0206055400)의 죄명코드에는 이처럼 [세분류 010321]의 운송수단에 의한 살인으로 분류될 수 있는 행위 이외에, 음주 운전 등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도 포함되므로, 이와 같은 죄명코드는 ICCS의 분류체계에 따라서는 분류될 수 없는 죄명코드에 해당하게 된다.

#### ㄴ) 특별법 전체에 부여된 죄명코드

특별형법상의 모든 위반행위에 대해 단지 하나의 죄명코드만이 부여됨으로써 ICCS의 분류체계에 따라 분류될 수 없는 죄명코드도 발견된다. 예컨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그 처벌에 관한 특례가 규정되어 있는 위반행위는 「형법」상의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 및 「도로교통법」상의 업무상과실·중과실재물손괴죄(도로교통법 제151조)이다. 이들 위반행위들 중에서 특히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이나 중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로서, 전형적으로 [세분류 010321]의 운송수단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에 관한 죄명코드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0206020400)에는 이와 같은 행위뿐 아니라, [세분류 010321]로는 분류될 수 없는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중과실재물손괴라는 범죄유형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0206020400)의 죄명코드는 ICCS의 분류체계에 따라 분류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갖는다.

#### 4. 자살 방조 또는 교사(Assisting or instigating suicide, 0104)

중분류인 자살 방조 또는 교사(0104)는 “고의에 의해 사람의 자살을 불법적으로 돕거나 조장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중분류 0104]는 다시 크게 자살 방조(01041)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자살 방조 또는 교사 행위(01042)로 분류된다.

가. 개념 및 행위

1) 자살 방조(Assisting suicide, 01041)

소분류인 자살 방조(01041)는 “자살을 원하는 타인이 스스로 사망에 이르게 하도록 직접 돕거나, 지식이나 방법, 또는 양자를 모두 제공하여 그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sup>14)</sup>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자살에 대한 의사의 방조행위이면서 안락사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 반면, 고통 없이 사망에 이르게 하려는 의도나 치료가 어려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려는 의도로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인 안락사(0105)나, 도움을 주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0109)는 [소분류 01041]의 자살 방조에서는 제외된다.

2) 기타 자살 방조 또는 교사 행위(Other acts of assisting or instigating suicide, 01042)

소분류인 기타 자살 방조 또는 교사 행위(01042)는 [소분류 01041]의 자살 방조에 해당하는 행위 이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람을 자살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설득이나 기타 방법을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 자살 교사 행위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나. 죄명코드 연계성 분석

〈표 2-1-6〉 자살 방조 또는 교사(0104)와의 죄명코드 연계

3수준/소분류		4수준/세분류		죄명코드
01041	자살 방조	-	-	[형법범] 자살방조(0124050200), 자살방조미수(0124050210)
01042	기타 자살 방조 또는 교사 행위	-	-	[형법범] 자살교사(0124050100), 자살교사미수(0124050110), 위계자살결의(0124060500), 위계자살결의미수(0124060510), 위력자살결의(0124060600), 위력자살결의미수(0124060610)

14)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Centre for Health Development. Glossary of Terms for Community Health Care and Services for Older Persons. 2004.  
Web: <[http://www.who.int/kobe\\_centre/ageing/ahp\\_vol5\\_glossary.pdf](http://www.who.int/kobe_centre/ageing/ahp_vol5_glossary.pdf)>.

3수준/소분류		4수준/세분류		죄명코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력행위처벌법위반: 단체등의위계자살결의(0206045400), 단체등의위력자살결의(0206045500)</li> </ul>

#### 1) 자살 방조(01041)에 해당하는 죄명코드

「형법」은 제252조 제2항에서 다른 사람의 자살을 방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서 자살을 방조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서, 자살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독약을 제공해 주는 것과 같은 물질적 방법 뿐 아니라, 자살하려는 자의 유서를 대필해 주는 경우와 같은 정신적 방법<sup>15)</sup>도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는 [소분류 01041]인 자살 방조로 분류될 수 있다.

#### 2) 기타 자살 방조 또는 교사 행위(01042)에 해당하는 죄명코드

「형법」은 자살을 교사하는 행위도 처벌하고 있고(제252조 제2항), 만약 자살을 결의하도록 하기 위해 행위자가 위계나 위력을 사용한 경우에는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제253조)가 성립한다고 하여 자살교사죄(제252조 제2항)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 제2항은 동법에서 규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이와 같은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사람이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형법」 제253조의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를 범한 경우를 가중처벌 하고 있다.

### 다. 죄명코드 분류상의 쟁점

#### 1) 죄명코드 상세화를 통해 ICCS 분류가능한 죄명코드

[소분류 01041]의 자살 방조뿐 아니라 [소분류 01042]의 기타 자살 방조 또는 교사 행위에도 해당될 수 있는 죄명코드가 발견된다. 즉, 「형법」 위반의 죄명코드 중 ‘자살

15) 대법원 1992.7.24. 선고 92도1148 판결.

관여'(0124050000)는, 자살관여죄가 자살방조죄와 자살교사죄를 포함한다는 점<sup>16)</sup>에  
서 [소분류 01041]과 [소분류 01042] 모두에 포함될 수 있다.

2) 예비·음모죄의 분류

[소분류 01042]인 기타 자살 방조 또는 교사 행위의 분류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형법」 및 폭력행위처벌법상의 예비·음모죄의 분류 또한 쟁점이 될 수 있다.

〈표 2-1-7〉 위계·위력자살결의예비·음모죄에 해당하는 죄명코드

죄명코드	
	[형법범] 위계자살결의예비(0124060520), 위계자살결의음모(0124060530), 위력자살결의 예비(0124060620), 위력자살결의음모(0124060630)  • 폭력행위처벌법위반: 단체등의위계자살결의예비(0206046100), 단체등의위력자살결의예비(0206046200), 단체등의위계자살결의음모(0206046800), 단체등의위력자살결의음모(0206046900)

5. 안락사(Euthanasia, 0105)

가. 개념 및 행위

ICCS 매뉴얼에 따르면, 중분류인 안락사(0105)는 “당사자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고통 없이 사망에 이르게 하려는 의도, 치료가 어려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려  
는 의도, 또는 불치병이나 회복 불가능한 혼수상태의 경우에 자연적 원인으로 인한  
사망을 방지하지 않고자 하는 의도로,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sup>17)</sup>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사망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안락사 뿐  
아니라, 피해자의 자발적 의사가 없는 경우의 안락사도 포함된다. 이에 반해 자살을  
원하는 사람이 스스로 사망에 이르도록 조력하는 행위는 [중분류 0105]의 안락사에는

16) 대표적으로 박상기, 『형법각론』, 박영사, 2011, 31쪽; 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2013, 42쪽;  
정성근/박광민, 『형법각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3, 62쪽 참조.  
17)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Centre for Health Development. Glossary of Terms for  
Community Health Care and Services for Older Persons. 2004.  
Web: <[http://www.who.int/kobe\\_centre/ageing/ahp\\_vol5\\_glossary.pdf](http://www.who.int/kobe_centre/ageing/ahp_vol5_glossary.pdf)>.

해당하지 않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분류 0104]의 자살 방조 또는 교사에 해당된다.

#### 나. 죄명코드 연계성 분석

〈표 2-1-8〉 안락사(0105)와의 죄명코드 연계

2수준/중분류		죄명코드
0105	안락사	-

우리나라의 죄명코드 중에는 [중분류 0105]의 안락사에 배타적으로 분류될 수 있는 죄명코드가 존재하지 않는다.

ICCS 매뉴얼에 따르면, 안락사(0105)는 [중분류 0101]의 고의에 의한 살인이나 [중분류 0104]의 자살 방조 또는 교사와는 별도로 [중분류 0105]로 분류된다. 하지만 우리 법제상으로는 안락사가 별도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 특별히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sup>18)</sup> - 「형법」상 보통살인죄(형법 제250조 제1항), 촉탁·승낙살인죄(제252조 제1항), 또는 자살방조죄(제252조 제2항)를 구성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죄명코드가 형법전 및 특별형법의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죄명을 기준으로 부여되다 보니, 우리의 죄명코드 중에는 [중분류 0105]의 안락사로 분류될 수 있는 죄명코드가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다.

18) 안락사는 그 유형이 i) 예컨대, 말기암 환자에게 몰핀을 주사하는 경우와 같이 환자의 극심한 고통을 완화시키려는 목적의 처치가 필연적으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부수적 효과를 야기하는 간접적 안락사인지, ii) 환자를 극심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려는 목적에서 인공호흡장치 등의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소극적 안락사인지, 아니면 iii) 의사가 환자의 고통을 제거해주려는 목적에서 적극적으로 그 환자의 생명을 단절시키는 행위를 하는 적극적 안락사인지에 따라, 그와 같은 안락사가 허용되는지 그리고 만약 허용된다면 그 근거가 되는 위법성조각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다양한 견해들이 대립하고 있다. 안락사의 유형들에 대해서는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16, 54-57쪽; 김성돈, 『형법각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4, 44-45쪽 등 참조.

## 6. 불법 낙태(Illegal feticide, 0106)

### 가. 개념 및 행위

중분류인 불법 낙태(0106)는 각국의 국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태아에 대한 불법 살해로서 “사람이 고의로 직접 또는 다른 사람에게 촉탁하여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태아에 대한 살해는 국내법상 임신 기간, 태아의 체중 등에 근거하여 금지 또는 제한될 수도 있고, 상황 여하를 불문하고 절대적으로 금지될 수도 있으며, 또는 임신 기간, 태아의 체중 이외의 사유에 근거해서 금지될 수도 있다. [중분류 0106]에는 국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낙태 범죄, 시체의 은밀한 처리에 의한 출생 사실 은닉, 고의에 의한 유산 및 사산, 불법 낙태에 대한 촉탁, 그리고 강제 낙태 등이 포함된다. 여기서 강제 낙태란 대상이 되는 여성에게 사실을 고지하고 그 여성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음이 없이 낙태 행위를 하거나, 대상이 되는 여성에게 사실을 고지하고 그 여성의 사전 동의 및 절차에 대한 이해 없이 그 여성의 자연 생식 능력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와 같은 효과를 갖는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에 반해, 합법적인 낙태는 [중분류 0106]으로부터 제외되고, 의학 기술 없는 자에 의한 낙태 시술 또한 불법 낙태(0106)가 아닌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02071)로 분류된다.

### 나. 죄명코드 연계성 분석

〈표 2-1-9〉 불법 낙태(0106)와의 죄명코드 연계

2수준/중분류		죄명코드
0106	불법 낙태	[형법법] 업무상낙태(0127050000), 업무상촉탁낙태(0127050100), 업무상승낙낙태(0127050200)

ICCS 매뉴얼에 따를 때, 낙태죄에 관한 우리 형법상의 범죄구성요건 중 「형법」 제270조 제1항의 업무상동의낙태죄는 [중분류 0106]인 불법 낙태에 해당할 수 있다. 「형법」 제270조 제1항은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임신한 부녀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고 낙태하게 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우리 「형법」은 이와

같은 업무상동의낙태죄 외에도 i) 임신한 부녀 스스로가 낙태를 하는 자기낙태죄(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에 규정된 자 이외의 자가 임신한 부녀로부터 촉탁 또는 승낙을 받고 낙태하게 하는 경우인 동의낙태죄(제269조 제2항), 그리고 제270조 제1항에 규정된 자인지를 불문하고 임신한 부녀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지 않고 낙태하게 하는 부동의낙태죄(제270조 제2항)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ICCS 매뉴얼은 [중분류 0106]인 불법 낙태에서 의학적 기술 없는 자에 의한 낙태 시술은 제외된다고 하면서, 이 경우에는 대신 [소분류 02071]의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sup>19)</sup> 따라서 우리 「형법」상 낙태의 죄에 관한 다양한 범죄구성요건들 중에서 그 행위주체에게 의학적 기술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업무상동의낙태죄(제270조 제1항)에 관한 죄명코드들은 [중분류 0106]의 불법 낙태로 분류될 수 있다.

#### 다. 죄명코드 분류상의 쟁점

##### 1) ICCS 범죄행위 분류에 부합하지 않는 낙태죄

이처럼 우리 「형법」상 낙태의 죄에 관한 다양한 범죄구성요건들 중에서 [중분류 0106]의 불법 낙태로 분류될 수 있음이 명백한 업무상동의낙태죄(제270조 제1항)에 관한 죄명코드를 제외하고 나머지 죄명코드들의 분류가 문제된다. 즉, 자기낙태죄(제269조 제1항), 동의낙태죄(제269조 제2항), 그리고 부동의낙태죄(제270조 제2항)에 관한 죄명코드들은 만약 행위주체가 의학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분류 0106]의 불법 낙태로 분류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분류 02071]의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분류될 수 있다.<sup>20)</sup>

19) 이에 대해서는 UNODC,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s, Version 1.0(2015.3), p. 35 참조.

20) 자기낙태죄(제269조 제1항)의 행위주체인 임신한 부녀 자신이 의학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간호사 등과 같이 동의낙태죄(제269조 제2항)의 행위주체도 의학적 기술을 갖는 경우를 상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 7. 무력 분쟁 관련 불법 살해(Illegal killing associated with armed conflict, 0107)

### 가. 개념 및 행위

중분류인 무력 분쟁 관련 불법 살해(0107)는 무력 분쟁 중에 사람을 불법으로 살해하는 행위로서 전쟁 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전투원에 의한 살해로서 국내법상으로 범죄로 인정되고 형사소추 되지만 전쟁 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 행위가 포함된다. 반면, 고의에 의한 살인에 해당하는 무력 분쟁 중의 살해 행위(0101)나 전쟁 범죄에 해당하는 무력 분쟁 중의 살해행위(11013)는 [중분류 0107]로부터 제외된다.

### 나. 죄명코드 연계성 분석

〈표 2-1-10〉 무력 분쟁 관련 불법 살해(0107)와의 죄명코드 연계

2수준/중분류		죄명코드
0107	무력 분쟁 관련 불법 살해	-

우리 죄명코드 중 [중분류 0107]의 무력 분쟁 관련 불법 살해에 해당하는 죄명코드는 존재하지 않는다.

### 다. 죄명코드 분류상의 쟁점

#### 1) 무력 분쟁 관련 불법 살해로 혼동될 수 있는 죄명코드 검토

[중분류 0101]의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분류된 다음과 같은 죄명코드들이 혹시 [중분류 0107]의 무력 분쟁 관련 불법 살해로 분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는 있다.

〈표 2-1-11〉 [중분류 0107]로의 분류가 문제될 여지 있는 죄명코드

죄명코드	
	<p>[특별법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균형법위반: 적전상관상해치사(0409054500), 전시상관상해치사(0409055800), 사변상관상해치사(0409055900), 적전초병상해치사(0409115300), 전시초병상해치사(0409116100), 사변초병상해치사(0409116200), 적전직무수행자상해치사(0409132900), 적전직무수행군인등상해치사(0409136000), 전시직무수행군인등상해치사(0409136100), 사변직무수행군인등상해치사(0409136200) 등</li> </ul>

이는 상관·초병·직무수행군인 등에 대한 상해치사가 발생한 상황적 맥락이 적전, 전시, 또는 사변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즉, 「균형법」 제2조에 따르면 적전이란 “적에 대하여 공격·방어의 전투행동을 개시하기 직전과 개시 후의 상태 또는 적과 직접 대치하여 적의 습격을 경계하는 상태”(제5호)를, 전시란 “상대국이나 교전단체에 대하여 선전포고나 대적(對敵)행위를 한 때부터 그 상대국이나 교전단체와 휴전협정이 성립된 때까지의 기간”(제6호)을, 그리고 사변이란 “전시에 준하는 동란(動亂)상태로서 전국 또는 지역별로 계엄이 선포된 기간”(제7호)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적전, 전시, 또는 사변은 [중분류 0107]의 무력 분쟁 관련 불법 살해에서의 “무력 분쟁”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ICCS 매뉴얼에서도 분명히 하고 있는 바와 같이, 무력 분쟁 상황에서 발생한 살해 행위라고 해서 모두 [중분류 0107]의 무력 분쟁 관련 불법 살해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sup>21)</sup> [중분류 0107]의 무력 분쟁 관련 불법 살해에 해당하려면 “집단적 폭력”(collective violence)의 무력 분쟁 상황에서 살해 행위가 이와 같은 무력 분쟁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 전투원이 무력 분쟁 상황에서 그 무력 분쟁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살해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 때문에 ICCS 매뉴얼은 [중분류 0101]의 고의에 의한 살인에 해당하는 무력 분쟁 중의 살해 행위를 [중분류 0107]로부터 제외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므로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표 2-1-11〉의 죄명코드들은 [중분류 0107]의 무력 분쟁 관련 불법 살해가 아닌 [중분류 0101]의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21) UNODC,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s, Version 1.0(2015.3), pp. 17-18 참조.

## 8. 기타 다른 사람의 사망을 초래하거나 의도한 행위(Other acts leading to death or intending to cause death, 0109)

### 가. 개념 및 행위

중분류에 해당하는 기타 다른 사람의 사망을 초래하거나 의도한 행위(0109)는 다른 사람의 사망을 초래하거나 의도한 행위로서 [중분류 0101]의 고의에 의한 살인, [중분류 0102]의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중분류 0103]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살인, [중분류 0104]의 자살 방조 또는 교사, [중분류 0105]의 안락사, [중분류 0106]의 불법낙태, [중분류 0107]의 무력분쟁 관련 불법 살해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행위를 의미한다.

### 나. 죄명코드 연계성 분석

〈표 2-1-12〉 기타 다른 사람의 사망을 초래하거나 의도한 행위(0109)와의 죄명코드 연계

2수준/중분류	죄명코드
0109 기타 다른 사람의 사망을 초래하거나 의도한 행위	[형법법] 현주건조물등방화치사(0113040000), 현주건조물방화치사(0113040100), 현주기차방화치사(0113040200), 현주전차방화치사(0113040300), 현주자동차방화치사(0113040400), 현주선박방화치사(0113040500), 현주항공기방화치사(0113040600), 현주광경방화치사(0113040700), 현존건조물등방화치사(0113060000), 현존건조물방화치사(0113060100), 현존기차방화치사(0113060200), 현존전차방화치사(0113060300), 현존자동차방화치사(0113060400), 현존선박방화치사(0113060500), 현존항공기방화치사(0113060600), 현존광경방화치사(0113060700), 폭발성물건파열치사(0113170300), 가스방출치사(0113173400), 전기방출치사(0113173500), 증기방출치사(0113173600), 방사선방출치사(0113173700), 방사성물질방출치사(0113173800), 가스유출치사(0113173900), 전기유출치사(0113174000), 증기유출치사(0113174100), 방사선유출치사(0113174200), 방사성물질유출치사(0113174300), 가스살포치사(0113174400), 전기살포치사(0113174500), 증기살포치사(0113174600), 방사선살포치사(0113174700), 방사성물질살포치사(0113174800), 가스등공급방해치사(0113250000), 가스공급방해치사(0113250100), 전기공급방해치사(0113250200), 증기공급방해치사(0113250300), 가스등사용방해치사(0113260000), 가스사용방해치사(0113260100), 전기사용방해치사(0113260200), 증기사용방해치사(0113260300), 공공용가스등공급방해치사(0113290000), 공공용가스공급방해치사(0113290100), 공공용전기공급방해치사(0113290200), 공공용증기공급방해치사(0113290300), 공공용가스등사용방해치사(0113300000), 공공용가스사용방해치사(0113300100), 공공용전기사용방해치사(0113300200), 공공용증기사용방해치사(0113300300), 현주건조물일수치사(0114011600), 현존건조물일수치사(0114011800), 현

2수준/중분류	죄명코드
0109	<p>주기차일수치사(0114012000), 현존기차일수치사(0114012200), 현주전차일수치사(0114012400), 현존전차일수치사(0114012600), 현주자동차일수치사(0114012800), 현존자동차일수치사(0114013000), 현주선박일수치사(0114013200), 현존선박일수치사(0114013400), 현주항공기일수치사(0114013600), 현존항공기일수치사(0114013800), 현주광궤일수치사(0114014000), 현존광궤일수치사(0114014200), 일반교통방해치사(0115080000; 0115080100), 기차등교통방해치사(0115100000), 기차교통방해치사(0115100100), 전차교통방해치사(0115100200), 자동차교통방해치사(0115100300), 선박교통방해치사(0115100400), 항공기교통방해치사(0115100500), 기차등전복치사(0115120000), 기차전복치사(0115120100), 전차전복치사(0115120200), 자동차전복치사(0115120300), 선박전복치사(0115120400), 항공기전복치사(0115120500), 기차등매몰치사(0115140000), 기차매몰치사(0115140100), 전차매몰치사(0115140200), 자동차매몰치사(0115140300), 선박매몰치사(0115140400), 항공기매몰치사(0115140500), 기차등추락치사(0115160000), 기차추락치사(0115160100), 전차추락치사(0115160200), 자동차추락치사(0115160300), 선박추락치사(0115160400), 항공기추락치사(0115160500), 기차등파괴치사(0115180000), 기차파괴치사(0115180100), 전차파괴치사(0115180200), 자동차파괴치사(0115180300), 선박파괴치사(0115180400), 항공기파괴치사(0115180500), 음용수혼독치사(0116060000), 음용수독물혼입치사(0116060100), 음용수유해물혼입치사(0116060200), 수도음용수독물혼입치사(0116060300), 수도음용수유해물혼입치사(0116060400), 손괴치사(0142050000), 재물손괴치사(0142050100), 재물은닉치사(0142050200), 문서손괴치사(0142050300), 문서는닉치사(0142050400), 공익건조물파괴치사(0142050500), 전자기록등손괴치사(0142050600), 전자기록등은닉치사(0142050700), 특수국회회의장모욕치사(1108200300), 특수국회회의장소동치사(1108200400), 특수공무상비밀봉함개봉치사(1108240100), 특수공무상비밀문서개봉치사(1108240200), 특수공무상비밀도화개봉치사(1108240300)</p> <p>[특별범법]  • 균형법위반:  유해음식물공급치사(0407080200), 함선복물치사(0411061700), 함선파괴치사(0411062500), 항공기추락복물치사(0411063300), 항공기추락손괴치사(0411064100),</p>

[중분류 0109]의 기타 다른 사람의 사망을 초래하거나 의도한 행위에는 우리 형법상 사망을 중한 결과로 하는 결과적 가중범 중 고의의 기본범죄가 사망한 피해자를 행위객체로 하지 않는 결과적 가중범의 범죄유형들이 포함된다.

다. 죄명코드 분류상의 쟁점

1) 광범위한 기타 분류의 문제

이처럼 사망을 중한 결과로 하는 결과적 가중범 중 고의의 기본범죄가 사망한 피해자를 행위객체로 하지 않는 결과적 가중범의 범죄유형들이 [중분류 0109]의 기타 다른 사람의 사망을 초래하거나 의도한 행위로 분류되는 것은 ICCS의 분류체계상 불가피한 결과이다. 하지만 이러한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기타 분류에 해당되는 [중분류 0109]로 분류되는 죄명코드들이 상당수라는 점은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2절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초래하거나 의도한 행위(02)

[대분류 02]는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초래하거나 의도한 행위로, 크게 폭행과 협박 (assaults and threats), 자유에 반하는 행위(acts against liberty), 노예 행위 및 착취 (slavery and exploitation), 인신매매(trafficking in persons), 강요(coercion), 과실 (negligence), 위험 행위(dangerous acts), 공포감이나 정서적 고통을 유발할 의도로 하는 행위(acts intended to induce fear or emotional distress), 명예훼손 또는 모욕(defamation or insult), 차별(discrimination), 사람에게 대한 침해 행위(acts that trespass against the person), 그리고 이상의 행위들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초래하거나 의도한 기타 행위로 구분된다.

〈표 2-2-1〉 ICCS [대분류 02]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초래하거나 의도한 행위 세부 분류

2수준/중분류		3수준/소분류		4수준/세분류	
0201	폭행과 협박 (assaults and threats)	02011	폭행 (assault)	020111	중한 폭행 (serious assault)
				020112	경한 폭행 (minor assault)
		02012	협박 (threat)	020121	중한 협박 (serious threat)
				020122	경한 협박 (minor threat)

2수준/중분류		3수준/소분류		4수준/세분류			
		02019	기타 폭행과 협박 (other assaults and threats)	-	-		
0202	자유에 반하는 행위 (acts against liberty)	02021	미성년자 약취/유인 (abduction of minor)	020211	부모에 의한 미성년자 약취/유인 (parental abduction)		
				020212	기타 친족에 의한 미성년자 약취/유인 (abduction by another family member)		
				020213	법정 후견인에 의한 미성년자 약취/유인 (abduction by a legal guardian)		
				020219	기타 미성년자 약취/유인 (other abduction of a minor)		
		02022	자유의 박탈 (deprivation of liberty)	020221	납치 (kidnapping)		
				020222	불법 구속 (illegal restraint)		
				020223	차량 등 운송수단 납치 (hijacking)		
				020229	기타 자유의 박탈 (other deprivation of liberty)		
		02029	기타 자유에 반하는 행위 (other acts against liberty)	020291	불법 입양 (illegal adoption)		
				020292	강제 혼인 (forced marriage)		
				020299	기타 자유에 반하는 행위 (other acts against liberty)		
		0203	노예 행위 및 착취 (slavery and exploitation)	02031	노예 행위 (slavery)	-	-
				02032	강제 노동 (forced labour)	020321	강제 가사 노동 (forced labour for domestic services)
020322	강제 산업 노동 (forced labour for industrial services)						
020323	강제 공무 또는 군무 (forced labour for the State or armed forces)						
020329	기타 강제 노동 (other forced labour)						
02039	기타 노예행위 및 착취 (other acts of slavery and exploitation)			-	-		

2수준/중분류		3수준/소분류		4수준/세분류	
0204	인신매매 (trafficking in persons [TIP])	02041	성적 착취 목적 인신매매 (TIP for sexual exploitation)	-	-
		02042	강제 노동 또는 용역 목적 인신매매 (TIP for forced labour or services)	-	-
		02043	장기 적출 목적 인신매매 (TIP for organ removal)	-	-
		02044	기타 목적 인신매매 (TIP for other purposes)	-	-
0205	강요 (coercion)	02051	갈취 또는 공갈 (extortion or blackmail)	-	-
		02059	기타 강요 행위 (other acts of coercion)	-	-
0206	과실 (negligence)	02061	보호를 받는 사람에 대한 과실 (negligence in situations of persons under care)	020611	보호를 받은 아동에 대한 과실 (negligence in situations of children under care)
				020612	기타 보호를 받는 사람에 대한 과실 (negligence in situations of other dependent persons under care)
				020619	보호를 받는 사람에 대한 기타 과실 (other negligence in situations of persons under care)
		02062	직무상 과실 (professional negligence)	-	-
		02063	운송수단 운전 관련 과실 (negligence related to driving a vehicle)	-	-
		02069	기타 과실 행위 (other acts of negligence)	-	-

2수준/중분류		3수준/소분류		4수준/세분류	
0207	위험 행위 (dangerous acts)	02071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acts that endanger health)		
		02072	향정신성 물질의 영향 하에서의 운송수단 운행 (operating a vehicle under the influence of psychoactive substances)	020721	알코올의 영향 하에서의 운송수단 운행 (operating a vehicle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020722	불법 약물의 영향 하에서의 운송수단 운행 (operating a vehicle under the influence of illicit drugs)
				020729	기타 향정신성 물질의 영향 하에서의 운송수단 운행 (operating a vehicle under the influence of other psychoactive substances)
02079	기타 위험행위 (other dangerous acts)	-	-		
0208	공포감 또는 정서적 고통을 유발할 의도로 하는 행위 (acts intended to induce fear or emotional distress)	02081	괴롭힘 (harassment)	020811	직장 내 괴롭힘 (harassment in the workplace)
				020819	기타 괴롭힘 (other harassment)
		02082	스토킹 (stalking)	-	-
		02083	기타 공포감 또는 정서적 고통을 유발할 의도로 하는 행위 (other acts intended to induce fear or emotional distress)	-	-
0209	명예훼손 또는 모욕 (defamation or insult)	02091	피해자의 특성 또는 생래적 속성에 기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 (defamation or insult due to the victim's characteristics or ascribed attributes)	-	-
		02092	피해자의 생래적 신념 또는 가치에 기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 (defamation or insult due to the victim's ascribed beliefs or values)	-	-

2수준/중분류		3수준/소분류		4수준/세분류	
		02099	기타 명예훼손 또는 모욕 (other defamation or insult)	-	-
0210	차별 (discrimination)	02101	개인에 대한 차별 (personal discrimination)	-	-
		02102	집단에 대한 차별 (group discrimination)	-	-
		02109	기타 차별 (other discrimination)	-	-
0211	사람에 대한 침해 행위 (acts that trespass against the person)	02111	사생활 침해 (invasion of privacy)	-	-
		02119	기타 사람에 대한 침해 (other acts that trespass against the person)	-	-
0219	기타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초래하거나 의도한 행위 (other acts causing harm or intending to cause harm to the person)	-	-	-	-

### 1. 폭행과 협박(Assaults and threats, 0201)

ICCS 매뉴얼에 따르면, 중분류인 폭행과 협박(0201)은 “상해 또는 해악을 야기하기 위한 유형력의 행사 또는 상해 또는 해악을 야기하겠다는 협박”을 의미한다. 중한 폭행(serious assault)으로 그치지 않고 그로 인해 사망까지 야기하게 된 경우는 [중분류 0101]의 고의에 의한 살인에 해당하고, 성적 성격을 갖는 모든 상해 행위(03)도 [중분류 0201]로부터 제외된다. 뿐만 아니라 유형력의 행사를 통해 재물을 강취(04)하거나 유형력 행사에 대한 협박을 통해 상대방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0205)도 [중분류 0201]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 가. 개념 및 행위

### 1) 폭행(Assault, 02011)

소분류인 폭행(02011)은 “사람의 신체에 고의적으로 또는 무모하게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여기서 ‘무모하게 행위’한다는 것은 행위의 결과를 생각하거나 결과에 대해 신경 쓰지 않고 행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폭행(assault)은 다시 다음과 같이 2개의 세분류로 분류된다.

첫 번째 세분류는 중한 폭행(serious assault, 020111)으로, 이는 사람의 신체에 고의적으로 또는 무모하게 중대한 물리적 유형력(serious physical force)을 행사하여 중대한 신체 상해(serious bodily injury)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서 “중대한 물리적 유형력”이란 총을 쏘거나, 칼로 찌르거나, 물건을 던져 맞추거나, 독약을 먹이는 경우 등과 같이 중대한 신체 상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유형력을 의미하고, “중대한 신체 상해”란 총상, 자상, 신체 절단, 골절, 치아 박탈, 의식 상실 등으로 정의된다. [세분류 020111]의 중한 폭행에는 산성 물질을 이용한 공격 행위, 여성 할례, 무기를 이용한 공격 행위, 폭력을 행사하여 사람의 혈액, 장기, 또는 조직을 취하는 행위 등이 포함되나, 단지 중대한 신체 상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에 그치는 행위(020121)나 고문 행위(11011)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두 번째 세분류는 경한 폭행(minor assault, 020112)인데, 이는 사람의 신체에 고의적으로 또는 무모하게 경미한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여 경미한 신체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또는 어떠한 신체 상해도 이르지 않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서 “경미한 물리적 유형력”은 때리거나, 치거나, 밀거나, 발을 걸거나, 넘어뜨리는 등 경미한 신체 상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유형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리고 “경미한 신체 상해”란 타박상, 베인 상처, 찰과상, 치아 파손, 부종, 눈 부위의 멍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밀기, 치기, 차기, 때리기, 찌르기 등은 [세분류 020112]의 경한 폭행에 포함되지만, 단순히 경미한 신체적 상해를 가하겠다고 협박만 하는 행위는 [세분류 020112]에 포함되지 않는다.

## 2) 협박(Threat, 02012)

ICCS 매뉴얼에 따르면, 소분류인 협박(02012)은 “그 내용이 실현될 것이라고 믿을 만한 모든 유형의 협박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서 협박 행위란 최소한, 상해나 해악에 대한 공포심을 야기하고자 의도된 행위를 일컫는다. 하지만 유형력을 행사하겠다는 협박에서 그치지 않고 이를 통해 사람에게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0205)는 [소분류 02012]의 협박으로부터 제외된다. 뿐만 아니라 증인이나 사법 공무원, 또는 법집행 공무원에 대한 협박 행위(08061), 투표에 영향을 주고자 유권자를 협박하는 행위(08071), 재물을 강취할 목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0401), 착취의 목적으로 유형력에 대한 위협을 통해 사람을 모집, 수송, 이전, 구금, 또는 수령하는 행위인 인신매매(0204)도 여기에서 제외된다.

협박(02012)은 2개의 세분류로 다시 분류된다.

첫 번째 세분류는 중한 협박(serious threat, 020121)으로 사망이나 중대한 해악을 야기할 의도로 하는 협박을 의미한다. 여기서 “중대한 해악”에는 최소한 중대한 신체 상해나 중대한 물리적 유형력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소분류 020121]의 중한 협박에는 사망이나 중대한 신체 상해에 이르게 하겠다는 협박, 가족, 친구, 또는 제3자를 사망이나 중대한 신체 상해에 이르게 하겠다는 협박이 포함된다.

두 번째 세분류는 경한 협박(minor threat, 020122)으로, 이는 경미한 해악을 야기할 의도에서 하는 협박을 의미한다. 여기서 “경미한 해악”은 최소한, 경미한 신체 상해나 경미한 물리적 유형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소분류 020122]의 경한 협박에는 경미한 신체 상해에 이르게 하겠다는 협박이나 친족이나 친구에게 경미한 신체 상해를 입히겠다는 협박이 포함된다.

## 3) 기타 폭행과 협박(Other assaults and threats, 02019)

마지막으로 소분류인 기타 폭행과 협박(02019)은 상해 또는 해악을 야기하기 위한 유형력의 행사나 상해 또는 해악을 야기하겠다는 협박 중에서 [소분류 02011]의 폭행과 [소분류 02012]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한다.

나. 죄명코드 연계성 분석

1) 폭행(02011)과의 죄명코드 연계성 분석

〈표 2-2-2〉 폭행(02011)과의 죄명코드 연계

3수준/소분류	4수준/세분류	죄명코드
02011	폭행 020111	<p>[형법법]</p> <p>상해(0125010000; 0125010100), 존속상해(0125020000; 0125020100), 중상해(0125030000; 0125030100), 중존속상해(0125040000; 0125040100), 상습상해(0125160000; 0125160100), 상습존속상해(0125170000; 0125170100), 습중상해(0125180000; 0125180100), 상습중존속상해(0125190000; 01251901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력행위처벌법위반: 상습상해(0206034200), 야간·공동상해(0206035200), 집단·흉기등상해(0206036200), 야간집단·흉기등상해(0206037200), 상습집단·흉기등상해(0206038200), 공동존속상해(0206039800), 집단·흉기등존속상해(0206040400), 상습집단·흉기등존속상해(0206040900), 상습존속상해(0206041400), 단체등의상습상해(0206053300), 단체등의공동상해(0206053400), 단체등의집단·흉기등상해(0206053500), 단체등의상습집단·흉기등상해(0206053600), 단체등의상습존속상해(0206053700), 단체등의공동존속상해(0206053800), 단체등의집단·흉기등존속상해(0206053900), 단체등의상습집단·흉기등존속상해(0206054000), 공동상해(1206035200)</li> <li>• 특정범죄가중법위반: 보복상해등(0209011000)</li> </ul> <p>[특별법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상습상해(0209910400)</li> <li>• 군형법위반: 적전근무기피목적상해(0407070100), 근무기피목적상해(0407070200), 적전상관상해(0409054100), 상관상해(0409054200), 적전상관중상해(0409054300), 상관중상해(0409054400), 적전상관집단상해수괴(0409054700), 적전상관집단상해(0409054800), 상관집단상해수괴(0409054900), 상관집단상해(0409055000), 적전상관공동상해(0409055100), 상관공동상해(0409055200), 적전상관특수상해(0409055300), 상관특수상해(0409055400), 전시상관중상해(0409055500), 사변상관중상해(0409055600), 계엄지역상관중상해(0409055700), 적전초병상해(0409114900), 초병상해(0409115000), 적전초병중상해(0409115100), 초병중상해(0409115200), 적전초병집단상해(0409115500), 초병집단상해(0409115600), 적전초병공동상해</li> </ul>

3수준/소분류	4수준/세분류	죄명코드
		(0409115700), 초병공동상해(0409115800), 적전초병특수상해(0409115900), 초병특수상해(0409116000), 적전직무수행자상해(0409132500), 직무수행자상해(0409132600), 적전직무수행자중상해(0409132700), 직무수행자중상해(0409132800), 적전직무수행군인등상해(0409135100), 직무수행군인등상해(0409135200), 적전직무수행군인등집단상해(0409135300), 적전직무수행군인등특수상해(0409135400), 직무수행군인등집단상해(0409135500), 직무수행군인등특수상해(0409135600), 직무수행군인등공동상해(0409135700), 적전직무수행군인등중상해(0409135800), 직무수행군인등중상해(0409135900)
	020112	경한 폭행 [형법법] 외국원수폭행(0104010000; 0104010100), 외국사절폭행(0104020000; 0104020100), 독직폭행(0107040100), 폭행(0125070000; 0125070100), 존속폭행(0125080000; 0125080101), 특수폭행(0125090000; 0125090100), 특수존속폭행(0125090200), 상습폭행(0125200000; 0125200100), 상습존속폭행(0125210000; 0125210100), 상습특수폭행(0125220000; 0125220100), 상습특수존속폭행(0125230100) • 특정범죄가중법위반: 독직폭행(0206025200), 운전자폭행(0206042700), 보복폭행등(0209011100) • 폭력행위처벌법위반: 상습폭행(0206034300), 야간·공동폭행(0206035300), 집단·흉기등폭행(0206036300), 야간집단·흉기등폭행(0206037300), 상습집단·흉기등폭행(0206038300), 공동존속폭행(0206039600), 집단·흉기등존속폭행(0206040200), 상습집단·흉기등존속폭행(0206040700), 상습존속폭행(0206041200), 단체등의상습폭행(0206049300), 단체등의공동폭행(0206049400), 단체등의집단·흉기등폭행(0206049500), 단체등의상습집단·흉기등폭행(0206049600), 단체등의상습존속폭행(0206051300), 단체등의공동존속폭행(0206051400), 단체등의집단·흉기등존속폭행(0206051500), 단체등의상습집단·흉기등존속폭행(0206051600), 공동폭행(1206035300) [특별법법]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상습폭행(0209910500), 상습특수폭행(0209910600) • 균형법위반: 적전상관폭행(0409010100), 상관폭행(0409010300), 적전상관집단폭행수괴(0409020100), 적전상관집단폭행(0409020300), 상관집단폭행수괴(0409020500), 상관집단폭행(0409020700), 적전상관공동폭행(0409020900), 상관공동폭행(0409021100), 적전상관특수폭행(0409030100), 상관특수폭행(0409030300), 적전상관집단특수폭행(0409040100), 상관집단특수폭행(0409040300), 적전초병폭행(0409070100), 초병폭행(0409070300), 적전초병집단폭

3수준/소분류	4수준/세분류	죄명코드
		행수괴(0409080100), 적전초병집단폭행(0409080300), 초병집단폭행수괴(0409080500), 초병집단폭행(0409080700), 적전초병공동폭행(0409080900), 초병공동폭행(0409081100), 적전초병특수폭행(0409090100), 초병특수폭행(0409090300), 적전초병집단특수폭행수괴(0409100100), 적전초병집단특수폭행(0409100300), 초병집단특수폭행수괴(0409100500), 초병집단특수폭행(0409100700), 적전직무수행자폭행(0409130100), 직무수행자폭행(0409130300), 적전직무수행자특수폭행(0409130500), 직무수행자특수폭행(0409130700), 적전직무수행자집단폭행(0409131300), 직무수행자집단폭행(0409131500), 적전직무수행자집단특수폭행(0409131700), 직무수행자집단특수폭행(0409131900), 적전직무수행군인등폭행(0409133100), 직무수행군인등폭행(0409133300), 적전직무수행군인등집단폭행(0409133500), 적전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0409133700), 직무수행군인등집단폭행(0409133900),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0409134100), 적전직무수행군인등공동폭행(0409134300), 직무수행군인등공동폭행(0409134500)

**ㄱ) 중한 폭행(020111)에 해당하는 죄명코드**

ICCS 매뉴얼에 따를 때 [세분류 020111]의 중한 폭행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유형은 우리 법제상의 상해죄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분류 020111]의 중한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고의적으로 또는 무모하게 총을 쏘거나, 칼로 찌르거나, 물건을 던져 맞추는 등 중대한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여 총상, 자상, 신체 절단, 의식 상실 등 중대한 신체 상해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행사되는 유형력의 정도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법제상의 상해죄에 해당하는 범죄유형들이 [세분류 020111]로 분류될 수 있다. 총상, 자상, 신체 절단이 우리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함은 물론이고, 우리 대법원은 아무런 외상이 없는 실신<sup>22)</sup>도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는 점에서 특히 그러하다.

그러므로 「형법」상의 상해죄(제257조 제1항), 존속상해죄(제257조 제2항), 그리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중한 결과로서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에 이르게 하거나,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중상해죄(제258조)뿐 아니라, 이와 같은 유형의 범죄들을 상습으로 범한 경우(제264조)가 [세분류 020111]에 해당할 수 있다.

22) 대법원 1996.12.10. 선고 96도2529 판결.

뿐만 아니라, 예컨대, 이와 같은 상해 또는 존속상해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하여 폭력행위처벌법에 의해 가중처벌 되는 경우(제2조 제2항) 등도 [세분류 02011]에 해당된다. 그 외에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2항에서 규정하는 i) 자기 또는 타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하거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또는 ii)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상해나 존속상해를 범한 경우, 보호자가 아동에 대해 상습적으로 상해죄 등을 범함으로써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 등도 [세분류 02011]에 해당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군형법」은 상관, 초병, 직무수행자, 직무수행군인 등에 대해 상해나 중상해를 범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들에 포섭될 수 있는 행위들도 [세분류 02011]의 중한 폭행으로 분류될 수 있다.

#### ㄴ) 경한 폭행(020112)에 해당하는 죄명코드

[세분류 02011]에 해당하는 우리 법제상의 범죄유형이 상해죄라고 한다면, [세분류 020112]의 경한 폭행에 해당되는 우리 법제상의 범죄유형은 폭행죄이다. 우리 법제상으로도 발로 차거나, 미는 행위 등은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가 된다.

따라서 「형법」상의 폭행죄(제260조 제1항), 존속폭행죄(제260조 제2항), 그리고 단채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나 존속폭행죄를 범하였을 때 성립하는 특수폭행죄(제261조)뿐 아니라, 이와 같은 유형의 범죄들을 상습으로 범한 경우(제264조)가 [세분류 020112]에 해당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형법」은 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의 원수에 대하여 폭행(제107조 제1항)하거나, 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에 대하여 폭행(제108조 제1항)한 경우를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더하여, 「특정범죄가중법」은 자기 또는 타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하거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한 보복 등을 목적으로 폭행(제5조의9 제2항)하거나,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제5조의10 제1항)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폭력행위처벌법」은 예컨대, 폭행 또는 존속폭행을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범한 경우(제2조 제2항) 등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아동학대처벌법은 보호자가 아동에 대해 상습으로 폭행죄나 특수폭행죄를 범한 경우를 가중처벌(제6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군형법」은 상해죄와 마찬가지로 상관, 초병, 직무수행자, 직무수행군인 등에 대해 폭행죄, 특수폭행죄 등을 범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들 범죄유형들 또한 [세분류 020112]의 경한 폭행으로 분류된다.

2) 협박(02012)과의 죄명코드 연계성 분석

〈표 2-2-3〉 협박(02012)과의 죄명코드 연계

3수준/소분류	4수준/세분류	죄명코드
02012	협박 020121	[형법법] 외국원수협박(0104010200), 외국사절협박(0104020200), 협박(0130010000; 0130010100), 협박미수(0130010110), 존속협박(0130020000; 0130020100), 존속협박미수(0130020110), 특수협박(0130030000; 0130030100), 특수협박미수(0130030110), 특수존속협박(0130030200), 특수존속협박미수(0130030210), 상습협박(0130040000; 0130040100), 상습협박미수(0130040110), 상습존속협박(0130050000; 0130050100), 상습존속협박미수(0130050110), 상습특수협박(0130060000; 0130060100), 상습특수협박미수(0130060110), 상습특수존속협박(0130070100), 상습특수존속협박미수(0130070110) • 폭력행위처벌법위반: 상습협박(0206034600), 상습협박미수(0206034610), 야간·공동협박(0206035510), 야간·공동협박미수(0206035610), 집단·흉기등협박(0206036600), 집단·흉기등협박미수(0206036610), 야간집단·흉기등협박(0206037600), 야간집단·흉기등협박미수(0206037610), 상습집단·흉기등협박(0206038600), 상습집단·흉기등협박미수(0206038610), 공동존속협박(0206039700), 공동존속협박미수(0206039710), 집단·흉기등존속협박(0206040300), 집단·흉기등존속협박미수(0206040310), 상습집단·흉기등존속협박(0206040800), 상습집단·흉기등존속협박미수(0206040810), 상습존속협박(0206041300), 상습존속협박미수(0206041310), 단체등의상습협박(0206049700), 단체등의공동협박(0206049800), 단체등의집단·흉기등협박(0206049900), 단체등의상습집단·흉기등협박(0206050000), 단체등의상습존속협박(0206052500), 단체등의공동존속협박(0206052600), 단체등의집단·흉기등존속협박(0206052700), 단체등의상습집단·흉기등존속협박(0206052800), 공동협박(1206035600) • 특정범죄가중법위반: 운전자협박(0206042800), 보복협박등(0209011400)

3수준/소분류	4수준/세분류	죄명코드
	020122	경한 협박 [특별법법]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상습협박(0209913400), 상습특수협박(0209913500)  • 군형법위반: 적전상관협박(0409010200), 상관협박(0409010400), 적전상관집단협박수괴(0409020200), 적전상관집단협박(0409020400), 상관집단협박수괴(0409020600), 상관집단협박(0409020800), 적전상관공동협박(0409021000), 상관공동협박(0409021200), 적전상관특수협박(0409030200), 상관특수협박(0409030400), 적전상관집단특수협박(0409040200), 상관집단특수협박(0409040400), 적전초병협박(0409070200), 초병협박(0409070400), 적전초병집단협박수괴(0409080200), 적전초병집단협박(0409080400), 초병집단협박수괴(0409080600), 초병집단협박(0409080800), 적전초병공동협박(0409081000), 초병공동협박(0409081200), 적전초병특수협박(0409090200), 초병특수협박(0409090400), 적전초병집단특수협박수괴(0409100200), 적전초병집단특수협박(0409100400), 초병집단특수협박수괴(0409100600), 초병집단특수협박(0409100800), 적전직무수행자협박(0409130200), 직무수행자협박(0409130400), 적전직무수행자특수협박(0409130600), 직무수행자특수협박(0409130800), 적전직무수행자집단협박(0409131400), 직무수행자집단협박(0409131600), 적전직무수행자집단특수협박(0409131800), 직무수행자집단특수협박(0409132000), 적전직무수행군인등협박(0409133200), 직무수행군인등협박(0409133400), 적전직무수행군인등집단협박(0409133600), 적전직무수행군인등특수협박(0409133800), 직무수행군인등집단협박(0409134000), 직무수행군인등특수협박(0409134200), 적전직무수행군인등공동협박(0409134400), 직무수행군인등공동협박(0409134600)

우리 형법상의 협박죄는 [소분류 02012]의 협박에 해당하는 범죄유형이 된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ICCS 매뉴얼은 [소분류 02012]의 협박을 다시 그 고의에 따라 사망이나 중대한 해악을 야기할 의도로 하는 협박인 중한 협박(020121)과 경미한 해악을 야기할 의도로 하는 협박인 경한 협박(020122)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 형법상의 협박죄는 이처럼 행위자가 해악을 고지할 당시에 갖는 고의의 내용에 따라 별도의 범죄구성요건을 구성하지 않는다. [소분류 02012]의 협박으로 분류될 수 있는 우리 형법상 협박죄에 관한 다양한 범죄유형들은 더 이상 [세분류 020121]의 중한 협박과 [세분류 020122]의 경한 협박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 3) 기타 폭행과 협박(02019)과의 죄명코드 연계성 분석

〈표 2-2-4〉 기타 폭행과 협박(02019)과의 죄명코드 연계

3수준/소분류	4수준/세분류			죄명코드
02019	기타 폭행과 협박	-	-	<p>[형법법]</p> <p>상해미수(0125010110), 존속상해미수(0125020110), 폭행치상(0125100000; 0125100100), 존속폭행치상(0125120000; 0125120100), 특수폭행치상(0125140000; 0125140100), 상습상해미수(0125160110), 상습존속상해미수(0125170110), 특수존속폭행치상(01252401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범죄가중법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독직폭행치상(0206028800), 운전자폭행치상(0206042900)</li> </ul> </li> <li>• 폭력행위처벌법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습상해미수(0206034210), 야간·공동상해미수(0206035210), 집단·흉기등상해미수(0206036210), 야간집단·흉기등상해미수(0206037210), 상습집단·흉기등상해미수(0206038210), 공동존속상해미수(0206039810), 집단·흉기등존속상해미수(0206040410), 상습집단·흉기등존속상해미수(0206040910), 상습존속상해미수(0206041410), 공동상해미수(1206035210)</li> </ul> </li> </ul> <p>[특별법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학대처벌법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습폭행치상(0209910700), 상습특수폭행치상(0209910800)</li> </ul> </li> <li>• 균형법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적전상관폭행치상(0409050200), 상관폭행치상(0409050600), 적전상관집단폭행수괴치상(0409051000), 적전상관집단폭행치상(0409051400), 상관집단폭행수괴치상(0409051800), 상관집단폭행치상(0409052200), 적전상관특수폭행치상(0409052600), 상관특수폭행치상(0409053000), 적전상관집단특수폭행치상(0409053400), 상관집단특수폭행치상(0409053800), 적전상관상해미수(0409054110), 상관상해미수(0409054210), 적전상관집단상해수괴미수(0409054710), 적전상관집단상해미수(0409054810), 상관집단상해수괴미수(0409055010), 상관집단상해미수(0409055010), 적전상관공동상해미수(0409055110), 상관공동상해미수(0409055210), 적전상관특수상해미수(0409055410), 상관특수상해미수(0409055510), 적전초병폭행치상(0409110200), 초병폭행치상(0409110600), 적전초병집단폭행수괴치상(0409111000), 적전초병집단폭행치상(0409111400), 초병집단폭행수괴치상(0409111800), 초병집단폭행치상(0409112200), 적전초병특수폭행치상(0409112600), 초병특수폭행치상(0409113000), 적전초병집단특수폭행치상(0409113800), 초병집단특수폭행치상(0409114600),</li> </ul> </li> </ul>

3수준/소분류		4수준/세분류		죄명코드
02019	기타 폭행과 협박	-	-	적전초병상해미수(0409114910), 초병상해미수(0409115010), 적전초병집단상해미수(0409115510), 초병집단상해미수(0409115610), 적전초병공동상해미수(0409115710), 초병공동상해미수(0409115810), 적전초병특수상해미수(0409115910), 초병특수상해미수(0409116010), 적전직무수행자폭행치상(0409131100), 직무수행자폭행치상(0409131200), 적전직무수행자집단폭행치상(0409132200), 직무수행자집단폭행치상(0409132400), 적전직무수행자상해미수(0409132510), 직무수행자상해미수(0409132610), 적전직무수행군인등상해미수(0409134910), 직무수행군인등상해미수(0409135010), 적전직무수행군인등집단상해미수(0409135110), 적전직무수행군인등특수상해미수(0409135210), 직무수행군인등집단상해미수(0409135310), 직무수행군인등특수상해미수(0409135410), 직무수행군인등공동상해미수(0409135510), 적전상관공동폭행치상(0409170100), 전시적전상관폭행치상(0409170300), 전시상관폭행치상(0409170500), 전시적전상관집단폭행수괴치상(0409170700), 전시적전상관집단폭행치상(0409170900), 전시상관집단폭행수괴치상(0409171100), 전시상관집단폭행치상(0409171300), 전시적전상관공동폭행치상(0409171500), 전시상관공동폭행치상(0409171700), 사변적전상관폭행치상(0409171900), 사변상관폭행치상(0409172100), 사변적전상관집단폭행수괴치상(0409172300), 사변적전상관집단폭행치상(0409172500), 사변상관집단폭행수괴치상(0409172700), 사변상관집단폭행치상(0409172900), 사변적전상관공동폭행치상(0409173100), 사변상관공동폭행치상(0409173300), 계엄지역적전상관폭행치상(0409173500), 계엄지역상관폭행치상(0409173700), 계엄지역적전상관집단폭행수괴치상(0409173900), 계엄지역적전상관집단폭행치상(0409174100), 계엄지역상관집단폭행수괴치상(0409174300), 계엄지역상관집단폭행치상(0409174500), 계엄지역적전상관공동폭행치상(0409174700), 계엄지역상관공동폭행치상(0409174900), 적전초병공동폭행치상(0409184900), 초병공동폭행치상(0409185100)

ICCS 매뉴얼에 따를 때 [소분류 02019]에 해당되는 우리 형법상의 범죄유형은 상해죄의 미수범 및 폭행치상죄와 관련된 범죄유형들이다. ICCS 매뉴얼에 따르면 [소분류 02011]의 폭행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행사되는 유형력과 발생하는 결과 사이에 균형성이 존재해야 한다. 즉, [소분류 02011]의 폭행 중 [세분류 020111]의 중한 폭행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중대한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여 중대한 신체 상해에 이르게 해야 하고, [세분류 020112]의 경한 폭행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경미한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여 경미한 신체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또는 어떠한 신체 상해에도 이르지 않게 해야만 한다. 따라서 행사되는 유형력과 발생하는 결과 사이에 균형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즉, 중대한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신체 상해에 이르지 않은 경우 또는 경미한 물리적 유형력만을 행사했음에도 중대한 신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소분류 02011]의 폭행으로 분류될 수 없게 된다. 중대한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했음에도 중대한 신체 상해에 이르지 않은 경우는 우리 형법상 상해미수죄에 해당하고, 경미한 물리적 유형력만을 행사했음에도 중대한 신체 상해에 이른 경우는 우리 형법상의 폭행치상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 형법상 상해미수 및 폭행치상과 관련된 범죄유형들은 [소분류 02019]의 기타 폭행과 협박으로 분류될 수 있을 뿐이다.

#### 다. 죄명코드 분류상의 쟁점

##### 1) ICCS 범죄행위 분류에 부합하지 않은 폭행 및 상해, 협박 관련 범죄

###### 가) 중한 폭행(020111)과 경한 폭행(020112)으로 분류되지 않는 죄명코드

하나의 죄명코드가 [세분류 020111]의 중한 폭행에 해당하는 범죄구성요건뿐 아니라, [세분류 020112]의 경한 폭행에 해당하는 범죄구성요건도 포함하고 있을 때에는 이와 같은 죄명코드를 [세분류 020111]로도 [세분류 020112]로도 분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예컨대, 「형법」 위반에 해당하는 죄명코드 중 ‘상해와폭행의죄’(012500000)에는 [세분류 020111]의 중한 폭행으로 분류될 수 상해죄 관련 범죄구성요건뿐 아니라, [세분류 020112]의 경한 폭행으로 분류될 수 있는 폭행죄에 관한 범죄구성요건도 포함되어 있어 그 분류가 문제된다.

###### 나) 중한 협박(020121)과 경한 협박(020122)으로 분류되지 않는 죄명코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형법상으로는 협박죄가 해악을 고지할 당시에 행위자가 갖고 있던 고의의 내용에 따라 별도의 구성요건을 이루지는 않기 때문에,<sup>23)</sup>

23) 우리 「형법」은 이와 같은 고의의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협박행위의 객체나 협박행위의 특수한

우리 「형법」, 「폭력행위처벌법」, 「특정범죄가중법」, 「아동학대처벌법」, 「군형법」상 협박행위를 처벌하는 범죄구성요건에 부여된 죄명코드들은 [세분류 020121]의 중한 협박과 [세분류 020122]의 경한 협박으로 분류할 수 없다.

## 2) 결합법의 분류

우리 「형법」, 「특정범죄가중법」, 「폭력행위처벌법」,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등에는 결합법을 이루는 범죄구성요건들 중 하나로 상해죄를 요구하는 다수의 범죄유형들이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결합법을 이루는 범죄구성요건들 중 하나가 상해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세분류 020111]의 중한 폭행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예컨대, 「형법」 제301조는 강간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강간죄의 객체인 사람을 상해한 경우를 강간상해죄로 처벌하는 규정으로, 결국 강간상해죄란 강간죄(형법 제297조)와 상해죄(제257조 제1항, 제2항)가 결합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우리 형법전상의 강간상해죄에 해당하는 죄명코드인 '강간상해'(0132040200)를 [세분류 020111]의 중한 폭행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아니면 [세분류030111]의 유형력에 의한 강간으로 분류해야 할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 3) 상해를 중한 결과로 하는 결과적 가중범의 분류

다음으로 상해를 중한 결과로 하는 결과적 가중범의 분류 문제가 발생한다. 물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중에서도 폭행치상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다양한 죄명코드들은 [소분류 02019]의 기타 폭행과 협박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므로 상해를 중한 결과로 하는 결과적 가중범 중에서도 폭행치상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죄명코드들은 제외하고,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죄명코드들의 분류가 문제될 수 있다.

---

행위 수단 또는 방법에 따라 별도의 범죄구성요건을 마련하고 있다. 예컨대, 협박행위의 객체가 행위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존속협박죄(제28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중처벌하고, 협박행위의 수단과 방법으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는 특수협박죄(제284조)가 성립한다고 보아 가중처벌하고 있다.

〈표 2-2-5〉 폭행과 협박(0201)으로의 분류여부가 쟁점이 되는 결과적 가중범의 예

	죄명코드
	[형법법] 현주건조물등방화치상(0113030000), 현존건조물등방화치상(0113050000), 가스방출치상(0113171900), 전기방출치상(0113172000), 증기방출치상(0113172100), 방사선방출치상(0113172200), 방사성물질방출치상(0113172300), 가스등공급방해치상(0113230000), 현주건조물일수치상(0114011700), 기차등교통방해치상(0115090000), 음용수혼독치상(0116050000), 유기치상(0128090000) 등 다수

## 2. 자유에 반하는 행위(Acts against liberty, 0202)

중분류인 자유에 반하는 행위(0202)는 사람의 이동이나 자유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자유”란 최소한 공적 영역에서의 자유, 구속·억압·전제적 통치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재산상 이익 등을 얻으려는 착취의 목적으로 사람을 유괴하거나 그 사람의 이동을 제한하는 노예 행위 및 착취(0203)나, 착취를 목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이전, 구금 또는 수령하는 행위 등을 포함하는 인신매매(0204)는 [중분류 0202]의 자유에 반하는 행위에서 제외된다.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또한 표현에 대한 규제에 위반한 행위(0803)와 모든 성적 성격의 행위(03) 또한 [중분류 0202]에서 제외된다.

### 가. 개념 및 행위

#### 1) 미성년자 약취/유인(Abduction of a minor, 02021)

소분류인 미성년자 약취/유인(02021)은 “미성년자를 그 법정 후견인 또는 양육권자인 부모로부터 유괴, 은닉, 또는 구금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석방을 대가로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사람을 불법적으로 구금하는 행위인 납치(020221)나 불법적인 입양(020291)은 [소분류 02021]에서 제외된다.

미성년자 약취/유인(02021)은 다시 그 행위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은 4개의 세분류로 분류된다. 첫 번째 세분류는 부모에 의한 미성년자 약취/유인(parental abduction, 020211)으로 배타적 양육권이 없는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를 약취/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배타적 양육권이 없는 부모가 미성년자를 외국으로 약취/유인하는 경우뿐 아니라, 국내에서 약취/유인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두 번째 세분류는 기타 친족에 의한 미성년자 약취/유인(abduction by another family member, 020212)으로, 부모도 아니고 배타적 양육권도 없는 기타 친족이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세 번째 세분류는 법정 후견인에 의한 미성년자 약취/유인(abduction by a legal guardian, 020213)이며, 이는 부모도 기타 친족도 아니면서 배타적 양육권도 없는 법정 후견인이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마지막 세분류는 기타 미성년자 약취/유인(other abduction of a minor, 020219)으로 [세분류 020211], [세분류 020212], 그리고 [세분류 020213]에 해당하지 않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이 이에 해당된다.

## 2) 자유의 박탈(Deprivation of liberty, 02022)

ICCS에 따르면, 소분류인 자유의 박탈(02022)은 “사람을 그 의사에 반하여 불법으로 구속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미성년자를 법정 후견인이나 양육권자인 부모로부터 구속하는 행위는 [소분류 02021]의 미성년자 약취/유인에 해당하므로 [소분류 02022]의 자유의 박탈에서는 제외된다.

자유 의 박탈(02022)은 다음과 같이 4개의 세분류로 다시 분류된다.

첫 번째 세분류는 납치(kidnapping, 020221)인데, 이는 “석방을 대가로 부당한 이득, 기타 경제적 이익, 또는 물질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목적으로 (유형력의 행사, 협박, 기망, 유혹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을 그 의사에 반해 구속하여 유괴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두 번째 세분류인 불법 구속(illegal restraint, 020222)은 “사람을 (유형력의 행사, 협박, 기망, 유혹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구속하고서는 그 사람을 다른 장소로 이송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한다. 정부 내의 각 부 또는 각 급의 공무원이나,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 동의, 또는 묵인 하에 행동하거나 정부를 대리하여 행동하는 조직 또는 개인이, 사람을 그 의사에 반하여 체포, 구속, 또는 약취한 후 해당인의 상황이나 소재를 공개하지 않거나 그 자유 박탈 사실을 부인하여 해당인을 법의 보호 범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강제 실종(forced disappearance)은 이와 같은 [세분류 020222]에

포함된다. 반면, 석방을 대가로 부당한 이득을 요구하려는 목적으로 사람을 불법적으로 구금하는 행위는 [세분류 020221]의 납치에 해당하고 [세분류 020222]의 불법 구속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세 번째 세분류인 차량 등 운송수단 납치(hijacking, 020223)는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유형력을 행사하겠다고 협박하여 운송수단 및 그 승객을 불법으로 장악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항공기, 승용차, 버스, 선박, 또는 다른 동력 운송수단에 대한 납치가 포함된다. 하지만 [세분류 020223]에는 공해상의 민간 선박이나 항공기의 승무원 또는 승객이 다른 선박, 항공기, 또는 선박이나 항공기 안의 사람이나 재물에 대해 사적인 목적에서 행하는 폭력, 구속, 강간, 약탈 행위(11012), 동력 운송수단을 절취하는 등의 절도 행위(0502)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마지막 세분류는 기타 자유의 박탈(other deprivation of liberty, 020229)로 앞의 각 세분류로 분류되지 않는 자유 박탈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 3) 기타 자유에 반하는 행위(Other acts against liberty, 02029)

ICCS 매뉴얼에 따르면, 소분류인 기타 자유에 반하는 행위(02029)는 “자유에 반하는 행위 중 [소분류 02021]과 [소분류 02022]로 분류되지 않는 행위”를 일컫는다. 기타 자유에 반하는 행위(02029)는 다시 크게 불법 입양(illegal adoption, 020291), 강제 혼인(forced marriage, 020292), 그리고 기타 자유에 반하는 행위(other acts against liberty, 020299)의 3개의 세분류로 분류된다.

[세분류 020291]의 불법 입양은 “아동을 불법적으로 입양하거나 입양을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알선하거나, 방조하거나, 또는 아동을 통제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입양 사기는 [세분류 020291]의 불법 입양에 해당된다.

[세분류 020292]의 강제 혼인이란 “유효한 동의 없이 이루어진 혼인 또는 위협, 유형력, 사기, 강요, 협박, 기망, 약물이나 알코올의 사용, 권한의 남용, 또는 취약한 지위의 이용을 통해 얻은 동의에 의한 혼인”을 일컫는다. 아동의 혼인(child marriage)은 [세분류 020292]의 강제 혼인에 포함된다. 그러나 강제 혼인을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하면 이는 [중분류 0204]의 인신매매에 해당할 뿐 [세분류 020292]의 강제 혼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세분류 020299]의 기타 자유에 반하는 행위에는 [세분류 020291]과 [세분류 020292]로는 분류되지 않는 자유에 반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나. 죄명코드 연계성 분석

1) 미성년자 약취/유인(02021)과의 죄명코드 연계성 분석

<표 2-2-6> 미성년자 약취/유인(02021)과의 죄명코드 연계

3수준/소분류		4수준/세분류		죄명코드
02021	미성년자 약취/유인	020211	부모에 의한 미성년자 약취/유인	[형법법] 미성년자약취(0131010000; 0131010100), 미성년자유인(0131010200),
		020212	기타 친족에 의한 미성년자 약취/유인	
		020213	법정 후견인에 의한 미성년자 약취/유인	[특별법법]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상습미성년자약취(0209913600), 상습미성년자유인(0209913700), 상습국외이송약취(0209915400), 상습국외이송유인(0209915500)
		020219	기타 미성년자 약취/유인	

ICCS 매뉴얼에 따르면, [소분류 02021]의 미성년자 약취/유인에는 우리 형법상 미성년자를 행위객체로 하는 약취 또는 유인 행위에 관한 범죄구성요건들이 포함될 수 있다. 「형법」은 제287조에서 미성년자를 약취하거나 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고, 여기서 미성년자는 「민법」 제4조에 따라 만 19세 미만의 자를 의미한다.<sup>24)</sup>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처벌법」도 아동에 대한 상습적인 약취 또는 유인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동법 제2조 1호에 따르면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의미하며,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만 18세 미만의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sup>25)</sup> 따라서 「아동학대처벌법」상의 아동도 민법상의 미성년자에 해당하게 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아동학대처벌법」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아동에 대한 상습적인 약취 또는 유인 행위도 [소분류 02021]의 미성년자 약취/유인으로 분류될 수 있다.

24) 이와 같은 견해로는 대표적으로 이상돈, 『형법강론』, 박영사, 2015, 831쪽.  
25) 「아동복지법」 제3조 1호는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2) 자유의 박탈(02022)과의 죄명코드 연계성 분석

〈표 2-2-7〉 자유의 박탈(02022)과의 죄명코드 연계

3수준/소분류		4수준/세분류		죄명코드
02022	자유의 박탈	020221	납치	[형법범] 인질강요(0137010300)
		020222	불법구속	[형법범] 직권남용체포(0107030000; 0107030100), 직권남용감금(0107030200), 체포와감금의죄(0129000000), 체포(0129010000; 0129010100), 감금(0129010200), 존속체포(0129020000; 0129020100), 존속감금(0129020200), 중체포(0129030000; 0129030100), 중감금(0129030200), 중존속체포(0129040000; 0129040100), 중존속감금(0129040200), 특수체포(0129050000; 0129050100), 특수감금(0129050200), 특수존속체포(0129050300), 특수존속감금(0129050400), 특수중체포(0129050500), 특수중감금(0129050600), 특수중존속체포(0129050700), 특수중존속감금(0129050800), 상습체포(0129060000; 0129060100), 상습감금(0129070000; 0129070100), 상습존속체포(0129080000; 0129080100), 상습존속감금(0129090000; 0129090100), 상습중체포(0129100000; 0129100100), 상습중감금(0129110000; 0129110100), 상습중존속체포(0129120000; 0129120100), 상습중존속감금(0129130000; 0129130100) ● 폭력행위처벌법위반: 상습체포(0206034400), 상습감금(0206034500), 야간·공동체포(0206035400), 야간·공동감금(0206035500), 집단·흥기등체포(0206036400), 집단·흥기등감금(0206036500), 야간집단·흥기등체포(0206037400), 야간집단·흥기등감금(0206037500), 상습집단·흥기등체포(0206038400), 상습집단·흥기등감금(0206038500), 공동존속체포(0206039900), 공동존속감금(0206040000), 상습집단·흥기등존속체포(0206041000), 상습집단·흥기등존속감금(0206041100), 상습존속체포(0206041500), 상습존속감금(0206041600), 단체등의상습체포(0206051700), 단체등의공동체포(0206051800), 단체등의집단·흥기등체포(0206051900), 단체등의상습집단·흥기등체포(0206052000), 단체등의상습감금(0206052100), 단체등의공동감금(0206052200), 단체등의집단·흥기등감금(0206052300), 단체등의상습집단·흥기등감금(0206052400), 단체등의상습존속체포(0206054100), 단체등의공동존속체포(0206054200), 단체등의집단·흥기등존속체포(0206054300), 단체등의상습집단·흥기등존속체포(0206054400), 단체등의상습존속감금(0206054500), 단체등의공동존속감금(0206054600), 단체등의집단·흥기등존속감금(0206054700), 단체등의상습집단·흥기등존속감금(0206054800), 공동체포(1206035400), 공동감금(1206035500)

3수준/소분류		4수준/세분류		죄명코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범죄가중법위반: 보복체포등(0209011200), 보복감금등(0209011300)</li> </ul> <p>[특별법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상습체포(0209911800), 상습감금(0209911900), 상습중체포(0209912000, 상습중감금(0209912100), 상습특수체포(0209912200), 상습특수감금(0209912300, 상습특수중체포(0209912400), 상습특수중감금(0209912500)</li> </ul>
		020223	차량 등 운송수단 납치	-
		020229	기타 자유의 박탈	-

**ㄱ) 납치(020221)에 해당하는 죄명코드**

「형법」 제324조의2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제3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하여 인질강요죄를 규정하고 있다. [세분류 020221]의 납치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i) 석방을 대가로 부당한 이득, 기타 경제적 이익, 또는 물질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ii)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목적으로 (유형력의 행사, 협박, 기망, 유혹 등을 통해) 사람을 그 의사에 반해 구속·유괴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형법」 제324조의2의 인질강요죄는 인질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제3자의 우려를 이용<sup>26)</sup>하여 그 제3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그 제3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위의 두 번째(ii) 유형의 납치에 해당하고, 따라서 [세분류 020221]로 분류된다.

**ㄴ) 불법구속(020222)에 해당하는 죄명코드**

다음으로 [세분류 020222]의 불법구속에는 우리 형법상의 체포죄 및 감금죄에 관한 범죄구성요건들이 해당될 수 있다. 우리 형법상 체포가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이고도

26) 이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16, 206-207쪽 참조.

현실적인 구속을 가하여 그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감금은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장소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sup>27)</sup> 따라서 이와 같은 우리 형법상의 체포 및 감금 행위는 ‘유형력의 행사를 통해 사람을 불법적으로 구속’한다는 [세분류 020222]의 불법구속에 포섭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체포죄 및 감금죄의 범죄구성요건들은 우리 「형법」 이외에도 「폭력행위처벌법」, 「특정범죄가중법」, 「아동학대처벌법」 등에 규정되어 있다. 특히, 「특정범죄가중법」은 자기 또는 타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하거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한 보복 등을 목적으로 체포·감금한 경우를 가중처벌하고 있고(제5조의9 제2항), 아동학대처벌법은 보호자가 아동에 대하여 상습으로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제1항,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제1항,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를 범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 3) 기타 자유에 반하는 행위(02029)와의 죄명코드 연계성 분석

〈표 2-2-8〉 기타 자유에 반하는 행위(02029)와의 죄명코드 연계

3수준/소분류		4수준/세분류		죄명코드
02029	기타 자유에 반하는 행위	020291	불법 입양	-
		020292	강제 혼인	-
		020299	기타 자유에 반하는 행위	[형법법] 국외이송약취(0131080000; 0131080100), 국외이송유인(0131080200), 피약취자등국외이송(0131090000), 피약취자국외이송(0131090100), 피유인자국외이송(0131090200), 피매매자국외이송(0131090300), 상습국외이송약취(0131100100; 0131100100), 상습국외이송유인(0131100200), 상습피약취자 국외이송(0131100400), 상습피유인자국외이송(0131100500), 상습피매매자국외이송(0131100600), 피매매자국외이송(0131101200), 피약취자등수수(0131120000), 피약취자수수(0131120100), 피 약취자은닉(0131120200), 피유인자수수(0131120300), 피유인 자은닉(0131120400), 피매매자수수(0131120500), 피매매자은 닉(0131120600), 피국외이송자수수(0131120700), 피국외이송 자은닉(0131120800), 피약취미성년자등수수(0131130000),

27) 체포와 감금의 이와 같은 개념상의 차이에 대해서는 특히,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12, 120-121쪽; 정성근/박광민, 『형법각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3, 137-138쪽 참조.

3수준/소분류	4수준/세분류	죄명코드
		피약취미성년자수수(0131130100), 피약취미성년자은닉(0131130200), 피유인미성년자수수(0131130300), 피유인미성년자은닉(0131130400), 피결혼약취자등수수(0131140000), 피결혼약취자수수(0131140100), 피결혼약취자은닉(0131140200), 피결혼유인자수수(0131140300), 피결혼유인자은닉(0131140400), 상습피약취자등수수(0131150000), 상습피약취자수수(0131150100), 상습피유인자수수(0131150200), 상습피매매자수수(0131150300), 상습피국외이송자수수(0131150400), 상습피약취미성년자수수(0131150500), 상습피유인미성년자수수(0131150600), 상습피결혼약취자수수(0131150700), 상습피결혼유인자수수(0131150800), 상습피약취자등은닉(0131160000), 상습피약취자은닉(0131160100), 상습피유인자은닉(0131160200), 상습피매매자은닉(0131160300), 상습피국외이송자은닉(0131160400), 상습피약취미성년자은닉(0131160500), 상습피유인미성년자은닉(0131160600), 상습피결혼약취자은닉(0131160700), 상습피결혼유인자은닉(0131160800), 영리등목적피약취자등수수(0131170000), 영리피약취자수수(0131170300), 영리피유인자수수(0131170600), 영리피매매자수수(0131170900), 영리피국외이송자수수(0131171200), 영리피약취미성년자수수(0131171700), 영리피유인미성년자수수(0131171800), 영리피결혼약취자수수(0131172300), 영리피결혼유인자수수(0131172400), 영리등목적피약취자등은닉(0131180000), 영리피약취자은닉(0131180300), 영리피유인자은닉(0131180600), 영리피매매자은닉(0131180900), 영리피국외이송자은닉(0131181200), 영리피약취미성년자은닉(0131181700), 영리피유인미성년자은닉(0131181800), 영리피결혼약취자은닉(0131182300), 영리피결혼유인자은닉(0131182400)  [특별법범]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상습피약취자국외이송(0209915600), 상습피유인자국외이송(0209915700), 상습피매매자국외이송(0209916800)

우리 법제상 [세분류 020291]의 불법 입양이나 [세분류 020292]의 강제 혼인만을 독자적인 범죄구성요건으로 하는 죄명코드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세분류 020299]의 기타 자유에 반하는 행위에 포함될 수 있는 죄명코드는 다수 존재한다. 이와 같은 죄명코드들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i) 미성년자 이외의 자를 행위객체로 하는 약취 또는 유인 행위 중에서도 영리 등 착취 목적이 없는 약취 또는 유인 행위, ii) 약취, 유인, 매매된 자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국외로 이송하는 행위, iii) 약취, 유인, 매매, 국외이송된 자 등을 수수 또는 은닉하는 행위를 들 수 있다.

특히, 첫 번째 유형(i)과 관련하여 영리 등 착취 목적이 없는 약취 또는 유인 행위가 미성년자를 행위객체로 하게 되면 이는 [세분류 020299]가 아니라 [소분류 02021]의 미성년자 약취/유인으로 분류되게 된다. 우리 형법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아닌 자에 대한 약취·유인죄(형법 제288조)는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특정한 목적에는 추행, 간음, 결혼, 영리, 노동력 착취, 성매매, 성적 착취, 장기적출, 그리고 국외이송의 목적이 포함된다. 하지만 미성년자 아닌 자를 행위객체로 하는 약취 또는 유인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착취의 목적에서 행해진 경우, 이는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의 이동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제한한 행위'에 해당되어 [중분류 0203]의 노예 행위 및 착취로 분류된다. 우리 「형법」 제288조에 열거된 목적들 중 결혼·영리·노동력 착취·장기 적출의 목적은 착취의 목적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같은 목적들을 갖고 약취 또는 유인 행위를 한 경우는 [중분류 0203]의 노예 행위 및 착취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미성년자 아닌 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경우에 있어서는 오로지 국외이송을 목적으로 그와 같은 약취 또는 유인 행위를 행한 경우에만 [세분류 020299]로의 분류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 다. 죄명코드 분류상의 쟁점

##### 1) 죄명코드의 상세화를 통한 ICCS 분류가능한 죄명코드

###### 가) 행위주체에 따라 분류되지 않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죄명코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분류 02021]의 미성년자 약취/유인은 그 행위주체에 따라 다시 [세분류 020211]의 부모에 의한 미성년자 약취/유인, [세분류 020212]의 기타 친족에 의한 미성년자 약취/유인, [세분류 020213]의 법정후견인에 의한 미성년자 약취/유인, 그리고 [세분류 020219]의 기타 미성년자 약취/유인으로 세분화된다. 이에 반해, 미성년자를 행위객체로 하는 약취 또는 유인 행위에 대한 우리 형법상의 미성년자 약취·유인죄(형법 제287조)나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에 대한 상습약취·유인죄(동법 제6조) 등은 행위주체별로 별도의 범죄구성요건을 구성하지 않는다. 따

라서 미성년자 약취 또는 유인 행위에 관한 우리나라의 죄명코드는 [세분류 020211], [세분류 020212], [세분류 020213], 그리고 [세분류 020219]로 분류될 수 없는 문제점이 발견된다.

#### ㄴ) 특별법 전체에 부여된 죄명코드

특별법 전체에 대해 하나의 죄명코드만이 부여됨으로써 그 죄명코드가 [중분류 0202]의 자유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범죄구성요건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분류 0202]로 배타적으로 분류될 수 없는 경우가 발견된다. 예컨대, 「입양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입양특례법위반’(0206010100; 0208010400)이라는 하나의 죄명코드만이 부여되어 있다. 하지만 「입양특례법」에 의해 형사처벌이 가해지는 행위 유형으로는 i)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입양한 경우(제44조 제1항 1호), ii)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입양알선 업무를 행한 경우(제44조 제1항 2호)뿐 아니라 iii) 정당한 사유 없이 입양 업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제44조 제1항 3호) 등을 들 수 있는데, (i)과 (ii)의 행위유형이 [세분류 020291]의 불법 입양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iii)의 행위유형은 [세분류 020291]의 불법 입양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입양특례법위반’(0206010100; 0208010400)이라는 죄명코드는 [세분류 020291]의 불법 입양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구성요건들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분류 020291]로만 배타적으로 분류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갖는다.

#### 2) 예비·음모죄의 분류

ICCS 매뉴얼에 따라 [중분류 0202]의 자유에 반하는 행위로 분류될 수 있는 우리 형법상의 미성년자 약취·유인죄(형법 제287조)와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죄 및 피약취·유인자 국외이송죄(제288조 제3항)에 대해서는 우리 형법이 예비나 음모를 처벌하는 예외적인 조항(제296조)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CCS의 분류체계에 따르면 이와 같은 예비 또는 음모 행위를 분류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 3. 노예 행위 및 착취(Slavery and exploitation, 0203)

중분류인 노예 행위 및 착취(0203)는 재산상 이익 또는 기타 이익을 얻으려는 착취의 목적으로 사람을 유괴하거나 사람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인신매매에는 이르지 않은 행위를 의미한다. 성매매 또는 성적 행위로부터 금전적·사회적·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취약한 지위를 이용하거나, 권력 또는 신뢰를 남용하거나, 또는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행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인 성적 착취(0302), 유효한 동의 없이 혼인하거나 혼인에 대한 동의가 있더라도 그와 같은 동의가 위협, 유형력, 사기, 강요, 협박, 기망, 약물이나 알코올의 사용, 권력의 남용, 또는 취약한 지위의 이용에 의해 획득된 경우인 강제 혼인(020292), 노동법에 위반하는 행위(0808) 등은 [중분류 0203]의 노예 행위 및 착취로부터 제외된다.

#### 가. 개념 및 행위

##### 1) 노예 행위(Slavery, 02031)

ICCS 매뉴얼에 따르면, 소분류인 노예행위(02031)는 “사람을, 그 사람에 대한 소유권에 부여된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가 행사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상태에 처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불법으로 포획, 획득, 또는 처분하는 행위, 사람을 판매 또는 교환하기 위한 목적의 노예 획득에 관련된 모든 행위, 판매 또는 교환을 목적으로 획득한 노예의 판매 또는 교환 등 모든 처분행위, 일체의 노예 거래 또는 운송 행위”를 의미한다. 부채에 의한 예속, 자의에 의하지 않은 예속 상태 등이 이와 같은 소분류 [02031]의 노예행위에 해당한다. 반면, 처벌의 위협 때문에 근로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일 뿐 해당인이 자의에 의하여 그와 같은 근로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경우의 강제 노동(02032)은 [소분류 02031]의 노예행위로부터는 제외된다.

##### 2) 강제 노동(Forced labour, 02032)

소분류인 강제 노동은(02032)는 “처벌의 위협을 통해 불법적으로 근로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와 같은 근로 또는 서비스의 제공이 해당인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닌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강제 노동 또는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하게 되면, 이는 [소분류 02032]의 강제 노동에 해당되지 않고 [중분류 0204]의 인신매매에 해당하게 된다.

이와 같은 강제 노동(02032)은 다시 강제 노동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은 4개의 세분류로 분류된다. 첫 번째 세분류인 강제 가사 노동(forced labour for domestic services, 020321)은 “제3자의 개인 가구를 위해 용역을 제공하는 강제 노동”으로 가사 노동의 착취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 두 번째 세분류는 강제 산업 노동(forced labour for industrial services, 020322)으로서, “산업 용역을 제공하는 강제 노동”<sup>28)</sup>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농업, 건설업, 제조업, 어업 분야에서의 강제 노동, 착취 공장이나 농장에서의 강제 노동 등이 포함된다. 세 번째 세분류는 강제 공무 또는 군무(forced labour for the State or armed forces, 020323)로 “국가 또는 군을 위해 용역을 제공하는 강제 노동”을 의미한다. 노동 수용소에서의 불법 노동은 [세분류 020323]의 강제 공무 또는 군무에 포함되지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군 징집이나 편입(110135)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마지막 세분류는 기타 강제 노동(other forced labour, 020329)으로 이상에서의 강제 노동에 해당되지 않는 강제 노동 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 강제 구걸은 [세분류 020329]의 기타 강제 노동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이다.

### 3) 기타 노예 행위 및 착취(Other acts slavery and exploitation, 02039)

마지막 소분류인 기타 노예 행위 및 착취(02039)는 [소분류 02031]의 노예 행위나 [소분류 02032]의 강제 노동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노예 행위 및 착취를 의미한다.

28)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Forced Labour Convention 1930 (No. 29) Convention concerning Forced or Compulsory Labour (Entry into force: 01 May 1932). Geneva, Switzerland. Web:<[https://www.ilo.org/dyn/normlex/en/f?p=1000:12100:0::NO::P12100\\_INSTRUMENT\\_ID:312174](https://www.ilo.org/dyn/normlex/en/f?p=1000:12100:0::NO::P12100_INSTRUMENT_ID:312174)>.

## 나. 죄명코드 연계성 분석

〈표 2-2-9〉 노예 행위 및 착취(0203)와의 죄명코드 연계

2수준/ 중분류	3수준/소분류		4수준/세분류		죄명코드
0203 노예 행위 및 착취	02031	노예 행위	-	-	-
	02032	강제 노동	020321	강제 가사 노동	-
			020322	강제 산업 노동	[특별법범] • 아동복지법위반: 곡예강요행위(0231041800), 상습곡예강요행위(0231043800)
			020323	강제 공무 또는 군무	-
			020329	기타 강제 노동	[특별법범] • 아동복지법위반: 구걸강요(0231041400), 상습구걸강요(0231043400), [형법범] 영리약취(0131020300), 영리유인(0131030300), 노동 력착취약취(0131040200), 장기적출약취(0131040500), 노동력착취유인(0131040600), 장기적출유인(0131040900), 상습영리약취(0131050300), 상습영리유인(0131060300), 결혼약취(0131110000: 0131110100), 결혼유인(0131110200)
	02039	기타 노예 행위 및 착취	-	-	[특별법범]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상습결혼약취(0209914000), 상습영리약취(0209914100), 상습결혼유인(0209914400), 상습영리유인(0209914500), 상습노동력착취약취(0209914600), 상습장기적출약 취(0209914900), 상습노동력착취유인(0209915000), 상습장기적출유인(0209915300) • 아동복지법위반: 제3자인도행위(0231041900), 상습제3자인도행위 (0231043900)

우리 죄명코드 중 [소분류 02031]의 노예행위로 분류될 수 있는 죄명코드는 존재하지 않는다. [소분류 02032]의 강제 노동에 있어서는, [세분류 020321]의 강제 가사 노동과 [세분류 020323]의 강제 공무 또는 군무에 해당하는 죄명코드는 존재하지

않지만, [세분류 020322]의 강제 산업 노동과 [세분류 020329]의 기타 강제 노동으로 분류할 수 있는 죄명코드는 존재한다. 즉, 「아동복지법」은 제17조 제9호에서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동법 제71조 제1항 제4호는 이러한 금지규정에 위반한 경우의 형사처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법 제72조에서는 상습적으로 아동에 대해 곡예를 시킨 경우를 가중처벌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처럼 아동에 대해 강제적으로 곡예를 시키는 행위는 [세분류 020322]의 강제 산업 노동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법」 제17조 제8호는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제71조 제1항 제2호에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제72조는 상습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세분류 020329]의 기타 강제 노동에 해당한다.

반면, [소분류 02039]의 기타 노예 행위 및 착취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범죄구성요건으로는 착취의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경우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형법」상 미성년자 아닌 자에 대한 약취 또는 유인 행위는 추행, 간음, 결혼, 영리, 노동력 착취, 성매매, 성적 착취, 장기적출, 그리고 국외이송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만 처벌된다(제288조). 이러한 목적들 중 추행, 간음, 결혼, 영리, 노동력 착취, 성매매, 성적 착취, 장기적출의 목적은 [중분류 0203]의 노예 행위 및 착취에서 이야기 하는 ‘착취’의 목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중에서 추행, 간음, 성매매, 성적 착취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게 되면 이는 [중분류 0302]의 성적 착취에 해당하게 되므로, [중분류 0203]의 노예 행위 및 착취, 그 중에서도 [소분류 02039]의 기타 노예 행위 및 착취에는 약취 또는 유인 행위 중에서도 결혼, 영리, 노동력 착취, 장기적출의 목적이 있는 경우만이 포함 된다고 할 것이다. 「아동학대처벌법」도 아동에 대해 상습적으로 결혼, 영리, 노동력 착취, 장기 적출을 목적으로 약취 또는 유인한 경우를 가중처벌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죄명코드가 [소분류 02039]의 기타 노예 행위 및 착취로 분류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법」 제17조 제9호에 위반하여 공중의 오락이나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기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한 경우도 [소분류 02039]의 기타 노예 행위 및 착취에 해당한다.

## 다. 죄명코드 분류상의 쟁점

### 1) 죄명코드 상세화를 통해 ICCS 분류가능한 죄명코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ICCS의 분류체계에 따르면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경우에는 그 약취·유인이 어떠한 목적으로 행해졌는지에 따라 달리 분류될 수 있었다. 즉,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경우에 그 목적이 결혼, 영리, 노동력 착취, 장기 적출에 있었던 경우에는 [소분류 02039]의 기타 노예 행위 및 착취로 분류될 수 있었던 반면, 그 목적이 추행, 간음, 성매매, 성적 착취에 있다면 [중분류 0302]의 성적 착취로 분류될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 죄명코드들 중에는 하나의 죄명코드가 [소분류 02039]의 기타 노예 행위 및 착취로 분류될 수 있는 약취 또는 유인 행위와 [중분류 0203]의 성적 착취로 분류될 수 있는 약취 또는 유인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형법」 위반에 해당하는 ‘영리등목적약취’(0131020000)와 ‘영리등목적유인’(0131030000)을 들 수 있다.

## 4. 인신매매(Trafficking in persons(TIP), 0204)

### 가. 개념 및 행위

ICCS 매뉴얼에 따를 때, 중분류인 인신매매(0204)는 “착취를 목적으로, 유형력의 행사, 유형력 행사의 위협, 기타 형태의 강요, 약취·유인, 사기, 기망, 권한의 남용, 또는 취약한 지위의 이용, 또는 해당인에 대해 통제권을 가진 사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금전 기타 이익을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해당인을 모집, 운송, 이전, 구금 또는 수령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착취란 최소한, 타인의 성매매 기타 성적 행위의 착취, 강제 노동 또는 용역, 노예 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예속 상태, 또는 장기 적출을 포함한다.<sup>29)</sup> 어른을 대상으로 하는 인신매매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인신매매가 이와 같은 [중분류 0204]의 인신매매에 해당할 수 있음은

29) United Nations.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2000. Web: <[http://www.uncjin.org/Documents/Conventions/dcatoc/final\\_documents\\_2/convention\\_traff\\_eng.pdf](http://www.uncjin.org/Documents/Conventions/dcatoc/final_documents_2/convention_traff_eng.pdf)>.

물론이다. 하지만 [중분류 0204]에서 노동법 위반 행위(0808), 성적 성격의 모든 상해 행위(03), 공공의 성적 기준에 반하는 행위(0802) 등은 제외된다.

이와 같은 [중분류 0204]의 인신매매는 다시 그 목적에 따라 성적 착취 목적 인신매매(02041), 강제 노동 또는 용역 목적 인신매매(02042), 장기 적출 목적 인신매매(02043), 그리고 그 이외의 기타 목적을 위한 인신매매(02049)로 세분화된다. [소분류 02041]의 성적 착취 목적 인신매매에는 타인의 성매매에 대한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상업적인 성적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가 포함되나, 성인에 대한 성적 착취라 하더라도 이것이 인신매매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소분류 02041]에서 제외된다. [소분류 02042]의 강제 노동 또는 용역 목적 인신매매에는 노예 행위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 가사 노동을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 등이 포함된다. 간 적출 목적의 인신매매는 [소분류 02043]의 장기 적출 목적 인신매매의 대표적인 예에 해당된다. 하지만 단지 건강상 위험을 유발하는 행위(02061)나 건강 및 안전에 반하는 행위(0902)는 [소분류 02043]에서 제외된다. 마지막으로 [소분류 02049]의 기타 목적 인신매매에는 강제 혼인 목적의 인신매매, 범죄 실행을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 등이 포함된다.

### 나. 죄명코드 연계성 분석

〈표 2-2-10〉 인신매매(0204)와의 죄명코드 연계

2수준/중분류		3수준/소분류		4수준/세분류		죄명코드
0204	인신매매	02041	성적 착취 목적 인신매매	-	-	[형법법] 추행인신매매(0131090400), 간음인신매매(0131090500), 성매매인신매매(0131100800), 성적착취인신매매(0131100900)  [특별법법]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상습추행인신매매(0209915900), 상습간음인신매매(0209916000), 상습성매매인신매매(0209916400), 상습성적착취인신매매(0209916500)
		02042	강제 노동 또는 용역 목적 인신	-	-	[형법법] 노동력착취인신매매(0131100700),

2수준/중분류	3수준/소분류	4수준/세분류	죄명코드
	매매		[특별법법]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상습노동력착취인신매매(0209916300)
	02043 장기 적출 목적 인신 매매	-	[형법법] 장기적출인신매매(0131101000),  [특별법법]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상습장기적출인신매매(0209916600)
	02044 기타 목적 인신매매	-	[형법법] 국외이송부녀매매(0131080300), 결혼인신매매(0131090600), 영리인신매매(0131090700), 국외이송인신매매 (0131101100) 상습국외이송매매(0131100300),  [특별법법]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상습결혼인신매매(0209916100), 상습영리인신매매 (0209916200), 상습국외이송인신매매(0209916700)

우리 「형법」 제289조는 인신매매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아무런 목적이 없는 인신매매를 가장 경하게 처벌하고(제1항),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 목적이 있는 경우를 이보다 중하게 처벌하며(제2항), 노동력 착취, 성매매, 성적 착취, 장기적출, 또는 국외이송을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한 경우를 가장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제3항, 제4항).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처벌법」은 상습적으로 아동에 대해 「형법」 제289조가 규정하고 있는 인신매매죄를 범한 자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6조, 제2조 제4호 마목). 따라서 이러한 우리 「형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상 인신매매에 해당하는 범죄구성요건들은 각각 그 특정한 목적에 따라서 [소분류 02041]의 성적 착취 목적 인신매매, [소분류 02042]의 강제 노동 또는 용역 목적 인신매매, [소분류 02043]의 장기 적출 목적 인신매매, 그리고 [소분류 02044]의 기타 목적 인신매매로 분류될 수 있다.

먼저 우리 「형법」상 추행, 간음, 성매매, 또는 성적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와 「아동학대처벌법」상 그 상습범은 [소분류 02041]의 성적 착취 목적 인신매매로 분류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형법」상의 노동력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와 「아동학대처벌법」

상 이에 대한 상습범은 [소분류 02042]의 강제 노동 또는 용역 목적 인신매매로, 그리고 장기적출 목적의 인신매매와 「아동학대처벌법」상의 이에 대한 상습범은 [소분류 02043]의 장기 적출 목적 인신매매로 분류될 수 있다. 그리고 이상에서의 목적 이외의 목적, 즉 결혼이나 국외이송 목적의 인신매매 및 「아동학대처벌법」상 이에 대한 상습범은 [소분류 02044]의 기타 목적 인신매매로 분류된다.

#### 다. 죄명코드 분류상의 쟁점

##### 1) ICCS 범죄행위 분류에 부합하지 않는 특정 목적 없는 인신매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법상으로는 인신매매죄에 해당하면서도 ICCS의 분류체계상 [중분류 0204]의 인신매매로 분류될 수 없는 죄명코드들이 존재한다. 이는 ICCS가 [중분류 0204]의 인신매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성매매 기타 성적 행위, 강제 노동 또는 용역, 노예 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예속 상태, 또는 장기 적출을 포함하는 '착취'의 목적이 존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기인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착취의 목적이 요구되지 않으면서도 우리 형법상으로 인신매매행위에 해당하게 되는 죄명코드들은, 착취의 목적을 요구하는 [중분류 0204]의 인신매매로 분류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 5. 강요(Coercion, 0205)

### 가. 개념 및 행위

ICCS 매뉴얼에 따르면, 중분류인 강요(0205)는 “유형력의 행사, 협박, 위협, 불리한 정보 폭로에 대한 협박, 또는 명예훼손에 대해 위협을 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강요에 의해 성적 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 및 모든 성적 성격의 상해 행위(03), 유형력의 행사, 협박, 또는 유형력 행사에 대한 위협을 통해 재물을 강취하는 행위(0401), 공포나 정서적 고통을 유발하려는 목적의 행위(0207), 선거에서 유권자에게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에

서의 행위(08071) 등은 [중분류 0205]의 강요에서 제외된다.

[중분류 0205]의 강요는 다시 크게 다음과 같은 2개의 소분류로 분류된다. 첫 번째 소분류는 갈취 또는 공갈(extortion or blackmail, 02051)로 “문자 또는 구두의 위협을 통해 특정한 행동을 요구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특정한 행동이란 최소한 재산 박탈, 금전 박탈, 용역 또는 이익의 제공을 의미하고, 문자 또는 구두의 위협이란 최소한 정보 공개에 대한 협박, 명예훼손의 협박, 유형력 사용에 대한 협박, 신체 상해의 협박, 또는 형사 기소의 협박을 의미한다. 두 번째 소분류는 기타 강요 행위(other acts of coercion, 02059)로 [소분류 02051]의 갈취 또는 공갈에 해당하지 않는 강요 행위가 이에 해당된다.

나. 죄명코드 연계성 분석

〈표 2-2-10〉 강요(0205)와의 죄명코드 연계

2수준/중분류		3수준/소분류		4수준/세분류		죄명코드
0205	강요	02051	갈취 또는 공갈	-	-	[형법범] 강요(0137010200)
		02059	기타 강요 행위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력행위처벌법위반: 상습강요(0206034900), 야간·공동강요(0206035900), 집단·흥기등강요(0206036900), 야간집단·흥기등강요(0206037900) 상습집단·흥기등강요(0206038900), 단체등의상습강요(0206052900), 단체등의공동강요(0206053000), 단체등의집단·흥기등강요(0206053100), 단체등의상습집단·흥기등강요(0206053200), 면담강요등(0209011500), 공동강요(1206035900)</li> <li>[특별법범]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상습강요(0209923900), 피해자등에대한강요 행위(0209925000)</li> </ul>

중분류 [0205]의 강요에 해당하는 우리 형법상의 범죄유형으로는 강요죄를 들 수 있다. 「형법」 제324조 제1항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강요죄가 성립된다. [중분류 0205]의 강요도 다른 사람에 대해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수단으로써, 우리 형법상의 폭행에 해당하는 유형력의 행사나 우리 형법상의 협박에 해당하는 협박, 위협, 불리한 정보의 폭로에 대한 협박, 명예훼손에 대한 위협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형법」상의 강요죄(제324조 제1항)에 더하여, 「폭력행위처벌법」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이와 같은 강요행위를 한 경우(제2조 제2항 제2호) 등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나아가, 「아동복지법」도 보호자가 아동에 대해 상습적으로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를 범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제6조, 제2조 제4호 자목)을 두고 있다.

#### 다. 죄명코드 분류상의 쟁점

##### 1) ICCS 범죄행위 분류에 부합하지 않은 강요죄

이처럼 우리 「형법」, 「폭력행위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상의 강요죄에 관한 범죄구성요건들이 [중분류 0205]의 강요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이와 같은 범죄구성요건들은 더 이상 [소분류 02051]의 갈취 또는 공갈과 [소분류 02059]의 기타 강요 행위로 분류될 수 없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분류 02051]의 갈취 또는 공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기 위해 문자나 구두에 의한 위협만을 행위수단으로 하여야 한다. 즉, 언어에 의한 협박만이 행위수단이 되는 셈이다. 그렇지 않고 다른 행위수단을 사용하게 되면 [소분류 02059]의 기타 강요 행위로 분류될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우리 형법상으로는 강요행위의 수단이 폭행인지 아니면 협박인지에 따라 별도의 범죄구성요건을 구성하지 않을뿐더러, 특히 협박은 글이나 말과 같은 언어에 의해서도 가능하지만 거동<sup>30)</sup>에 의해서도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 결과 ICCS의 분류체계와 달리, 강요죄에 관한 우리의 죄명코드는 [소분류 02051]의 갈취 또는 공갈과 [소분류 02059]의 기타 강요 행위로는 더 이상 분류될 수 없게 된다.

30)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16, 194쪽; 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2013, 141쪽 등 참조.

## 6. 과실(Negligence, 0206)

ICCS 매뉴얼에 따르면 중분류 과실(0206)은 “사람의 과실행위, 무모한 행위, 또는 부주의한 행위에 의한 신체적 해악 또는 신체적 해악 가능성”을 의미한다.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그 대상으로 하지 않은 과실행위 또는 비자의적 행위로 고의 없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인 과실에 의한 살인(01032) 및 “해악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행한 위험한 행위로서 사람에게 신체적 해악을 가하거나 그 가능성을 유발하는 행위”는 위험행위(0207)는 본 중분류에서 제외된다.

본 중분류의 표제는 “과실(Negligence)”이라고 되어 있으나, 그 내용에는 과실뿐만 아니라 무모함(recklessness), 부주의(carelessness)도 포함되어 있다. ICCS의 설명에 따르면 과실은 동일한 상황에서 합리적이거나 신중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에 대하여 하였을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합리적이거나 신중한 사람이라면 하지 않았을 행동을 취함을 의미한다.<sup>31)</sup> 그리고 무모한 행위는 최소한 그 결과에 대해 생각 없이 또는 신경 쓰지 않고 행위하는 것을 의미한다.<sup>32)</sup> 일반적 번역이나 강학상 negligence는 통상 “과실”로 해석하고 있다. 그런데 중분류 “과실(Negligence)”가 과실행위(negligent behaviour)뿐만 아니라 무모한 행위(reckless behaviour)와 부주의한 행위(careless behaviour)까지 광범위하게 포섭하는 넓은 개념으로 설명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주의의무위반을 넘어서 사실상 고의까지도 포섭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앞에서 ICCS가 설명한 바와 같이 무모한 행위는 사실상 미필적 고의와 매우 흡사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신체적 해악(bodily harm)”은 신체의 상해(bodily injury)뿐만 아니라 물리적 유형력(physical force) 행사까지도 포함한다. 따라서 과실에 의한 신체적 해악의 발생을 곧바로 “치상”의 결과와 같다고 간주할 수는 없다. 굳이 구분해 보자면 각 행위의 강도는 “신체적 해악 가능성 < 상해의 구체적 위험 ≤ 신체적 해악 < 상해의 결과”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다. 다만 아래 쟁점에서 다루고 있는 바와 같이 본 분류는 신체

31) UNODC,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s, Ver. 1.0, March 2015, p. 34 fn. 48.

32) UNODC,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s, Ver. 1.0, March 2015, p. 37 fn. 54.

해악의 가능성까지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해악과 상해의 결과 사이의 엄격한 구분은 사실상 형해화된다고 볼 수 있다.

### 가. 개념 및 행위

#### 1) 보호받는 사람에 대한 과실(Negligence in situations of persons under care, 02061)

소분류인 보호받는 사람에 대한 과실(02061)은 사람을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거나 책임이 있는 자가 과실로 그 사람에게 신체적 해악을 가하거나 그 가능성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서 보호의무(Duty to care)는 최소한 동일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취하였을 수준의 주의와 관심, 신중함으로 다른 사람 및 공중 일반에 대하여 행동할 의무를 말한다.<sup>33)</sup> 이는 다시 세 개의 세분류로 분류된다.

첫 번째는 보호받는 아동에 대한 과실(negligence in situations of children under care, 020611)로 아동을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거나 책임이 있는 자가 과실로 그 아동에게 신체적 해악을 가하거나 그 가능성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세 개의 세분류 가운데 오로지 아동에만 한정되어 있는 범주이다.

두 번째는 기타 보호받는 사람에 대한 과실(negligence in situations of other dependent persons under care, 020612)로 요부조자를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거나 책임이 있는 자가 과실로 그 요부조자에게 신체적 해악을 가하거나 그 가능성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위 소분류 가운데 오로지 요부조자에만 한정되어 있는 범주이다. 여기에서 “요부조자(dependent person)”란 최소한 한 명 이상의 다른 사람이 제공하는 돌봄이나 부조에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그 돌봄이나 부조가 없으면 위험에 처하게 되는 사람을 의미한다.<sup>34)</sup> 예컨대 거동이 불편한 노인 또는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성인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끝으로 세 번째 세분류는 보호받는 사람에 대한 기타 과실(other negligence in situations of persons under care, 020619)로 사람을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거나

33) UNODC,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s, Ver. 1.0, March 2015, p. 44 fn. 70.

34) UNODC,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s, Ver. 1.0, March 2015, p. 45 fn. 71.

책임이 있는 자가 과실로 그 사람에게 신체적 해악을 가하거나 그 가능성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위의 020611과 020612에 대한 보충적 분류범주로서, 아동이나 요부 조자가 아닌 사람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ICCS는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가족과 관련한 과실과 가족에 대한 의무위반, 하인/도제의 생활유지의무 불이행 등을 예시하고 있다. 한편 반려동물 보호의무(10091)는 본 분류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본 분류에서 말하는 보호의무 또는 보호책임의 대상은 오로지 사람으로 제한된다.

## 2) 직무상 과실(Professional negligence, 02062)

소분류인 직무상 과실(02062)은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준수하였을 직무상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신체적 해악을 가하거나 그 가능성을 유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예컨대 처방에서 발생한 의료과실이나 의료행위를 하는 중에 발생한 중과실, 전문가 과실, 직무수행 중 발생한 중과실, 조종사나 선장, 기타 직무상 운송수단 운전자의 형사상 과실이 여기에 포함된다. 다만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010322)는 제외된다.

통상적으로 “professional negligence”는 업무상 과실로 번역하고 있다.<sup>35)</sup> 그런데 우리 형법학에서 말하는 업무상 과실의 개념과 본 소분류의 포섭관계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ICCS와 관련해서는 이를 업무상 과실보다는 다소 좁은 개념으로 이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업무상 과실은 업무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는 것으로, 관습·조리상 요구되는 모든 경우에 미치는 것으로 본다.<sup>36)</sup> 특히 도로교통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자동차 운행을 직업적으로 하는지 여부 보다는 운행 전 정비, 교통규칙 준수, 안전거리 확보, 보행자 유의 등 운행 전과 후, 그리고 운행 중 각종 주의의무를 충분히 다 했는지만을 판단하고 있다.<sup>37)</sup> 따라서 버스나 택시 등을 직업적으로 운행하지는 않는 사람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35) 네이버 영어사전, <http://endic.naver.com/enkrIdiom.nhn?sLn=kr&idiomId=9ce81b54dd38408bb1b3f6d3ba89447b>, 2016.11.8. 최종검색; 최석윤, “의사의 과실에 의한 태아의 사망과 임부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한양법학* 제30집, 2010, 223쪽.

36) 김성돈, *형법각론* 제4판, 2016, 96쪽; 김성천·김형준, *형법총론* 제6판, 2014, 124쪽; 신동운, *형법총론* 제8판, 2014, 232쪽; 오영근, *형법총론* 제3판, 2014, 박영사, 123쪽; 이재상, *형법총론* 제7판, 2011, 14/4; 임웅, *형법총론* 제6정판, 2014, 523쪽.

37) 대법원 1975.9.23. 선고 74도231 판결; 1998.4.28. 선고 98다5135 판결; 1999.1.15. 선고 98도2605 판결 등.

사람을 치어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업무상 과실개념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상이 성립하나 위의 직무상 과실개념에 따르면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특히 본 세분류가 의료과실 등의 전문가 과실과 같은 수준의 것으로 직무상 운송수단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판단하고 있다는 점과 아래의 소분류 “운송수단 운전 관련 과실(02063)”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과실보다는 직무상 과실로 보다 좁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 3) 운송수단 운전관련 과실(Negligence related to driving a vehicle, 02063)

소분류인 운송수단 운전관련 과실(02063)은 “운송수단 운전 중 과실이나 무모함, 부주의로 사람에게 신체적 해악을 가하거나 그 가능성을 유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운송수단이란 최소한 사람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장치나 구조물로서, 승용차, 오토바이, 트럭, 버스, 기차, 선박, 항공기, 자전거, 말, 트랙터 등을 포함한다.<sup>38)</sup> 앞의 직무상 과실 가운데 직무상 운송수단을 운전하는 경우 외에 통상적으로 운송수단을 운전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운행 중 문자메시지를 작성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며, ICCS의 예시에 따르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는 뺑소니(hit and run causing bodily injury)도 포함된다.

### 4) 기타 과실행위(Other acts of negligence, 02069)

이는 과실(0206)의 마지막 소분류이자, 다른 소분류에 대한 보충적 범주이다. 보충적 범주이므로 당연히 위에서 언급한 각 소분류 및 세분류의 범주는 제외된다. 따라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위 소분류와 세분류에 포섭되지 않는 대부분의 과실범이 여기에 포함된다. ICCS의 예시에 따르면 본 소분류에 포함되는 범죄유형으로 상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부조 미이행과 보행자 과실범죄 등이 있다.

## 나. 죄명코드 연계성 분석

이상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죄명코드들을 ICCS의 기준에

38) UNODC,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s, Ver. 1.0, March 2015, p. 34 fn. 49.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2-2-11〉 과실행위(0206)의 죄명코드 분류

3수준/소분류	4수준/세분류	죄명코드	
02061	보호받는 아동에 대 한 과실	[형법범] 영아유기(0128050000, 0128050100), 아동혹사(0128080000, 0128080100), 영아유기치상(0128170100) <교사, 방조 포함> [특별법범]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유기(0209910900), 상습영아유기(0209911100), 상 습학대(0209911200), 상습아동혹사(0209911300), 상습 유기치상(0209911400), 상습영아유기치상(0209911600), 상습학대치상(0209911700) <교사, 방조 포함> • 아동복지법위반 : 아동학대(0231041000), 아동유기(0231041100), 아동방 임(0231041200), 상습아동학대(0231043000), 상습아동 유기(0231043100), 상습아동방임(0231043200), 아동유 기·방임(0231044000) <교사, 방조 포함>	
		020612	[형법범] 기타 보호 받는 사람 에 대한 과 실 [형법범] 존속유기(0128020000, 0128020100), 존속학대(0128070000, 0128070100), 존속유기치상(0128110000, 0128110100), 존속학대치상 (0128210100) <교사, 방조 포함>
		020619	[형법범] 보호 받는 사람에 대 한 기타 과 실 [형법범] 유기의죄(0128000000), 유기(0128010000, 0128010100), 존속유기(0128020000, 0128020100), 학대(0128060000, 0128060100), 존속학대(0128070000, 0128070100), 유기치상(0128090000, 0128090100), 존속유기치상 (0128110000, 0128110100), 학대치상(0128190100), 존속학대치상(0128210100) <교사, 방조 포함>
02062	직무상 과실	-	[형법범]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0113320100), 업무상과실가스 방출(0113320200), 업무상과실전기방출(0113320300), 업무상과실증기방출(0113320400), 업무상과실방사선방출 (0113320500), 업무상과실방사성물질방출(0113320600), 업무상과실가스유출(0113320700), 업무상과실전기유출 (0113320800), 업무상과실증기유출(0113320900), 업무 상과실방사선유출(0113321000), 업무상과실방사성물질유 출(0113321100), 업무상과실가스살포(0113321200), 업 무상과실전기살포(0113321300), 업무상과실증기살포 (0113321400), 업무상과실방사선살포(0113321500),

3수준/소분류		4수준/세분류		죄명코드
				업무상과실방사성물질살포(0113321600), 업무상과실기차등전복(0115270000), 업무상과실기차전복(0115270100), 업무상과실전차전복(0115270200), 업무상과실선박전복(0115270400), 업무상과실항공기전복(0115270500), 업무상과실기차등매몰(0115280000), 업무상과실기차매몰(115280100), 업무상과실전차매몰(0115280200), 업무상과실선박매몰(0115280400), 업무상과실항공기매몰(0115280500), 업무상과실기차등추락(0115290000), 업무상과실기차추락(0115290100), 업무상과실전차추락(0115290200), 업무상과실선박추락(0115290400), 업무상과실항공기추락(0115290500), 업무상과실기차등파괴(0115300000), 업무상과실기차파괴(0115300100), 업무상과실전차파괴(0115300200), 업무상과실선박파괴(0115300400), 업무상과실항공기파괴(0115300500), 업무상과실함선복물(0411060300), 업무상과실함선파괴(0411060700), 업무상과실항공기추락복물(0411061100), 업무상과실항공기추락손괴(0411061500), 업무상과실함선복물치상(0411062300), 업무상과실함선파괴치상(0411063100), 업무상과실항공기추락복물치상(0411063900), 업무상과실항공기추락손괴치상(0411064700) <교사, 방조 포함>
02063	운송수단 운전 관련 과실	-	-	[형법범]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0115270300), 업무상과실자동차매몰(0115280300),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0115290300), 업무상과실자동차파괴(0115300300) <예비, 음모, 미수 포함>
02069	기타 과실 행위	-	-	[형법범] 과실치상(0126010000, 0126010100), 업무상과실치상(0126030000, 0126030100), 중과실치상(0126030200), 과실폭발성물건파열(0113310100), 과실가스방출(0113310200), 과실전기방출(0113310300), 과실증기방출(0113310400), 과실방사선방출(0113310500), 과실방사성물질방출(0113310600), 과실가스유출(0113310700), 과실전기유출(0113310800), 과실증기유출(0113310900), 과실방사선유출(0113311000), 과실방사성물질유출(0113311100), 과실가스살포(0113311200), 과실전기살포(0113311300), 과실증기살포(0113311400), 과실방사선살포(0113311500), 과실방사성물질살포(0113311600), 중과실폭발성물건파열(0113330100), 중과실가스방출(0113330200), 중과실전기방출(0113330300), 중과실증기방출(0113330400), 중과실가스유출(0113330500), 중과실전기유출(0113330600), 중과실증기유출(0113330700), 중과실방사선방출(0113330800), 중과실방사성물질방출(0113330900), 중과실가스살포(0113331000), 중과실전기살포(0113331100), 중과실증기살포(0113331200), 중과실방사선유출(0113331300), 중과실방사성물질유출(0113331400), 중과실방사선살포(0113331800), 중과실

3수준/소분류		4수준/세분류		죄명코드
				방사성물질살포(0113331900), 과실함선복물(0411060200), 중과실함선복물(0411060400), 과실함선파괴(0411060600), 중과실함선파괴(0411060800), 과실항공기추락복물(0411061000), 중과실항공기추락복물(0411061200), 과실항공기추락손괴(0411061400), 중과실항공기추락손괴(0411061600), 과실함선복물치상(0411062200), 중과실함선복물치상(0411062400), 과실함선파괴치상(0411063000), 중과실함선파괴치상(0411063200), 과실항공기추락복물치상(0411063800), 중과실항공기추락복물치상(0411064000), 과실항공기추락손괴치상(0411064600), 중과실항공기추락손괴치상(0411064800) <예비, 음모, 미수 포함>

\* [소분류 02061]에 대한 죄명코드 연계부분은 과실(negligence)의 포섭범위에 대한 해석에 따라 각 죄명코드의 매칭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음영처리해 두었다. [세분류 020612]에 대한 죄명코드 연계부분은 여기에 더해 보호책임의 발생근거 및 존속의 요부조 여부에 따라 포섭관계가 달라지게 되므로 보다 진하게 음영처리하였다. [소분류 02063]에 대한 죄명코드 연계는 직무성과 업무성의 포함관계에 따라 모두 직무상 과실로도 포섭될 여지가 있는 죄명코드이기 때문에 음영처리하였다.

## 1) 보호받는 사람에 대한 과실(02061)과의 죄명코드 연계성

### ㄱ) 연계성 분석의 전제

ICCS는 보호의무 또는 보호책임을 지는 사람과 관련해 a legally obligated or responsible person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legally는 오로지 obligated만을 수식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legally가 responsible까지 함께 수식한다고 본다면 “법적 의무”나 “법적 책임”은 동일한 의미를 갖게 되므로, 여기에서 책임은 법률에 의하지 않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본 소분류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오로지 과실로 피보호자에게 신체적 해악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가능성을 야기해야 한다. 즉 과실을 형식적으로 우리 법해석상의 과실로 이해할 경우 오로지 과실에 의한 유기죄(존속유기, 영아유기도 포함)만 포섭될 뿐이다. 그러나 우리 형법은 유기죄의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으므로, 본 소분류에 포섭될 수 있는 범죄유형이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항목의 “과실”에 미필적 고의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유기와 학대의 죄(형법 제28장)에 위치한 모든 규정이 본 소분류에 포섭될 여지도 있다.<sup>39)</sup>

39) 과실의 해석범위에 따라 포섭관계가 달라질 부분은 위 표에서 음영처리를 해 두었다.

본 소분류는 또한 오로지 신체적 해악의 발생이나 발생 가능성만을 전제하고 있다. 생명에 대한 침해 또는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는 본 분류에서 제외된다.

한편 ICCS의 분류는 유기행위와 학사 및 학대행위를 엄격히 구분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오로지 보호 의무에 반해 피보호자에게 신체적 해악을 가하거나 그 가능성을 유발하는 것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 내용에 대한 해석에 따라 포섭관계가 달라질 여지는 있으나, 우리 법제상 각 구성요건을 고려한다면 유기행위는 소극적 가해행위, 학사 및 학대행위는 적극적 가해행위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해석을 전제로 세분류에 대한 죄명코드 연계성을 분석해 보면 아래와 같다.

#### ㄴ) 보호받는 아동에 대한 과실(020611)에 해당하는 죄명코드

위 중분류를 오로지 우리 법제상의 과실범만을 포섭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우리 현행법상 본 세분류에 포섭될 범죄유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과실유기죄는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며, 이는 유기 대상이 아동이든 성인이든 가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중분류에서 과실의 범위를 사실상 고의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한다면, 본 세분류는 「형법」상 아동학사를 비롯해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죄,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유기와 아동학대 등의 범죄까지 포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CCS가 본 분류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예시를 든 것이 아동방치(child neglect), 아동유기(child abandonment) 등이다.

ICCS는 아동(Child)의 개념과 범위를 각 국가의 국내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우리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에 따르면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또한 동법에서도 아동유기죄를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다. 동법 제17조 제6호 및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 분류의 아동을 우리 「아동복지법」상의 아동 개념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지, 또는 「형법」 제9조의 형사미성년자(14세 미만)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지, 또는 「소년법」 제2조의 소년(19세 미만)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지는 보다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인다. 편의상 child를 아동으로 번역하고는 있으나, 영어권 용어의 개념범주와 우리의 영아, 유아,

아동, 소년, 청소년 등의 범주를 문화적·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평면적으로 매칭할 수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본 분류 및 — 아동복지법의 아동개념을 따른다고 할 때, 동법상 아동의 개념에서도 — 아동의 연령하한에는 별다른 규정이 없다. 즉 태어난 직후, 법률상 “사람”으로 인정된 순간부터 아동의 범주에 포섭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해에 따르면 「형법」과 「아동학대처벌법」, 「아동복지법」상 영아에 대한 유기 및 학대의 죄도 본 세분류에 포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분류는 결과적 측면에서 신체에 대한 해악발생 및 그 가능성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치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당연히 여기에 포함되겠지만,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유기 및 단순학대, 단순혹사도 신체에 대한 해악발생 가능성을 근거로 본 분류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와 달리 생명에 대한 위험을 요건으로 하는 중유기와 관련한 범죄유형은 모두 배제된다. 아동혹사의 경우에도 신체에 위협한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는 해당되나, 생명에 위협한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는 배제된다. 한편 아동복지법상 아동관람이나 구결강요, 이용행위 등은 신체적 해악을 야기하거나 그러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마찬가지로 본 분류에서 배제된다.

#### ㄷ) 기타 보호받는 사람에 대한 과실(020612)에 해당하는 죄명코드

여기에서도 위와 마찬가지로 중분류를 오로지 과실범만을 포섭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아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 현행법상 본 세분류에 포섭될 범죄유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과실의 범위를 미필적 고의의 범위까지 넓게 해석한다면 예컨대 요양병원의 간호사가 피요양인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경우, 또는 그로 인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것이나, 현재 범죄분류코드상으로는 그러한 범죄분류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행위들은 아래 보호받는 사람에 대한 기타 과실에 포함된다. 다만 보호책임이 관습이나 조리에 의해서도 발생한다고 보는 경우에는 존속유기나 존속학대 및 치상의 범죄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해당 존속이 자녀의 보호가 없으면 위험에 노출될 정도로 의존적인 경우에 한정된다.

#### ㄹ) 보호받는 사람에 대한 기타 과실(020619)에 해당하는 죄명코드

본 분류의 표제는 기타 과실(Other negligence)라고 하여, 앞의 두 세분류와는

달리 과실의 유형에 따라 달리 분류된 범주로 이해될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세분류의 설명에 따르면 오로지 아동이나 요부조자를 제외한 보충적 범주로 이해해야 한다. 즉 보호받는 아동과 요부조자를 제외한 모든 성인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국내 범죄분류코드상으로는 일반 유기죄와 학대죄, 존속 유기·학대의 죄 및 그로 인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 2) 직무상 과실(02062)과의 죄명코드 연계성

직무상 과실을 업무상 과실보다 좁게 해석하는 위와 같은 기준에 따르면 우리 현행 법상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모든 의료과실행위와 업무상 과실치상 가운데 전문적 직무를 수행하다가 결과 내지 위험이 발생한 모든 경우를 포섭한다. 「형법」상 업무상 과실폭발성물건파열을 비롯해, 업무상과실로 가스나 전기, 증기, 방사선을 방출, 유출, 또는 살포한 행위, 업무상과실로 기차나 선박, 항공기를 전복, 매몰, 추락 파괴, 손괴한 행위 및 그로 인한 치상의 결과발생이 여기에 해당한다. 업무로 폭발성물건이나 가스, 전기, 증기, 방사선을 취급한다는 것은 이를 직업으로 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이들 범죄에서 “업무상”은 곧바로 ICCS 분류체계상 “직무상”으로 봐도 무방하다. 또한 기차나 선박, 항공기는 오로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법률 등에 의해 승인된 사람만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업무도 직무와 동의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해 자동차는 면허증 외에 특별한 자격요건이나 승인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의 매몰, 추락, 파괴, 손괴 등의 행위에는 다시 직무관련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본 소분류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sup>40)</sup>

폭발성물건파열과 가스, 전기, 증기, 방사선 방출 내지 살포, 유출 등의 행위는 이미 구성요건 자체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형법 제172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업무상 과실에 의한 폭발성물건 파열 등으로 사람의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본 분류에 포함될 수 있다. 본 항목으로 분류된 구성요건들은 직무상/업무상 폭발성물건 등을 취급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았거나 등록되지 않은 폭발성물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중분류 0901]과는 중첩이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단순한 교통방해는 사람의 신체에 해악을 가하거나 그러한

40) 직무관련성 여하에 따라 직무상 과실(02062)에 포함될지 단순한 운송수단 운전 과실(02063)에 포함될지 판단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위 표에서 음영처리하였다.

가능성을 요하지 않는 것과 달리,<sup>41)</sup> 기차나 선박, 항공기의 전복, 매몰, 추락, 파괴는 반드시 사람이 현존하는 기차나 선박, 항공기일 것을 요한다(형법 제187조). 따라서 치상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구성요건실현 자체로 이미 - 적어도 - 사람의 신체에 해악이 발생할 가능성을 야기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들은 본 분류기준에 포함될 수 있다.

### 3) 운송수단 운전관련 과실(02063)과의 죄명코드 연계성

본 소분류는 앞의 직무상 과실의 보충적 요소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법제상 업무상 과실치상 가운데에서도 기차나 선박, 항공기 운행의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으로 인해 오로지 직무상 과실에만 포섭될 수 있으며, 오로지 직무수행의 본질과는 무관하게 상해의 결과나 위험이 발생한 경우만 본 소분류에 포섭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과 업무상과실자동차매몰,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 업무상과실자동차파괴가 본 소분류에 포함될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동차의 경우에도 그 전복이나 매몰, 추락, 파괴는 반드시 사람이 현존하여야 하며, 따라서 그 행위 자체로 사람의 신체에 해악을 야기할 가능성을 창출했기 때문이다.

### 4) 기타 과실행위(02069)와의 죄명코드 연계성

본 소분류는 중분류 과실(0206)의 보충적 분류항목이다. 즉 앞의 소분류와 세분류에 포섭되지 않는 모든 과실범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형법」상 과실치상과 업무상과실치상, 중과실치상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 밖에 과실이나 중과실로 폭발성물건을 파열, 가스, 전기, 증기, 방사선 방출 내지 살포한 행위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구성요건 자체가 이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위험을 야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직무상 과실행위에서의와는 달리 여기에서는 직무관련성 또는 업무관련성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폭발성물건 등에 대한 취급허가 등을 따로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허가 없이 그러한 물건을 취급하거나 등록되지 않은 물건을 취급한 경우에는 본 소분류가 아니라 무기 또는 폭발물 소지 또는 사용(09011)에 포섭될 수도 있다.

41) 이는 단지 상해를 수반하지 않는 교통위반(0907)에 해당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ICCS에서 본 소분류에 포함된다고 예시를 든 것 가운데 상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부조 미이행은 구조불이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몇몇 국가에서는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에 대한 구성요건이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이른바 사마리안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있을 뿐이다.

#### 다. 죄명코드 분류상의 쟁점

과실의 유기, 운송수단 운전관련 과실에서 분류기준의 상이함 등의 각칙상 쟁점 외에 중분류 과실(0206)에서 찾아볼 수 있는 쟁점은 총론적 쟁점과 각론적 쟁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총론적 쟁점은 ① 고의범과 과실범의 구분, ② 침해범과 구체적 위험범 또는 기수와 미수의 구분, ③ 비정범적 요소 간과라는 문제를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특히 ②와 ③은 ICCS의 분류체계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각론적 쟁점은 ㉠ 유기죄의 보호할 책임 해석과 ㉡ 직무상 과실과 업무상 과실의 경계구분 문제가 있다.

위의 결론부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겠지만, 우선 과실(0206)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쟁점을 먼저 간략히 살펴보면 과실(negligence)의 한 행위유형으로 언급되고 있는 무모함(recklessness)은 “결과를 신경쓰지 않는 행위”로서 사실상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결과적 요건으로서 신체적 해악의 발생뿐만 아니라 발생 가능성까지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기수뿐만 아니라 미수와 예비, 음모까지도 모두 아우르는 지나치게 넓은 범주를 포섭하는 분류코드가 될 여지도 있다.

한편 [소분류 02061]의 “사람을 보호할 법적 의무 또는 책임”은 우리 「형법」상 유기죄의 보호의무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소분류상 보호의무 및 보호책임에 대한 앞에서의 설명과 해석에 따르면 “사람을 보호할 책임”은 법률이 아닌 관습이나 조리에 의한 경우도 포함하게 되어 본 소분류의 행위주체는 「형법」상 유기죄의 행위주체보다는 넓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소분류 02062]의 직무상 과실과 업무상 과실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다소 다른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실제 사례에서 그 구분의 경계를 명확히 규명할 수 있을 것인지 의심스럽다.

## 7. 위험행위(Dangerous acts, 0207)

ICCS 매뉴얼에 따르면 중분류 위험행위(0207)는 “해악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행한 위험한 행위로서 사람에게 신체적 해악을 가하거나 그 가능성을 유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위험행위 또는 행동”인 대분류 [01]에 해당하는 범죄유형은 모두 제외되며, 앞의 과실행위에 의한 신체적 해악인 중분류 과실(0206)도 여기에서 제외된다.

위험행위는 최소한 상해(injury)나 해악(harm)을 가할 수 있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행위 또는 행동을 말한다.<sup>42)</sup> 과실(0206)이 과실로 상해나 신체적 해악을 야기할 범죄라면, 위험행위(0207)은 고의로 상해나 신체적 해악을 야기한 범죄라고 구분할 수 있다. 신체의 상해와 신체적 해악에 관한 내용은 앞의 과실(0206)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 가. 개념 및 행위

#### 1)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Act that endanger health, 02071)

소분류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02071)는 건강을 위태롭게 하거나 그와 같은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건강이란 최소한 질병이나 상해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예컨대 불량식품이나 의약품 제조하는 행위나 유해식품이나 음료를 판매하는 행위, 접착제나 용매 기타 중독으로 남용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조달·판매·유통행위, HIV/AIDS 전파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전문가의 의무위반으로 인한 건강침해행위는 직무상 과실행위(02062)로 분류되며, 의약품 및 처방물품 위조는 위조제품범죄(07022)에 해당하여, 본 소분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 2) 향정신성 물질의 영향 하에서 행하는 운송수단 운행(Operating a vehicle under the influence of psychoactive substance, 02072)

42) UNODC,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s, Ver. 1.0, March 2015, p. 45 fn. 72.

소분류 향정신성 물질의 영향 하에서 행하는 운송수단 운행(02072)은 향정신성 물질 또는 기타 규제약물의 영향 하에서 운송수단을 운행함으로써 사람을 신체적 해악에 이르게 하거나 신체적 해악 가능성을 유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향정신성 물질의 영향 하에서 운송수단 운행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010321), 상해에 이르지 않은 교통법규 위반(0907),<sup>43)</sup> 규제약물 또는 전구체(precursor)<sup>44)</sup>를 수반한 불법행위(0601), 조이라이딩(joyriding)이나 기타 동력 운송수단 불법사용(050212), 그리고 운송수단 운행관련 과실행위(02063)는 여기에서 제외된다. 오로지 알코올이나 약물의 영향 하에서 운송수단을 운전하거나 운행하는 중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행위 또는 상해의 가능성을 야기하는 행위만이 본 소분류에 포함된다. 이는 다시 세 개의 세분류로 분류된다.

첫 번째는 알코올의 영향 하에서 하는 운송수단 운행(operating a vehicle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020721)으로 알코올의 영향 하에서 운송수단을 운행함으로써 사람을 신체적 해악에 이르게 하거나 신체적 해악 가능성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세 개의 세분류 가운데 오로지 알코올의 영향과 운송수단 운행이라는 교집합에만 한정되어 있는 범주이다. 따라서 알코올의 영향 하에서 운전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사고를 유발하는 행위도 포함되지만, 알코올을 수반한 운송수단 운행 이외의 불법행위(0602)는 모두 제외된다.

두 번째는 불법약물의 영향 하에서 하는 운송수단 운행(operating a vehicle under the influence of illicit drugs, 020722)으로 불법약물의 영향 하에서 운송수단을 운행함으로써 사람을 신체적 해악에 이르게 하거나 신체적 해악 가능성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위와 마찬가지로 불법약물의 영향 하에서 운전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사고를 유발하는 행위도 포함되지만, 운송수단 운행이 아닌 다른 불법행위(0601)는 모두 제외된다.

43) [중분류 0907]의 포섭관계 예시를 고려하면, 교통법규 위반으로 상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소분류 02079]에 포섭된다.

44) 일련의 생화학 반응  $\cdots A \rightarrow B \rightarrow C \rightarrow D \rightarrow E \cdots$ 에 있어서, 그 중 어떤 물질 E에 착안할 때 그것보다 앞단계에 있고, E에 앞서 생기고, 그 전부 또는 일부가 E의 재료로 되는 물질 A, B, C, D 등을 E의 전구 물질이라 하고, E를 이것에 대해서 생성물(product)이라 한다(네이버 화학대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307885&cid=42419&categoryId=42419>, 2016.11.23. 최종검색).

끝으로 세 번째 세분류는 기타 향정신성 물질의 영향 하에서 하는 운송수단 운행(operating a vehicle under the influence of other psychoactive substances, 020729)으로 기타 향정신성 물질의 영향 하에서 운송수단을 운행함으로써 사람을 신체적 해악에 이르게 하거나 신체적 해악 가능성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위의 020721과 020722에 대한 보충적 분류범주로서, 알코올이나 불법약물을 제외한 다른 향정신성 물질의 영향 하에서 하는 운송수단 운행행위만을 포섭한다. 위와 마찬가지로 다른 향정신성 물질의 영향 하에서 행하는 운송수단 운행 이외의 불법행위(06)는 모두 제외된다.

### 3) 기타 위험행위(Other dangerous acts, 02079)

이는 위험행위(0207)의 마지막 소분류이자, 다른 소분류에 대한 보충적 범주이다. 보충적 범주이므로 당연히 위에서 언급한 각 소분류 및 세분류의 범주는 제외된다. 따라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위 소분류와 세분류에 포섭되지 않는 대부분의 위험행위가 여기에 포함된다. ICCS의 예시에 따르면 본 소분류에 포함되는 범죄유형으로 대인용 함정설치가 있다.

## 나. 죄명코드 연계성 분석

이상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죄명코드들을 ICCS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2-2-12〉 위험행위(0207)의 죄명코드 분류

3수준/소분류		4수준/세분류		죄명코드
02071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	-	[형법범] 음용수예관한죄(011600000), 음용수유해물혼입(011602000, 011602020) 음용수독물혼입(0116020100), 수도음용수유해물혼입(0116040000), 수도음용수독물혼입(0116040100, 0116040200), 음용수혼독치상(0116050000), 음용수독물혼입치상(0116050100) 음용수유해물혼입치상(0116050200), 수도음용수독물혼입치상(0116050300), 수도음용수유해물혼입치상(0116050400) <교사, 방조 포함>

3수준/소분류		4수준/세분류		죄명코드	
				[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균형법위반 : 유해음식물공급치상(8107080200), 유해음식물공급과 실치상(8107080400)</li> <li>• 식품위생법위반(0229020100)</li> <li>•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0229021800) &lt;교사, 방조 포함&gt;</li> </ul>	
02072	향정신성 물질의 영 향 하에서 행하는 운 송수단 운 행	020721	알코올의 영향 하에서 행하는 운송수단 운행	[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0208052400) &lt;교사, 방조 포함&gt;</li> </ul>	[형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범죄가중법 : 위험운전치사상 (0206055400) &lt;교사, 방조 포함&gt;</li> </ul>
		020722	불법약물의 영 향 하에서 행 하는 운송수단 운행		[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교통법 : 도로교통법위반 (0208051600)</li> <li>• 철도안전법위반 (0233030300)</li> <li>• 항공안전법 :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위반(0233070500) &lt;교사, 방조 포함&gt;</li> </ul>
		020729	기타 향정신성 물질의 영향 하에서 행하는 운송수단 운행		
02079	기타 위험 행위	-	-	[형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합선복물치상(0411062100), 합선파괴치상(0411062900), 항공기추락복물치상(0411063700), 항공기추락손괴치 상(0411064500) &lt;교사, 방조 포함&gt;</li> </ul>	

1)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02071)와의 죄명코드 연계성

「형법」상 건강유해행위는 오로지 음용수와 관련된 죄만을 본 분류에 포섭할 수 있다. 즉 음용수에 유해물이나 독물을 혼입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행위로써 상해의 결과를 야기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 한편 「형법」은 일반 음용수에 유해물이나 독물을 혼입하는 행위와 수도에 의하여 공중음용수에 유해물이나 독물을 혼입하는 행위를 구분하여 후자를 다소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 즉 전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후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192조 제2항, 제193조 제2항 참조).

「형법」 외에 「균형법」상 유해음식물공급치상과 유해음식물공급과실치상도 본 소분

류에 포함된다. 「균형법」 제42조는 독성이 있는 식품을 군에 공급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를 야기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하다. 과실로 독성이 있는 식품을 군에 공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적을 이롭게 하려는 목적이 개입된 경우에는 단순 유해음식물공급의 경우에도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식품위생법」은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 총 여섯 개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며, 금지행위와 제재유형에서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제93조는 소해면상뇌증, 탄저병, 가금 인플루엔자에 걸린 동물을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수입 또는 조리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제1항). 또한 마황(麻黃), 부자(附子), 천오(川烏), 초오(草烏), 백부자(白附子), 섬수(蟾수), 백선피(白鮮皮), 사리풀을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수입 또는 조리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2항). 제94조는 썩은 식품,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된 식품, 수입이 금지되거나 수입신고를 거치지 아니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의 채취, 제조, 수입, 가공 등의 행위에서부터 유독기구 등의 판매, 허가를 받지 않은 영업행위 등을 처벌하고 있으며, 제95조는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이나 식품첨가물 판매, 제조, 수입, 가공 등의 행위에서부터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행한 영업행위 등을 처벌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스펙트럼의 행위들이 식품위생법위반(0229020100)이라는 단 하나의 코드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행위유형에 따라 본 소분류에 포함될 수 있는 것도 있고, 단순한 행정조치 위반행위로서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것도 있다. ICCS를 도입할 경우 보다 상세한 분류가 필요한 부분이다.

개념상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규제약물의 생산, 거래, 유통, 소지, 사용, 또는 알코올이나 담배 관련제품의 불법생산, 생산, 거래, 유통, 소지, 사용 등의 행위는 [대분류 06] 규제약물 또는 기타 향정신성 물질 수반행위에 해당하므로, 본 분류에서는 제외된다. 즉 범죄분류코드상 아편이나 몰핀과 관련한 범죄는 [대분류 06]에 포섭된다. 요컨대 규제약물 이외의 불량식품이나 의약품, 유해식품,

중독성 물질을 통해 건강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을 야기한 행위만이 본 소분류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ICCS에서 본 소분류에 포함되는 것으로 예시를 든 HIV/AIDS 전파행위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에 해당한다. 본 법률에 따르면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난 혈액·수입 혈액제제·장기·조직·정액·매개체는 이를 유통·판매하거나 사용한 행위 또는 감염인으로서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HIV/AIDS를 전파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25조). 다만 범죄분류코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0229021800)은 그러한 행위 외에도 비밀누설이나 검사불응을 비롯해 감염인을 업소에 종사하게 하는 행위, 신고불응, 허위신고 등의 행위도 포함하고 있어,<sup>45)</sup> ICCS를 도입할 경우 보다 상세한 분류가 필요하다.

## 2) 향정신성 물질의 영향 하에서 행하는 운송수단 운행(02072)과의 죄명코드 연계성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자동차 등이란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를 말하며,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제2조 제18호 내지 제20호). 다만 범죄분류코드상으로는 음주운전(0208052400)만 명확히 구분할 수 있으며, 기타 음주에 의한 사고유발 및 약물사용에 의한 운전 내지 사고유발은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

「항공안전법」은 주류 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 업무에 종사한 항공종사자를 처벌하고 있다(제146조 제1호). 이는 분류코드상

45) 제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
  2.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감염인을 해당 업소에 종사하도록 한 자
-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2. 제8조에 따른 검진 또는 제10조에 따른 역학조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3.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검진 결과를 통보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검진결과서 제출을 요구한 자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치료 및 보호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5.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이 제한되는 업소에 종사한 사람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검진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당 업소에 종사하도록 한 자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위반(0233070500)에 해당하나, 본 코드에는 조종사뿐만 아니라 객실승무원도 포함되어 있으며, 그 밖에 「항공안전법」과 「항공보안법」이 규정하고 있는 모든 범죄를 포섭하고 있다. 「철도안전법」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제78조 제3항 제14호). 다만 「항공안전법」과 마찬가지로 기차를 운행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철도관련업무 종사자 모두를 포괄하고 있다. ICCS를 도입할 경우 상세한 분류작업이 필요한 부분이다. 한편 범죄분류코드에는 선박안전법위반(0234030200)이 존재하나, 「선박안전법」에는 음주나 약물복용에 의한 운항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본 소분류와는 무관한 코드이다.

한편 「특정범죄가중법」은 위험운전치사상죄(제5조의11)를 두고 있는데, 범죄분류 코드도 음주나 약물, 치사와 치상을 구분하지 않고 단 하나의 코드(0206055400)로 분류하고 있다.

### 3) 기타 위험행위(02079)와의 죄명코드 연계성

본 소분류는 중분류 위험행위(0207)의 보충적 분류항목이다. 즉 앞의 소분류와 세분류에 포섭되지 않는 모든 위험행위가 여기에 포함된다. 위험행위(0207)는 과실(0206)과 대비되는 분류항목으로 가장 핵심적인 구분기준은 “과실”과 “고의”라고 할 수 있다. 즉 전자는 과실행위에 기인한 상해의 결과발생 또는 상해의 위험발생이나, 본 분류에 속하게 되는 것은 고의에 의한 상해의 결과발생 또는 상해의 위험발생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단순상해나 폭행치상과 같은 항목은 이미 다른 대분류에 포섭되기 때문에 본 분류에서는 제외되며, 오로지 본질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해악을 가할 수 있는 성질이 있는 행위를 전제로 한다.

우선 고의로 기차나 선박, 항공기를 전복, 매몰, 추락, 파괴가 여기에 해당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들 구성요건은 반드시 사람이 현존하는 기차나 선박, 항공기일 것을 요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현존한다는 것은 그러한 행위로서 얼마든지 해악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치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신체에 해악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치상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기본구성요건을 실현한 것 자체로 이미 - 적어도 - 사람의 신체에 해악이 발생할 가능성을 야기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들은 본 분류기준에 포함될 수 있다.

### 다. 죄명코드 분류상의 쟁점

위험행위(0207)과 관련해서는 크게 결과적 가중범 분류문제와 ICCS 범죄행위 분류와 우리나라 죄명코드의 이질성 문제가 발생한다.

우선 우리 범죄분류체계에서 고의에 의한 모든 위험행위로 인해 신체해악을 발생시킨 경우를 모두 포섭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예컨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0108170000)과 같은 경우는 원론적으로 [대분류 08]인 국가공공질서, 당국 및 규제 위반행위에 포섭될 수 있는 행위군에 속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위험행위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그 밖에 현존건조물등방화(0113020000)나 폭발물파열(0113170000)의 경우에는 어떠한 물건의 파괴나 손괴, 또는 위험한 물질을 다루는 행위 자체가 잠재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해악을 야기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각각 재물손괴(0504)와 [대분류 09]에 속할 성질이면서 동시에 위험행위적 성격도 함께 갖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결론부에서 다루기로 한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 「항공안전법」을 비롯해 「특정범죄가중법」은 법규정상 주취상태에서 운전한 행위와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를 구분하고 있으나, 범죄분류코드상으로는 그러한 구분이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불법약물과 기타 향정신성 물질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지 않다. 즉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알코올의 영향 하에서나 불법약물의 영향 하에서, 또는 기타 향정신성 물질의 영향 하에서 운송수단을 운행하는 행위는 모두 동일한 코드를 부여받게 된다. 음주운전과 기타 약물사용운전 등 ICCS를 도입할 경우 상세한 분류작업이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 8. 공포감 또는 정서적 고통을 유발할 의도로 하는 행위(Acts intended to induce fear or emotional distress, 0208)

ICCS 매뉴얼에 따르면, [중분류0208]인 공포감 또는 정서적 고통을 유발할 의도로 하는 행위의 개념은 공포 또는 정서적 고통을 야기하는 행위 또는 행동이다. 이 때 정서적 고통은, 최소한, 정신적이거나 심리적인 고통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성적 성격이 아닌 괴롭힘, 지속적인 통화 시도 등의 행위가 모두 포함

된다. 그러나 규제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 신념 및 규범과 관련된 행위(08032)나 고의적 발언, 행동, 또는 교신에 의하여 타인의 평판, 명망, 또는 기밀을 해하거나, 타인에 대해 적대적이거나 부정적인 견해 또는 감정을 유발하는 행위(0209)와는 차이가 있다.

## 가. 개념 및 행위

### 1) 괴롭힘(Harassment, 02081)

[소분류02081]인 괴롭힘은 사람을 괴롭히는 행위 또는 괴롭힐 의도로 행하는 행위로, 최소한, 그와 같은 행위가 타인에게 불쾌할 것이라는 점을 합리적으로 인식하고도 타인에 대하여 불쾌한(offensive)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타인에게 직접적이고 불쾌하게 하는 부적절한 모든 행위가 괴롭힘에 포함되는데, 여기에는 사람을 비하 또는 무시하거나, 사람에게 수치심이나 창피함을 유발하는, 무례하거나 또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가 포함된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을 ICCS 매뉴얼에서 제시하고 있는 UN의 보고서에 기초하여 검토하여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가볍게 불쾌한 언행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것 역시 그것이 반복된다면 괴롭힘으로 볼 수 있고, 하나의 사건이라도 그것이 지속적인 부정적 효과를 준다면 괴롭힘이 될 수 있다. 괴롭힘은 상사와 부하직원 등과 같이 권위에 차이가 있는 사람들 간에 보다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으나 동료 간에도 발생할 수 있으며, 경력이나 고용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 의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에는 권위의 남용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괴롭힘의 형태는 매우 다양한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감독자나 동료가 비하적인 비난을 하는 행위, 타인의 직업적 숙련도에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부당하거나 불필요한 지적을 하거나 의도적인 모욕을 주는 행위, 구두 내지 지면으로 위협적이거나 학대적이거나 모욕적인 지적을 하는 행위, 고용인에 대해 악의적이고 근거없는 고발을 하는 행위, 흥내내거나 놀리거나 폄하하는 언행, 타인의 업무 공간, 업무 자료 내지 시설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지원이나 훈련을 위한 휴가 요청에 대해 지속적으로 근거없이 거부하는 행위, 불쾌하거나 음란하거나 무례한 내용의 포스터, 그림, 이미지 또는 문서를 전시하는 행위, 일상적인 의사소통,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사회적 활동으로부터 개인이나 집단을 지속적으로 배제하는 행위, 타인의 사

생활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침해하는 행위로, 업무 외 시간에 불필요하게 연락을 하거나 개인사에 관한 부적절한 질문을 반복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sup>46)</sup> [소분류02081]에는 성적 괴롭힘(030122), 유형력의 사용, 협박, 위협, 불리한 정보의 폭로, 또는 명예 훼손의 위협을 통하여 특정한 행동을 요구하는 행위(0205), 폭행 및 협박(0201), 사람의 평판을 해하려는 목적의 교신(0209) 등은 제외된다.

[소분류02081]인 괴롭힘은 2개의 세분류로 분류된다. 첫째는 직장내 괴롭힘(020811)으로, 괴롭힘이 고용과 관련된 사람에 의해서 내지 근무 환경에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동료, 상사, 또는 기타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에 의한 근무 환경에서의 또는 고용과 관련된 괴롭힘으로, 구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다중에 의한 위력 행사, 직장 내 따돌림이 여기에 해당된다. 둘째는 기타 괴롭힘(020819)으로 근무환경 외에서 고용과 무관한 괴롭힘으로, 구체적으로 직장 외에서의 군중에 의한 위력 행사 또는 따돌림,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 악의적인 전화 연락, 사적 생활방해, 놀라게 하거나 감정적 고통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 2) 스토킹(Stalking, 02082)

[소분류02082]인 스토킹은 원치 않는 연락, 따라다님 또는 지켜봄을 의미한다.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행위에 대한 법률을 두고 있는 국가들의 법적 정의에는 차이가 있으나 몇 가지 공통적인 요소가 있는데, 첫째, 일회적인 행위가 아닌 연속적이거나 반복적인 행위이며 둘째, 스토킹 관련 행위로 인해 공포감 또는 정서적인 고통이 유발되었다는 피해결과 내지 ‘따라다님’, ‘지켜봄’ 등 개방적인 행위개념을 사용하여 사안의 포섭적용이 반드시 법원의 판단을 요한다는 점이다.<sup>47)</sup>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면, 스토킹(02082)은 원치 않는 연락이나 따라다님, 지켜봄이 공포감 또는 정서적인 고통을 유발하거나 그러할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연속성 내지 반복성의 속성을 지니는 일련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소분류02082]에는 일회적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불법적이고 부당 침해(0211) 등이 제외된다. 또한 성적

46) United Nations. Policy on Prevention of Harassment. Web: [http://www.un.org/womenwatch/osagi/UN\\_system\\_policies/\(FAO\)Policy\\_on\\_the\\_prevention\\_of\\_harassment.pdf](http://www.un.org/womenwatch/osagi/UN_system_policies/(FAO)Policy_on_the_prevention_of_harassment.pdf) 참조.

47) 박선영, 송효진, 구미영, 김정혜, 유혜경, 출생등록의무자 및 스토킹 규제 관련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4, 83쪽.

성격의 스토킹(030122)은 성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두어 여기의 분류에서는 제외된다.

3) 기타 공포감 또는 정서적 고통을 유발할 의도로 하는 행위(Other acts intended to induce fear or emotional distress, 02089)

[소분류02089]는 기타 규정으로 앞선 소분류인 괴롭힘(02081)이나 스토킹(02082)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람의 행동 또는 행위에 의하여 공포 또는 정서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범죄행위로 규정된 심리적 폭력이나 직장 외부에서의 따돌림 등 놀람이나 정서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가 해당된다.

#### 나. 죄명코드 연계성 분석

〈표 2-2-13〉 공포감 또는 정서적 고통을 유발할 의도로 하는 행위(0208)과의 죄명코드 연계성

2수준/중분류		3수준/소분류		4수준/세분류		죄명코드
0208	공포감 또는 정서적 고통을 유발할 의도로 하는 행위 (Acts intended to induce fear or emotional distress)	02081	괴롭힘(Harassment)	020811	직장 내 괴롭힘 (Harassment in the workplace)	-
				020819	기타 괴롭힘 (Other harassment)	-
		02082	스토킹(Stalking)	-	-	-
		02089	기타 공포감 또는 정서적 고통을 유발할 의도로 하는 행위 (Other acts intended to induce fear or emotional distress)	-	-	-

##### 1) 괴롭힘(02081)과의 죄명코드 연계성 분석

[소분류02081]인 괴롭힘은 고용과 관련된 사람에 의해서 내지 근무 환경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020811)과 그 외의 기타 괴롭힘(020819)로 나뉜다.

[세분류020811]인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한국의 경우 이에 대한 형사법체계

내 관련 법률은 없다. 다만, 직장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괴롭힘 행위의 결과로 심리적 상해를 입었다면 산업재해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고,<sup>48)</sup> 직장 내 고충처리절차 등에 의해 징계 등으로 처리할 수 있다.

[세분류020812]인 기타 괴롭힘과 관련되어 별도의 형사적 제재규정은 없다. 괴롭힘에 대해 규정한 법률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sup>49)</sup>인데, 제32조제3항에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괴롭힘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 차별행위로 명시하지는 않고 있어, 다만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부과될 뿐이다. 또한 괴롭힘의 형태가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각 형법상 범죄로 처벌할 수 있으나 관련 행위가 괴롭힘에 의한 것인지를 분류할 수 없다. 현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등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중 일부의 행위가 [세분류020812]로 분류될 수 있으나, 학교폭력의 처리는 각 학교 내 학교폭력자치위원회로 처리되는 징계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이와 관련된 죄명코드는 존재하지 않는다.

48)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산재관련 사건으로는 L증권 자살사건(서울행정법원 2004구단377, 서울고등법원 2005누26849 항소기각, 대법원 2006 11743 상고기각)과 S증권 사건(서울행정법원 2005구단 1834, 서울고등법원 2007누7354 항소기각)이다. 전자의 경우 L증권에서 근무하던 노동자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및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른 소인들(재판부는 발음의 부정확에 대한 콤플렉스, 내성적이면서도 완벽주의자적인 성격 등을 들고 있다)이 결합되어 우울증을 유발한 경우에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다(다만 이 판시에서는 업무상의 과로 등으로 표현되어 있을 뿐 괴롭힘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S증권 사건의 경우 원고는 S증권에서 인격적인 멸시와 모독, 퇴직압력을 받아 이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불안신경증’이 발병하여 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가 다시 요양기간을 연장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불승인된 사건이다. 이 사건의 경우 특징은 S증권이 원고의 증상을 불안신경증이 아닌 ‘피해망상을 주소로 하는 편집장애의 상태’로 판단하였다는 것인데, 재판부는 사실조회 등을 근거로 편집장애라는 판단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김동현, 해외 사례 등으로 본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적 규율, KT 직장내 괴롭힘 조사연구팀, 『KT 직장내 괴롭힘 실태 조사 보고서』, 2014, 50-51쪽.

49) 2007.4.10.제정되어 2008.4.11.부터 시행되었으며, 2016년 현재까지 12회 개정되었다.

## 2) 스토킹(02082)과의 죄명코드 연계성 분석

[소분류02082]인 스토킹과 연관된 법률은 「경범죄처벌법」으로, 제3조제1항제41호는 지속적 괴롭힘이라는 표제로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sup>50)</sup> 그러나 「경범죄처벌법」과 관련된 죄명코드는 경범죄의 행위 양태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하나의 죄명코드로 분류되어 있어 여기에는 [소분류02082]에 해당하는 행위 이외의 범죄행위를 포괄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죄명코드를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경범죄의 종류별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 3) 기타 공포감 또는 정서적 고통을 유발할 의도로 하는 행위(02089)와의 죄명코드 연계성 분석

[소분류02089]인 기타 공포감 또는 정서적 고통을 유발할 의도로 하는 행위는 사람의 행동 또는 행위에 의하여 공포 또는 정서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 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법률상 범죄는 ‘정서적 학대’를 처벌하고 있는 특별법의 규정과 관련된다. 현행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아래의 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아동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이다. 헌법재판소는 「아동복지법」에서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sup>51)</sup>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사회복지학 연구들에서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정서적인 학대의 예시는 심한 욕설이나 고함, 비방, 경멸, 모독감, 수치심을 주거나 적대적이며 거부적인 태도를 취하는 등의 행위 등으로 [소분류02089]에 해당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죄명코드로는 정서적 학대행위만을 분류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아동

50) 2012. 3. 21. 경범죄처벌법의 전면개정으로 신설된 규정이다.

51) 헌법재판소 2015.10.21. 선고 2014헌바266 전원재판부 아동복지법제17조제5호등위헌소원 [헌공제229호,1667]

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와 관련된 죄명코드들은 다른 특별법에 비해 세분화되어 있긴 하나, 학대행위와 관련하여 신체적인 학대행위와 정서적인 학대행위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로 포괄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의 경우 전체 법률에 대해 ‘장애인복지법위반’으로 하나의 죄명코드만이 부여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소분류02089]로의 분류를 위해서 정서적인 학대행위에 대한 별도의 죄명코드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2-2-14〉 정서적 학대에 대해 처벌규정을 둔 특별법

법령	조항(표제)	조문내용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6.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제86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59조의7제2호(폭행에 한정한다)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 다. 죄명코드 분류상의 쟁점

#### 1) 죄명코드 상세화를 통해 ICCS 분류가능한 죄명코드

앞선 죄명코드 연계성 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소분류인 스토킹(02082)으로 분류될 수 있는 범죄는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제3조제1항제41호)이나 이에 대한 죄명코드가 상세화되지 않은 채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만 부여되어 있다. 또한 소분류인 기타 공포감 또는 정서적 고통을 유발할 의도로 하는 행위(02089)에 포함될 수 있는 범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5호의 아동 대상 정서적 학대행위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제5호의 장애인 대상 정서적 학대행위이나, 이에 대한 죄명코드가

각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와 ‘장애인복지법위반’으로만 부여되어 있다. ICCS 분류체계에 따른 범죄분류를 위해서는 특별법 관련 죄명코드를 상세화하여 관련 범죄에 대한 세부 죄명코드를 새롭게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2-2-15〉 ICCS [소분류02082,02089]와의 연계성을 위해 세분화가 필요한 죄명코드

3수준/소분류		죄명코드
02082	스토킹(Stalking)	[특별법법] 경범죄처벌법위반*(0206020100)
02089	기타 공포감 또는 정서적 고통을 유발할 의도로 하는 행위 (Other acts intended to induce fear or emotional distress)	[특별법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0231041000) 장애인복지법위반*(0231010800)

\* 죄명코드 상세화를 조건으로 연계가능한 죄명코드

## 2) 국내법상 형벌이 부과되는 범죄가 아닌 위법행위의 분류와 통계생산의 문제

ICCS는 국제적으로 범죄통계를 비교가능하도록 공통된 범죄분류체계를 구성하기 위해 사회적인 유해성을 가진 행위를 중심으로 범죄분류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괴롭힘(02081)은 현행 한국의 법체계 내에서 형사법체계가 아닌 직장 내지 학교 등의 징계절차 및 권리구제절차 내지 민사법의 영역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므로 국내 범죄통계의 생산과 분류에서는 제외된다. 형벌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범죄로 분류되지는 않으나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는 괴롭힘 관련 행위를 ICCS의 [소분류 02081]에 포함시킬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만약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금지의무 위반행위 내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따돌림행위에 대해 [소분류02081]인 괴롭힘에 포함시키고자 한다면, 이와 관련된 통계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범죄통계자료가 아닌 다른 자료수집 방법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직장 내 괴롭힘에 관련된 공식적인 실태조사는 없으나, 학교폭력의 경우 교육부에 의해 학생 대상 실태조사 및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처리 결과들이 수집되므로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9. 명예훼손 또는 모욕(Defamation or insult, 0209)

### 가. 개념 및 행위

[중분류0209]인 명예훼손 또는 모욕은 고의적 발언, 행동, 또는 (구두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한) 교신에 의하여 타인의 평판, 명망, 또는 기밀을 해하거나, 타인에 대해 적대적이거나 부정적인 견해 또는 감정을 유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구두 명예훼손, 문서 명예훼손, 모욕, 중상모략, 명예의 손상 등의 행위가 포함된다. 그러나 특정 행동을 요구하기 위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위협의 경우, 행위 속성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 그 자체보다는 명예훼손 또는 모욕을 통해 특정한 행동을 요구하는 것에 초점이 있으므로 이는 [중분류0205]인 강요에 해당한다. 또한 사람의 평판을 해할 의도 없는 부적절한 행동은 타인에게 공포감 또는 정서적 고통을 유발하기 위한 의도로 하는 행위인 [중분류0208]에 해당한다.

ICCS는 명예훼손 또는 모욕(0209)이 피해자의 특성 또는 생래적 속성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지 피해자의 신념 또는 가치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소분류로 분류하고 있다. 각 소분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피해자의 특성 또는 생래적인 속성에 기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Defamation or insult due to the victim's characteristics or ascribed attributes, 02091)

[소분류02091]는 피해자의 특성 또는 생래적 속성에 기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으로, 여기서 피해자의 특성 및 속성은, 최소한, 성, 젠더, 성적 지향, 연령, 언어, 민족 출신, 장애 및/또는 인종을 포함한다.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의 형태는 구두 명예훼손, 문서 명예훼손, 모욕, 중상모략, 명예의 손상, 비방행위 등을 포괄하며, 이 중 타인의 평판, 명망 또는 기밀 및 타인에 대한 적대적 또는 부정적 견해 등의 근거가 피해자의 특성이나 생래적인 속성과 관련된 것일 때 [소분류02091]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특성 또는 생래적 속성에 기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 행위라도 이를 이용하여 특정한 요구를 하는 경우는 [소분류02091]가 아니라 강요(0205)에 해당하며, 사람의 평판을 해할 의도가 없는 부적절한 행동의 경우에는 공포감 또는 정서적 고통을 유발할 의도로 하는 행위인 [중분류0208]에 해당한다.

2) 피해자의 생래적 신념 또는 가치에 기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Defamation or insult due to the victim's ascribed beliefs or values, 02092)

[소분류02092]는 생래적 신념 또는 가치에 근거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으로, 여기에서 신념 또는 가치는 최소한, 종교적 신념, 정치적 견해 내지 경제적인 견해 및 사회적 견해를 포함한다. 다시 말해, 개인의 특성이나 생래적 속성이 아닌 종교나 정치적 견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견해에 근거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 행위는 [소분류 02092]에 해당한다. 그러나 비록 피해자의 신념 또는 가치가 범죄행위의 동기부여 요인이 되었더라도 할지라도 그 행위가 명예훼손 또는 모욕이 아닌 경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신념 또는 가치에 근거하여 불법적으로 구별, 배제, 제한 또는 우대하는 행위는 [소분류02092]가 아닌 [중분류0210]인 차별에 해당한다.

3) 기타 명예훼손 또는 모욕(Other acts intended to induce fear or emotional distress, 02099)

[소분류02099]인 기타 명예훼손 또는 모욕은 기타 분류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이지만 피해자 특성 또는 생래적 속성에 기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02091)과 피해자의 생래적 신념 또는 가치에 기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02092)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 ICCS에서는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근거가 밝혀지지 않은 구두 명예훼손, 문서 명예훼손, 모욕, 중상모략, 명예의 손상이 여기에 해당하며, 명예 및 존엄성 등 보편적인 인격과 관련된 명예훼손 또는 모욕 역시 여기에 포함한다고 설명한다.

## 나. 죄명코드 연계성 분석

〈표 2-2-16〉 명예훼손 또는 모욕(0209)과의 죄명코드 연계성

2수준/중분류		3수준/소분류		죄명코드
0209	명예훼손 또는 모욕 (Defamation or insult)	02091	피해자의 특성 또는 생래적 속성에 기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 (Defamation or insult due to the victim's characteristics or ascribed attributes)	-

2수준/중분류		3수준/소분류		죄명코드
		02092	피해자의 생래적 신념 또는 가치에 기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 (Defamation or insult due to the victim's ascribed beliefs or values)	-
0209	명예훼손 또는 모욕 (Defamation or insult)	02099	기타 명예훼손 또는 모욕 (Other defamation or insult)	<p>[형법범]</p> <p>명예에관한죄(013300000), 명예훼손(013301000, 013301010), 사자 명예훼손(013302000, 013302010),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013303000),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013303010), 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013303020), 모욕(013304000, 013304010), 외국원수모욕(010401030), 외국국원수명예훼손(010401040), 외국사절모욕(010402030), 외국사절명예훼손(010402040)</p> <p>[특별법범]</p> <p>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22350502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형법</li> </ul> <p>모욕의죄(041000000), 상관모욕(041001010), 상관명예훼손(041001020), 초병모욕(0410020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학대처벌법위반</li> </ul> <p>상습명예훼손(0209922800), 상습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0209922900), 상습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0209923000), 상습모욕(0209923100)</p>

[중분류0209]인 명예훼손 또는 모욕과 연계가능한 대표적인 죄명은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이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기본적인 구성요건은 「형법」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에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사람의 명예에 대한 사회적 가치 판단을 저해케하는 행위로 사람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하는 죄<sup>52)</sup>, 즉 사람에 대한 외부적 가치평가 저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52) 대법원 1970.5.26. 선고 70도704 판결.

우선 한국의 형사법체계에서 규정되고 있는 명예훼손죄는 「형법」이외에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 「공직선거법」, 「군형법」에서 규정되어 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형법」 제307조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이며, 동조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있어,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모두를 명예훼손 행위의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다. 사자의 명예훼손(「형법」 제308조) 역시 처벌대상이 되는데, 이때에는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한다. 명예훼손 행위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법정형을 가중하여 처벌한다(「형법」 제309조제1항및제2항).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sup>53)</sup>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제70조제1항)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동조제2항)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행위(제250조제2항)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행위(제251조)에 대해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군형법」에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제64조제3항)와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동조제4항)에 대해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명예훼손 관련 범죄는 모두 ICCS의 [중분류0209]인 명예훼손 또는 모욕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소분류의 기준인

53) 「정보통신망법」(법률 제14080호, 2016.3.22. 일부개정, 2016.9.23. 시행)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라고 정의하고 있다.

명예훼손 행위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법에서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다루고 있지 않아 [소분류02091]과 [소분류02092]로 연계가능하지 않다. 다만, [소분류02099]인 기타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는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근거가 밝혀지지 않은 구두 명예훼손, 문서 명예훼손, 모욕, 중상모략, 명예의 손상 등이 해당되므로, 국내 형사법상 명예훼손 관련 범죄는 [소분류02099]로 분류가능하다.

국내법상 모욕죄의 기본유형은 「형법」 제311조 모욕죄이다.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sup>54)</sup>으로, 어떠한 표현이 거칠고 무례하여 상대방의 불쾌감을 야기하였더라도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sup>55)</sup> 「균형법」에서도 모욕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행위(제64조제1항)와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행위(제64조제2항), 초병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행위(제65조)에 대해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모욕죄 관련 범죄들 역시 모욕의 근거를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ICCS 분류체계상 [소분류02099]인 기타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한다.

특별법과 관련하여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대해 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아동학대처벌법」에서는 보호자에 의한 「형법」상 명예훼손(제307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제309조) 및 모욕(제311조) 행위를 아동학대행위로 규정하고 상습범을 가중처벌하고 있다(제6조). 이에 따라 보호자에 의한 아동대상 상습명예훼손 등은 ICCS 분류체계상 [소분류02099]인 기타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한다.

「형법」은 피해자의 특성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행위에 따라 법정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형법」 제4장 국교에 관한 죄에서 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의 원수에 대하여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행위(제107조제2항)와 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에 대하여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행위(제108조제2항)가 이에 해당한다. 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의 원수 또는 외국사절은 피해자의 지위와 관련된 것으로, [소분류02091]의 분류기준인 피해자의 특성 또는 생래적 속성이나

54)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55)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소분류02092]의 분류기준인 피해자의 생애적 신념 또는 가치와는 관련이 없다. 그러므로 외국 원수 및 외국사절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 관련 범죄는 ICCS 분류체계상 [소분류02099]인 기타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한다.

「형법」 제3장 국기에 관한 죄에서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행위(제105조)와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비방한 행위(제106조)에 대해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국기 또는 국장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은 국가의 권위와 체면에 대한 것이므로 사람에게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 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ICCS의 [중분류0209]인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형법」 제138조는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행위에 대해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44조는 제138조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비록 모욕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그 목적이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하여 특정 행동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ICCS의 [중분류0209]인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다. 죄명코드 분류상의 쟁점

##### 1) 죄명코드 상세화를 통해 ICCS 분류가능한 죄명코드

앞에서 죄명코드와의 연계성을 검토하며 살펴본 대로 「정보통신망법」과 「공직선거법」, 그리고 「군형법」에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중 「정보통신망법」과 「공직선거법」의 경우에는 죄명코드가 하나로 부여되어 있고 각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행위별로 분류되지 않아, ICCS의 범죄분류에 따라 연계할 수 없다. 또한 「군형법」의 경우 현재에는 상세화된 죄명코드를 부여하고 있으나, 일정기간 동안 앞의 두 법률과 마찬가지로 죄명코드를 하나로만 분류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ICCS의 분류를 위해서는 특별법위반으로 부여된 죄명코드의 상세화 내지 세분화가 필요하다.

국내법에서는 친일반민족행위나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로 인한 인권유린 및 폭력·학살·의문사 등 과거사에 대한 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을 두고 있는데,

사안의 심각성으로 인해 이와 관련된 사실이 공개됨으로써 그 피해가 심각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별도의 명예훼손죄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서는 조사 대상자의 보호를 별도로 규정하고<sup>56)</sup> 이를 위반하여 공표함으로써 사람 또는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제45조제1항제2호). 그러나 이에 대한 죄명코드를 세분화하여 제공하고 있지 않고, 특별법위반으로 하나의 죄명코드만 부여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죄명코드를 행위유형별로 상세화한다면, ICCS의 분류체계에 따라 기타 명예훼손 또는 모욕(02099)로 분류할 수 있다.

<표 2-2-17> ICCS [소분류02099]와의 연계를 위해 세분화가 필요한 죄명코드

3수준/소분류		죄명코드
02099	기타 명예훼손 또는 모욕 (Other defamation or insult)	[특별법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2235050100) 공직선거법위반*(1207020600) 군형법위반*(021507040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위반*(0206013800)

\* 죄명코드 상세화를 조건으로 연계가능한 죄명코드

## 2) 죄명코드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특별법범

죄명코드가 없는 명예훼손 또는 모욕 범죄는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의무소방대설치법」에 규정된 명예훼손 및 모욕행위이다.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서는 지방경찰청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경찰기관의 장 또는 해양경비안전기관의 장 소속 의무경찰이 상관을 그 면전에서

5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1조(조사대상자의 보호) ① 누구든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범위 대상기간 중 행정기관·군대·사법부·조직·단체 등의 특정한 직위에 재직한 사실만으로 그 재직자가 동 조항과 관련되는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 신문·잡지·방송(인터넷 신문 및 방송 포함한다)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전에 신문·잡지·방송(인터넷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한다) 그 밖의 출판물을 통하여 조사대상자 및 그의 가해행위와 관련한 위원회의 조사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사생활 및 명예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모욕하거나(제1호), 문서·그림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거나(제2호), 공공연히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제3호), 공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제4호)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의무소방대설치법」 제10조제4항에서 역시 대통령이 정하는 소방기관의 장 소속하에 의무소방대원이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하거나(제1호), 문서·그림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거나(제2호), 공공연히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제3호), 공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제4호)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죄명코드는 없어, 새로운 죄명코드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죄명코드가 없는 명예훼손 범죄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관련 명예훼손 행위이다.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규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대상자에 대해 보호규정<sup>57)</sup>을 두고 이를 위반하여 공개함으로써 사람 또는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제34조 제1항제2호). 그러나 이에 대한 죄명코드는 없어, 새로운 죄명코드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57)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조사대상자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기간 중 행정기관·군대·사법부·조직·단체 등의 특정한 직위에 재직한 사실만으로 그 재직자가 이 법에 의한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신문·잡지·방송(인터넷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또는 위원회가 제19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는 내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4.28.>

② 누구든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편찬 전에 신문·잡지·방송 그 밖의 출판물을 통하여 조사대상자 및 그의 친일반민족행위와 관련한 위원회의 조사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위원회가 제19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는 내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4.28.>

③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사생활 및 명예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10. 차별(Discrimination, 0210)

### 가. 개념과 행위

[중분류0210]인 차별은 인종, 피부색, 연령, 성, 언어, 종교, 견해, 혈통, 국적, 또는 민족적 출신을 근거로 개인 또는 집단을 구별하거나, 배제하거나, 제한하거나, 불법적으로 처하거나 우대하는 행위로서, 인권의 평등한 인정, 향유, 또는 행사 및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타 공적 생활의 다른 영역에서 근본적인 자유를 좌절시키거나 막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개인에 대한 차별뿐만 아니라, 집단에 대한 차별, 생애적 신념 및 가치 또는 속성 및 특성에 근거한 차별도 모두 해당된다. 그러나 이러한 차별행위가 표현의 자유 또는 표현의 규제와 관련하여 이루어진다면 이는 [중분류0803]인 표현의 자유 및 표현 규제와 관계된 행위로 분류된다.

ICCS는 차별의 대상이 개인인지 집단인지에 따라 소분류로 구분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개인에 대한 차별(Personal discrimination, 02101)

[소분류02101]인 개인에 대한 차별은 사람을 차별하고 불법적으로 처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사람에 대한 고용차별, 임금차별, 주거차별 등이 해당한다.

#### 2) 집단에 대한 차별(Group discrimination, 02102)

[소분류02102]인 집단에 대한 차별은 하나의 전체를 이루는 사람들의 집단에 대해 차별하고 불법적으로 처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집단에 대한 고용 차별, 임금 차별, 주거 차별, 젠더, 성, 연령, 장애, 인종, 성적 지향, 종교, 정치적 견해, 사회적 견해, 또는 경제적 견해에 근거한 집단에 대한 차별 등이 포함된다.

#### 3) 기타 차별(Other discrimination, 02109)

[소분류02109]인 기타 차별은 기타 분류로, 차별 및 불법적인 처우에 해당하나 앞선 [소분류02101]인 개인에 대한 차별이나 [소분류02102]인 집단에 대한 차별 각 범주에서 기술하지 않는 행위가 포함된다. 예를 들어, 사람 또는 집단에 대한 차별을 행하도록 다른 사람을 교사하는 행위는 기타 차별(02109)에 해당된다.

## 나. 죄명코드 연계성 분석

〈표 2-2-18〉 차별(0210)과의 죄명코드 연계성

2수준/중분류		3수준/소분류		죄명코드
0210	차별 (Discrimination)	02101	개인에 대한 차별 (Personal discrimination)	[특별법법] 장애인등에 대한특수교육법위반 (0216020700)
		02102	집단에 대한 차별 (Group discrimination)	-
		02109	기타 차별 (Other discrimination)	-

한국의 법체계 내에서 차별행위와 관련된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이러한 차별행위는 기본적으로 범죄를 다루는 형사법체계가 아닌 권리구제절차 내지 징계절차, 민사법적 영역에서 다루어지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차별행위에 대해 권리구제절차를 두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용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내지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내지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을 차별행위로 규정하고(제2조제3호) 이에 대해 권리구제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차별행위에 내지 구제조치 불이행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오직 조사업무방해행위에 대해서만 처벌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고용 및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법」에서 차별시정과 관련된 권리구제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일부 특별법에서 차별금지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처벌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다. 처벌규정을 두는 특별법은 아래의 표와 같다. 특별법상의 차별금지 의무 위반과 관련된 범죄행위는 차별(2010)의 소분류에 따라 연계가능하나 현재 죄명 코드가 각 특별법마다 상세화되어 있지 않아 연계할 수 없다. 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경우 벌칙조항이 모두 차별금지위반에 대한 벌칙이므로 ICCS 분류체계상 개인에 대한 차별(02101)로 연계가 가능하다.

〈표 2-2-19〉 차별행위에 대해 처벌규정을 둔 특별법

법령	조항(표제)	조문내용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모집·채용 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3. 교육·훈련 4. 배치·전보·승진 5. 퇴직·해고
	제23조의3(벌칙)	② 제4조의4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모집·채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금지 등)	① 결혼중개업자는 거짓·과장되거나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과장되거나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광고한 자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법령	조항(표제)	조문내용
남녀고용평 등과 일·가 정 양립 지 원에 관한 법률	제7조(모집과 채용)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임금)	①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임금 외의 금품 등)	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교육·배 치 및 승진)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정년·퇴 직 및 해고)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벌칙)	① 사업주가 제11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한 경우 2. 제9조를 위반하여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한 경우 3. 제10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한 경우

법령	조항(표제)	조문내용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6조(유전정보에 의한 차별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유전정보를 이유로 교육·고용·승진·보험 등 사회 활동에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전정보를 이유로 다른 사람을 차별한 자, 유전자검사를 받도록 강요하거나 유전자검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강요한 자 또는 환자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기록 등에 유전정보를 포함시킨 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차별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기회에 있어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8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2. 수업참여 배제 및 교내외 활동 참여 배제 3.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4.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수험편의의 내용을 조사·확인하기 위한 경우 외에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등 입학전형 과정에서의 차별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애를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한 교육기관의 장 2. 제4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수험편의의 내용의 확인과 관계없는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한 자
	제3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수업참여 및 교내외 활동 참여와 개별화교육 지원팀에의 보호자 참여에 있어서 차별한 자

법령	조항(표제)	조문내용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4조(차별행위)	<p>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li> <li>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li> <li>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li> <li>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li> <li>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li> <li>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li> </ol>
	제49조(차별행위)	<p>①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p> <p>②제1항에서 악의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부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차별의 고의성</li> <li>2.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li> <li>3.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li> <li>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li> </ol>

#### 다. 죄명코드 분류상의 쟁점

##### 1) 죄명코드 상세화를 통해 ICCS 분류가능한 죄명코드

위에서 살펴본 차별금지의무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특별법에 대해서는 각 특별법당 하나의 죄명코드만이 부여되어 있는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제외한 나머지 특별법은 차별 행위 이외에도 다른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어 ICCS의 분류체계에 따른 분류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각 위반행위별로 죄명코드를

세분화 및 상세화하여 부여하면 ICCS에 따른 분류가 가능하다. 죄명코드를 상세화 하였을 때에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외한 나머지 특별법 상의 차별 행위는 개인에 대해 차별행위가 발생했을 때에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소분류02101]인 개인에 대한 차별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서 결혼중개업자는 거짓·과장되거나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제26조제2항제6호). 이러한 광고행위는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집단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집단에 대한 차별(02102)에 해당한다.

〈표 2-2-20〉 ICCS [소분류02101, 02102]와의 연계를 위해 세분화가 필요한 죄명코드

3수준/소분류		죄명코드
02101	개인에 대한 차별 (Personal discrimination)	[특별법법]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0232070200) 근로기준법위반*(0232030100) 남녀고용평등법위반*(0232030400)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1232030400)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위반*(0229040800)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0231011500)
02102	집단에 대한 차별 (Group discrimination)	[특별법법]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0231040400)

\* 죄명코드 상세화를 조건으로 연계가능한 죄명코드

2) 국내법상 형벌이 부과되는 범죄가 아닌 위법행위의 분류와 통계생산의 문제

ICCS는 국제적으로 범죄통계를 비교가능하도록 공통된 범죄분류체계를 구성하기 위해 사회적인 유해성을 가진 행위를 중심으로 범죄분류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법체계에서 차별(0210)은 대부분 형사법체계가 아닌 직장 내지 학교 등의 징계절차 및 권리구제절차 내지 민사법의 영역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전반적인 차별 행위에 대한 규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 권리구제절차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처벌규정을 둘 필요성에 의해 일명 「차별금지법률안」이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황이다. <표 2-2-19>에서 제시한 특별법을 제외한 대부분의 차별에 대한 규제는 행정벌 내지 징계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차별행위에 대한 실태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는 범죄로 분류되지는 않으나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는 괴롭힘 관련 행위를 ICCS의 [중분류2010]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내법상 범죄로 분류되지 않는 행위를 ICCS 체계에 따라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청되는 사안이다.

## 11. 사람에 대한 침해행위(Acts that trespass against the person, 0211) 및 기타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초래하거나 의도한 행위(Other acts causing harm or intending to cause harm to the person, 0219)

### 가. 개념과 행위

#### 1) 사람에 대한 침해행위(Act that trespass against the person, 0211)

[중분류0211]인 사람에 대한 침해행위는 사생활이나 다른 권리에 대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침해에 관한 행위이다. 여기서 사생활은, 최소한, 사람의 개인적인 자율성이나 다른 사람에 의해 관찰되거나 방해 받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컴퓨터 데이터 또는 컴퓨터 시스템 침해의 경우에는 [중분류0903]인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행위에 해당하며, 원치 않는 따라다님, 지켜봄, 또는 연락 등 사생활이나 다른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지만 그것이 일련의 연속된 행위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스토킹(02082)으로 분류될 수 있다. 또한 성적 사생활 침해 또는 기타 성적 성격의 행위인 경우는 [대분류03]인 성적 성격의 유해행위에 해당하며, 사생활이나 권리 침해가 재산에 대한 침해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기타 재산 침해행위(0509)로 분류된다.

ICCS는 사람에 대한 침해행위(0211)를 사생활에 대한 침해인지 그 외 다른 권리에 대한 침해인지에 따라 소분류로 분류한다. 소분류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ㄱ) 사생활 침해(Invasion of privacy, 02111)

[소분류02111]인 사생활 침해는 사생활에 대한 침해 또는 간섭으로, 사람의 개인적인 자율성이 타인의 간섭, 방해, 관찰 등으로 인해 침해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사생활 침해, 우편 비밀 침해, 전화 도청, 고립성(solitude) 또는 개인적 사항에 대한 침해, 사적인 컴퓨터 파일에 대한 침해, 우편 방해 등이 사생활 침해(02111)에 해당한다. 이 중 고립성 또는 개인적 사항에 대한 침해는 미국의 프라이버시권 침해유형으로 개인의 배타적인 공간이나 사적인 사항에 대해 침범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ICCS 매뉴얼에 열거된 사생활 침해의 유형은 개인의 정보 및 초상에 대한 침해뿐 아니라 개인의 사적인 공간이나 사적인 사항에 침범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ㄴ) 기타 사람에 대한 침해행위(Other act that trespass against the person, 20119)

[소분류02119]인 기타 사람에 대한 침해행위는 사람의 사생활이나 다른 권리에 대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침해로서 [소분류02111]인 사생활 침해에서 기술하지 않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사체 훼손, 장기 또는 조직 적출 목적 인신매매에 해당하지 않는 신체 부위 밀매, 분묘 손괴, 사체의 불법적인 사용, 분묘 발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사자에 대한 침해행위나 인신매매에 해당하지 않는 신체 부위 밀매 등이 기타 사람에 대한 침해행위이다.

2) 기타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초래하거나 의도한 행위(Other acts causing harm or intending to cause harm to the person, 0219)

[중분류0219]인 기타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초래하거나 의도한 행위는 기타 규정으로, 해악을 야기하거나 해악을 야기할 것을 의도로 하는 행위이나 앞선 [중분류0201]에서 [중분류0211]까지 각 범주에서 기술하지 않는 행위가 여기에 포함된다. 대표적으로 신체적 학대 또는 정신적 잔학행위를 통한 부당 대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다시 말해, 신체적 학대나 정서적 학대 행위 내지 방임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잔혹하고 학대적인 부당한 대우가 여기에 포함된다.

## 나. 죄명코드 연계성 분석

〈표 2-2-21〉 사람에게 대한 침해행위(0211) 및 기타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초래하거나 의도한 행위(2019)와의 죄명코드 연계성

2수준/중분류		3수준/소분류		죄명코드
0211	사람에 대한 침해행위(Act that trespass against the person)	02111	사생활 침해 (Invasion of privacy)	[형법범] 비밀침해위죄(0135000000), 비밀침해(0135010000), 업무상비밀누설*(0135020000, 0135020100), 신서개피(0135010100), 문서개피(0135010200), 도화개피(0135010200), 편지내용탐지(0135010400), 문서내용탐지(0135010500), 도화내용탐지(0135010600), 전자기록내용탐지(0135010700), 퇴거불응(0136020000, 0136020100), 저택퇴거불응(0136020200), 건조물퇴거불응(0136020300), 선박퇴거불응(0136020400), 방실퇴거불응(0136020500), 불법수색(0136040000), 신체수색(0136040100), 주거수색(0136040200), 저택수색(0136040300), 건조물수색(0136040400), 선박수색(0136040500), 방실수색(0136040600), 자동차수색(0136040700), 항공기수색(0136040800)  [특별법범]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누설등)(2235050300)
		02119	기타 사람에게 대한 침해행위 (Other acts causing harm or intending to cause harm to the person)	[형법범] 사체오욕(0112020100), 유골오욕(0112020200), 분묘발굴(0112030000, 0112030100), 사체손괴(0112040100), 유골손괴(0112040200), 사체유기(0112050100), 유골유기(0112050200), 사체은닉(0112060100), 유골은닉(0112060200), 사체영득(0112070100), 유골영득(0112070200), 분묘발굴사체손괴(0112080100), 분묘발굴유골손괴(0112080200), 분묘발굴사체유기(0112090100), 분묘발굴유골유기(0112090200), 분묘발굴사체유기(0112100100), 분묘발굴유골은닉(0112100200), 분묘발굴사체영득(0112110100), 분묘발굴유골영득(0112110200)
0219	기타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초래하거나 의도한 행위 (Other acts causing harm or intending to cause harm to the person)	-	-	-

## 1) 사람에 대한 침해행위(0211)와의 죄명코드 연계성 검토

## ㄱ) 사생활 침해(02111)와의 죄명코드 연계성 검토

[소분류02111]인 사생활 침해는 사생활이나 다른 권리에 대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침해에 관한 행위를 포함하는 분류로서, 여기에서는 사생활에 대한 접근행위와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유출행위가 해당할 수 있다. 한국 형사법체계에서 사생활 침해행위 중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형법」상 비밀침해죄(제316조), 업무상비밀누설죄(제317조), 퇴거불응죄(제319조), 주거·신체수색죄(제321조)로, 이는 사생활의 비밀 및 평온이라는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이다. 특별법에서 사생활 침해를 처벌하는 규정을 살펴보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에서는 위법하게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감청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하거나 이를 통하여 지득한 통신·대화내용을 공개·누설한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또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신용정보보호법)은 개인의 신용정보를 그 개인의 동의없이 제공·활용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것 이외의 목적으로 제공·이용하거나 업무상 알게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을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누설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신용정보보호법 제23조, 제42조, 제50조제1항). 또한 신용정보업 관련 허가를 받은 회사가 개인의 정치적 사상, 종교적 신념, 그 밖에 신용정보와 관계없는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확실하지 않은 개인의 신용정보를 수집하거나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제공받은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역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신용정보보호법 제16조, 제17조제6항, 제50조제2항). 「정보통신망법」에서도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의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제공을 매개하는 자 등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상, 신념, 가족 및 친인척관계, 학력(學歷)·병력(病歷), 기타 사회활동 경력 등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당해 법률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에 규정된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제공하거나 제공받은 행위, 개인정보를 훼손·침해·누설한 행위에 대해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정보통신망법 제23조제1항, 제24조,

제24조의2제2항, 제26조제3항, 제215조제1항, 제28조의2, 제30조, 제31조, 제49조, 제71조제1항). (구)「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sup>58)</sup>에서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원 등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직무를 통해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며(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3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하여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교사·알선한 행위, 당해 법률에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제공하거나 제공받은 행위,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누설·제공하거나 제공받은 행위 내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행위에 대해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제71조, 제72조제2호및제3호)

#### ㄴ) 기타 사람에 대한 침해행위(02119)와의 죄명코드 연계성 검토

ICCS의 예시 규정을 통해 [소분류02119]인 기타 사람에 대한 침해행위는 사자(사체)나 분묘에 대한 침해행위나 장기 또는 조직 적출 목적 인신매매에 해당하지 않는 신체 부위 밀매를 의미함을 알 수 있다. 국내 형사법체계 내에서는 사체나 분묘 등에 대한 침해행위를 사람에 대한 침해라는 개인적 법익이 아닌 사회의 종교적 감정 보호라는 사회적 법익의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형법」은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에서 사체등오욕죄(제159조), 분묘발굴죄(제160조), 사체등영득죄(제161조제1항), 분묘발굴 사체등영득죄(제161조제2항)를 규정하고 있다. 이 중 「형법」 제159조와 제161조의 경우, 사체 등을 대상으로 오욕이나 손괴, 유기, 은닉 및 영득한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다. 「형법」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가 사회적 법익에 관한 것이므로 이 때 사체나 유골 이외에도 유발이나 관내에 장치한 물건, 사체의 작의나 사자의 유애물 등 기념을 위하여 관내에 둔 일체의 부장물을 포함한다. 그러나 [중분류0211]은 사람에 대한 침해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타 사람에 대한 침해행위(02119)와 연계가능한 죄명코드는 「형법」 제159조와 제161조의 행위객체 중 사체와 유골과 관련된 죄명코드

58)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은 2011.3.29., 타법폐지되었으며, 이후 2011.9.30.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통합되었다.

에 한할 뿐, 유발 또는 관내장치물에 대한 오욕 등 행위를 포함한다고 보기 어렵다.

[소분류02119]의 예시로 제시되어 있는 장기 또는 조직 적출 목적 인신매매에 해당하지 않는 신체 부위의 밀매에 대해서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약칭: 장기이식법) 및 「혈액관리법」에서 다루고 있다. 「장기이식법」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주고 받거나 이를 약속하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을 제3자 내지 자신에게 이식하기 위해 매매하거나 이를 약속하거나 매매행위를 교사·알선·방조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처벌한다.(장기이식법 제7조제1항, 제45조제1항및제2항) 또한 「혈액관리법」에서는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주고 받거나 이를 약속하고 자신의 혈액 및 다른 사람의 혈액을 매매하거나 이를 약속하거나 매매행위를 교사·알선·방조하는 행위를 처벌한다(제3조, 제18조제1호).

## 2) 기타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초래하거나 의도한 행위(0219)와의 죄명코드 연계성 검토

[중분류0219]인 기타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초래하거나 의도한 행위는 기타 규정으로, ICCS 매뉴얼의 예시에 따르면 신체학대나 정서학대에 이르지 않으나 신체적인 학대 내지 정신적인 잔학행위를 통해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내 법체계에서 신체적이거나 정서적인 학대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주로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특별법이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학대행위는 신체적·정신적·성적인 폭력 내지 가혹행위, 또는 보호자의 유기 내지 방임행위로 규정하고 있을 뿐,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잔혹하고 학대적인 부당한 대우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그러므로 기타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초래하거나 의도한 행위(0219)와 연계가능한 죄명코드는 국내법상 없다.

## 다. 죄명코드 분류상의 쟁점

### 1) 죄명코드 상세화를 통해 ICCS 분류가능한 죄명코드

아래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소분류인 사생활 침해(02111)와 연계가능한 국내법상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위에서 살펴본 개인의 정보보호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특별법에 대해서 각 특별법당 하나의 죄명코드만이 부여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법들은 사생활 침해(02111)와 관련된 범죄 뿐 아니라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업자 또는 공공기관 등에 대한 규제위반행위의 형벌 및 행정벌 규정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ICCS에 따른 분류를 위해서는 각 위반행위별로 죄명코드를 세분화 및 상세화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소분류인 기타 사람에 대한 침해행위(02119)와 관련된 「형법」상 범죄에 관련된 죄명코드 역시 세분화 내지 상세화가 필요하다. 현재 대검찰청 죄명코드를 살펴보면 일정 기간동안 「형법」상 법조항에 죄명코드를 부여하고 있을 뿐 조문상 각 구성요건에 따른 세분화된 죄명코드를 부여하지 않은 사례들이 있다. 그러나 기타 사람에 대한 침해행위(02119)와 관련된 「형법」 제159조와 제161조는 사체나 유골뿐만 아니라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유발 또는 관내장치물에 대한 오욕·손괴·유기·은닉·영득 행위를 포함하고 있어 적용법조별로 부여된 죄명코드로는 ICCS에 따른 분류가 가능하지 않다. 또한 [소분류02119]에 해당하는 「장기이식법」 및 「혈액관리법」상 범죄행위를 ICCS에 따른 분류를 할 수 없는데, 특별법당 부여된 죄명코드를 상세화할 필요가 있다.

〈표 2-2-22〉 ICCS [소분류02111, 20119]와의 연계성을 위해 세분화가 필요한 죄명코드

3수준/소분류		죄명코드
02111	사생활 침해(Invasion of privacy)	[특별법법] 통신비밀보호법위반*(02320702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2235050100)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0206028500) 개인정보보호법위반*(0204020300)
02119	기타 사람에 대한 침해 행위(Other acts causing harm or intending to cause harm to the person)	[형법법] 사체등오욕*(0112020000), 사체등손괴*(0112040000), 사체등유기*(0112050000), 사체등은닉*(0112060000), 사체등영득*(0112070000), 분묘발굴사체등손괴*(0112080000), 분묘발굴사체등유기*(0112090000), 분묘발굴사체등은닉*(0112100000), 분묘발굴사체등영득*(0112110000)  [특별법]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위반*(0229023900) 혈액관리법위반*(0229040400)

\* 죄명코드 상세화를 조건으로 연계가능한 죄명코드

## 2) 국내법상 형벌이 부과되는 범죄가 아닌 위법행위의 분류의 문제

앞서 살펴보았듯이 ICCS는 국제적으로 범죄통계를 비교가능하도록 공통된 범죄분류체계를 구성하기 위해 사회적 유해성을 가진 행위를 중심으로 범죄분류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분류20111]인 사생활 침해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침해뿐 아니라 사적 공간 및 사적 사항과 개인의 초상권 등 사생활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에 기반하여 정의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듯이, 국내법에서는 사생활의 평온과 비밀을 침해하는 범죄를 주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영역, 다시 말해 자기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하는 것에 한정하여 구성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생활 침해행위, 다른 사람의 얼굴을 무단으로 촬영하거나 이를 공개·사용하는 등의 헌법상 권리인 사생활에 대한 침해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범죄행위를 포괄하기 위해서는 민사상 불법행위 역시 ICCS의 행위중심 분류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쟁점은 동시에 범죄통계의 대상이 되는 범죄가 국내 형사법에 기초한 형식적 범죄개념에 기초하고 있는 우리의 경우, 실질적 범죄개념에 기초한 범죄분류체계를 도입하거나 이에 기초한 국제범죄통계의 생산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 근본적인 문제제기와 연결되어 있다.

## 3) ICCS 범죄분류에 부합하지 않은 주거침입죄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는 퇴거불응죄와 함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범죄이고, ICCS 메뉴얼상 [소분류20111]인 사생활 침해의 예시로 고립성 또는 개인적 사항에 대한 침해를 두고 있어 사적인 밀폐된 공간인 주거 등에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주거침입죄는 [소분류20111]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ICCS에서는 절도목적의 주거침입 행위에 대해 별도의 분류를 두고 있어, 이러한 분류체계에 따르면 주거침입행위의 내적 동기에 따라 주거침입이라는 외적 행위가 서로 다른 범주의 범죄행위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주거침입행위의 내적 동기를 범죄구성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아, 죄명코드 “주거침입(0136010100), 저택침입(0136010200), 건조물침입(0136010300), 선박침입(0136010400), 방실침입(0136010500), 항공기침입(0136010600)”는 절도 목적인지 그 외의 목적인지에 따라

절도목적 침입(0501) 내지 사생활침해(02111)로 분류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 제3절 성적 성격의 유해행위(03)

[대분류 03]은 성적 성격의 유해행위로, 크게 성폭력(sexual violence)과 성적 착취(sexual exploitation), 기타 성적 성격의 유해행위로 구분된다. 중분류인 성폭력은 성적 삽입행위를 동반하는 강간(rape)과 성적 삽입행위에 이르지 않는 성적 행위를 동반하는 성폭행(sexual assault), 그 외 강간과 성폭행을 제외한 기타 성폭력행위로 구분된다. ICCS는 중분류인 성적 착취를 크게 대상에 따라 성인 대상 성적 착취와 아동 대상 성적 착취행위를 분류하고 있고, 그 외 기타 성적 착취 행위로 소분류로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분류인 성폭력과 성적 착취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성적 성격의 유해행위를 별도의 중분류로 분류하고 있다. ICCS의 [대분류 03] 세부 분류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3-1〉 ICCS [대분류 03] 성적 성격의 유해행위 세부 분류

2수준/중분류		3수준/소분류		4수준/세분류	
0301	성폭력 (sexual violence)	03011	강간(rape)	030111	유형력에 의한 강간 (rape with force)
				030112	유형력에 의하지 않은 강간 (rape without force)
				030113	의제강간(statutory rape)
				030119	기타 강간(other rape)
		03012	성폭행 (sexual assault)	030121	신체적 성폭행 (physical sexual assault)
				030122	비신체적 성폭행 (non-physical sexual assault)
03012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성폭행 (other sexual assault not elsewhere classified)				
03019	기타 성폭력 행위 (other acts of sexual violence)	-	-		
0302	성적 착취 (sexual exploitation)	03021	성인에 대한 성적 착취 (sexual exploitation of adults)	-	-

2수준/중분류		3수준/소분류		4수준/세분류	
		03022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030221	아동 포르노그래피 (child pornography)
				030222	아동 성매매 (child prostitution)
				030223	성적 목적 아동 유인 (sexual grooming of children)
				030229	기타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 (other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03029	기타 성적 착취 행위 (other acts of sexual exploitation)	-	-
0309	기타 성적 성격의 유해행위 (other injurious act of a sexual nature)	-	-	-	-

### 1. 성폭력(Sexual violence, 0301)

ICCS의 매뉴얼에 따르면, 중분류인 성폭력(0301)은 “유효한 동의 없이 또는 위협, 유형력, 사기, 강요, 협박, 기망, 약물 또는 알코올의 사용, 권력의 남용 또는 취약한 지위를 이용하여 얻은 동의에 의해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하거나,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시도하거나, 또는 당사자/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적 관심을 갖고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비록 원치 않는 성적 행위라고 하더라도 성매매 또는 성적 행위로부터 금전적, 사회적, 또는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취약한 지위를 이용하거나, 권력 또는 신뢰를 남용하거나, 유형력을 사용하거나 또는 사용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인 [중분류0302]인 성적 착취는 제외되며, 성매매 범죄, 포르노그래피 범죄, 및 기타 근친상간과 같은 공공의 성적 기준에 반하는 행위이지만 강간 및 노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0802) 역시 제외된다. 또한 [대분류02]에 해당하는 강요(0205)나 폭행 및 협박(0201), 노예 행위 및 착취로서 성적 성격의 유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0203), 성적 착취 목적 인신매매(02041), 성적이지 않은 괴롭힘(02081)과 성적인 성격이 없는 원치않은 접근이나 연락을 하거나 지켜보는 행위인 스토킹(02082) 역시

배제된다. 이에 따르면,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 이외에 다른 법의 침해가 결합되는 경우는 [중분류0301]이 아닌 다른 분류에 해당하며, 여기에는 오로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만이 포함된다.

## 가. 개념 및 행위

### 1) 강간(Rape, 03011)

소분류인 강간(03011)은 “유효한 동의 없이 또는 위협, 유형력, 사기, 강요, 협박, 기망, 약물 또는 알코올의 사용, 권력의 남용, 취약한 지위의 이용, 또는 이익의 공여나 수령으로 얻은 동의에 의한 성적 삽입 행위”를 의미한다. 이 때 성적 삽입 행위는 질, 항문, 또는 구강에 신체의 일부 또는 물건을 삽입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ICCS는 강간(03011)을 4가지 세분류로 분류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세분류는 유형력에 의한 강간(rape with force, 030111)으로, 유효한 동의 없이 유형력으로 행한 성적 삽입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물리적 유형력 내지 물리적 유형력을 이용하겠다는 협박을 이용하여 얻은 동의에 의한 성적 삽입행위 일체가 해당된다.

두 번째 세분류는 유형력에 의하지 않은 강간(rape without force, 030112)으로, 유효한 동의 없이 유형력에 의하지 않고 행한 성적 삽입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성관계를 갖기 위한 기망, 약물에 의한 강간, 물리적 유형력에 의하지 않고 동의도 없이 행해진 성적 삽입 행위가 포함된다.

세 번째 세분류는 의제강간(statutory rape, 030113)으로,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동의할 수 있는 연령 미만의 사람 또는 법률상의 사유로 동의능력 없는 사람과 행한 성적 삽입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동의할 수 있는 연령 미만의 사람과의 성관계, 동의능력 없는 사람과의 성관계가 해당하는데, 각 국가별로 국내법에 따라 동의할 수 있는 연령 미만의 사람과의 성관계에 대해 비록 동의를 하였더라도 강간으로 의제하는 법률을 두는 경우가 있으며, 국가에 따라 성관계의 동의연령에 대해 별도의 법률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다.

네 번째 세분류는 기타 규정으로 기타 강간(other rape, 030119)에는 앞의 세분류 각 범주에서 기술하지 않는 행위가 해당한다.

## 2) 성폭행(Sexual assault, 03012)

소분류인 성폭행(03012)은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하거나,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시도하거나, 원치 않는 성적 관심을 갖고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로서, 강간에는 이르지 않는 행위”를 의미한다. 강간(03011)과의 핵심적인 차이는 성적 삽입 행위의 여부에 있으며, 성폭행(03012)는 성적 삽입 행위에 이르지 않는 원치 않는 성적 행위 일체가 해당된다. 여기에는 약물에 의한 성폭행, 성적 괴롭힘(sexual harrasment), 배우자에 대한 성폭행, 방어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성폭행 등이 포함된다.

ICCS는 성폭행(03012)을 다음의 3가지 세분류로 분류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세분류는 신체적 성폭행(physical sexual assault, 030121)으로, 신체적인 접촉에 의해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하거나 이를 시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약물에 의한 성폭행, 원치 않는 더듬기 또는 애무, 지위의 남용에 의한 성폭행 등이 해당된다.

두 번째 세분류는 비신체적 성폭행(non-physical sexual assault, 030122)으로, 신체적 접촉에 의하지 않은 성폭행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원치 않은 언어적인 성적 행위를 하거나 이를 시도하는 행위 또는 원치 않는 성적 관심을 갖고 접근, 연락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된다. ICCS 매뉴얼에 따르면 성적 괴롭힘이나 성적 성격의 협박이 대표적인 예시이며, 성적 성격의 스토킹 역시 여기에 해당된다.

세 번째 세분류는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성폭행(other sexual assault not elsewhere classified, 030129)으로, 다른 세분류 범주에서 기술하지 않은 행위가 여기에 해당된다. 대표적인 행위로는 신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 중인 사람을 그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찰함으로써 성적 만족을 얻는 행위인 관음(voyeurism)이 있다.

## 3) 기타 성폭력 행위(Other acts of sexual violence, 03019)

소분류인 기타 성폭력 행위(03019)는 유효한 동의 없이 또는 위협, 유형력, 사기,

강요, 협박, 기망, 약물 또는 알코올의 사용, 권력의 남용 또는 취약한 지위를 이용하여 얻은 동의에 의해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하거나,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시도하거나, 또는 당사자/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적 관심을 갖고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에 해당 하나 강간(03011)이나 성폭행(03012)의 범주에서 기술하지 않은 행위를 의미한다.

나. 죄명코드 연계성 분석

1) 강간(03011)과의 죄명코드 연계성 분석

〈표 2-3-2〉 강간(03011)과의 죄명코드 연계

3수준/소분류		4수준/세분류		죄명코드
03011	강간(rape)	030111	유 형 력 에 의한 강간 (rape with force)	<p>[형법범]</p> <p>강간(0132010000, 0132010100), 유사강간(0132010200), 상습강간(0132180100), 상습유사강간(0132182200), 강간치상(0132040000, 0132040100), 강간상해(0132040200), 유사강간치상(0132040400), 유사강간상해(01320403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범죄가중법위반</li> </ul> <p>특수강간(0206025600), 특수강제추행(0206027900), 특수준강간(0206028000), 특수준강제추행(02060281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폭력특례법위반</li> </ul> <p>친족관계에의한강간(206042100), 특수강간(0206042400),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12060324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폭력처벌법위반</li> </ul> <p>특수강간(0206056400), 친족관계에의한강간(0206056800), 장애인강간(0206058300), 장애인유사성행위(0206058400),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0206059000), 13세미만미성년자 유사성행위(02060591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청법위반</li> </ul> <p>강간(1218032100), 유사성행위(1218032200)</p> <p>[특별범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학대처벌법위반</li> </ul> <p>상습강간(0209917700), 상습유사강간(0209917800), 상습강간상해(0209918300), 상습강간치상(0209918400), 상습유사강간상해(0209918500), 상습유사강간치상(0209918600)</p> <p>군인등강간(0415040100), 군인등강간상해(0415080100), 군인등강간치상(0415160100), 군인등유사강간(0415400100), 군인등유사강간상해(0415420100), 군인등유사강간치상(0415430100)</p>

3수준/소분류		4수준/세분류	죄명코드
03011	강간(rape)	030112	<p>[형법법]</p> <p>준강간(0132030000, 0132030100), 준유사강간(0132030300), 상습준강간(0132180300), 상습준유사강간(0132182300), 준강간치상(0132080000), 준강간상해(0132080200)</p> <p>미성년자등간음(0132120000), 미성년자간음(0132120100), 심신미약자간음(0132120200), 피보호자간음(0132140100), 피감독자간음(0132140200), 피감호자간음(0132150000, 0132150100), 혼인빙자간음(0132160000, 0132160100), 위계간음(0132160200), 상습미성년자간음(0132180500), 상습심신미약자간음(0132180500), 상습피보호자간음(0132180900), 상습피감독자간음(0132181000), 상습피감호자간음(01321811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범죄가중법위반</li> </ul> <p>특수준강간(02060280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폭력특별법위반</li> </ul> <p>특수준강간(0206041900), 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02060422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폭력처벌법위반</li> </ul> <p>특수준강간(0206056600), 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0206056800), 장애인위계등간음(0206058700), 장애인준강간(0209013700), 장애인준유사성행위(0209013800),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0206059400), 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0209014000), 13세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02090141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청법위반</li> </ul> <p>준강간(0216070900), 준유사성행위(0216071000), 위계등간음(1218032500), 장애인간음(1218032700)</p> <p>[특별법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학대처벌법위반</li> </ul> <p>상습준강간(0209918000), 상습준유사강간(0209918100), 상습준강간상해(0209918900), 상습준강간치상(0209919000), 상습준유사강간상해(0209919100), 상습준유사강간치상(0209919200), 상습미성년자간음(0209920800), 상습심신미약자간음(0209920900), 상습피보호자간음(0209921400), 상습피감독자간음(0209921500), 상습피감호자간음(02099216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형법위반</li> </ul> <p>군인등준강간(0415060100), 군인등준강간상해(0415100100), 군인등준강간치상(0415160100), 군인등준유사강간(0415410100), 군인등준유사강간상해(0415460100), 군인등준유사강간치상(0415470100)</p>

3수준/소분류		4수준/세분류		죄명코드
03011	강간(rape)	030113	의 제 강 간 (statutory rape)	[형법범] 미성년자의제강간(0132170000, 0132170100),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0132170300), 미성년자의제강간상해(0132170700),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0132171100), 상습미성년자의제강간(0132181200), 상습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0132181500), 상습미성년자의제상해(0132181400), 상습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0132182400)  [특별법범]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상습미성년자의제강간(0209921700), 상습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0209921800), 상습미성년자의제강간상해(0209922000), 상습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0209922100)
		030119	기타 강간 (other rape)	-

#### ㄱ) 유형력에 의한 강간(03011)에 해당하는 죄명코드

ICCS 매뉴얼에 따라 [세분류03011]인 유형력에 의한 강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형법범은 강간죄와 유사강간죄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이에 따라 형법 및 특별법에서 규정된 강간 및 유사강간행위는 모두 [세분류03011]에 해당한다.

「형법」 제297조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기삽입을 하는 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297조의2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강간과 유사강간은 미수범을 처벌하며(형법 제300조), 상습범에 대해 형을 가중하고 있다(제305조의2). ICCS는 강간과 유사강간과 살인과의 결합범 또는 결과적 가중범인 강간치사 등의 경우 [대분류01]로 분류하고 있으나, 강간 및 유사강간과 상해와의 결합범 또는 결과적 가중범인 강간치상 등은 별도의 분류가 없어 [세분류03011]에 해당한다. 1994년 성폭력관련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특정범죄가중법」(법률 제4291호, 1990.12.31.일부개정, 시행 1990.12.31..) 제5조의7에서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 내지 제299조의 죄를 특수강간으로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전 「특정범죄가중법」중 강간과 관련된 범죄는 [세분류

030111]에 해당한다.<sup>59)</sup>

「성폭력처벌법」(법률 제12889호, 일부개정 2014.12.30.)과 (구)「성폭력특별법」(법률 제9932호, 2010.1.18. 타법개정, 2010.3.19.시행)에 규정된 성폭력범죄 중 강간,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범죄가 [세분류030111]에 해당한다.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의 죄와 형법 강간죄와 유사강간죄와의 결합범에 대해 처벌규정을 두고 있고, 같은조제2항은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와 형법 강간죄와 유사강간죄의 결합범에 대해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제4조는 흥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에 대해 특수강간으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제5조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에 의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제1항)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6조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제1항)과 유사강간행위를 한 경우(제2항)에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제7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제1항)과 유사강간행위를 한 경우(제2항)에 대해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19세미만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아청법」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및 제339조의 죄와 「성폭력처벌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에 대해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제7조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하는 행위, 제2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제1호),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제2호)에 대해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59) 「성폭력처벌법」과 「특정범죄가중법」은 형법범죄에 대해 형벌을 가중 또는 감경하는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는 특별법으로 2003년부터 검찰청의 《범죄분석》에서 위반행위별로 해당 형법범죄에 포함되고 있다. 김지선, 홍영오, 『범죄분석 활용도 제고방안에 대한 연구』, 대검찰청, 2015, 30쪽.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보호자 등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및 처리절차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아동학대처벌법」(법률 제14224호, 2016.5.29. 일부개정, 2017.5.30. 시행)은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형법」 제297조 강간죄,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에 대한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제6조)을 두어 [세분류030111]인 유형력에 의한 강간에 포함된다. 또한 19세 미만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아청법」(법률 제14236호, 2016.5.29. 일부개정)은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행위(제1항), 유사강간행위(제2항)에 대해 법정형을 가중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군인에게 적용되는 「군형법」 제92조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본 법상 군인 및 군인에 준하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한 행위에 대해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92조의 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본 법상 군인 및 군인에 준하는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강간죄와 유사강간죄는 미수범에 대해 처벌한다(제92조의5). 또한 상해와의 결합법과 상해에 이르는 결과적 가중범에 대해서는 형을 가중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제92조의7).

#### ㄴ) 유형력에 의하지 않은 강간(30112)에 해당하는 죄명코드

[세분류030112]인 유형력에 의하지 않은 강간은 유형력이나 유형력을 행사하겠다는 위협을 제외한 사기, 강요, 기망, 약물 또는 알코올의 사용, 권력의 남용, 취약한 지위의 이용, 또는 이익의 공여나 수령으로 얻은 동의에 의한 성적 삽입행위를 의미한다. 이에 해당하는 범죄유형은 크게 위력·위계 등에 의하거나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간음행위로 나눌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형법과 특별법은 모두 [세분류030112]에 해당한다.

우선 위력·위계 등에 의한 간음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죄명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위계는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는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의미하며,<sup>60)</sup>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유형적·무형적 세력을 말하고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sup>61)</sup> 「형법」 제302조는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행위에 대해 처벌규정을 두고 있고, 제303조제1항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행위에 대해 처벌규정을 두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간음을 한 행위에 대해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개정 전 「형법」 제304조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각 조문들은 위력·위계의 주체와 대상, 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각 죄명코드가 구성되어 있다. 「성폭력처벌법」과 (구)「성폭력특별법」에도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 행위가 규정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13세미만미성년자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제7조)이다. 「성폭력처벌법」의 개정으로 제6조제6항이 신설되어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행위에 대해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규정 및 처리규정을 두고 있는 「아동학대처벌법」은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제302조 미성년자에 대한 위계·위력간음과 제303조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에 대한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제6조)을 두어 [세분류030112]인 유형력에 의하지 않은 강간에 포함된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죄명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간음 또는 유사강간행위에 대해 준강간과 준유사강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준강간과 준유사강간은 미수범을 처벌하며(형법 제300조), 상해와의 결합범과 결과적 가중범인 준강간치상 등을 처벌한다(형법 제301조). 그리고 상습범에 대해 형을 가중하고 있다(형법 제305조의2). 개정 전 「특정범죄가중법」에서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준강간을 한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성폭력처벌법」과 (구)「성폭력특별법」에서 준강간 및 준유사강간을 처벌하고 있는

60)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5074 판결; 대법원 2002.7.12, 선고, 2002도2029 판결 등 참조.

61) 대법원 2005. 7. 27 선고 2004도5868 판결 참조.

규정은 특수강도강간등(제3조), 특수강간 등(제4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제5조), 장애를 이용한 준강간(제6조제4항),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등(제7조), 강간 등 상해·치상(제8조)이다. 「군형법」 제92조4는 본 법상 군인 및 군인에 준하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행위에 대해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며, 미수범에 대해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제92조의5). 또한 상해와의 결합법과 상해에 이르는 결과적 가중범에 대해서는 형을 가중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제92조의7). 19세 미만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아청법」은 제7조제4항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간·준유사강간 행위, 동조제5항에서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제8조제1항에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 ㄷ) 의제강간(030113)에 해당하는 죄명코드

[세분류0301113]인 의제강간(statutory rape)은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동의할 수 있는 연령 미만의 사람 또는 법률상의 사유로 동의능력 없는 사람과 행한 성적 삽입 행위를 의미한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한 자”에 대해 처벌규정으로 두고,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동의할 수 없는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정하여 비록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범죄화하고 있다. 우리 「형법」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음과 유사강간 이외에도 강제추행 행위 역시 처벌하고 있으나, [세분류0301113]에는 성적 삽입행위만이 포함되어 이 분류에서는 제외한다. 미성년자의제강간과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역시 미수범을 처벌하며(형법 제300조), 상습범에 대해 형을 가중하고 있다(형법 제305조의2).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규정 및 처리규정을 두고 있는 「아동학대처벌법」은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제305조 미성년자의제강간에 대한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제6조)을 두어 [세분류0301113]인 의제강간에 포함된다.

2) 성폭행(03012)과의 죄명코드 연계성 분석

〈표 2-3-3〉 성폭행(03012)과의 죄명코드 연계

3수준/소분류	4수준/세분류	죄명코드
03012	성 폭 행 (sexual assault)  030121	<p>[형법범]</p> <p>강제추행(0132020000,0132020100), 준강제추행(0132030200), 상습강제추행(0132180200), 상습준강제추행(0132180400), 강제추행치상(0132060000,0132060100)/상해(0132060200), 준강제추행치상(0132100000,0132100100)/상해(0132100200)</p> <p>미성년자등추행(0132130000),미성년자추행(0132130100), 심신미약자추행(0132130200), 상습미성년자추행(0132180700), 상습심신미약자추행(01321808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범죄가중법위반</li> <li>특수강제추행(0206027900), 특수준강제추행(0206028100)</li> <li>• 성폭력특별법위반</li> <li>특수강제추행등(0206030800), 특수강제추행(0206042600), 특수준강제추행(0206056700),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0206041700),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0206031400),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0206042300)</li> <li>• 특정강력범죄법위반</li> <li>강제추행(0206032100)</li> <li>• 성폭력처벌법위반</li> <li>특수강제추행(0206056500), 특수준강제추행(0206056500),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0206057800),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0206057900), 장애인강제추행(0206058500), 장애인 위계등추행(0206058800), 장애인준강제추행(0209013900),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0206059200),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0206059500), 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0209014200), 주거침입강제추행(0209012100), 주거침입준강제추행(0209012400), 절도강제추행(0209012700), 절도준강제추행(0209013000), 특수강도강제추행(0209013300), 특수강도준강제추행(0209013600)</li> <li>• 아청법위반</li> <li>강제추행(1218032300), 준강제추행(0216071100), 위계등추행(1218032600), 장애인추행(1218032800)</li> </ul> <p>[특별범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학대처벌법위반</li> <li>상습강제추행(0209917900), 상습준강제추행(0209918200), 상습강제추행상해(0209918700)/치상(0209918800), 상습준강제추행상해(0209919300)/치상(0209919400), 상습미성년자추행(0209921000), 상습심신미약자추행(0209921100)</li> <li>• 군형법위반</li> <li>군인등강제추행(0415050100), 군인등강제추행미수(0415050110), 군인등준강제추행(0415070100), 군인등준강제추행미수</li> </ul>

3수준/소분류		4수준/세분류		죄명코드
03012	성 폭 행 (sexual assault)			(0415070110), 군인등강제추행상해(0415090100)/치상(0415170100), 군인등강제추행미수상해(0415130100)/치상(0415210100)
		030122	비 신체 적 성폭행 (non-physical sexual assault)	[형법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폭력특별법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0206031500)</li> <li>성폭력처벌법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0206058000)</li> </ul> [특별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동복지법위반 아동에대한성희롱등(0231040900), 상습아동에대한성희롱등(0231042900)</li> </ul> 남녀고용평등법위반(0232030400), 노인복지법위반(0231010500), 장애인복지법위반(0231010800),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0231011500), 철도안전법위반(0233030300), 항공보안법위반*(0242080100)
		030129	달리 분류 되지 않는 기타 성폭행 (other sexual assault not elsewhere classified)	[형법범] 공연음란*(0122110000)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0132170200),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0132170500),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상해(0132170900), 상습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0132181300), 상습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0132181900), 상습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상해(0132181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폭력특별법위반 카메라이용등촬영(0206032900)</li> <li>성폭력처벌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0206058100),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0209031600)</li> </ul> [특별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동학대처벌법위반 상습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0209921900), 상습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상해(0209922400)/치상(0209922500)</li> </ul>

\*죄명코드 상세화를 통해 연계가능한 죄명코드

ㄱ) 신체적 성폭행(030121)에 해당하는 죄명코드

[세분류030121]인 신체적 성폭행은 신체적인 접촉에 의해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하거나 이를 시도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때의 원치 않는 행위는 유효한 동의 없이 또는 위협, 유형력, 사기, 강요, 협박, 기망, 약물 또는 알코올의 사용, 권력의 남용 또는 취약한 지위를 이용하여 얻은 동의가 있는 경우를 모두 포괄한다. 이에 따라

[세분류030111]에 해당하는 범죄유형은 형법과 특별법에 규정된 추행,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대해 추행을 하는 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sup>62)</sup>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은 미수범을 처벌하며(형법 제300조), 상습범에 대해 형을 가중하고 있다(제305조의2). 강제추행과 상해와의 결합범 또는 결과적 가중범인 강제추행치상 역시 [세분류030121]에 해당한다.

개정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7에서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8의 죄를 저지른 경우 특수강제추행으로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중 강제추행과 관련된 범죄는 [세분류030121]에 해당한다. 또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약칭: 특정강력범죄법)에서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대해 누범에 대한형의 가중을 규정하고 있어, 이 역시 [세분류030121]에 해당한다.

「성폭력처벌법」과 (구)「성폭력특별법」에 규정된 성폭력범죄 중 추행 및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범죄가 [세분류030121]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성폭력특별법」 제6조제2항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제7조제2항은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를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에서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을 처벌하고 있는 규정은 특수강도강간 등(제3조), 특수강간 등(제4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제5조), 장애인 대상 강제추행(제6조제3항)과 장애를 이용한 준강제추행(동조제4항), 위계·위력 추행(동조제6항),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제7조제3항)과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동조제5항), 제8조인 강간 등 상해·치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제10조)과 공중

62)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050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제11조)이다.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규정 및 처리규정을 두고 있는 「아동학대처벌법」은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제302조 미성년자에 대한 위계·위력 추행에 대한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제6조)을 두어 [세분류030121]에 해당한다.

19세 미만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아청법」은 제7조제3항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행위, 동조제4항에서 준강제추행행위, 동조제5항에서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제8조제2항에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추행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본 법상 군인 및 군인에 준하는 사람에 대하여 추행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며, 제92조4는 본 법상 군인 및 군인에 준하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행위에 대해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미수범에 대해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며(제92조의5), 상해와의 결합법과 상해에 이르는 결과적 가중범에 대해서는 형을 가중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제92조의7).

#### ㄴ) 비신체적 성폭행(030122)에 해당하는 죄명코드

[세분류030122]인 비신체적 성폭행은 신체적 접촉에 의하지 않은 원치 않는 성적 행위나 당사자/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적 관심을 갖고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언어적인 성적 괴롭힘이나 성적 내용의 협박, 성적 성격의 스토킹행위 등이 해당한다.

우선 성적 괴롭힘과 관련된 행위는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특별법이나 행정규칙 또는 조례 등 자치법규에서 ‘성희롱’ 내지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로 규율되는 행위이다. ‘성희롱’에 관한 대표적인 법률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학교 및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sup>63)</sup>에 대해서

63)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으나 진정절차에 대한 규정이며 국가인권위원회에는 고발, 징계권고 등의 권한만이 부여되어 있을 뿐 성희롱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성적 괴롭힘 행위에 대해 형사법으로 범죄화하지 않고 있으나, 신체접촉이 있는 성희롱은 형법상 강간 또는 추행행위에 포섭된다. ICCS의 비신체적 성폭행(030122)에 해당하는 성적 괴롭힘과 관련된 범죄행위에 대한 내용은 특별법들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특별법에서 성희롱 금지 의무와 의무 위반 시 벌칙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에 대해 금지의무와 관련된 벌칙규정을 두는 특별법은 아래의 <표 2-3-4>와 같다.

<표 2-3-4> 성희롱 처벌규정을 둔 특별법

법령	조항(표제)	조문내용
노인복지법	제 39 조 의 9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제 55 조 의 3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9조의9제1호(폭행에 한한다)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장애인복지법	제 59 조 의 7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
	제86조(벌칙)	① 제59조의7제1호의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여객은 여객열차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철도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제78조(벌칙)	⑤ 제47조제5호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

법령	조항(표제)	조문내용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①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제50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제23조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사람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제17조제2호)를 한 자에 대해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제71조제1항제1호및제1호의2). 이에 대해 상습범(제72조)과 미수범(제73조)을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행위는 반드시 접촉을 요하지 않고 비접촉적인 행위들을 포함하며,<sup>64)</sup>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는 강간이나 추행에 이르지 않은 정도를 의미한다.<sup>65)</sup> 이와 관련된 죄명코드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이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을 제외한 나머지 특별법들인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철도안전법」, 「항공보안법」은 죄명코드가 각 특별법에 하나의 죄명코드만이 부여되어 있고 행위유형별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세분류030122]에 해당하는 행위로 포함시키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특별법들 역시 「아동복지법」과 마찬가지로 죄명코드를 별도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유일하게 성적 괴롭힘에 대해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법률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이다. 여기에서는 직장내 성희롱을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제2조제2호)이라 정의하고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예방교육 및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발생을

64) 재등학편, 『아동학대(위기개입편)』, 금강출판, 1998, 30쪽; 김혜경, “아동복지법상 금지규정의 형사법적 검토”, 『형사정책연구』 제21권 제1호(통권81호, 2010. 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48쪽 재인용.

65) 광병선, “아동학대의 형사정책적 대응”, 『법학연구』 제31집, 한국법학회, 2008, 433쪽.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제37조제2항제2호)와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하는 경우(제39조제1항),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되었는데도 지체 없이 행위자에게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제39조제2항제1호), 사업주가 근로자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제39조제2항제2호)에 대해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하는 경우(제39조제1항)는 [세분류030122]에 해당한다.

당사자/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적 관심을 갖고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로 대표적인 것이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특정인에게 보내는 행위이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와 (구)「성폭력특별법」 제14조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는 표제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에 대해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수사실무상 성적인 성격의 스토킹 행위 등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에 초점을 두고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누설이나 음란물유포행위 등을 활용하고 있으나, 법률의 성격상 성적 성격의 스토킹 행위 여부를 불문하므로 관련된 죄명코드가 [세분류030122]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ㄷ)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성폭행(030129)에 해당하는 죄명코드

[세분류030129]인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성폭행은 다른 세분류 범주에서 기술하지 않은 행위로, 신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 중인 사람을 그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찰함으로써 성적 만족을 얻는 행위인 관음(voyeurism)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ICCS의 매뉴얼에 따라 죄명코드를 연계해보면, 「형법」 중 성풍속과 관련된 범죄인 공연음란죄 및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가 여기에 해당된다.

우선 신체 일부 또는 전부를 노출하는 형태의 시각적인 성폭행에 대해서는 형법범주 중 공연음란이 해당한다. 그러나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가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나, 성풍속에 관한 죄로 성적인 공공질서에 위반한 행위(0802)에 해당하는 행위도 규율하고 있어 ICCS 분류체계에 따른 분류에서 쟁점이 된다. 이에

대해서는 쟁점에서 보다 자세히 서술하겠다.

다음으로 성적 행위 중인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관찰 또는 촬영, 관련 촬영물을 유포함으로써 성적 만족을 얻는 행위와 관련하여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들이 해당된다. 첫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와 (구)「성폭력특별법」 제14조의2는 카메라등 이용촬영이라는 표제로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행위(제1항),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행위(제2항), 영리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행위에 대해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카메라이용등촬영은 미수범을 처벌한다(제15조). 둘째,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는 훑쳐보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제12조에서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죄명코드 분류상의 쟁점

##### 1) 죄명코드 상세화를 통해 ICCS 분류가능한 죄명코드

###### ㄱ) 강간(03011)과 성폭행(03012)으로 분류되지 않는 죄명코드

(구)「성폭력특별법」과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범죄행위들은 [중분류0301]인 성폭력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에 관한 죄명코드들은 대부분 강간(03011)과 성폭행(03012)의 행위들을 한 죄명코드에 포함하고 있어 ICCS에 따라 분류할 수 없다.

(구)「성폭력특별법」을 살펴보면, 제7조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형법」 제297조 강간의 죄(제1항), 제298조 강제추행의 죄(제2항),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의 죄

(제3항)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8조는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행위와 추행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다. 제8조의2는 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형법」 제297조 강간의 죄(제1항), 유사강간행위(제2항), 제298조 강제추행의 죄(제3항),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의 죄(제4항),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행위(제5항)을 규정하고 있다.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이라는 표제를 가진 제11조는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 행위(제1항),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추행한 행위(제2항), 장애인의 보호·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감독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행위(제3항)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죄명코드는 각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성년자의제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각 조문당 하나의 죄명코드가 부여되어 있어, 강간과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이 하나의 죄명코드에 포함된다. ICCS는 성적 삽입행위의 여부에 따라 소분류를 강간(03011)과 성폭행(03012)으로 분류하고 있어, 위의 죄명코드들은 이러한 분류체계를 따를 수 없다.

이와 유사한 문제는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와 강간·강제추행·준강간등과의 결합범을 규정한 제5조이나 「성폭력처벌법」상 범죄와 상해와의 결합범 또는 상해에 이르는 결과적 가중범을 규정하고 있는 제9조에서도 나타난다. 제5조의 경우 강간·강제추행·준강간등과 결합이 되는 범죄에 따른 죄명코드는 있으나, ‘강간등’이라는 포괄된 죄명코드를 사용하고 있어 강간(03011)과 성폭행(03012)의 행위유형에 따른 분류는 할 수 없다. 제9조는 특수강도강간 및 강제추행 등, 특수강간 및 강제추행 등, 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 등, 친족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 등, 장애인에 대한 간음 및 추행행위 내지 이를 시도한 행위가 상해죄와 결합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이다. 그러나 죄명코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치상)’만으로 분류되어, 하

나의 죄명코드에 ICCS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분류와 세분류에 해당하는 행위들이 결합되어 있다. 「성폭력처벌법」은 「성폭력특별법」을 폐지하고 2010.4.15.에 제정한 것으로 대부분의 성폭력범죄 규정이 「성폭력특별법」과 동일하다. 이에 따라 제3조 특수강도강간 및 제8조 강간 등 상해·치상 역시 (구)「성폭력특별법」 제5조 및 제9조와 동일한 쟁점을 가진다.

제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제7조 역시 (구)「성폭력특별법」 제8조의2와 규정이 동일하여, 앞서 설명한 쟁점이 나타난다. 다만, 추후에 각 조항별로 죄명코드를 추가하여 강간, 유사성행위, 강제추행으로 구분하게 되었으나 여전히 제7조제4항인 준강간·준강제추행 행위에 대한 규정과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으로 각각의 행위에 대한 구분없이 하나의 죄명코드만을 부여하고 있어, ICCS 분류체계에 따른 분류가 가능하지 않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제6조는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구)「성폭력특별법」 제8조에서 규정하던 장애인준강간 이외에도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형법」 제297조 강간 행위(제1항), 유사강간 행위(제2항),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행위(제3항),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해 간음한 행위(제5항),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해 추행한 행위(제6항),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규정(제8항)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죄명코드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추후에 각 조항별로 죄명코드를 추가하여 강간, 유사성행위, 강제추행으로 구분하게 되어있었으나 여전히 제6조제4항 장애인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규정과 관련하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으로, 제6조제7항 장애인 보호시설장 또는 종사자에 의한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위계·위력간음·추행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으로 죄명코드를 부여하고 있어, ICCS 분류체계에 따른 분류가 가능하지 않다.

이와 유사한 쟁점은 다른 특별법에서도 나타난다. 개정 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

의7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 강간죄를 범한 경우(제1항),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제2항), 「형법」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제3항)에 대해 처벌규정을 두고 있었으며, 미수범(제4항), 살인에 이르는 결과적 가중범(제5항), 상해에 이르는 결과적 가중범(제6항)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각 행위의 유형에 따른 구별 없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으로 하나의 죄명코드만을 부여하고 있어, ICCS 분류 체계에 따른 분류가 가능하지 않다.

19세 미만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아청법」 제9조는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행위(제1항), 유사강간행위(제2항), 강제추행행위(제3항), 준강간·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행위(제4항),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행위(제5항)와 상해와의 결합범 또는 상해에 이르는 결과적 가중범에 대해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각 행위의 유형에 따른 구별 없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으로 죄명코드를 분류하고 있어, 강간(03011)과 성폭행(03012)으로 분류가 불가능하다. 또한 일정 기간동안 제7조에 대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이라는 죄명코드를 사용하여, 강간과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등, 위계위력간음추행을 구분하지 않았다. 또한 일정 기간동안 제7조4항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이라는 죄명코드를 사용하여, 준강간과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을 구분하지 않았다. 「아청법」의 이전 법률인 (구)「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법률 제6261호,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역시 제10조에서 19세 미만 여성 청소년에 대해 「형법」 제297조 강간죄를 범한 경우(제1항), 19세 미만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제2항), 「형법」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제3항),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행위를 한 경우(제4항)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고,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제5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각 행위의 유형에 따른 구별 없이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으로 하나의 죄명코드로 분류하고 있어, 강간(03011)과 성폭행(03012)으로 분류가 불가능하다.

〈표 2-3-5〉 강간(03011)과 성폭행(03012)으로 분류되지 않는 죄명코드

3수준/소분류		죄명코드
03011	강간(rape)	[형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폭력특별법위반</li> </ul>
03012	성폭행(sexual assault)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0206030900), 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0206031000), 강간등상해·치상(0206031100),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0206031300), 미성년자의제강간등(0206032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폭력처벌법위반</li> <li>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0206057200),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0206057200), 강간등상해(0206057400), 강간등치상(0206057500), 장애인준강간등(0206057200), 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0206059300)</li> <li>특정범죄가중법위반</li> <li>특수강간등(0206059700)</li> <li>아청법위반</li> <li>강간등상해(0216070500), 강간등치상(0216070600), 준강간등(1218032400)</li> <li>청소년성보호법위반</li> <li>청소년강간등(0218031700)</li> </ul>

#### ㄴ) 유형력에 의한 강간(03011)과 유형력에 의하지 않은 강간(03012)로 분류되지 않는 죄명코드

(구)「성폭력특별법」 제6조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를 저지른 특수강간(제1항), 제298조 강제추행의 죄를 저지른 특수강제추행(제2항),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의 죄를 저지른 특수준강간 및 특수준강제추행(제3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죄명코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등)’만으로 구분되어 있어, 특수강간과 특수준강간 및 특수강제추행과 특수준강제추행을 별도로 분류하고 있지는 않다. ICCS 분류 기준에 따르면, [소분류030112]인 성폭행은 세분류의 기준을 신체적 접촉 여부로 두어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소분류03011]인 강간은 유형력의 존재 여부에 따라 세분류를 나누고 있어, 위의 죄명코드는 [세분류030111]과 [세분류030112]로 분류되지 않는다.

〈표 2-3-6〉 유형력에 의한 강간(030111)과 유형력에 의하지 않은 강간(030112)로 분류되지 않는 죄명코드

4수준/세분류		죄명코드
030111	유형력에 의한 강간 (rape with force)	[형법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0206030700)
030112	유형력에 의하지 않은 강간 (rape without force)	

ㄷ) 형법 각 장과 특별법 전체에 부여된 죄명코드

현재 대검찰청에서 사용하는 죄명코드를 살펴보면, 형법 각 장이나 특별법 전체에 대한 위반을 하나의 코드로 부여하고 있는 죄명코드들이 존재한다. 형법범과 관련된 죄명코드로 ‘정조에 관한 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교사, 방조 포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위반(교사, 방조 포함)’이 있다. 이 중 ‘정조에 관한 죄’의 경우는 개정 전 「형법」 제32장의 제목으로 [중분류0301]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 외 특별법의 경우에는 성폭력범죄행위에 대한 규정 이외에 피해자 신원 및 사생활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이나 피해자의 인적 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한 행위에 대해 처벌규정을 두고 있고, 특히 「성폭력처벌법」에는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 정보등록과 관련된 위반행위를 규정하고 있어, ICCS의 분류에 따라 성폭력(0301)에 포함되지 않는 범죄행위들을 포괄하고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방조 포함)’과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방조 포함)’이라는 죄명 코드 역시 각각 「아청법」과 (구)「청소년성보호법」 전체에 대한 죄명코드로, 여기에서는 19세 미만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 [대분류03]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외에 관련 수사 및 재판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피해자 신원 및 사생활에 관한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행위 및 피해자의 인적 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한 행위에 대해 처벌규정을 두고 있어, [대분류03]에 해당하지 않은 범죄행위들을 포괄하고 있다.

성적 괴롭힘에 대해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법률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이다.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하는 경우(제39조제1항)에 대해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세분류030122]인 비신체적 성폭행에 해당한다. 그러나 죄명코드가 특별법에 하나로 부여되어 있어, 그 외 남녀차별행위나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등의 다른 범죄행위와 구별되지 않는다. 이와 유사하게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철도안전법」, 「항공보안법」 역시 성적 괴롭힘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죄명코드가 각 특별법에 하나의 죄명코드만이 부여되어 있고 행위유형별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세분류030122]에 해당하는 행위만을 분류할 수 없다.

## 2) ICCS 범죄행위 분류에 부합하지 않은 공연음란죄

ICCS는 [세분류030129]인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성폭행의 분류 기준에 대한 예시로 신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출하는 행위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중분류0802]인 성적인 공공질서를 위반한 행위와 구분하고 [중분류0301]인 성폭력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형법은 대중 앞에서의 성적 행위를 공연하는 행위와 원치 않는 타인에게 성기를 노출하는 행위를 모두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로 규정하고 있어, ICCS 범죄행위 분류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 3) 결합범의 분류 문제

형법과 특별법에는 강도 및 절도 등과 강간 등 성폭력범죄와의 결합범에 대한 규정이 있다. 「형법」 제339조는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며, 「형법」 제340조제3항은 다중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내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자가 강간한 경우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이다. 이들의 범죄는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가 아닌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에 의한 「형법」 제339조 및 제340조의 죄에 대해서는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제2항제1호라목에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3조제1항은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의 죄와 형법 강간죄와 유사강간죄와의 결합범에 대해 처벌규정을 두고 있고, 같은조제2항은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

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의 죄와 형법 강간죄와 유사강간죄의 결합범에 대해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구)「특정범죄 가중법」 제5조의6는 「형법」 제330조와 제331조의 절도가 동법 제297조 내지 제299조의 죄를 범한 경우(제1항)와 「형법」 제334조의 강도가 동법 제297조 내지 제299조의 죄를 범한 경우 및 미수범에 대해 처벌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합범에 대한 범죄분류체계는 한국의 범죄분류체계에서도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이러한 결합범의 분류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제7장에서 상세히 논하도록 한다.

## 2. 성적 착취(Sexual exploitation, 0302)

ICCS의 매뉴얼에 따르면, 중분류인 성적 착취(0302) “성매매 또는 성적 행위로부터 금전적, 사회적, 또는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취약한 지위를 이용하거나, 권력 또는 신뢰를 남용하거나, 또는 유형력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대분류 03]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강간(03011), 성폭력(0301)은 제외되며, 성매매 범죄, 포르노그래피 범죄, 기타 근친상간 및 노출 등 공공의 성적 기준에 반하는 행위(0802), 그 외 직위의 남용(07033), 폭행 및 협박(0201), 노예 행위 및 착취로서 성적 성격의 유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0203), 괴롭힘 및 스토킹(0207), 신분범(11021)은 제외된다. 성매매(08021)는 성적 활동에 대하여 금전 또는 기타 형태의 보상을 교환하는 행위로 행위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성적 착취(03021)에 해당하지 않는다. 성적 착취 목적 인신매매(02041) 역시 성적 착취(03021)에서 제외되는데, 이는 [대분류 02]인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초래하거나 의도한 행위’로 분류되어 있다. ICCS의 매뉴얼에 따르면, 비록 성적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라고 하더라도 사람을 모집, 운송, 구금 또는 수령하는 행위에 초점을 두어 인신매매(0204)로 분류한다.

## 가. 개념 및 행위

### 1) 성인에 대한 성적 착취(Sexual exploitation of adults, 03021)

소분류인 성인에 대한 성적 착취(03021)은 성인을 대상으로 성매매 또는 성적 행위로부터 금전적, 사회적, 또는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취약한 지위 이용, 권력 또는 신뢰의 남용, 유형력의 사용 또는 유형력 사용에 대한 협박을 한 행위를 의미한다. ICCS의 매뉴얼에 따르면, 여기에는 성매매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유인 또는 조달하는 행위, 포주 행위, 성매매 업소 유지, 운영, 또는 성매매 업소임을 인식하고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 타인의 성매매를 목적으로 건물 기타 장소를 임대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이와 비교하여 성매매(08021)에 대해서는, 공공의 성적 기준(최소한의, 공공에게 위해로 여겨지나 금지된 성기삽입 형태와 관련된 성적 행위를 방지하는 기준)에 반하는 행위로, 금전이나 기타 보상을 위해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성적 서비스를 구매하는 행위, 아동 성관광에 해당하지 않는 성관광을 포함한다. 이는 ICCS가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장소 및 자금을 제공하여 제3자가 이득을 보는 행위를 성매매(08021)가 아닌 성적 착취(0302)로 분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2)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03022)

소분류인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03022)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또는 성적 행위로부터 금전적, 사회적, 또는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취약한 지위 이용, 권력 또는 신뢰의 남용, 유형력의 사용 또는 유형력 사용에 대한 협박을 한 행위를 의미하지만, 성인 대상 성적 착취에는 포함되지 않은 포르노그래피 범죄, 성매매 범죄, 성적 목적 아동 유인이 포함되어 있다. ICCS 매뉴얼에 따르면,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03022)에는 아동 포르노그래피 소지, 아동 포르노그래피 제작, 성매매 목적으로 아동을 모집, 유인, 조달하는 행위, 포주 행위, 아동 성매매 업소 유지, 운영, 또는 아동 성매매 업소임을 인식하고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 아동 성매매를 목적으로 건물 기타 장소를 임대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이 때 아동의 정의는 각 국의 국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범위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ICCS는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03022)는 4가지의 세분류로 나누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세분류는 아동 포르노그래피(030221)로, 여기서 아동 포르노그래피라 함은 최소한, 성적으로 노골적인 행동을 하는 아동에 대한 시각적 표현 또는 묘사, 성적으로 노골적인 행동에 연루되었거나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아동으로 보이는) 실제 사람에 대한 시각적 표현 또는 묘사, 또는 성적으로 노골적인 행동에 연루된 실재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실제적 영상을 의미한다.<sup>66)</sup> 아동 포르노그래피(030221)은 아동 포르노그래피 제작 내지 아동 포르노그래피 소지, 배포, 방송, 전송, 전시,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아동을 조달, 알선, 방조, 또는 통제하는 행위 모두가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아동 포르노그래피 소지, 아동 포르노그래피 공유, 아동 포르노그래피 제작, 아동 포르노그래피 다운로드, 아동으로부터 성적 영상 또는 기타 아동 학대 자료를 조달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두 번째 세분류는 아동 성매매(030222)로, 성매매를 목적으로 아동을 모집, 유인 및/또는 조달하거나 성매매 아동의 성적 서비스를 조달하는 행위가 해당된다. 그러므로 아동의 성적 서비스에 대한 대가 지급, 성매매 목적으로 아동을 모집, 유인 또는 조달하는 행위, 포주 행위, 아동 성매매 업소 유지, 운영, 또는 아동 성매매 업소임을 인지하고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 아동 성매매를 목적으로 건물 기타 장소를 임대하는 행위 등은 모두 아동 성매매로 분류된다.

세 번째 세분류는 성적 목적 아동 유인(030223)으로, 아동과 접촉한 후, 성적 목적의 만남에 이르게 하는 물리적 행위를 의미한다. 이른바 그루밍(grooming)이라고 이야기되는 성적 목적의 아동에 대한 유혹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에 대한 범죄화는 성인이 성적인 행위를 하고자 하거나 아동 포르노그래피를 제작하려는 목적으로 성적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연령의 아동을 만나고자 정보를 제공하거나 소통하고자 하는 의도적인 목적 자체를 처벌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sup>67)</sup> 구체적으로는 사이버 유인, 인터넷을 통하여 아동과 접촉한 후 아동을 성적으로 노골적인 자료에 노출시키

66) 이 규정은 the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gainst Sexual Exploitation and Sexual Abuse의 제20조에 근거하고 있다. ICCS version1.0(2015.3), UNODC, 각주 48).

67) Council of Europe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 The European legislative framework and outline of Council of Europe conventions and European Union policy.", Page 63. Web: <<http://www.coe.int/t/dg3/children/1in5/Source/PublicationSexualViolence/Ruelle.pdf>>.

는 행위, 아동을 성적으로 노골적인 자료에 점차적으로 노출시키기 위해 아동과 직접 접촉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네 번째 세분류는 앞의 세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로, 아동과의 중대하게 부적절한 행위, 아동에 대한 유혹, 아동으로 하여금 성적 행위 또는 포르노그라피를 보도록 강제하는 행위, 사람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이동한 장소에서 아동과 성적 행위를 행하는 형태의 아동에 대한 상업적인 성적 착취인 아동 대상 성관광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 3) 기타 성적 착취 행위(Other acts of sexual exploitation, 03029)

기타 성적 착취행위(03029)는 성매매 또는 성적 행위로부터 금전적, 사회적, 또는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취약한 지위를 이용하거나, 권력 또는 신뢰를 남용하거나, 또는 유형력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에 해당하나 위에서 기술한 소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성적 착취를 모두 포괄한다.

## 나. 죄명코드 연계성 분석

〈표 2-3-7〉 성적 착취(0302)의 세분류별 죄명코드 연계

3수준/소분류		4수준/세분류		죄명코드
03021	성인에 대한 성적 착취 (sexual exploitati on of adults)	-	-	[특별법범] • 성매매처벌법위반 성매매강요등(0231011600), 성매매알선등(0231011700), 성매매광고(0231011800)
03022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 (sexual exploitati on of children)	030221	아동 포르노 그라피 (child pornograp hy)	[형법범] • 청소년성보호법위반 음란물온라인서비스제공(0216070200), 음란물소지(0216070300), 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배포등 (0218031500) • 아청법위반 음란물온라인서비스제공(0216070200), 음란물소지(0216070300), 음란물제작·배포등(1218031500)

3수준/소분류		4수준/세분류	죄명코드
03022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 (sexual exploitati on of children)		030222 아동 성매매 ( c h i l d prostitution)	<p>[형법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성보호법위반 성매수(0218031200), 강요행위등(0218031300) 알선영업행위등(0218031400)</li> <li>• 아청법위반 성매수등(1218031200), 강요행위등(1218031300), 알선 영업행위등(1218031400)</li> </ul> <p>[특별법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매매처벌법위반 청소년(0231011400)</li> <li>•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상습성매매약취(0209914700), 상습성매매유인(0209915100)</li> <li>• 아동복지법위반 아동에대한음행매개(0231040800), 상습아동에대한음행 매개(0231042800)</li> </ul>
		030223 성적 목적 아동 유인 ( s e x u a l grooming of children)	-
		030229 기타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 ( o t h e r s e x u a l exploitation of children)	<p>[형법범]</p> <p>추행피약취미성년자수수(0131171300), 간음피약취미성 년자수수(0131171500), 추행피유인미성년자수수 (0131171400), 간음피유인미성년자수수(0131171600)</p> <p>[특별법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상습추행약취(0209913800), 상습간음약취(0209913900), 상습결혼약취(0209914000), 상습추행유인(0209914200), 상습간음유인(0209914300), 상습결혼유인(0209914400), 상습성적착취약취(0209914800), 상습성적착취유인(0209915200)</li> <li>• 아동복지법위반 아동에대한음행강요(0231040700), 상습아동에대한음행 강요(0231042700)</li> </ul>
03029	기타 성적 착취 행위 ( o t h e r a c t s o f s e x u a l e x p l o i t a t i o n )	-	-

## 1) 성인에 대한 성적착취(03021)에 해당하는 죄명코드

[소분류03021]인 성인에 대한 성적 착취는 성인을 대상으로 성매매 또는 성적 행위로부터 금전적, 사회적, 또는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취약한 지위 이용, 권력 또는 신뢰의 남용, 유형력의 사용 또는 유형력 사용에 대한 협박을 한 행위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ICCS의 매뉴얼 예시에 의하면 성매매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유인 또는 조달하는 행위, 포주 행위, 성매매 업소 유지, 운영, 또는 성매매 업소임을 인식하고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 타인의 성매매를 목적으로 건물 기타 장소를 임대하는 행위 등 성매매 알선행위가 포함된다.

[소분류03021]과 관련된 대표적인 특별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성매매처벌법)로, 여기에서는 성매매 및 알선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성매매 알선행위 및 강요행위에 대한 규정이 [소분류03021]에 해당한다.

「성매매처벌법」 제18조는 성매매 강요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항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행위(제1호),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행위(제2호), 친족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보호·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행위(제3호),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사람(제4호)에 대해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제2항은 제1항의 죄(미수범 포함)를 범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약속한 행위(제1호), 위계 또는 위력으로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행위(제2호),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제3호)에 대해 가중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제3항은 다른 사람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행위(제1호),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을 고용·관리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낙태하게 하거나 불임시술을 받게 한 행위(제2호),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한 경우(제4호)에 대해 가중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제4항은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마약 등을 사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행위(제1호),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제2호)에 대해 가중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한 죄명코드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으로, 하나의 죄명코드로 분류하고 있다.

「성매매처벌법」 제19조는 성매매알선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제1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 즉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제1호)와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행위(제2호),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행위(제3호)에 대해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제2항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경우(제1호),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제2호),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제3호)를 규정하여 알선행위 등으로 대가를 얻은 사람에 대해 가중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한 죄명코드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교사와 방조, 미수를 포함하여 별도의 죄명코드로 분류하고 있다.

「성매매처벌법」 제20조는 성매매 광고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제1항은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는 행위(제1호),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는 행위(제2호),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는 행위(제3호)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을 제작·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를, 제3항은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한 죄명코드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로, 교사와 방조를 포함하여 별도의 죄명코드로 분류하고 있다.

## 2)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03022)에 해당하는 죄명코드

## 가) 아동 포르노그래피(030221)에 해당하는 죄명코드

[세분류030221]에 해당하는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특별법은 19세 미만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아청법」이다.<sup>68)</sup> 여기에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해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신체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제2조제5호)이라 규정하고 있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이라는 표제로 제11조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하는 행위(제1항),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는 행위(제2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는 행위(제3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하는 행위(제4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는 행위(제5항)에 대해 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제6항)을 두고 있다. 또한 제17조제1항에서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sup>69)</sup> ICCS는 [세분류030221]에 아동 포르노그래피 제작

68) 2009년부터 대검찰청 범죄분류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각 범죄유형별로 형법으로 분류되고 있다.

69)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가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검색하거나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를 할 경우 해당 화면이나 전송프로그램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배포·소지한 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문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제67조제1항)을 두고 있다.

내지 아동 포르노그래피 소지, 배포, 방송, 전송, 전시,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아동을 조달, 알선, 방조, 또는 통제하는 행위 모두가 해당한다고 하고 있어, 「아청법」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범죄는 [세분류030221]에 해당한다.

#### 나) 아동 성매매(030222)에 해당하는 죄명코드

[세분류030222]인 아동 성매매에는 성매매를 목적으로 아동을 모집, 유인 및/또는 조달하거나 성매매 아동의 성적 서비스를 조달하는 행위로 아동의 성적 서비스에 대한 대가 지급, 성매매 목적으로 아동을 모집, 유인 또는 조달하는 행위, 포주 행위, 아동 성매매 업소 유지, 운영, 또는 아동 성매매 업소임을 인지하고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 아동 성매매를 목적으로 건물 기타 장소를 임대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세분류030222]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죄명은 (구)「청소년성보호법」과 「아청법」, 「성매매 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이다.

(구)「청소년성보호법」<sup>70)</sup>은 19세 미만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와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등을 규정하였다. 제5조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제6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거나(제1항제1호),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거나(제1항제3호), 영업으로 청소년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제1항제4호)를 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로 규정하고, 이로 인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는 받거나 요구, 약속한 행위에 대해 형을 가중하고(제2항), 이러한 행위들은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었다. 또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을 두었다(제6조제4항). 청소년 성매매에 대해 알선영업행위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데, 제7조제1항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제1호),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제2호),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고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거나(제3

70) 2000.7.1.부터 시행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2007.8.3.전부개정되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2008.2.4.시행되었으며, 그 이후 2010.1.1.부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9765호, 2009.6.9. 공포, 2010.1.1. 시행)로 개정되었다.

호), 영업으로 성을 사고 파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업소 또는 알선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제4호)를 규정하고 있고, 제7조제2항은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하거나(제1호),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거나(제2호),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제3호),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기로 약속하는 행위(제4호)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하는 행위(제7조제3항) 역시 처벌이 규정되어 있다.

「아청법」은 (구)「청소년성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 성매매와 유사한 내용이나 일부 형량을 가중하거나 구성요건을 정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3조 제1항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해 처벌규정이며 (구)「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보다 법정형이 상향되었다. 그러나 (구)「청소년성보호법」에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았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에 대해 처벌규정(제13조제2항)을 두어 비록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지 않았더라도 유인 또는 권유한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등(제14조)은 (구)「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와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제1항제2호에 위력이라는 구성요건이 추가되었다. 청소년에 대한 알선영업행위(제15조)는 (구)「청소년성보호법」 제12조와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제1항제2호)와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경우(제2항제2호)에 대해 처벌규정을 추가하였다.

「성매매처벌법」 제18조제2항제2호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행위에 대해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 청소년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한다. 이러한 규정과 관련하여 죄명코드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이다.

그 외에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제17조제2호)를 한 자에 대해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제71조제1항제1호및제1호의2). 이 중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 성매매나 성행위를 매개하는 음행매개행위는 아동 성매매(030222)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된 죄명코드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매개)’이다. 이에 대해 상습범(제72조)과 미수범(제73조)을 처벌하고 있다.

#### ㄷ) 성적 목적 아동 유인(030223)에 해당하는 죄명코드

[세분류030223]인 성적 목적 아동 유인은 아동과 접촉한 후 성적 목적의 만남에 이르게 하는 물리적 행위를 의미한다. ICCS 매뉴얼에 따르면, 사이버 유인, 인터넷을 통하여 아동과 접촉한 후 아동을 성적으로 노골적인 자료에 노출시키는 행위, 아동을 성적으로 노골적인 자료에 점차적으로 노출시키기 위해 아동과 직접 접촉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우리 형법이나 특별법에서는 이러한 성적 목적의 아동 행위 자체를 범죄화하고 있지는 않으나, 「형법」 제288조에 따라 추행, 간음, 성적 목적으로 유인<sup>71)</sup>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미성년자에 대한 제288조의 행위 일부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죄명코드가 피유인자가 성년인지 미성년지를 구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세분류030223]에 해당하기는 어렵다. 이에 대해서는 쟁점에서 상술하고자 한다.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아동에게 성적으로 노골적인 자료인 청소년유해매체물과 관련된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2와 제73조제3호에 두고 있으나, 이 규정에는 성적 목적의 존재 여부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세분류030223]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ㄹ) 기타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030229)에 해당하는 죄명코드

[세분류030229]인 기타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에는 아동과의 중대하게 부적절한 행위, 아동에 대한 유혹, 아동으로 하여금 성적 행위 또는 포르노그래피를 보도록 강제하는 행위, 사람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이동한 장소에서 아동과 성적 행위를 행하는 형태의 아동에 대한 상업적인 성적 착취인 아동대상 성관광 등이 해당된다.

71) 여기에서의 유인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실력적 지배를 설정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성적 목적 아동 유인보다는 그 행위의 범위가 좁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성적 착취(0302)에 해당하는 형법범의 대표적인 유형은 「형법」 제288조<sup>72)</sup>에 규정된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이다. 「형법」 제28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취’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로, 이때에 의사에 반하는 수단은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을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 청소년 등 취약한 지위에 있는 경우 사실상의 힘을 포함한다.<sup>73)</sup> 또한 ‘유인’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때 사실적 지배는 그 사람에 대한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한다.<sup>74)</sup> 제288조는 피약취자 또는 피유인자의 연령에 따른 구성요건을 두고 있지 않아, 이와 관련된 죄명코드 역시 미성년자에 대한 별도의 코드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제288조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행위를 규정한 제292조의 경우 수수행위에 대해서 추행 또는 간음 목적의 약취와 유인의 대상자 연령에 따른 별도의 죄명코드를 두고 있어, 추행 또는 간음 목적인 미성년자인 피약취자와 피유인자에 대한 수수 행위에 대해 [세분류 030229]로의 분류가 가능하다. 또한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보호자 등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및 처리절차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아동학대처벌법」은 「형법」 제288조 추행 등 목적의 약취, 유인 등에 대한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제6조)을 두어 [세분류 030229]에 포함된다.

그 외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제17조제2호)를 한 자에 대해 처벌규정을 두고 있고(제71조제1항제1호및제1호의2), 이에 대해

72) 「형법」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도 제2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73) 대법원 1990.2.13, 선고, 89도2558, 판결; 대법원 2009.7.9, 선고, 2009도3816, 판결 참조.

74) 서울고법 2002.4.12, 선고, 2001노3042, 판결; 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690 판결 참조.

상습범(제72조)과 미수범(제73조)을 처벌하고 있다. 이 중 18세 미만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 관련된 죄명코드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이며, 이러한 죄명코드는 [세분류030229]인 기타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에 해당한다.

**다. 죄명코드 분류상의 쟁점**

1) 죄명코드 상세화를 통해 ICCS 분류가능한 죄명코드

가) 성인과 아동을 구분하지 않는 죄명코드 존재

다음의 형법범은 성인과 아동에 대한 구분을 두지 않고 있는 죄명코드 분류에 해당한다. 형법상 각 규정이 성년과 미성년을 구분하지 않고 있어 성인 대상 내지 아동 대상 성적 착취로 분류할 수 없다.

〈표 2-3-8〉 성인에 대한 성적착취(03021)와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03022)로 구분되지 않는 죄명코드

3수준/소분류		죄명코드
03021	성인에 대한 성적 착취 (sexual exploitation of adults)	[형법범] 음행매개(0122020000,0122020100), 추행약취(0131020100), 간음약취(0131020200), 추행유인(0131030100), 간음유인(0131030200), 성매매약취(0131040300), 성적착취약취(0131040400), 성매매유인(0131040700), 성적착취유인(0131040800), 부녀매매(0131040000, 0131040100), 상습추행약취(0131050100), 상습간음약취(0131050200), 상습추행유인(0131060100), 상습간음유인(0131060200), 상습부녀매매(0131070100), 상습영리등목적부녀매매(0131070000), 추행피약취자수수(0131170100), 추행피유인자수수(0131170400), 간음피약취자수수(0131170200), 간음피유인자수수(0131170500), 추행피약취자수수(0131170100), 추행피약취자은닉(0131180100), 추행피유인자은닉(0131180400), 간음피약취자은닉(0131180200), 간음피유인자은닉(0131180500)
03022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 특정범죄가중법위반 간음약취(0206026500), 추행약취(0206026600), 간음유인(0206026900), 추행유인(0206027000)

## ① 추행·간음·성매매(추업)·성적착취 목적의 약취·유인·매매죄

앞서 살펴보았듯이, 성적 착취(0302)에 해당하는 형법범의 대표적인 유형은 「형법」 제288조에 규정된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이다. 「형법」 제288조에는 성적 착취(0302)에 포함된 추행, 간음, 성매매와 성적 착취 이외에 그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 노동력 착취나 장기적출, 국외이송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나, 죄명코드 상으로는 각 목적별로 죄명을 구분하여 입력하고 있어 성적 착취에 해당하는 분류로 연계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제288조는 미수행위(제294조)도 처벌하고 있어 이 역시 성적 착취(0302)에 포함된다. 또한 형법개정 전 제288조제2항은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녀를 매매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제288조제3항은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포함된다. 또한 개정 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2 제4항은 「형법」 제288조, 제289조 또는 제29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형법」의 각 조문보다 가중된 형벌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은 상습적으로 제4항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과 제8항에서 미수 및 예비, 음모에 대해 처벌규정을 두고 있어, 이 역시 성적 착취(0321)에 포함된다.

그러나 피약취자 또는 피유인자가 성년인지 미성년인지 여부가 각 「형법」 규정에서 구성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죄명코드로는 피해대상이 성인인지 아동인지를 구분할 수 없다. 이로 인해 ICCS의 분류체계상 [소분류03021]과 [소분류03022]로 분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 ② 음행매개죄

다음으로 성적 착취(0302)에 해당하는 형법범 유형으로 「형법」 제242조 음행매개가 있다. 제242조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개정 전 제242조는 영리의 목적으로 미성년 또는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었다. 형법상 음행매개의 객체 역시 성년인지 미성년인지 여부가 구성요건의 핵심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죄명코드로는 그 피해대상이 성인인지 아동인지를 구분할 수 없고, ICCS의 분류체계상 [소분류03021]과 [소분류03022]로 분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ㄴ) 성적 착취 이외 다른 분류에 동시에 해당하는 죄명코드의 존재

〈표 2-3-9〉 성적착취(0302) 이외에 다른 분류에 해당하는 죄명코드

2수준/중분류		죄명코드
0302	성적 착취	[형법범] 피약취자상해(0131110300), 피유인자상해(0131110400), 피약취자치상(0131110700), 피유인자치상(0131110800), 피약취자등수수(0131120000), 피약취자수수(0131120100), 피약취자은닉(0131120200), 피유인자수수(0131120300), 피유인자은닉(0131120400), 상습피약취자등수수(0131150000), 상습피약취자등은닉(0131160000), 상습피약취자수수(0131150100), 상습피유인자수수(0131150200), 상습피약취자은닉(0131160100), 상습피유인자은닉(0131160200), 영리등목적피약취자등수수(0131170000)
0202	자유에 반하는 행위	
0203	노예 행위 및 착취	[특별법범]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상습피약취자상해(0209916900), 상습피유인자상해(0209917000), 상습피약취자치상(0209917300), 상습피유인자치상(0209917400))
	그 외	[특별법범]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0208051900), 음약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0220021100), 직업안정법위반(0232040100), 공중위생관리법위반(0229023700), 공중목욕장업법위반(0229020300), 숙박업법위반(022902050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0231011300),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0231010400)

① [중분류0302], [중분류0202] 및 [중분류0203]에 동시에 해당하는 죄명코드 존재 「형법」 제288조의 결과적 가중범을 규정하고 있는 제290조 약취, 유인, 매매, 이동 등 상해·치상은 성적 착취(0302)에 해당한다. 또한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수수, 은닉하거나 그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행위(제292조) 역시 성적 착취(0302)에 해당한다. 개정 전 「형법」 제293조는 상습 내지 추행, 간음, 영리의 목적으로 제292조의 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형을 가중하고 있어, 추행 및 간음의 목적과 관련된 죄명코드 역시 성적 착취(0302)에 포함된다. 제292조와 관련된 죄명코드는 약취, 유인 등의 목적에 따라 별도로 죄명코드를 두고 있어, 성적 착취(0302)에 해당하는지 그 외의 노동착취나 장기적출 등에 해당하는지가 분류가능하다. 그러나 결과적 가중범 규정인 제290조와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등의

제292조<sup>75)</sup>, 또한 형 가중사유를 규정하고 있던 제293조의 경우에는 목적에 따른 죄명코드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고 피약취자, 피유인자, 피해매자 등의 요소만을 분류하고 있어, 각 조와 관련된 죄명코드들은 행위상 [중분류0302]뿐만 아니라 [중분류0202]인 자유에 반하는 행위 및 [중분류0203] 노예 행위 및 착취 모두에 해당한다. 이러한 쟁점은 「형법」 제288조 추행 등 목적의 약취, 유인 등에 대한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아동학대처벌법」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 ② [중분류0302] 이외의 다른 분류에 해당하는 죄명코드 존재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및 알선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법률로, 성매매 이외에 인신매매도 규정하고 있어 ICCS의 분류에서 [중분류0302]인 성적 착취 이외에도 [소분류08021]인 성매매, [소분류02041]인 성적 착취를 위한 인신매매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일정 기간 동안 죄명코드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하나의 죄명코드로 분류되어 왔기 때문에 ICCS의 분류체계에 따라 분류가 가능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는 「성매매처벌법」로 개정되기 전 성매매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던 「윤락행위등방지법」에 대한 죄명코드에서도 나타난다. 「윤락행위등방지법」<sup>76)</sup> 역시 윤락행위를 한 자 이외에도 알선 및 장소·자금·토지·건물을 제공한 자, 윤락행위 및 윤락행위의 상대자가 되도록 유인·권유·강요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죄명코드는 ‘윤락행위 등방지법위반’으로 하나의 죄명코드로 분류되어 있어 ICCS의 분류체계에 따라 분류가 가능하지 않다.

성매매알선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성매매처벌법」 이외에도 다른 특별법에도 규정되어 있다.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풍속영업소에서 「성매매처벌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제10조제1항)을 두고 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노래연습장업자가 「성매매처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제34조제2항)을 두고 있다. 「직업안정법」은 「성매매처

75) 단, 개정형법에 따라 결혼·추행·간음 목적의 약취, 유인은 별도의 죄명코드를 두고 있다.

76) 1961.11.9. 시행된 「윤락행위등방지법」은 2004.9.2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폐지되었다.

벌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제46조제1항제2호)을 두고 있다. 「공중위생관리법」은 「성매매처벌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또는 「의료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명령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영업을 하거나 그 시설을 사용한 자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행위에 대해 처벌규정(제20조제1항제2호)을 두고 있다. 「공중위생관리법」은 1986.11.11. 종전의 「숙박업법」, 「공중목욕장업법」, 「리용사및미용사법」 및 「유기장업법」을 통합한 법률로, 이 중 (구)「숙박업법」과 (구)「공중목욕장업법」에는 “윤락행위”에 대한 금지위무와 이를 위반했을 때에 처벌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법들의 죄명코드는 각 법률에 대해 하나의 죄명코드만이 부여되어 있어, ICCS의 다른 분류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와 구분할 수 없다.

#### ㄷ) 아동 포르노그래피와 아동 성매매로 구분되지 않는 범죄 존재

(구)「청소년성보호법」의 제9조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및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청소년을 매매한 행위(제1항),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및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청소년을 국외에 매매 또는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국내에 매매 또는 이송하는 행위(제2항)를 규정하고, 미수범 처벌규정(제3항)을 두고 있다. ICCS의 분류에 따르면 (구)「청소년성보호법」 제9조제1항은 [세분류030221]인 아동 포르노그래피와 [세분류030222]인 아동성매매 모두에 해당되며, 제9조제1항은 [중분류0204] 인신매매 중 [중분류02041]인 성적 착취를 위한 인신매매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죄명코드는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청소년매매)’로, 하나의 죄명코드로 분류되어 있어 ICCS의 분류체계에 따른 분류가 불가능하다.

#### ㄹ) 죄명코드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특별법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성매매처벌법」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제39조제1항)나 알선·권유 또는 유인한 행위(제39조제2항)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죄명코드가 존재하지 않아 ICCS에 따라 분류할 수 없다.

## 2) ICCS 범죄행위에 부합하지 않는 아동·청소년 윤락 및 성매매 행위

「성매매처벌법」으로 개정되기 전 성매매 관련 행위를 규정하던 (구)「윤락행위등방지법」에서는 윤락행위를 한 20세 미만의 자에 대해 범죄화를 하고 있었으며, 다만 이들에 대해서는 선도보호시설에 선도보호<sup>77)</sup>를 위탁하는 보호처분(제8조 이하)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죄명코드로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청소년)’이 있다. 그러나 ICCS의 매뉴얼에 따르면, [세분류030222]인 아동 성매매에는 성매매 목적으로 아동을 모집, 유인·조달하거나 성매매 아동의 성적 서비스를 조달하는 아동성매매 알선등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세분류030229]인 기타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에는 아동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행위가 해당된다. 성매매를 한 사람과 성매수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소분류08021]인 성매매에 해당한다. 그러나 ICCS 매뉴얼에는 [소분류08021]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로 아동 성매매를 규정하고 있어, 성매매를 한 아동은 [소분류08021]에 분류되지 않는다. 이는 ICCS의 분류체계가 성매매를 한 아동을 범죄화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르면,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청소년)’은 ICCS의 분류에 포함될 수 없다. 이와 유사한 문제는 현행 「아청법」상 제38조에서 규정하는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에 대한 제39조 이하 소년부 송치 및 보호처분에서도 발생한다. 이에 대해서는 제7장에서 상술하도록 한다.

77) (구)「윤락행위등방지법」 제10조에 규정된 선도보호의 내용은 상담 및 치료(제1호), 개인의 정서안정과 인격향상을 위한 교육(제2호), 사회적응에 필요한 기술교육 및 취업안내(제3호), 의료보호·건강관리 및 생활지도(제4호), 기타 선도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성부령이 정하는 사항(제5호)이다.

### 제4절 다른 사람에게 폭력이나 협박을 가한 재산 침해행위(04)

[대분류 04]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한 재산침해행위(Act against property involving violence or threat against a person)로 주로 강도를 세분하고 있다. 즉 중분류로는 강도와 강도가 아닌 기타 유형의 폭행이나 협박을 통한 재산침해행위로 구분하고 있으며, 강도(0401)에 대한 소분류로 강도의 대상이 사람이냐 물건이나 기관이나 동물이나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첫 번째 소분류인 사람에게 대한 강도는 다시 장소에 따라 공공장소에서의 강도와 사적장소에서의 강도, 그리고 기타로 분류하고 있으며, 두 번째 소분류인 이동 중인 귀중품 또는 물품에 대한 강도는 승용차를 비롯한 운송수단과 기타로 분류하고 있다. 세 번째로 시설이나 기관에 대한 강도는 금융기관과 비금융기관으로 분류하고 있다. ICCS의 [대분류 04] 세부 분류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4-1〉 ICCS [대분류 04] 다른 사람에게 폭력이나 협박을 가한 재산 침해행위 세부 분류

2수준/중분류		3수준/소분류		4수준/세분류	
0401	강도 (robbery)	04011	사람에 대한 강도 (robbery from the person)	040111	공공장소에서의 사람에게 대한 강도 (robbery from the person in a public location)
				040112	사적 장소에서의 사람에게 대한 강도 (robbery from the person in a private location)
				040119	기타 사람에게 대한 강도 (other robbery from the person)
		04012	이동 중인 귀중품 또는 물품에 대한 강도 (robbery of valuables or goods in transit)	040121	승용차 또는 운송수단 강도 (robbery of a car or vehicle)
				040129	기타 이동 중인 귀중품 또는 물품 강도 (other robbery of valuables or goods in transit)

2수준/중분류		3수준/소분류		4수준/세분류	
		04013	시설 또는 기관에 대한 강도 (robbery of an establishment or institution)	040131	금융기관에 대한 강도 (robbery of a financial institution)
				040132	비금융기관에 대한 강도 (robbery of a non-financial institution)
		04014	가축에 대한 강도 (robbery of livestock)	-	-
		04019	기타 강도행위 (other acts of robbery)	-	-
0409	기타 사람에 대한 폭력 또는 협박을 수반한 재산침해행위 (other acts against property involving violence or threat against a person)	-	-	-	-

## 1. 강도(Robbery, 0401)

ICCS 매뉴얼에 따르면 중분류 강도(0401)는 “사람 또는 단체로부터 재물을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취할 의도로 사람에게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것을 협박하여 재산을 불법적으로 취하거나 획득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폭력에 의한 절도나 강도, 약탈행위 등을 말하며, 다만 절도목적 침입이나 절도는 제외되고, 폭행이나 협박, 장물행위, 재물손괴, 문자나 구두협박을 통한 특정행동 요구(02051)는 제외된다.

폭력에 의한 절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절대적 폭력이나 협박에 의한 재물절취행위인 강도죄(형법 제333조) 외에 상대적 폭력이나 협박에 의한 재물절취인 공갈죄(형법 제350조)도 본 중분류에 포섭된다고 볼 수 있다.

### 가. 개념 및 행위

#### 1) 사람에게 대한 강도(Robbery from the person, 04011)

소분류 사람에게 대한 강도(04011)는 피해자와의 직접적 접촉을 통한 개인재산에

대한 강도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개인재산이란 최소한 사람의 자산 중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자산을 말한다. 자연인이 소지한 동산을 폭력이나 협박을 통해 강탈하는 모든 행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강도의 발생장소에 따라 다시 세 개의 세분류로 분류된다.

첫 번째는 공공장소에서의 사람에 대한 강도(robbery from the person in a public location, 040111)로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진 개인재산에 대한 강도행위를 말한다. ICCS의 예에 따르면 길거리에서 행하는 강도나 날치기가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나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단순한 날치기는 개인재물절도(050221)에 해당할 뿐이며, 다소간의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된, 예컨대 “퍽치기”를 상정한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sup>78)</sup>

두 번째는 사적 장소에서의 사람에 대한 강도(robbery from the person in a private location, 040112)이다. 사적장소란 최소한 개인적 목적 또는 사적 모임에 국한해 사용되는 장소로, 일반인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없는 장소를 말한다. ICCS는 절도목적의 침입과정에서 절취를 위해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행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를 예시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는 행위의 양태를 설명한 것이지 사적 장소에서의 강도에 대한 적절한 예시로 보이지는 않는다. 본 분류의 예로는 단독주택의 울타리 내에 만들어 둔 정원에서 발생한 강도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세 번째 세분류는 기타 사람에 대한 강도(other robbery from the person, 040119)로 앞의 040111과 040112에 대한 보충적 분류범주이다. 공공장소와 사적 장소 외의 장소에서 이루어진 강도를 포섭하는 분류이다. ICCS는 따로 구체적인 예시를 들고 있지 않다. 공공장소와 사적 장소 외에 제3의 성격을 갖는 장소가 있을 수 있는지 의심스럽기는 하나, 굳이 생각해 본다면 입장료를 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미술관, 놀이공원)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위 공공장소를 단지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곳이라고만 정의해두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입장료만 지불하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장소도 공공장소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78) [세분류 050221]도 예시에서 강도에 이르지 않은 날치기를 포함하고 있다.

## 2) 이동 중인 귀중품 또는 물품에 대한 강도(Robbery of valuables or goods in transit, 04012)

소분류 이동 중인 귀중품 또는 물품에 대한 강도(04012)는 차량, 선박, 비행기 등 운송수단 자체 또는 그 운송수단 안에 있는 재물을 대상으로 한 강도를 의미한다. 본 소분류는 강도의 객체에 따라 두 개의 세분류로 분류된다.

첫 번째는 승용차 또는 운송수단 강도(robbery of a car or vehicle, 040121)로 이동 중인 운송수단을 해당 운송수단의 운행인 또는 그 승객으로부터 취하는 강도행위를 의미한다. 운송수단 납치나 이동 중 운송수단 내 재물에 대한 강도, 택시강도, 철도강도, 현금수송차량 강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다만 운송수단의 부품에 대한 절도(05021)는 여기에서 제외된다.

두 번째는 기타 이동 중인 귀중품 또는 물품 강도(other robbery of valuables or goods in transit, 040129)이다. 위 040121에 대한 보충적 분류범주로서, 고속도로 상에서 이루어지는 화물강도를 예시로 들고 있다. 040121이 운송수단 자체에 대한 강도행위를 포섭하는 것인 반면, 본 세분류는 운송수단을 제외한, 운송수단 내에 있는 물건에 대한 강도만을 포섭한다고 볼 수 있다.

## 3) 시설 또는 기관에 대한 강도(Robbery of an establishment or institution, 04013)

소분류 시설 또는 기관에 대한 강도(04013)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강도가 아닌 은행이나 금융기관, 우체국 등 일정한 시설이나 기관에 대한 강도를 의미한다. 본 소분류도 강도의 객체에 따라 두 개의 세분류로 분류된다.

첫 번째는 금융기관에 대한 강도(robbery of a financial institution, 040131)로, 여기에서 금융기관이란 투자나 대출, 예금 등 금융거래 취급을 주목적으로 하는 공공시설 또는 민간시설을 말한다. 은행강도가 대표적인 예이다. ICCS는 여기에 더해 ATM 강도도 그 예시로 포함하고 있으나, ATM에 대해서는 손괴나 파괴가 가능할 뿐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예시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sup>79)</sup>

79) 다만 ICCS는 명확히 폭행이나 협박이라고 하지 않고 “유형력의 행사”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손괴나 파괴행위도 여기에 포섭되는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 다만 중분류에서 “사람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기계에 대한 유형력 행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두 번째는 비금융기관에 대한 강도(robbery of a non-financial institution, 040132)이다. 위 040131에 대한 대응적 분류이자 보충적 분류범주이다. 금융기관이 아닌 것은 모두 비금융기관이기 때문이다. ICCS는 우체국강도와 주유소강도, 사업체 강도, 점포강도를 예시로 들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우체국도 금융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므로, 우체국을 대상으로 한 강도는 040132가 아닌 040131로 분류해야 한다.

#### 4) 가축에 대한 강도(Robbery of livestock, 04014)

소분류 가축에 대한 강도(04014)는 가축을 그 관리인으로부터 취하는 강도행위를 의미한다. 가축은 식량이나 섬유, 노동력 제공을 목적으로 쓰이는 길들인 동물을 의미하며, 소, 양, 돼지, 말 등을 포함한다. ICCS는 소를 훔치는 행위(cattle rustling)도 여기에 포함되는 예로 들고 있으나, 이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가축절도(05025)에 포섭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5) 기타 강도행위(Other act of robbery, 04019)

이는 강도(0401)의 마지막 소분류이자, 다른 소분류에 대한 보충적 범주이다. 보충적 범주이므로 당연히 위에서 언급한 각 소분류 및 세분류의 범주는 제외된다. 따라서 관념상으로는 앞에서 설명한 소분류와 세분류에 포섭되지 않는 강도행위가 여기에 포함된다. 다만 ICCS는 여기에 포섭되는 행위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별다른 예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 나. 죄명코드 연계성 분석

이상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죄명코드들을 ICCS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2-4-2〉 강도(0401)의 죄명코드 분류

3수준/소분류		4수준/세분류		죄명코드
04011	사람에 대한 강도	040111	공공 장소에서의 사람에 대한 강도	[형법범] 강도(0138070000, 0138070100), 특수강도(0138080000, 0138080100), 준강도(0138090000, 0138090100), 준특수강도 (0138090200), 약취강도(0138100000, 0138100100), 해상강도(0138160000, 0138160100), 상습강도 (0138220000, 0138220100), 상습특수강도 (0138230000, 0138230100), 상습약취강도 (0138240000, 0138240100), 상습해상강도 (0138250000, 0138250100), 인질강도 (1138100000, 1138100100), 상습인질강도 (1138240100), 공갈(0139040000, 0139040100), 상습공갈(0139080000, 0139080100) • 특정범죄가중법 : 강도(0206021800)
		040112	사적 장소에서의 사람에 대한 강도	
		040119	기타 사람에 대한 강도	
04012	이동 중인 귀중품 또는 물품에 대한 강도	040121	승용차 또는 운송 수단 강도	• 특정경제범죄법 : 공갈(0206023200)
		040129	기타 이동 중인 귀중품 또는 물품 강도	• 폭력행위처벌법 :
04013	시설 또는 기관에 대한 강도	040131	금융기관에 대한 강도	단체등의강도(0206047600), 단체등의특수강도 (0206047700), 단체등의준강도(0206047800), 단체등의준특수강도(0206047900), 단체등의인 질강도(0206048000), 단체등의해상강도 (0206048400), 단체등의상습강도(0206048700), 단체등의상습인질강도(0206048900), 단체등의 상습해상강도(0206049000), 상습공갈(0206035000), 야간·공동공갈(0206036000), 집단·흉기등공 갈(0206037000), 야간집단·흉기등공갈 (0206038000), 상습집단·흉기등공갈(0206039000), 단체등의상습공갈(0206054900), 단체등의집단 ·흉기등공갈(0206055100), 공동공갈(1206036000) <교사, 방조 포함>
		040132	비금융기관에 대한 강도	
04014	가축에 대한 강도	-	-	
04019	기타 강도행위	-	-	[특별법범] • 특정강력범죄법 : 특수강도(0206032000) • 아동학대처벌법 : 상습공갈(0209924000) • 군용물범법 : 군용물강도(0411081500), 군용물특수강도 (0411081600), 군용물준강도(0411081700), 군 용물준특수강도(0411081800), 군용물약취강도 (0411081900), 군용물해상강도(0411082500), 상습군용물강도(0411083100), 상습군용물특수 강도(0411083200), 상습군용물약취강도(0411083300), 상습군용물해상강도(0411083400), 군용물공갈 (0411084000), 상습군용물공갈(0411084400) <교사, 방조 포함>

ICCS의 분류는 강도의 대상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즉 사람이냐, 운송수단이나, 기관이나, 가축이나에 따라 코드를 달리 부여하고 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의 범죄분류코드는 주로 강도의 행위형태에 따라, 단순강도, 특수강도, 준강도, 단체등 강도, 인질강도, 약취강도, 상습강도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단지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군용물범죄법)만이 그 대상을 군용물로 하고 있다. 이처럼 분류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형법」상 강도와 특수강도, 준강도, 약취강도, 해상강도, 상습강도, 인질강도 등과 기타 특별법상 강도죄 구성요건들은 중분류 강도(0401)에 포섭될 수 있을 뿐, 소분류 이하의 기준에 따라 배타적으로 분류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 범죄분류코드는 강도와 공갈을 구분하여 코드를 부여하고 있으나, ICCS는 구분하지 않고 있다. “사람에 대한 유형력 행사” 또는 “유형력행사에 대한 협박”이라고만 하여 절대적 폭력이나 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강도와 상대적 폭력이나 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공갈 모두를 포섭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범죄분류코드에 따라 분류된 죄명코드를 ICCS에 매칭해 보면, 「형법」상 공갈과 상습공갈, 「특정경제범죄법」상 공갈, 「폭력행위처벌법」상 상습공갈과 야간·공동공갈, 집단·흉기등공갈, 야간집단·흉기등공갈, 상습집단·흉기등공갈, 단체등의상습공갈, 단체등의집단·흉기등공갈, 공동공갈, 「군용물범죄법」상 군용물공갈과, 상습군용물공갈도 본 분류에 포함될 수 있다.

#### 다. 죄명코드 분류상의 쟁점

강도(0401)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쟁점은 ICCS의 분류체계 전반에서 나타나는 기수와 미수의 구분, 비정법적 요소 및 예비와 음모의 간과를 제외하고도 ① 본 중분류와 우리나라 범죄분류체계의 분류기준이 서로 이질적이라는 점과 ② 강도와 공갈의 구분, ③ 결합범과 결과적 가중범의 분류문제가 있다.

결론부에서 보다 상세하기 다룰 것을 고려해 여기에서는 간략히만 살펴보면, 우선 우리나라의 범죄분류체계는 ICCS의 기준과는 달리 강도가 발생한 장소나 강도의 대상에 무관심하다. 즉 강도에 대한 분류기준 자체가 매우 상이하다. 또한 강도와 공갈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률, 판례, 학설, 범죄분류기준과 달리 ICCS의

분류기준은 이를 전혀 구분하고 있지 않다.

한편 강도죄와 관련해서는 상당수의 결합범 및 결과적 가중범이 존재하며 우리나라의 범죄분류코드는 이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다만 이들 결합범과 결과적 가중범을 ICCS의 분류기준에 대입시켜보면, 결과발생의 유형(사망, 상해, 성폭행)에 따라 [대분류 01]이나 [대분류 03] 등의 분류항목과 중첩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 2. 기타 사람에 대한 폭력 또는 협박을 수반한 재산침해행위(Other acts against property involving violence or threat against a person, 0409)

### 가. 개념 및 행위

ICCS 매뉴얼에 따르면 중분류 기타 사람에 대한 폭력 또는 협박을 수반한 재산침해 행위위험행위(0409)는 앞의 강도(0401)에 대한 보충적 분류항목이다. 강도(0401)을 제외하고 사람에 대한 폭력이나 협박을 수반한 모든 재산침해행위를 포섭한다. ICCS는 불특정 장소로부터의 강탈행위나 약탈을 그 예로 들고 있다. 재물손괴(0504)나 절도목적 침입, 절도 및 기타 재물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05), 폭행이나 협박(0201), 장물에 관한 행위(0704), 납치나 인질행위(02022)는 본 분류에서 제외된다.

### 나. 죄명코드 연계성

이상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죄명코드들을 ICCS의 기준에 따라 분류해보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이 본 중분류에 포섭될 수 있는 죄명코드를 찾을 수 없다.

〈표 2-4-3〉 기타 사람에 대한 폭력 또는 협박을 수반한 재산침해행위(0409)의 죄명코드 분류

2수준/중분류		3수준/소분류, 4수준/세분류		죄명코드
0409	기타 사람에 대한 폭력 또는 협박을 수반한 재산침해 행위	-	-	x

이는 다른 분류체계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은 분류기준상 이질성으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본 분류, 즉 기타 사람에 대한 폭력 또는 협박을 수반한 재산침해행위(0409)라는 범주 자체가 갖는 모호함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죄명코드 분류상의 쟁점**

ICCS에 따르면 본 분류는 “불특정 장소로부터의 강탈행위”라고 설명할 수 있으나, ICCS가 구분하고 있는 공공장소와 사적 장소 외에 제3의 성격을 갖는 장소가 있을 수 있는지 의심스럽기 때문에, 본 분류는 사실상 아무것도 보충할 수 없는 분류범주라 할 수 있다.

**제5절 단순한 재산 침해행위(05)**

[대분류 05]는 단순한 재산침해행위(Act against property only)이다. 중분류로는 네 개의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절도목적 침입(0501)과 절도(0502), 지적재산권범죄(0503), 재물손괴(0504)로 구성되고 있으며, 다만 보충적 분류범주로 기타 재산침해행위(0509)를 두고 있다. ICCS의 [대분류 05] 세부 분류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5-1〉 ICCS [대분류 05] 단순한 재산침해행위 세부 분류

2수준/중분류		3수준/소분류		4수준/세분류	
0501	절도목적 침입 (Burglary)	05011	절도목적 사업장 침입 (Burglary of business premises)	-	-
		05012	절도목적 사적 주거지 침입 (Burglary of private residential premises)	050121	절도목적 상시주거지 침입 (Burglary of permanent private residences)
				050122	절도목적 임시주거지 침입 (Burglary of non-permanent private residences)

2수준/중분류		3수준/소분류		4수준/세분류	
		05013	절도목적 공공장소 침입 (Burglary of public premises)	-	-
		05019	절도목적 기타 침입행위 (Other acts of burglary)	-	-
0502	절도 (Theft)	05021	동력운송수단 또는 그 부품 절도 (Theft of a motorized vehicle or parts thereof)	050211	지상 동력 운송수단 절도 (Theft of a motorized land vehicle)
				050212	지상 동력 운송수단 불법사용 (Illegal use of a motorized land vehicle)
				050213	지상 동력 운송수단 부품절도 (Theft of parts of a motorized land vehicle)
				050219	기타 동력 운송수단 또는 그 부품 절도 (Other theft of a motorized vehicle or parts thereof)
		05022	개인재물 절도 (Theft of personal property)	050221	사람으로부터의 개인재물 절도 (Theft of personal property from am person)
				050222	운송수단으로부터의 개인재물 절도 (Theft of personal property from a vehicle)
				050229	기타 개인재물 절도 (Other theft of personal property)
		05023	사업체재물 절도 (Theft of business property)	050231	점포대상 절도 (Theft from a shop)
				050239	기타 사업체재물 절도 (Other theft of business property)
		05024	공공재물 절도 (Theft of public property)	-	-
		05025	가축절도 (Theft of livestock)	-	-

2수준/중분류		3수준/소분류		4수준/세분류	
		05026	용역절도 (Theft of services)	-	-
		05029	기타 절도행위 (Other acts of theft)	-	-
0503	지적재산 범죄 (Intellectual property offences)	-	-	-	-
0504	재물손괴 (Property damage)	05041	공공재물손괴 (Damage of public property)	-	-
		05042	개인재물손괴 (Damage of personal property)	-	-
		05043	사업채재물손괴 (Damage of business property)	-	-
		05049	기타 재물손괴 (Other damage of property)	-	-
0509	기타 재산침해행위 (Other acts against property only)	-	-	-	-

### 1. 절도목적 침입(Burglary, 0501)

ICCS 매뉴얼에 따르면 중분류 절도목적 침입(0501)은 “절도를 범할 의도로 또는 실제 절도의 범행 중 유형력 행사 여부를 불문하고 건물이나 주거 또는 장소의 일부에 불법으로 침입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ICCS는 본 중분류에 속하는 예로 절도를 범할 목적으로 행한 불법침입이나 절도를 목적으로 기망을 통한 진입을 들고 있다. 다만 절도(0502)에 해당하는 모든 유형의 행위는 여기에서 배제되며, 장물에 관한 행위(0704), 재물손괴(0504), 강도(0401)도 본 분류에서 제외된다. 요컨대 절도는 행위의 목적이며, 본 분류에서 가장 중요한 준거점이 되는 행위는 “침입행위”이다.

본 중분류는 소분류로서 사업장침입(05011)과 사적 주거지 침입(05012), 공공장소 침입(05013)으로 분류되며, 사적 주거지침입은 다시 세분류로서 상시주거지 침입(050121)과 임시주거지 침입(050122)으로 분류되고 있다.

### 가. 개념 및 행위

#### 1) 절도목적 사업장 침입(Burglary of business premises, 05011)

중분류 절도목적 침입(0501)의 첫 번째 소분류는 절도목적 사업장 침입(05011)이다. ICCS는 이에 대한 별도의 설명을 첨부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사업장은 최소한 상업이나 산업업체가 위치한 구조물이나 부지를 의미하며, 사옥, 점포, 클럽, 은행, 공장, 영업소, 호텔, 쇼핑몰, 소매점포, 농지, 창고 및 기타 부지나 건물을 포함한다고 주해하고 있다.<sup>80)</sup> 절도목적으로 유형력을 동원해 사업장의 출입문 등을 깨고 들어가는 행위뿐만 아니라 적법한 권한 없이 절도목적으로 사업장에 진입하는 행위도 여기에 해당한다. ICCS는 램레이딩(ram-raiding)도 여기에 포함되는 예로 열거하고 있다. 이는 물건을 훔치기 위해 차를 타고 상점 진입장으로 돌진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 2) 절도목적 사적 주거지 침입(Burglary of private residential premises, 05012)

중분류 절도목적 침입(0501)의 두 번째 소분류는 절도목적 사적 주거지 침입(05012)이다. 이에 대해서도 ICCS는 별도의 설명을 첨부하고 있지 않다. 다만 사적 주거지는 최소한 사람이 소유하거나 임대하거나 리스한 부동산을 의미한다고 주해하고 있을 뿐이다.<sup>81)</sup> 여기에는 절도목적으로 유형력을 동원해 개인 주거지의 출입문 등을 깨고 들어가는 행위에서부터 절도목적으로 개인 주거지에 딸린 창고나 차고에 침입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또한 ICCS는 사적 주거지 침입에 의한 절도(theft by burglary of a dwelling)도 본 소분류에 포함시키고 있다. 본 소분류는 주거형태에 따라 다시 상시주거지에 대한 침입과 임시주거지에 대한 침입으로 분류되고 있다.

80) UNODC,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s, Ver. 1.0, March 2015, p. 57 fn. 92.

81) UNODC,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s, Ver. 1.0, March 2015, p. 57 fn. 93.

우선 첫 번째로 절도목적 상시주거지 침입(burglary of permanent private residences, 050121)은 절도목적으로 피해자가 한 해의 대부분을 거주하는 사적 주거지에 대한 침입을 말한다. 예컨대 주택이나 아파트, 기타 피해자의 주요 주거지에서 행하는 절도목적 침입 등이 그것이다.

두 번째 세분류는 절도목적 임시주거지 침입(burglary of permanent private residences, 050122)이다. 임시주거지란 피해자가 한 해 중 임시로만 거주하는 주거지를 말한다. 절도목적으로 여름별장(summer house) 또는 별장(secondary house)에 침입하는 행위, 호텔객실 또는 기타 임시임대부지에 침입하는 행위가 그 예이다.

### 3) 절도목적 공공장소 침입(Burglary of public premises, 05013)

중분류 절도목적 침입(0501)의 세 번째 소분류는 절도목적 공공장소 침입(05013)이다. 이에 대해서도 ICCS는 별도의 설명을 첨부하고 있지 않다. 다만 공공장소는 최소한 정부나 기타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대, 리스한 부동산을 의미한다고 주해하고 있을 뿐이다.<sup>82)</sup> 절도목적으로 유형력을 동원해 공공장소의 출입문 등을 깨고 들어가는 행위나 적법한 권한 없이 절도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진입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된다.

### 4) 절도목적 기타 침입행위(Other acts of robbery, 05019)

이는 절도목적 침입(0501)의 마지막 소분류이자, 다른 소분류에 대한 보충적 범주이다. 보충적 범주이므로 당연히 위에서 언급한 각 소분류 및 세분류의 범주는 제외된다. 여기에 포섭되는 행위들로는 이동형 가옥에 대한 절도목적 침입을 들 수 있다. 그 밖에 공공장소나 사적 장소, 사업체의 부동산에 속하지 않는 곳에 대한 절도목적 침입을 예시로 들고 있다.

## 나. 죄명코드 연계성 분석

이상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죄명코드들을 ICCS의 기준에

82) UNODC,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s, Ver. 1.0, March 2015, p. 58 fn. 94.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2-5-2〉 절도목적 침입(0501)의 죄명코드 분류

3수준/소분류		4수준/세분류		죄명코드
05011	절도목적 사업장 침입	-	-	[형법범] 야간주거침입절도(0138020000, 0138020100), 야간저택침입절도(0138020200), 야간건조물침입절도(0138020300), 야간방실침입절도(0138020500),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0138050000, 0138050100), 상습야간저택침입절도(0138050200),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0138050300) <미수, 교사, 방조 포함>
05012	절도목적 사적 주거지 침입	050121	절도목적 상시주거지 침입	[특별범법] • 군용물범죄법 : 야간주거침입군용물절도(0411080200), 야간저택침입군용물절도(0411080300), 야간건조물침입군용물절도(0411080400), 야간방실침입군용물절도(0411080600), 상습야간주거침입군용물절도(0411080900), 상습야간저택침입군용물절도(0411081000), 상습야간건조물침입군용물절도(0411081100), 상습야간방실침입군용물절도(0411081300) <미수, 교사, 방조 포함>
		050122	절도목적 임시주거지 침입	
05013	절도목적 공공장소 침입	-	-	[형법범] 야간선박침입절도(0138020400), 상습야간선박침입절도(0138050400) <미수, 교사, 방조 포함>
05019	절도목적 기타 침입행위	-	-	[특별범법] • 군용물범죄법 : 야간선박침입군용물절도(0411080500), 상습야간선박침입군용물절도(0411081200) <미수, 교사, 방조 포함>

ICCS의 분류는 절도(theft, 0502)와 절도목적침입(0501)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형법 제330조)를 제외하고는 절도범이 주거침입의 범죄도 함께 범한 경우에는 경합범으로 처리하고 있다. 주거침입의 경우에도 따로 절도의 목적을 묻는 경우는 없고 다만 주거침입의 대상이 “주거”이나 “주택”이냐, 또는 주거침입의 형태가 단독정범에 의한 주거침입이냐 단체 등에 의한 주거침입(특수주거침입)이냐를 구분하고 있을 뿐이다. 그 밖에 상습성 내지 대상(군용물)에

따라 분류코드를 달리 부여하고 있다(「폭력행위처벌법」, 「군용물범죄법」 등). 이와 같은 분류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범죄분류코드 가운데 절도목적 침입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야간주거침입절도와 야간저택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방실침입절도를 비롯해 그에 대한 상습범 정도가 될 것이다. 한편 [소분류 05011]부터 [소분류 05013]까지는 침입의 대상을 오로지 “부동산”에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상습)야간선박침입절도는 [소분류 05019]에 포섭시킬 수 있을 것이다.

#### 다. 죄명코드 분류상의 쟁점

절도목적 침입(0501)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쟁점은 ICCS의 분류체계 전반에서 나타나는 기수와 미수의 구분, 비정범적 요소 및 예비와 음모의 간과를 제외하고도 우선 본 중분류와 우리나라 범죄분류체계의 분류기준이 매우 이질적이라는 점,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중분류 절도(0502)와의 포섭관계가 있다.

즉 외형상 동일한 주거 등 침입행위가 내적 동기로서 절도목적에 따라 행해진 것인지, 그 외의 동기로 행해진 것인지에 따라 절도목적 침입(0501)에 분류될 수도, 사생활 침해(02111)에 분류될 수도 있는 결과가 발생한다. 한편 본 중분류는 그 소분류 절도목적 사적 주거지 침입(05012)에 사적 주거지 침입에 의한 절도(theft by burglary of a dwelling)도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침입”과 “절도”를 모두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절도(0502)와의 포섭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결론부에서 자세히 언급하도록 하겠다.

## 2. 절도(Theft, 0502)

ICCS 매뉴얼에 따르면 중분류 절도(0502)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리고 유형력 사용이나 유형력 또는 폭력을 사용하겠다는 협박, 강요, 기망 없이 사람이나 단체로부터 재물을 영구적으로 박탈하려는 의도로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거나 획득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절도와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장물에 관한 행위(0704)와 기망이나 부정한 행위를 통해 금전이나 기타 이득을 취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0701), 강도(0401), 재물손괴(0504), 절도목적 침입

(0501), 지적재산권 절도(0503), 신원절도(07019)는 본 분류에서 제외된다.

본 중분류는 소분류로서 동력 운송수단 또는 그 부품 절도(05021)과 개인재물 절도(05022), 사업체 재물 절도(05023), 공공재물 절도(05024), 가축 절도(05025), 용역 절도(05026), 기타 절도행위(05029)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운송수단 또는 동력 운송수단 부품 절도(05021)는 다시 세분류로서 지상 동력 운송수단 절도(050211)와 지상 동력 운송수단 불법사용(050212), 지상 동력 운송수단 부품 절도(050213), 기타 동력 운송수단 또는 그 부품 절도(050219)로 분류된다. 또한 개인재물 절도(05022)는 사람으로부터의 개인재물 절도(050221)와 운송수단으로부터의 개인재물 절도(050222), 기타 개인재물 절도(050229)로, 사업체 재물절도(05023)는 점포대상 절도(050231)와 기타 사업체 재물 절도(050239)로 분류된다.

#### 가. 개념 및 행위

##### 1) 동력 운송수단 또는 그 부품 절도(Theft of a motorized vehicle or parts thereof, 05021)

중분류 절도(0502)의 첫 번째 소분류는 동력 운송수단 또는 그 부품 절도(05021)이다. ICCS는 이에 대한 별도의 설명을 첨부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동력 운송수단은 엔진이나 모터로 추진하는 모든 자가추진차량을 의미하며, 승용차나 오토바이, 선박, 항공기를 포함한다고 주해하고 있다.<sup>83)</sup> 승용차 기타 운송수단에 대한 강도(050121)는 배제되며, 다음과 같이 네 개의 세분류로 구분된다.

첫 번째로 지상 동력 운송수단 절도(050211)이다. 지상 동력 운송수단이란 엔진을 장착하여 도로를 주행하는 모든 지상차량을 말하며, 자동차와 오토바이, 버스, 탱크로리, 건설차량, 농업용 차량 등을 포함한다.<sup>84)</sup> 동력 운송수단 불법사용(050212)과 동력 운송수단 부품절도(050213), 동력 운송수단 내 개인재물 절도(050221)는 본 분류에서 제외된다.

83) UNODC,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s, Ver. 1.0, March 2015, p. 58 fn. 95.

84) UNODC,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s, Ver. 1.0, March 2015, p. 58 fn. 95.

두 번째는 지상 동력 운송수단 불법사용(050212)이다. 이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리고 유형력 사용이나 유형력 또는 폭력을 사용하겠다는 협박, 강요, 기망 없이 사람이나 단체로부터 재물을 일시적으로 박탈하려는 의도로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거나 획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차량절도 후 폭주(joyriding)가 대표적인 예이며, 따라서 영구적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차량절도(050211)와 부품절도(050213),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차량 절도(050219), 동력 운송수단 내 개인재물 절도(050221)는 본 세분류에서 제외된다.

세 번째는 지상 동력 운송수단 부품 절도(050213)이다. 운송수단 부품이란 특정차량 전용으로 설계된 부품 또는 교체부품으로서 차량의 운행에 필수적인 것을 말한다. 예컨대 엔진, 트랜스미션, 타이어, 창문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다만 연료나 운송수단 내 개인재물 절도(050221)는 본 세분류에서 제외된다.

끝으로 네 번째는 기타 동력 운송수단 또는 그 부품 절도(050219)로서 앞의 세 세분류가 포섭하지 못하는 범위를 보완하는 보충적 분류요소이다. 지상 동력 운송수단이 아닌 선박이나 항공기 및 그 부품을 대상으로 한 절도 내지 불법사용이 여기에 해당한다.

## 2) 개인재물 절도(Theft of personal property, 05022)

중분류 절도(0502)의 두 번째 소분류는 개인재물 절도(05022)이다. 이에 대해서도 ICCS는 별도의 설명을 첨부하고 있지 않다. 절도목적 침입이 이미 별도의 분류코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합법적 침입 후 절도는 본 소분류에 포함될 수 있다. 본 소분류는 절도의 대상에 따라 다시 사람으로부터의 개인재물 절도와 운송수단으로부터의 개인재물 절도, 보충적 분류항목으로 기타 개인재물절도로 분류된다.

우선 첫 번째로 사람으로부터의 개인재물 절도(theft of personal property from am person, 050221)는 사람이 소지한 개인재물 절도를 의미한다. 소매치기나 강도에 이르지 않은 날치기가 여기에 해당하며, 자전거 절도는 [세분류 050229]에 포함되어 본 세분류에서는 제외된다.

두 번째는 운송수단으로부터의 개인재물 절도(theft of personal property from a vehicle, 050222)이다. 자동차 등 부품이 아닌 운송수단 내에 놓여있던 지갑이나

전자기기 등 개인물건의 절도를 말하며, 연료절도도 본 세분류에 포함된다.

끝으로 기타 개인재물 절도(other theft of personal property, 050229)는 앞의 두 세분류에 대한 보충적 분류범주이다. 불법침입에 의하지 않은 절도나 주거 외부에서의 재물절도, 주거로 통하는 문이 없는 차고나 창고를 대상으로 한 절도, 자전거 절도, 반려동물 절도가 여기에 포함된다.

### 3) 사업체 재물 절도(Theft of business property, 05023)

중분류 절도(0502)의 세 번째 소분류는 사업체 재물 절도(05023)이다. 사업체로부터 운송수단이 아닌 동산을 절도한 행위만이 여기에 포함된다. 예컨대 무전취식이나 대금 미지급 후 도주, 피고용인에 의한 절도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는 점포를 대상으로 한 절도와 기타 사업체 재물 절도로 세분된다.

우선 점포대상 절도(050231)는 소매업장에서 발생하는 절도를 의미한다. 흔히 상점 절도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이다. 건물 안의 상점뿐만 아니라 노점상에서 발생하는 절도행위도 여기에 포함된다.

기타 사업체 재물절도(050239)는 점포대상 절도에 대한 보충적 분류요소로 소매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발생하는 재물절도를 말한다. 피고용인이 사업체나 사무실에서 행한 비품절도, 자동판매기를 대상으로 한 절도, 호텔이나 식당, 영화관, 극장, 유흥업소, 사무실, 작업장 등을 대상으로 한 절도행위가 여기에 포함된다.

### 4) 공공재물 절도(Theft of public property, 05024)

중분류 절도(0502)의 네 번째 소분류는 공공재물 절도(05024)로 운송수단 이외의 공공재물 절도를 의미한다. 공공재물이란 정부가 소유한 재물로서 부동산 이외의 것을 의미한다.<sup>85)</sup> 따라서 공립공원의 시설절도도 여기에 해당하게 된다. 다만 전력이나 수도, 기타 공용서비스에 대한 절도는 [소분류 05026]에 포함된다. 운송수단 및 그 부품 절도나 개인재물 절도, 사업체 재물 절도, 가축절도 등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 5) 가축 절도(Theft of livestock, 05025)

중분류 절도(0502)의 다섯 번째 소분류는 가축 절도(05025)이다. 가축강도(04014)

85) UNODC,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s, Ver. 1.0, March 2015, p. 61 fn. 96.

에서 설명한 내용과 같으며, 다만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였는지에 차이가 있다.

6) 용역 절도(Theft of services, 05026)

중분류 절도(0502)의 여섯 번째 소분류는 용역 절도(05026)이다. ICCS는 별도의 설명을 제공하고 있지 않으나, 그 예시로는 전력이나 수도, 기타 공용서비스 절도, 방송신호 절도, 무임승차, 서비스료 지급회피 등을 들고 있다. 사기(0701)는 제외된다.

7) 기타 절도행위(Other acts of theft, 05029)

이는 절도(0502)의 마지막 소분류이자, 다른 소분류에 대한 보충적 범주이다. 보충적 범주이므로 당연히 위에서 언급한 각 소분류 및 세분류의 범주는 제외된다. 여기에 포섭되는 행위로서 ICCS가 예시로 들고 있는 것은 우편절도와 점유물 횡령 등이 있다.

나. 죄명코드 연계성 분석

이상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죄명코드들을 ICCS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2-5-3〉 절도(0502)의 죄명코드 분류

3수준/소분류		4수준/세분류		죄명코드
05021	동력 운송 수단 또는 그 부품 절도	050211	지상 동력 운송수단 절도	[형법범] • 형법 : 자동차불법사용(0138030200), 원동기장치 자전거불법사용(0138030500), 상습자동차 불법사용(0138030600), 상습원동기장치자 전차불법사용(0138030900) <미수, 교사, 방조 포함> [특별법범] • 군용물범죄법 : 군용자동차불법사용(0411087300), 군용원동기 장치자전거불법사용(0411087600), 상습군
		050212	지상 동력 운송수단 불법 사용	

3수준/소분류		4수준/세분류		죄명코드
				용자동차불법사용(0411087700), 상습군용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사용(0411088000) <미수, 교사, 방조 포함>
		050213	지상 동력 운송수단 부품 절도	
		050219	기타 동력 운송수단 또는 그 부품 절도	[형법범] • 형법 : 선박불법사용(0138030300), 항공기불법사용(0138030400), 상습선박불법사용(0138030700), 상습항공기불법사용(0138030800) <미수, 교사, 방조 포함>  [특별범범] • 군용물범죄법 : 군용선박불법사용(0411087400), 군용항공기불법사용(0411087500), 상습군용선박불법사용(0411087800), 상습군용항공기불법사용(0411087900) <미수, 교사, 방조 포함>
05022	개인재물 절도	050221	사람으로부터의 개인재물 절도	[형법범] • 형법 : 절도(0138010000, 0138010100), 특수절도(0138030000, 0138030100), 상습절도(0138040000, 0138040100), 상습특수절도(0138060000, 0138060100) <미수, 교사, 방조 포함>
		050222	운송수단으로부터의 개인재물 절도	
		050229	기타 개인재물 절도	
05023	사업체재물 절도	050231	점포대상 절도	[특별범범] • 특정범죄가중법 : 절도(0206021900)
		050239	기타 사업체재물 절도	
05024	공공재물 절도	-	-	• 군용물범죄법 : 군용물절도(0411080100), 군용물특수절도(0411080700), 상습군용물절도(0411080800), 상습군용물특수절도(0411081400) <미수, 교사, 방조 포함>
05025	가축절도	-	-	
05026	용역절도	-	-	
05029	기타 절도 행위	-	-	
		-	-	

위와 같이 ICCS의 분류와 우리나라의 범죄분류코드를 매칭시켜 보면, 그 포섭관계가 비교적 명확하게 나타나는 부분과 혼재되어 있는 부분이 나타난다. 포섭관계를 쉽게 알 수 있는 분류는 사용절도라고도 일컬어지는 자동차 등 불법사용이며, 그 외의 항목에서는 포섭관계가 매우 불분명해진다.

우선 지상 동력 운송수단 불법사용(050212)에는 「형법」상 자동차불법사용과 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사용, 상습자동차불법사용, 상습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사용이 포함됨은 자명하다. 이 외에도 「군용물범죄법」상 군용자동차불법사용과 군용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사용, 상습군용자동차불법사용, 상습군용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사용도 본 세분류에 포함된다. 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지상에서 이용되는 운송수단이며, 엔진이나 모터의 추진력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 외에 선박이나 항공기, 군용선박이나 군용항공기를 (상습적으로) 불법사용하는 행위는 기타 동력 운송수단 또는 그 부품 절도(050219)에 포함된다. 이들은 ICCS가 들고 있는 예시에 정확히 들어맞는 구성요건들이다.<sup>86)</sup>

포섭관계가 불분명한 항목들은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절도행위와 관련된 대부분의 행위군이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쟁점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용역절도와 관련해서는 전기나 열, 냉기, 수력 등 관리할 수 있는 무체물은 「형법」상 재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sup>87)</sup> 관념상 용역 절도(05026)에 포섭될 수는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범죄분류체계가 그와 같은 대상별로 코드를 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다른 범주와의 중첩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 다. 죄명코드 분류상의 쟁점

절도목적 침입(0501)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쟁점은 ICCS의 분류체계 전반에서 나타나는 기수와 미수의 구분, 비정범적 요소 및 예비와 음모의 간과를 제외하면, 우선

86) 다만 기타 동력 운송수단 또는 그 부품 절도(050219)는 앞의 세분류에 대한 보충적 범주이기 때문에 선박이나 항공기 등의 불법사용 외에 앞의 범주에 포섭되지 않는 다른 유형의 “절도행위”도 포섭한다. 이러한 여지를 고려해 위 표에서는 다른 분류와의 경계선을 점선으로 표기하였다.

87) 김성천·김형준, 형법각론 제4판, 소진, 2014, 317쪽; 김일수·서보학, 새로쓴 형법각론 제8판, 2015, 223쪽; 배종대, 형법각론 제8전정판, 2013, 61/8; 손동권·김재운, 새로운 형법각론, 2013, 20/6; 이재상, 형법각론 제9판, 2013, 16/14; 임웅, 형법각론 제6정판, 2015, 299쪽.

분류기준의 이질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포섭관계의 혼선을 들 수 있다. 그 외에도 절도를 매개로 한 결합범 문제가 발생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결론부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 3. 지적재산 범죄(Intellectual property offences, 0503)

#### 가. 개념 및 행위

ICCS 매뉴얼에 따르면 중분류 지적재산 범죄(0503)는 “저작권이나 특허권, 상표권 또는 기타 지적 재산에 대한 불법복제, 사용, 전제, 기타 침해”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지적재산은 최소한 발명이나 문학·예술작품, 상업활동에 사용되는 기호나 이미지, 명칭으로 정의하며, 특허는 발명에 부여되는 배타적 권리로서, 발명은 작업을 수행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공하거나 문제에 대한 새로운 기술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제품이나 공정을 의미한다. 저작권은 문학예술작품의 창작자에게 주어지는 해당 작품에 관한 권리를 말하고, 상표는 특정인이나 기업이 생산 내지 제공하는 특정상품 또는 서비스를 식별하게 해주는 고유의 기호로 정의된다.<sup>88)</sup> 고전적인 저작권침해행위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사회에서 흔히 않게 발생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산업스파이 행위 가운데 허위문서작성이나 위조·변조를 제외한 행위들도 여기에 포함된다. 상표나 특허, 라이선스 상품 등의 위조품 제작이나 제조, 전달, 소지는 [소분류 07022]에 포함되기 때문에 본 중분류에서는 제외된다. 그 밖에 절도나 장물에 관한 행위, 신원절도 등도 본 중분류에서 제외된다.

본 중분류는 소분류나 세분류 없이 단 하나의 범주로 구성된다.

#### 나. 죄명코드 연계성 분석

이상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죄명코드들을 ICCS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88) 이상의 개념정의에 대해서는 UNODC,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s, Ver. 1.0, March 2015, p. 61 fn. 97.

〈표 2-5-4〉 지적재산 범죄(0503)의 죄명코드 분류

2수준/중분류		3수준/소분류, 4수준/세분류		죄명코드
0503	지적재산 범죄	-	-	[특별법범] 저작권법위반(0220040400), 특허법위반 (0227020100), 실용신안법위반(0227020200), 의장법위반(0227030100), 상표법위반 (0227030200), 디자인보호법위반(1227030100) (교사, 방조 포함)

「저작권법」 제136조는 저작권권 및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허법」 제225조도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용신안법」 제45조도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를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다. 「디자인보호법」(2005년 「의장법」 개정으로 법률명 변경) 제220조와 상표법 제230조도 마찬가지로 디자인권/상표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를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다.

#### 다. 죄명코드 분류상의 쟁점

ICCS는 모든 지적재산권 침해행위를 단 하나의 코드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 침해행위가 매우 다변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구체적인 침해대상이나 양상을 파악하는 데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4. 재물손괴(Property damage, 0504)

ICCS 매뉴얼에 따르면 중분류 재물손괴(0504)는 “재물에 대한 고의적인 파괴(destruction)나 훼손(damage), 외관훼손(defacement)”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손괴와 같은 개념으로 볼 수도 있으나, ICCS의 예시에 따르면 방화나 침수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손괴 개념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즉 방화나 폭발물에 의한 재물손괴를 비롯하여, 반달리즘(vandalism)과 그라피

티(graffiti)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절도목적의 불법침입(0501)과 컴퓨터시스템 손괴 내지 컴퓨터데이터 손괴는 컴퓨터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0903)로 분류되며, 동물에 대한 살해나 상해행위는 자연환경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대분류 10) 가운데 동물대상 행위(10091)에 포섭되어 본 중분류에서는 제외된다.

본 중분류는 소분류로서 공공재물 손괴(05041)와 개인재물 손괴(05042), 사업체 재물 손괴(05043), 기타 재물손괴(05049)로 분류된다.

### 가. 개념 및 행위

#### 1) 공공재물 손괴(Damage of public property, 05041)

중분류 재물손괴(0504)의 첫 번째 소분류는 공공재물 손괴(05041)로서 공공재물에 대한 고의적인 파괴나 훼손, 외관훼손을 말한다. 파괴는 대상물의 기능이나 효용을 완전히 상실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며, 훼손은 그 기능이나 효용의 일부를 상실시키는 행위를, 외관훼손은 대상물의 기능이나 효용은 상실시키지 않지만, 원래의 외형을 변형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ICCS는 정부시설 파괴행위나 학교 내 공공재물에 대한 물리적 손괴를 예로 들고 있다. 그런데 ICCS 스스로 공공재물을 “정부가 소유한 재물 가운데 부동산 이외의 것”으로 제한되는 것으로 설명한 바 있다.<sup>89)</sup> 그러나 중분류 예시에서 방화와 반달리즘까지 포섭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공공재물과 아래 개인재물, 사업체 재물에서도 모두 부동산에 대한 손괴행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 2) 개인재물 손괴(Damage of personal property, 05042)

두 번째 소분류는 개인재물 손괴(05042)로서 개인재물에 대한 고의적인 파괴나 훼손, 외관훼손을 말한다. ICCS는 개인주거 파괴나 개인재물 손괴(damage to personal property)를 예시로 들고 있다.

89) UNODC,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s, Ver. 1.0, March 2015, p. 61 fn. 96.

3) 사업체 재물 절도(Damage of business property, 05043)

세 번째 소분류는 사업체 재물 손괴(05042)로서 사업체 재물에 대한 고의적인 파괴나 훼손, 외관훼손을 말한다. ICCS는 사업체 재물의 파괴나 손괴를 예시로 들고 있다. 다만 이는 사실상 표제 내지 일반설명을 동어반복한 것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예시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4) 기타 재물손괴(Other damage of property, 05049)

이는 재물손괴(0504)의 마지막 소분류이자, 다른 소분류에 대한 보충적 범주이다. 보충적 범주이므로 당연히 위에서 언급한 각 소분류 및 세분류의 범주는 제외된다. 다만 ICCS는 여기에 포섭되는 행위로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아무런 예시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기타 강도행위(04019)나 기타 사람에 대한 폭력 또는 협박을 수반한 재산 침해행위(0409)와 같이 앞의 소분류에 포섭되지 않는 모든 유형의 손괴행위를 포섭하고자 만들어 둔 소분류라 할 수 있다.

나. 죄명코드 연계성 분석

이상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죄명코드들을 ICCS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2-5-5〉 절도(0502)의 죄명코드 분류

3수준/소분류		4수준/세분류		죄명코드
05041	공공재물 손괴	-	-	[형법범] 공용건조물등방화(0113070000), 공용건조물방화(0113070100), 공용기차방화(0113070200), 공용전차방화(0113070300), 공용자동차방화(0113070400), 공용선박방화(0113070500), 공용항공기방화(0113070600), 공용광궤방화(0113070700), 공익건조물등방화(0113080000), 공익건조물방화(0113080100), 공익기차방화(0113080200), 공익전차방화(0113080300), 공익자동차방화(0113080400), 공익선박방화(0113080500), 공익항공기방화(0113080600), 공익광궤방화(0113080700), 공용건조물일수(0114014400), 공익건조물일수(0114014500), 공용기차일수(0114014600), 공익기차일수(0114014700), 공용전차일수(0114014800), 공익전차일수(0114014900), 공용자동차일수(0114015000), 공익자동차일수(0114015100), 공용선박일수(0114015200), 공익선박일수

3수준/소분류	4수준/세분류	죄명코드
		<p>(0114015300), 공용항공기일수(0114015400), 공익항공기일수(0114015500), 공용광갱일수(0114015600), 공익광갱일수(0114015700), 공익건조물파괴(0142020000), 공익건조물파괴(0142020100), 특수공익건조물파괴(0142060500)          &lt;교사, 방조, 예비, 음모, 미수 포함&gt;</p> <p>[특별법범]          • 군용물범죄법 :          군용공장방화(0411010100), 군용함선방화(0411010500), 군용항공기방화(0411010900), 전투용시설방화(0411011300), 전투용기차방화(0411011700), 전투용전차방화(0411012100), 전투용자동차방화(0411012500), 전투용교량방화(0411012900), 군용물현존창고방화(0411013300), 군용물창고방화(0411013700), 전시노적군용물방화(0411020100), 사변노적군용물방화(0411020500), 계엄지역노적군용물방화(0411020900), 노적군용물방화(0411021300), 폭발물파열군용공장손괴(0411030100), 폭발물파열군용함선손괴(0411030500), 폭발물파열군용항공기손괴(0411030900), 폭발물파열전투용시설손괴(0411031300), 폭발물파열전투용기차손괴(0411031700), 폭발물파열전투용전차손괴(0411032100), 폭발물파열전투용자동차손괴(0411032500), 폭발물파열전투용교량손괴(0411032900), 폭발물파열군용물현존창고손괴(0411033300), 폭발물파열군용물창고손괴(0411033700), 전시폭발물파열노적군용물손괴(0411034100), 사변폭발물파열노적군용물손괴(0411034500), 계엄지역폭발물파열노적군용물손괴(0411034900), 폭발물파열노적군용물손괴(0411035300), 군용물손괴(0411040100), 군용시설손괴(0411040500), 노획물소취(0411050500), 노획물손괴(0411050900)          &lt;교사, 방조, 예비, 음모, 미수 포함&gt;</p>
05042	개인재물손괴	<p>[형법범]          관내장치물손괴(0112040400), 분묘발굴관내장치물손괴(0112080400), 현주건조물등방화(0113010000), 현주건조물방화(0113010100), 현주기차방화(0113010200), 현주전차방화(0113010300), 현주자동차방화(0113010400), 현주선박방화(0113010500), 현주항공기방화(0113010600), 현주광갱방화(0113010700), 일반건조물등방화(0113090000), 일반건조물방화(0113090100), 일반기차방화(0113090200), 일반전차방화(0113090300), 일반자동차방화(0113090400), 일반선박방화(0113090500), 일반항공기방화(0113090600), 일반광갱방화(0113090700), 자기소유일반건조물등방화(0113100000), 자기소유건조물방화(0113100100), 자기소유기차방화(0113100200), 자기소유전차방화(0113100300), 자기소유자동차방화(0113100400), 자기소유선박방화(0113100500), 자기소유항공기방화(0113100600), 자기소유광갱방화(0113100700), 일반물건방화(0113110000), 일반물건방화(0113110100),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0113120000),</p>

3수준/소분류	4수준/세분류	죄명코드	
05043	사업체 재물 손괴	-	<p>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0113120100), 연소(0113130000), 방화연소(0113130100), 현존건조물등방화(0113020000), 현존건조물방화(0113020100), 현존기차방화(0113020200), 현존전차방화(0113020300), 현존자동차방화(0113020400), 현존선박방화(0113020500), 현존항공기방화(0113020600), 현존광갱방화(0113020700), 현주건조물일수(0114010200), 현존건조물일수(0114010300), 현주기차일수(0114010400), 현존기차일수(0114010500), 현주전차일수(0114010600), 현존전차일수(0114010700), 현주자동차일수(0114010800), 현존자동차일수(0114010900), 현주선박일수(0114011000), 현존선박일수(0114011100), 현주항공기일수(0114011200), 현존항공기일수(0114011300), 현주광갱일수(0114011400), 현존광갱일수(0114011500), 일반건조물일수(0114015800), 일반기차일수(0114015900), 일반전차일수(0114016000), 일반자동차일수(0114016100), 일반선박일수(0114016200), 일반항공기일수(0114016300), 일반광갱일수(0114016400), 자기소유건조물일수(0114016500), 자기소유기차일수(0114016600), 자기소유전차일수(0114016700), 자기소유자동차일수(0114016800), 자기소유선박일수(0114016900), 자기소유항공기일수(0114017000), 자기소유광갱일수(0114017100), 손괴의죄(0142000000), 재물손괴(0142010000, 0142010100), 중손괴(0142030000, 0142030100), 특수재물등효용침해(0142060000), 특수재물손괴(0142060100), 특수문서손괴(0142060200), 특수재물은닉(0142060300), 특수문서은닉(0142060400), 함선복물(0411060100), 함선파괴(0411060500), 항공기추락복물(0411060900), 항공기추락손괴(0411061300)</p> <p>● 폭력행위처벌법 : 상습손괴(0206035100), 야간·공동손괴(0206036100), 집단·흉기등손괴(0206037100), 야간집단·흉기등손괴(0206038100), 상습집단·흉기등손괴(0206039100), 단체등의상습재물손괴등(0206050900), 단체등의공동재물손괴등(0206051000), 단체등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0206051100), 단체등의상습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0206051200), 상습재물손괴등(1206035100), 공동재물손괴등(1206036100), 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1206037100), 상습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1206039100)</p> <p>● 아동학대처벌법 : 상습재물손괴(0209924100), 상습문서손괴(0209924200), 상습재물은닉(0209924400), 상습문서은닉(0209924500) (교사, 방조, 예비, 음모, 미수 포함)</p>
05049	기타 재물손괴	-	<p>[형법법] 분묘발굴유발손괴(0112080300) (교사, 방조, 미수 포함)</p>

## 1) 공공재물 손괴(05041)와의 죄명코드 연계성

공용건조물 등 또는 공익건조물 등에서 “공용의 사용”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다는 것을, “공익의 사용”은 일반공중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sup>90)</sup> 이때 공용으로 사용되는 물건이나 공익을 위해 사용되는 물건의 소유관계는 묻지 않는다. 즉 국가소유인 경우는 물론, 개인 소유인 경우에도 그것이 공용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공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으면 공용건조물 등 내지 공익건조물 등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류기준에 따르면 공용성과 공익성이라는 기준이 ICCS의 공공성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ICCS는 공공재물을 정부가 소유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용건조물 등 및 공익건조물 등에 대한 방화, 손괴, 일수 등의 행위는 경우에 따라 공공재물 손괴가 될 수도, 개인재물 또는 사업체 재물 손괴가 될 수도 있다.

한편 “군용물”이란 군용(軍用)으로 사용되는 물건으로서 다음 표에 해당하는 것 또는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 군사기밀, 다음 표에 따른 군용물을 운용하는 데 필요한 보조장비, 다음 표에 따른 군용물의 검사나 시험, 정비용 장비로서 군용에 공하기 위해 특수제작된 것을 말한다(「군용물범죄법」 제2조 제2항). 우리나라는 사병(私兵)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군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물건은 공공재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표 2-5-6〉 군용물범죄법 별표: 군용물의 범위

분류	세 목
화력	개인화기(火器), 공용화기, 화포, 함포, 수중병기, 함정병기 및 사격 통제기기
특수무기	방공유도무기, 대공화기, 대전차유도무기, 지대지무기와 방공통제 장비(지상 및 함상)
기동	전차, 장갑차, 토우차, 수륙양용장갑차, 사격통제차량, 트럭(지휘정찰, 작전연락, 장비가설, 병력 및 물자수송용), 견인차, 구난차, 통신가설차, 중장비 운반차, 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제작된 차량과 트레일러로서 군용의 표지가 있는 것
일반	발연기(發煙機), 화생방장비, 지뢰(地雷)제거장비, 도하(渡河)장비

90) 김성천·김형준, 형법각론 제4판, 2014, 610-611쪽; 김일수·서보학, 새로운 형법각론 제8판, 2015, 464쪽; 배종대, 형법각론 제8전정판, 2013, 99/2; 손동권·김재윤, 새로운 형법각론, 2013, 27/25; 이재상, 형법각론 제9판, 2013, 27/35; 임용, 형법각론 제6정판, 법문사, 2015, 616쪽.

분류	세 목
통신전자	무선통신기, 전파기기, 다중통신장비, 항법장비, 레이더장비, 음향탐지장비, 전자전장비, 전화기(야전용), 전신기, 교환장치, 전화중계장치, 반송장치, 중계대, 시험대, 원격조정장치 및 반송전화단말장치
함정	함정, 소해(掃海)장비, 수뢰(水雷)장비, 항해광학장비, 수중공격 및 항만방어장비
항공	항공기, 직접 지원장비, 무장장착(武裝裝着)장비
군용 식량	군용에 공하는 쌀, 보리, 콩 및 그 가공품과 부식물(副食物)
군복류	군복(내의를 포함한다) 및 군화
군용 유류	군용으로 사용되는 휘발유, 경유, 항공유 및 등유

## 2) 개인재물 및 사업체 재물 손괴의 죄명코드 연계성

ICCS는 방화와 일수도 손괴행위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방화의 죄와 일수의 죄 가운데 과실범과 결합범, 결과적 가중범을 제외한 모든 항목을 포섭할 수 있다. 다만 ICCS는 오로지 재물이 정부에 속한 것인지, 개인에 속한 것인지, 또는 사업체에 속한 것인지만을 분류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범죄분류체계에서 그와 같은 소유관계를 알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자기소유건조물 등에 대한 방화나 일수 정도 밖에 없다. 다만 이것도 소유관계의 형태 자체를 구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기소유인 물건을 스스로 손괴하거나 파괴하는 행위는 애초에 불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방화나 일수로 공공위험을 발생시킨 부분에 대해서만 처벌한다는 취지에서 구성된 개념이다.<sup>91)</sup> 따라서 앞의 표에 열거한 방화와 일수, 손괴 등의 행위는 경우에 따라 공공재물 손괴가 될 수도, 개인재물 손괴가 될 수도, 사업체 재물 손괴가 될 수도 있다.

한편 함선이나 선박, 자동차 등을 전복, 파괴하는 행위와 폭발물 등 파열행위들은 위험행위(0207)의 성격과 재물손괴(0504)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손괴행위 자체가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91) 김성천·김형준, 형법각론 제4판, 2014, 611쪽; 김일수·서보학, 새로운 형법각론 제8판, 2015, 464쪽; 배종대, 형법각론 제8전정판, 2013, 99/3; 손동권·김재운, 새로운 형법각론, 2013, 32/22; 이재상, 형법각론 제9판, 2013, 27/36; 임웅, 형법각론 제6정판, 2015, 552쪽, 617쪽 참조.

### 3) 기타 재물 손괴의 죄명코드 연계성

앞의 공공재물과 개인재물, 사업체 재물이 소유관계가 명확한 재물이거나 적어도 소유의 대상이 되는 물건 등에 대한 손괴행위라면, 기타 재물 손괴행위에는 소유관계가 불분명하거나 통상 소유의 대상이 되지 않는 물건 등에 대한 손괴행위를 포섭하는 분류라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유발은 누군가의 소유물이라고 보기 어렵다.<sup>92)</sup> 따라서 유발에 대한 손괴는 본 소분류에 포섭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 형법 및 범죄분류체계상 유사한 범주로 분류되고 있는 관내장치물손괴(0112040400)와 분묘 발굴관내장치물손괴(0112080400)는 어쨌거나 그 소유관계를 분명히 밝힐 수 있으며, 소유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본 소분류보다는 앞의 소분류 중 어느 하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다. 죄명코드 분류상의 쟁점

재물손괴(0504)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쟁점으로는 앞의 연계성분석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ICCS의 분류체계 전반에서 나타나는 기수와 미수의 구분, 비정법적 요소 및 예비와 음모의 간과, 그리고 앞에서 계속해서 쟁점이 되어 왔던 결과적 가중범 문제가 제기된다. 그 외에 재물손괴(0504)만의 고유한 쟁점을 찾아보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분류기준의 이질성으로 인한 포섭관계 혼선문제가 발생한다. 간략히 살펴 보자면, ICCS는 오로지 대상물에 대한 적극적 변형으로 대상물의 효용을 없애거나 감소시키는 행위만을 예정하고 있으나, 은닉행위와 같이 소극적으로 대상물의 효용을 없애거나 감소시키는 행위를 포섭하지 못한다. 그 밖에 문서에 대한 손괴와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손괴행위도 포섭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결론부에서 언급하도록 하겠다.

92) 김일수·서보화, 새로운 형법각론 제8판, 2015, 526쪽; 배종대, 형법각론 제8전정판, 2013, 133/7; 손동권·김재윤, 새로운 형법각론, 2013, 41/19; 이재상, 형법각론 제9판, 2013, 38/19; 임웅, 형법각론 제6정판, 2015, 305-306쪽, 816쪽. 물론 그것이 “물건” 내지 “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차도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5. 기타 재산침해행위(Other acts against property only, 0509)

### 가. 개념 및 행위

ICCS 매뉴얼에 따르면 중분류 기타 재산침해행위(0509)는 앞의 절도목적 침입(0501)과 절도(0502), 지적재산 범죄(0503), 재물손괴(0504)에 대한 보충적 분류항목이다. ICCS는 재산의 불법유용, 불법점거, 주택 또는 토지의 불법획득, 범죄적 침입(criminal trespass), 강제진입 및 점거 등을 예로 들고 있다.

### 나. 죄명코드 연계성

이상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죄명코드들을 ICCS의 기준에 따라 분류해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2-5-7〉 기타 재산침해행위(0509)의 죄명코드 분류

2수준/중분류		3수준/소분류, 4수준/세분류		죄명코드
0509	기타 재산 침해행위	-	-	[형법범] 퇴거불응(0136020000, 0136020100), 저택퇴거불응(0136020200), 건조물퇴거불응(0136020300), 선박퇴거불응(0136020400), 방실퇴거불응(0136020500), 특수퇴거불응(0136030600), 재물은닉(0142010200), 문서은닉(0142010400) • 폭력행위처벌법 : 상습퇴거불응(0206034800), 야간·공동퇴거불응(0206035800), 집단·흉기등퇴거불응(0206036800), 야간집단·흉기등퇴거불응(0206037800), 상습집단·흉기등퇴거불응(0206038800), 단체등의상습퇴거불응(0206050500), 단체등의공동퇴거불응(0206050600), 단체등의집단·흉기등퇴거불응(0206050700), 단체등의상습집단·흉기등퇴거불응(0206050800), 공동퇴거불응(1206035800) <교사, 방조, 미수 포함>

본 중분류는 [대분류 05]의 마지막 보충적 분류항목으로서, 앞의 각 중분류에 포섭되지 않는 모든 유형의 재산침해행위를 포섭한다. 이를 우리나라 범죄분류코드와 매칭시켜보면, 우선 (절도목적) 침입에 포섭되지 않는 퇴거불응의 행위가 여기에 포섭될

수 있다. 타인의 저택이나 건조물을 점거한 채 소유주나 관리자의 퇴거요구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는 행위는 그 재산에 대한 침해행위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손괴의 개념에 포섭되기 어려운 “은닉행위”도 여기에 포섭될 수 있다. 은닉도 적극적 변형만 없을 뿐 숨겨둠으로써 대상물의 효용에 해를 가하는 행위라는 점에서는 관념상 손괴와 병렬시킬 수 있는 재산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다. 죄명코드 분류상의 쟁점

중분류 기타 재산침해행위(0509)에서는 퇴거불응이 침입 개념에 포섭될 수 있는지, 또는 은닉이 손괴의 개념에 포섭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 쟁점 외에 죄명코드 분류상으로는 별다른 쟁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

# 제3장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결론: 한국범죄분류 개발 관련 쟁점 및 과제

---

# 결론: 한국범죄분류 개발 관련 쟁점 및 과제

본 연구의 주된 내용인 ICCS 분류에 따라 국내 죄명코드와의 연계분석을 진행한 결과, ICCS에 따라 분류가능한 죄명코드와 죄명코드의 상세화 내지 생성을 통해 ICCS 도입이 가능한 죄명코드를 추출할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상술하였다. 그러나 ICCS와 한국범죄분류의 기초분류단위의 차이로부터 비롯된 쟁점 역시 도출되었으며, ICCS의 국내 이행에 있어 각 쟁점들이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하에서는 ICCS 도입시 죄명코드의 상세화로 해소가능한 문제점을 제외한 나머지 핵심적인 쟁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 제1절 결합범의 분류 문제

우리 형법상 결합범이란, 두 개 이상의 범죄구성요건들이 결합하여 하나의 독자적인 범죄구성요건을 이루는 범죄유형을 의미한다.<sup>93)</sup> 우리 형법이 이와 같이 결합범을 독자적인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범죄통계가 각 범죄구성요건의 죄명을 기본으로 생산됨에 따라, 이와 같은 결합범 각각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죄명코드가 부여되어 있다. 이에 반해 ICCS는 그 분류체계를 마련함에 있어 이와 같은 결합범을 예상하고 있지 않다. 그 결과 결합범에 해당하는 우리의 죄명코드는 ICCS의 분류체계상 둘 이상의 [중분류], [소분류], 또는 [세분류]로 분류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하지만 ICCS 매뉴얼은 통계업무의 관행 및 원칙에 기반하여 '상호 배타성'(mutual exclusivity)을 강조하고 있으므로,<sup>94)</sup> 하나의 죄명코드는 오직

93) 결합범의 이와 같은 의미에 대해서는 이상돈, 『형법강론』, 박영사, 2015, 470쪽 참조.

94) UNODC,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s, Version

하나의 [중분류], [소분류], 또는 [세분류]로만 분류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다음과 같은 결합법들의 분류는 ICCS를 도입하는데 있어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다.

### 1. [중분류 0101]의 고의에 의한 살인과 결합법

결합법을 이루는 범죄구성요건들 중 하나가 살인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중분류 0101]의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다음은 이처럼 [중분류 0101]로의 분류여부가 문제되는 결합법들에 해당한다.

<표 3-1-1> 고의에 의한 살인(0101)으로의 분류여부가 쟁점이 되는 결합법

	죄명코드
살인죄를 포함하는 결합법	[형법법] 피약취자살해(0131111100), 피유인자살해(0131111200), 피해매자살해(0131111300), 피국외이송자살해(0131111400), 강간살인(0132050200), 유사강간살인(0132050300), 준유사강간살인(0132050500), 강제추행살인(0132070200), 준강제추행살인(0132110200), 미성년자의제강간살인(0132170800),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살인(0132171000), 상습미성년자의제강간살인(0132181600), 상습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살인(0132182000), 인질살해(0137010600), 강도살인(0138130000; 0138130100), 해상강도살인(0138190000; 0138190100) • 성폭력처벌법위반: 강간등살인(0206057600) • 아청법위반: 강간등살인(0216070700)
	[특별법법] • 특정강력범죄법위반: 강도살인(0206032500)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간등살인(0206033300)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상습강간살인(0209919500), 상습유사강간살인(0209919700), 상습강제추행살인(0209919900), 상습준강간살인(0209920200), 상습준유사강간살인(0209920400), 상습준강제추행살인(0209920600), 상습미성년자의제강간살인(0209922200), 상습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살인(0209922600) • 군용물범죄법위반: 군용물강도살인(0411082200), 군용물해상강도살인(0411082800),

	죄명코드
살인죄를 포함하는 결합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균형법위반: 주인재물약탈살해(0413020100), 전자자재물약탈살해(0413020300), 전상병자재물약탈살해(0413020500), 군인등강간살인(0415240100), 군인등강제추행살인(0415250100), 군인등준강간살인(0415260100), 군인등준강제추행살인(0415270100), 군인등강간미수살인(0415280100), 군인등강제추행미수살인(0415290100), 군인등준강간미수살인(0415300100), 군인등준강제추행미수살인(0415310100), 군인등유사강간살인(0415440100), 군인등준유사강간살인(0415480100)</li> </ul>

## 2. [중분류 0102]의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와 결합범

[중분류 0101]의 고의에 의한 살인에서 결합범의 분류가 문제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분류 0102]의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에서도 결합범의 분류가 문제된다. [중분류 0102]와 관련해서 그 분류가 문제되는 결합범의 죄명코드들은 다음과 같다.

〈표 3-1-2〉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0102)로의 분류여부가 쟁점이 되는 결합범

	죄명코드
살인죄의 미수를 포함하는 결합범	<p>[형법범]</p> <p>강도살인미수(0138130110), 해상강도살인미수(0138190110), 피약취자살해미수(0131111110), 피유인자살해미수(0131111210), 피매매자살해미수(0131111310), 피국외이송자살해미수(0131111410), 인질살해미수(0137010610)</p>

## 3. [세분류 020111]의 중한 폭행과 결합범

「형법」, 「특정범죄가중법」, 「폭력행위처벌법」,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등에는 결합범을 이루는 범죄구성요건들 중 하나로 상해죄를 요구하는 다수의 범죄유형들이 규정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형법상의 상해죄는 ICCS의 분류체계에 따를 때 [세분류 020111]의 중한 폭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우리 형법상 결합범을 이루는 범죄구성요건들 중 하나가 상해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세분류 020111]의 중한 폭행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다음은 이처럼 [세분류 020111]로의 분류여부가 문제되는 결합범들이다.

〈표 3-1-3〉 중한 폭행(020111)으로의 분류여부가 쟁점이 되는 결합법

	죄명코드
상해죄를 포함하는 결합법	<p>[형법]</p> 피약취자상해(0131110300), 피유인자상해(0131110400), 피해매자상해(0131110500), 피국외이송자상해(0131110600), 강간상해(0132040200), 유사강간상해(0132040300), 준유사강간상해(0132040500), 강제추행상해(0132060200), 준강간상해(0132080200), 준강제추행상해(0132100200), 미성년자의제강간상해(0132170700),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상해(0132170900), 상습미성년자의제강간상해(0132181400), 상습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상해(0132181800), 인질상해(0137010400), 강도상해(0138110000; 0138110100), 해상강도상해(0138170000; 0138170100) • 특정범죄가중법위반: 강도상해(0206032700), 강도상해등재범(1206022000) • 폭력행위처벌법위반: 단체등의강도상해(0206048100), 단체등의해상강도상해(0206048500) • 성폭력처벌법위반: 강간등상해(0206057400) • 청소년성보호법위반: 강간등상해(0216070500) • 성폭력특례법위반: 강간등상해(0206033100) <p>[특별법]</p>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상습피약취자상해(0209916900), 상습피유인자상해(0209917000), 상습피해매자상해(0209917100), 상습피국외이송자상해(0209917200), 상습강간상해(0209918300), 상습유사강간상해(0209918500), 상습강제추행상해(0209918700), 상습준강간상해(0209918900), 상습준유사강간상해(0209919100), 상습준강제추행상해(0209919300), 상습미성년자의제강간상해(0209922000), 상습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상해(0209922400), • 군용물범죄법위반: 군용물강도상해(0411082000), 군용물해상강도상해(0411082600), <p>• 균형법위반:                      주민재물약탈상해(0413020700), 전자자재물약탈상해(0413020900),                      전상병자재물약탈상해(0413021100), 군인등강간상해(0415080100),                      군인등강제추행상해(0415090100), 군인등준강간상해(0415100100),                      군인등준강제추행상해(0415110100), 군인등강간미수상해(0415120100),                      군인등강제추행미수상해(0415130100), 군인등준강간미수상해(0415140100),                      군인등준강제추행미수상해(0415150100), 군인등유사강간상해(0415420100),                      군인등준유사강간상해(0415460100)</p>

#### 4. 강도와 관련한 결합범 분류

우리나라 형법전 및 기타 특별형법에는 결합범에 대한 규정이 상당수 존재한다. 강도와 관련한 결합범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3-1-4〉 강도(0401)의 분류여부가 쟁점이 되는 결합범

	죄명코드
강도죄를 포함한 결합범	<p>[형법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법 : 강도상해(0138110000, 0138110100)      강도살인(0138130000, 0138130100) 강도강간(0138150000, 0138150100)      해상강도상해(0138170000, 0138170100) 해상강도살인(0138190000, 0138190100)      해상강도강간(0138210000, 0138210100)</li> <li>• 특정범죄가중법 : 강도상해재범(0206022000)                      강도강간(0206024900) 강도강간재범(0206027200)                      강도강제추행(0206027600) 강도준강간(0206027700)                      강도준강제추행(0206027800) 강도상해등재범(1206022000)</li> <li>• 폭력행위처벌법 : 단체등의강도상해(0206048100)                      단체등의강도강간(0206048300) 단체등의해상강도상해(0206048500)</li> <li>• 성폭력처벌법 : 특수강도강간등(0206056300)                      특수강도강간(0209013100) 특수강도유사강간(0209013200)                      특수강도강제추행(0209013300) 특수강도준강간(0209013400)                      특수강도준유사강간(0209013500) 특수강도준강제추행(0209013600) 〈교사, 방조, 예비, 음모 포함〉</li> </ul>
	<p>[특별법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특수강도강간등(0206030600)</li> <li>• 특정강력범죄법 : 강도살인(0206032500)                      강도강간(0206032600) 강도상해(0206032700)</li> <li>• 군용물범죄법 : 군용물강도상해(0411082000)                      군용물강도살인(0411082200) 군용물강도강간(0411082400)                      군용물해상강도상해(0411082600) 군용물해상강도살인(0411082800)                      군용물해상강도강간(0411083000) 〈교사, 방조, 예비, 음모 포함〉</li> </ul>

강도상해와 같은 결합범에서는 통상 강도가 성공했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즉 강도의 결합범에서는 실제로 재물취득이 발생했는지 묻지 않고, 최종적으로 발생한 결과에 집중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강도살인은 [대분류 01] 다른 사람의 사망을 초래하거나 의도한 행위에 포함되어야 할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중한 폭행(020111)이 무모한 행동에 의한 중상해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강도상해는 — 강도치상과 함께 —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강도가 성폭력까지 범한 경우는 모두 [대분류 03] 성적 성격의 상해행위에 포섭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이 분류하게 되면 범죄의 시발점이 되는 “강도”라는 속성은 온전히 사라지게 되며, 이는 강도의 결합범을 다른 유형의 상해 내지 살인 행위와 동일한 범주로 분류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상세한 범죄분류를 통해 구체적인 범죄원인과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어쨌거나 살인이나 상해, 성범죄의 시발점이 된 “강도”라는 속성이 사라지게 되는 현재의 ICCS 분류체계는 실용적 측면에서도 그다지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 5. 절도(0502)와 관련한 결합범 분류

결합범의 문제는 절도(0502)에서도 여지없이 나타난다. 절도와 관련한 결합범 목록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3-1-5〉 절도(0502)의 분류여부가 쟁점이 되는 결합범

	죄명코드	
절도죄를 포함한 결합범	[형법범]	
	• 특정범죄가중법 :	
	절도강간(0206025100)	절도강제추행(0206027300)
	절도준강간(0206027400)	절도준강제추행(0206027500)
	• 성폭력처벌법 :	
	절도강간등(0206056200)	절도강간(0209012500)
	절도유사강간(0209012600)	절도강제추행(0209012700)
	절도준강간(0209012800)	절도준유사강간(0209012900)
	절도준강제추행(0209013000)	
	〈교사, 방조, 예비, 음모 포함〉	
• 성폭력특례법 :		
절도강간등(0206030500)		
〈교사, 방조, 예비, 음모 포함〉		

우리나라의 형법과 범죄분류체계는 절도범이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을 범한 경우를 별도로 분류하고 처벌하고 있다. 이는 강도의 결합범과 마찬가지로 절도가 성공했는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 즉 절도로 시작했으나 성범죄로 끝난 형태라 할 수 있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결합범 처리의 문제로 귀결된다. 즉 ICCS의 분류체계를 따르게 되면 어쨌거나 강간이나 준강간 등 성범죄의 시발점이 되었던 “절도”의 속성이 사라지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 6. 한국범죄분류상에서의 강도·절도 등과 성폭력범죄의 결합범 분류 혼란

위에서 살펴본 강도 및 절도와 성폭력범죄와의 결합범 분류는 한국범죄분류체계에서도 그 분류기준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다.

아래의 <표 3-1-6>에서는 2014년도 경찰의 『범죄통계』에서의 성폭력범죄와 다른 범죄의 결합범을 표시한 것이다. 「형법」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와 성폭력범죄와의 결합범은 각각 강력범 중 강도와 절도범으로 분류하며,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형법상 주거침입과 절도 및 강도, 특수강도와 성폭력범죄의 결합범에 대해서는 강력범 중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로 분류한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와 다른 범죄의 결합범의 행위태양에 특별히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며, 결합범에 대해 규정이 형법 내에서도 산만하게 규정되어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다.<sup>95)</sup> 이러한 방식의 분류는 2015년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형법」상 강도강간은 강도의 세분류로 포함되며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도강간은 성폭력범죄의 세분류로 포함된다. 유사한 종류의 결합범에 대해 각각 다른 분류체계로 분류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각 죄명의 적용실태 및 판례 분석을 통해 죄명별로 범죄행위 속성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어떠한 분류체계에 적용하는지에 대해 일관된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결합범의 원칙을 마련하여야 ICCS의 분류체계에 각 결합범의 죄명코드를 분류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95) 윤동호, “성(性)형법의 체계적 정비방안”, 『비교형사법연구』제10권 제1호(2008.7),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8, 127쪽.

〈표 3-1-6〉 2014년도 경찰의 『범죄통계』상 성폭력범죄 결합범 범죄분류

범죄분류	죄명코드	죄명코드
형법범)강력범	강도	[형법범] 강도강간(0138150000, 0138150100), 해상강도강간(0138210000, 0138210101) • 특정범죄가중법위반 강도강간(0206024900), 강도강간재범(0206027200), 강도강제추행(0206027600), 강도준강간(0206027700), 강도준강제추행(0206027800)
형법범)강력범	강간,강제추행	• 성폭력처벌법위반 주거침입강간(0209011900), 주거침입유사강간(0209012000), 주거침입강제추행(0209012100), 주거침입준강간(0209012200), 주거침입준유사강간(0209012300), 주거침입준강제추행(0209012400), 철도강간(0209012500), 철도유사강간(0209012600), 철도강제추행(02090127000), 철도준강간(0209012800), 철도준유사강간(0209012900), 철도준강제추행(0209013000), 특수강도강간(0209013100), 특수강도유사강간(0209013200), 특수강도강제추행(0209013300), 특수강도준강간(0209013400), 특수강도준유사강간(0209013500), 특수강도준강제추행(0209013600) • 성폭력특별법위반 철도강간등(0206030500)
형법범)폭력범	폭력행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강도강간) (0206048300)
형법범)절도범	절도범	• 특정범죄가중법위반 철도강간(0206025100), 철도강제추행(0206027300), 철도준강간(0206027400), 철도준강제추행(0206027500)
특별법범)특별법범	기타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0206056300)

## 제2절 결과적 가중범의 분류 문제

우리 형법상의 결과적 가중범 중에는, ICCS의 분류체계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 결과적 가중범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결과적 가중범도 존재한다. 전자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사망을 중한 결과로 하는 결과적 가중범을 들 수 있다. 즉, 사망을 중한 결과로 하는 결과적 가중범은 i) 고의의 기본범죄 또한 사망한 피해자를 객체로

하는 경우에는 [소분류 01031]의 살인 고의 및 중한 상해 고의 이외의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그리고 ii) 고의의 기본범죄가 사망한 피해자를 객체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분류 0109]의 기타 다른 사람의 사망을 초래하거나 의도한 행위로 분류될 수 있다. 여기서 고의의 기본범죄가 사망한 피해자를 객체로 하지 않는 경우(ii)를 [소분류 01031]로 분류할 수 없는 이유가, 이 경우에는 행위자에게 살인이나 중한 상해의 고의가 없음은 물론이고 일반적으로 피해자에 대해 해악을 가하겠다는 고의도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는 점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 1. [소분류 02019]의 기타 폭행과 협박과 결과적 가중범의 분류

사망을 중한 결과로 하는 결과적 가중범의 분류와는 달리, 상해를 중한 결과로 하는 결과적 가중범을 ICCS의 분류체계에 따라 분류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문제가 발생한다. 물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해를 중한 결과로 하는 결과적 가중범 중에서도 폭행치상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다양한 죄명코드들은 [소분류 02019]의 기타 폭행과 협박으로 분류될 수 있다. 따라서 상해를 중한 결과로 하는 결과적 가중범 중에서도 그 분류가 문제되는 것은 폭행치상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죄명코드들 이외의 죄명코드들이다. 이러한 죄명코드들에 해당하는 범죄유형은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수반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소분류 02019]의 기타 폭행과 협박으로는 분류될 수 없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표 3-2-1> 폭행과 협박(0201)으로의 분류여부가 쟁점이 되는 결과적 가중범의 예

	죄명코드
	[형법범] 현주건조물등방화치상(0113030000), 현존건조물등방화치상(0113050000), 가스방출치상(0113171900), 전기방출치상(0113172000), 증기방출치상(0113172100), 방사선방출치상(0113172200), 방사성물질방출치상(0113172300), 가스등공급방해치상(0113230000), 현주건조물일수치상(0114011700), 기차등교통방해치상(0115090000), 음용수혼독치상(0116050000), 유기치상(0128090000) 등 다수

## 2. 위험행위로 인한 결과적 가중범

과실(0206)이 과실에 의한 신체해악(가능성)을 분류해 놓은 것이라면, 위험행위(0207)는 그에 대비해 고의의 위험한 행위에 의한 신체해악(가능성)을 분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범죄분류체계에서 고의에 의한 모든 위험행위로 인해 신체해악이 발생한 경우를 모두 포섭할 수 있을지는 다소 의문스럽다. 예컨대 아래 표의 <항목 1>은 고의로 범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행위로 인해 신체해악의 결과가 발생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이들 행위는 공공질서위해행위 또는 사법질서 방해행위에 해당하여 크게 [대분류 08] 국가공공질서, 당국 및 규제 위반행위에 포섭될 수 있는 행위군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신체해악(가능성)의 결과가 발생한 것을 전혀 다른 범주로 분류하는 것이 결코 타당해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아래 표의 <항목 2>는 고의의 공무집행방해라는 성격을 가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재물손괴행위에 해당한다. ICCS는 [대분류 05] 내에 공공재물손괴(05041)를 두고 있어, 본 항목에 속한 행위의 기본구성요건은 공공재물손괴(05041)에 포섭될 수 있으나, 그로 인한 치상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기타 위험행위(02079)에 포섭될 여지도 있다.

같은 맥락에서 손괴나 재물은닉 등의 행위는 [대분류 05] 재산침해행위 가운데 재산손괴(0504)에 해당하게 되나, 치상의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인해 기타 위험행위(02079)에 포섭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한편 문서에 관한 죄는 ICCS에서는 허위 문서작성이나 위조, 변조만을 구분하고 있고, 별도로 문서손괴나 은닉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치상의 결과로 인해 기타 위험행위(02079)에 포섭될 수는 있으나, 위 표와 그에 대한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본질적으로 행위 자체에 이미 사람에 대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다른 유형의 행위와는 상당히 이질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3-2-2〉 위험행위(0207)로 분류하기 어려운 결과적 가중범

항목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010817000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0108170100)
	특수법정, 국회의장모욕치상(0108190000)	특수법정모욕치상(0108190100)
	특수법정소동치상(0108190200)	특수국회의장모욕치상(0108190300)
	특수국회의장소동치상(0108190400)	특수공무상표시등무효치상(0108210000)
	특수공무상봉인손상치상(0108210100)	특수공무상표시손상치상(0108210200)
	특수공무상봉인은닉치상(0108210300)	특수공무상표시은닉치상(0108210400)
	특수공무상봉인무효치상(0108210500)	특수공무상표시무효치상(0108210600)
	특수공무상비밀봉함등개피치상(0108230000)	특수공무상비밀봉함개피치상(0108230100)
	특수공무상비밀문서개피치상(0108230200)	특수공무상비밀도화개피치상(0108230300)
	특수공무상비밀문서내용탐지치상(0108241100)	
	특수공무상비밀전자기록등내용탐지치상(0108241500)	
	특수공용전자기록등손상치상(0108241700)	특수공용전자기록등은닉치상(0108241900)
	특수공용전자기록등무효치상(0108242100)	특수공용서류등무효치상(0108250000)
	특수공용서류손상치상(0108250100)	특수공무상보관물등무효치상(0108290000)
	특수공무상보관물손상치상(0108290100)	특수공무상간수물손상치상(0108290200)
	특수공무상보관물은닉치상(0108290300)	특수공무상간수물은닉치상(0108290400)
특수공무상보관물무효치상(0108290500)	특수공무상간수물무효치상(0108290600)	
	(교사, 방조 포함)	
항목 2	특수공용물건손상치상(0108250200)	특수공용서류은닉치상(0108250300)
	특수공용물건은닉치상(0108250400)	특수공용서류무효치상(0108250500)
	특수공용물건무효치상(0108250600)	특수공용건조물등파괴치상(0108270000)
	특수공용건조물파괴치상(0108270100)	특수공용선박파괴치상(0108270200)
	특수공용기차파괴치상(0108270300)	특수공용항공기파괴치상(0108270400)
	(교사, 방조 포함)	
항목 3	손괴치상(0142040000)	재물손괴치상(0142040100)
	재물은닉치상(0142040200)	
	(교사, 방조 포함)	
항목 4	문서손괴치상(0142040300)	문서은닉치상(0142040400)
	전자기록등손괴치상(0142040600)	전자기록등은닉치상(0142040700)
	(교사, 방조 포함)	

한편 과실(0206)과 관련해 그 과실이 원인행위에 대한 과실이어야 하는지, 결과발생에 대한 과실인 것으로 족한지에 따라 포섭관계가 매우 크게 변화한다. 원인행위에 대한 과실이어야 한다고 본다면, 예컨대 “과실○○○” 또는 “업무상과실○○○” 등의 죄명만이 과실(0206)에 포섭될 수 있다. 그에 반해 결과발생에 대한 과실로 충분한 것으로 본다면, 모든 (진정)결과적 가중범이 과실행위(0206)에 포섭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이 문제는 아래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범죄체계와 ICCS의 범죄분류체계에서 “과실의 층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3. 강도와 관련한 결과적 가중범

우선 강도와 관련한 결과적 가중범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3-2-3〉 강도(0401)와 관련한 결과적 가중범

[형법범]	
• 형법 :	
강도치상(0138120000, 0138120100)	강도치사(0138140000, 0138140100)
해상강도치상(0138180000, 0138180100)	해상강도치사(0138200000, 0138200100)
• 폭력행위처벌법 :	
단체등의강도치상(0206048200)	단체등의해상강도치상(0206048600)
〈교사, 방조, 예비, 음모 포함〉	
[특별범법]	
• 군용물범법 :	
군용물강도치상(0411082100)	군용물강도치사(0411082300)
군용물해상강도치상(0411082700)	군용물해상강도치사(0411082900)
〈교사, 방조, 예비, 음모 포함〉	

강도치상과 같은 결과적 가중범에서는 위의 결합범에서와 마찬가지로 통상 강도가 성공했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즉 실제로 재물취득이 발생했는지 묻지 않고, 최종적으로 발생한 결과에만 초점을 둔다. 따라서 강도치사 또한 [대분류 01] 다른 사람의 사망을 초래하거나 의도한 행위에 포함되어야 할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중한 폭행(020111)이 무모한 행동에 의한 중상해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강도치상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 결합범과 관련하여 언급한 대로, 이처럼 분류하게 되면 범죄의 시발점이 되는 “강도”라는 속성은 온전히 사라지게 되며, 이는 강도의 결과적 가중범을 다른 유형의 치상 내지 치사의 행위와 동일한 범주로 분류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치상이나 치사의 시발점이 된 “강도”라는 속성이 사라지게 되는 현재의 ICCS 분류체계는 실용적 측면에서도 그다지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제3절 침해범과 구체적 위험범의 분류 문제

[중분류 0206] 과실은 “신체적 해악 또는 신체적 해악 가능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즉 본 중분류에 포섭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신체에 실제로 해악을 가한 것뿐만 아니라, 해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따라서 우리의 법개념으로는 실제로 법익침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침해범) 뿐만 아니라 법익침해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발생한 것(구체적 위험범)만으로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 사람의 신체라는 구체적 법익에 대해 해악이 발생할 가능성을 초래한 것만으로도 (본 분류체계상) 범죄가 된다고 이해하는 것은 정확히 구체적 위험범에 대한 이해<sup>96)</sup>와 일치한다. 한편 사람의 신체에 대한 해악 가능성을 추상적 위험범의 수준까지 낮춰 생각한다면, 단순한 실화죄나 과실일수죄와 같은 범죄도 [소분류 02069]에 포섭될 여지도 발생한다.

이처럼 본 분류에서 해악의 발생과 발생가능성을 한데 묶은 것은 범죄행위의 기수와 미수, 예비, 음모의 구분 문제를 발생시킨다. 본 분류체계에서는 실질적 해악발생이라는 기수와 해악발생의 가능성만 창출된, 즉 아직 해악이 발생하지는 않은 미수를 함께 포섭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해악발생의 가능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예비와 음모도 포섭할 여지도 발생한다. 법률상으로는 범죄통계분류상으로도 범죄의 기수와 미수, 예비, 음모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 우리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ICCS의 분류기준은 — 침해범-구체적 위험범의 문제와 함께 — 우리 범죄분류체계를 국제분류체계와 조화시키는 작업에 상당한 장애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제4절 미수와 예비·음모죄 분류 문제

우리 형법은 살인죄의 미수범을 처벌할 뿐 아니라, 살인예비·음모죄도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ICCS [중분류 0102]의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에서 언급하고 있는 ‘attempt’는 영미법상으로 i) 행위자가 실행행위에 착수하고는 실행행위를 종료하기 전에 스스로 이를 중단하거나 또는 경찰의 개입과 같은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그 실행행위를 종료하는데 실패한 경우(incomplete attempt)와, ii) 행위자는 계획한 실행행위를

96) 김성돈, 형법총론 제3판, 2014, 120쪽; 김성천·김형준, 형법총론 제6판, 2014, 61쪽; 배종대, 형법총론 제12판, 2016, 45/4-5; 신동운, 형법총론 제8판, 2014, 133쪽; 오영근, 형법총론 제3판, 2014, 57쪽; 이재상, 형법총론 제7판, 2011, 5/19; 임웅, 형법총론 제6정판, 2014, 98쪽.

중요했지만 의도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completed attempt)의 두 가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sup>97)</sup> 그러므로 영미법상의 ‘attempt’에 포함되는 위의 두 가지 경우 중 전자(i)는 우리 형법상의 착수미수에, 그리고 후자(ii)는 실행미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중분류 0102]의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에서의 ‘attempt’ 또한 실행에 착수한 이후의 미수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살인의 예비 또는 음모 행위에 해당하는 다음의 죄명코드들은 [중분류 0102]의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로는 분류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ICCS를 도입하는데 있어서는 이와 같은 죄명코드들에 대한 분류 문제 또한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3-4-1> 살인예비·음모죄에 해당하는 죄명코드

	죄명코드
살인죄의 예비·음모	<p>[형법범]</p> <p>내란목적살인예비(0101020120), 내란목적살인음모(0101020130), 살인예비(0124010120), 살인음모(0124010130), 존속살해예비(0124020120), 존속살해음모(0124020130), 위계촉탁살인예비(0124060120), 위계촉탁살인음모(0124060130), 위력촉탁살인예비(0124060220), 위력촉탁살인음모(0124060230), 위계승낙살인예비(0124060320), 위계승낙살인음모(0124060330), 위력승낙살인예비(0124060420), 위력승낙살인음모(0124060430), *피약취자살해예비(0131111120), *피약취자살해음모(0131111130), *피유인자살해예비(0131111220), *피유인자살해음모(0131111230), *피매매자살해예비(0131111320), *피매매자살해음모(0131111330), *피국외이송자살해예비(0131111420), *피국외이송자살해음모(0131111430)</p> <p>• 폭력행위처벌법위반:                      단체등의살인예비(0206045600), 단체등의위계촉탁살인예비(0206045700), 단체등의위계승낙살인예비(0206045800), 단체등의위력촉탁살인예비(0206045900), 단체등의위력승낙살인예비(0206046000), 단체등의살인음모(0206046300), 단체등의위계촉탁살인음모(0206046400), 단체등의위계승낙살인음모(0206046500), 단체등의위력촉탁살인음모(0206046600), 단체등의위력승낙살인음모(0206046700)</p>
	<p>[특별법범]</p> <p>• 군형법위반:                      상관살해예비(0409060120), 상관살해음모(0409060130), 초병살해예비(0409120120), 초병살해음모(0409120130)</p>

\* 살인죄를 포함하는 결합범의 예비음모

97) 이에 대해서는 Joshua Dressler, CRIMINAL LAW, West(5th ed. 2009), pp. 732-733 참조.

예비 또는 음모 행위에 해당하는 죄명코드의 분류가 문제되는 경우는 비단 살인에 비·음모죄로만 국한되지 않는다. ICCS 매뉴얼에 따를 때, [중분류 0202]의 자유에 반하는 행위로 분류될 수 있는 우리 형법상의 미성년자 약취·유인죄(형법 제287조)와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죄 및 피약취·유인자 국외이송죄(제288조 제3항)에 대해서는 우리 형법이 예비나 음모를 처벌하는 예외적인 조항(제296조)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CCS의 분류에 따르면 이와 같은 예비 또는 음모 행위를 분류할 수 없게 되는데, 다음의 죄명코드들은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이다.

〈표 3-4-2〉 약취·유인·국외이송의 예비 음모

	죄명코드
	[형법범]
	미성년자약취예비(0131010120), 미성년자약취음모(0131010130), 미성년자유인예비(0131010230), 미성년자유인음모(0131010230), 국외이송약취예비(0131080120), 국외이송약취음모(0131080130), 국외이송유인예비(0131080220), 국외이송유인음모(0131080230), 피약취자국외이송예비(0131090120), 피약취자국외이송음모(0131090130), 피유인자국외이송예비(0131090220), 피유인자국외이송음모(0131090230)

## 제5절 교사범과 방조범의 분류 문제

ICCS의 범죄분류 항목은 정범과 공범을 구분하지 않는다. 어떠한 참여형태이든 사람의 신체에 해악을 가하였거나 가할 위험만을 창출하면 된다. 이는 ICCS의 범죄분류체계가 아직은 초기단계에 불과하여, 일단은 큰 그림만 그리고자 한 목적에서 다소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sup>98)</sup> 그러나 우리 형사법체계는 정범과 공범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으며, 그 안에서도 정범과 교사범, 방조범으로 엄밀히 분류하여 취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범죄분류체계도 정범과 교사·방조에 별도의 코드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ICCS의 분류기준을 차용하기 위해서는, 그 분류기준 안에서 다시 정범과 공범의 각 요소를 세분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ICCS도 장기적으로는 교사와 방조를 비롯해, 예비죄와 음모죄도 모두 고려하여 세분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98) UNODC,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s, Ver. 1.0, March 2015, p. 16 참조.

## 제6절 고의범과 과실범 분류 문제

[중분류 0206] 과실(negligence)에서는 고의범과 과실범의 구분이 사실상 형해화되다  
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우리 형법학에서는 과실범을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범죄가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과실처벌을 규정한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sup>99)</sup>라고 이해한다.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법적  
결과를 예견하지 못하였고, 또한 회피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주의의무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일반인 내지 평균인을 기준으로 한 객관설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sup>100)</sup>인  
바, 이에 따르면 우리의 과실범에 대한 이해와 본 중분류 설명에 기술되어 있는 “과실행  
위”는 동일한 의미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필적 고의는 행위자가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감수하겠다는 의욕을 보인 경우를 말한다.  
일상적 표현으로 쉽게 비유하자면,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  
지”<sup>101)</sup>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위의 무모한 행위에서 “결과를 신경쓰지 않는  
행위”를 미필적 고의로 포섭할 여지가 발생한다. 다만 위험행위(0207)가 규정하고 있는  
“해악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행한 위험한 행위”가 일응 고의에 의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본 중분류에서는 우리 법제상 과실개념을 그대로 사용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sup>102)</sup>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과실(negligence) 개념을 미필  
적 고의를 배제할 수 있도록 보다 좁게 만드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소분류 02062] 직무상 과실과 우리 법제상 업무상 과실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다소 다른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다만 실제 사례에서 그 구분의 경계를  
명확히 규명할 수 있을 것인지는 의심스럽다. 예컨대 차량운행을 본질적 직무로 하는  
버스기사나 택시기사가 비번인 날 개인적 목적으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행하다 전복이

99) 김성천·김형준, 형법총론 제6판, 2014, 120쪽; 배종대, 형법총론 제12판, 2016, 153/1; 오영근, 형법총론 제3판, 2014, 121쪽; 이재상, 형법총론 제7판, 2011, 14/2; 임웅, 형법총론 제6정판, 2014, 517-518쪽.

100) 김성천·김형준, 형법총론 제6판, 2014, 133쪽; 오영근, 형법총론 제3판, 2014, 129-130쪽; 이재상, 형법총론 제7판, 2011, 14/12; 임웅, 형법총론 제6정판, 2014, 530쪽 등; 대법원 2001.6.1. 선고 99도5086 판결; 2003.1.10. 선고 2001도3292 판결 등.

101) 배종대, 형법총론 제12판, 2016, 53/32.

102) 물론 과실행위(0206)와 위험행위(0207)에서 행위자의 주관적 요소가 인식 없는 과실, 인식 있는 과실, 미필적 고의, 확정적 고의 등의 개념과 정확히 들어맞지는 않는다. 이는 앞으로 ICCS의 범죄분류체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데에 있어서 선결되어야 할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나 추락사고를 낸 경우에는 직무상 과실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운송수단 운전 관련 과실에 해당하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 직무상 과실은 오로지 “직무상 (주의)의 무 위반”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직무에 따른 운전과 비직무성 운전 사이에 주의의무를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또는 비록 자동차 운행이라는 행위는 동일할지라도, 개인적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통상적인 주의의무 외에 직무상 주의의무가 부과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 제7절 ICCS의 범죄행위 분류에 부합하지 않는 우리 범죄 개념

### 1. 낙태의 죄

[중분류 0106]의 불법 낙태는 ‘각국의 국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태아에 대한 불법 살해’로 일반적으로 정의되나, ICCS는 의학 기술 없는 자에 의한 낙태 시술은 이와 같은 [중분류 0106]의 불법 낙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소분류 02071]의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낙태의 죄에 관한 우리 「형법」상의 다양한 범죄구성요건들 중에서 그 행위주체에게 의학적 기술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업무상동의낙태죄(제270조 제1항)에 관한 죄명코드들이 [중분류 0106]의 불법 낙태로 분류될 수 있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들 죄명코드를 제외하고 낙태의 죄에 관한 나머지 죄명코드들의 분류가 문제된다. 이는 왜냐하면 자기낙태죄(제269조 제1항), 동의낙태죄(제269조 제2항), 그리고 부동의낙태죄(제270조 제2항)에 관한 죄명코드들은 행위주체의 의학적 기술 보유 여부에 따라 [중분류 0106]의 불법 낙태로 분류될 수도 있고, [소분류 02071]의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분류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그 분류가 문제되는 죄명코드들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표 3-7-1〉 [중분류 0106] 및 [소분류 02071]로 분류될 수 있는 죄명코드

	죄명코드
	[형법법] 낙태(0127010000; 0127010100), 동의낙태(0127020000), 촉탁낙태(0127020100), 승낙낙태(0127020200), 부동의낙태(0127060000; 0127060100)

이러한 죄명코드들의 분류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될 수 있다. 첫째, 행위주체가 의학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가 있어야만 이상의 죄명코드들을 ICCS의 분류체계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둘째, 만약 행위주체의 의학기술 보유 여부에 관한 정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보유 여부에 따라 하나의 죄명코드가 ICCS상 두 개 이상의 분류에 해당할 수 있게 된다는 문제점이 여전히 남게 된다.

## 2. 협박죄

ICCS의 [소분류 02012]의 협박은 다시 행위자의 고의에 따라 [세분류 020121]의 중한 협박과 [세분류 020122]의 경한 협박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중한 협박(020121)은 사망이나 중대한 해악을 야기할 의도로 하는 협박을 의미하고, 중대한 해악에는 중대한 신체 상해나 중대한 물리적 유형력이 포함된다. 이에 반해, 경한 협박(020122)은 경미한 해악을 야기할 의도에서 하는 협박으로서, 경미한 해악은 최소한 경미한 신체 상해나 경미한 물리적 유형력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하지만 우리 「형법」상의 협박죄는 이처럼 행위자가 해악을 고지할 당시에 갖는 고의의 내용에 따라 별도의 범죄구성요건을 구성하지 않는다. 우리 「형법」상으로는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이 생명이나 신체에 관한 것이든, 아니면 자유, 명예, 재산, 성적 자기결정권, 업무 등에 관한 것이든 불문하고 단일한 협박죄를 구성한다.<sup>103)</sup> 따라서 우리 「형법」, 「폭력위처벌법」, 「특정범죄가중법」, 「아동학대처벌법」, 「군형법」상 협박행위를 처벌하는 범죄구성요건에 부여된 다양한 죄명코드들을 [세분류 020121]의 중한 협박과 [세분류 020122]의 경한 협박으로는 분류할 수 없게 된다.

## 3. 특정 목적 없는 인신매매죄

ICCS의 [중분류 0204]의 인신매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착취의 목적’이 존재해야 하고, 여기서 착취는 타인의 성매매 기타 성적 행위의 착취, 강제 노동 또는 용역,

103) 우리 형법상 협박죄에서 고지되는 해악 내용의 이와 같은 다양성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16, 192쪽.

노예 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예속 상태, 또는 장기적출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우리 형법상으로는 인신매매죄에 해당하면서도 ICCS의 분류체계상 [중분류 0204]의 인신매매로 분류할 수 없는 죄명코드가 존재하는데, 이는 바로 추행, 간음, 결혼, 영리, 노동력 착취, 성매매, 성적 착취, 장기적출, 또는 국외이송의 목적이 없는 다음의 죄명코드들이다.

〈표 3-7-2〉 특정 목적 없는 인신매매죄의 죄명코드

	죄명코드
	[형법범] 인신매매(0131080400)
	[특별법범]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상습인신매매(0209915800) •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매매(0231040600), 상습아동매매(0231042600)

이와 같은 죄명코드들은 [중분류 0204]의 인신매매로 아예 분류될 수 없는 범죄행위와 [소분류 02044]의 기타 목적 인신매매로 분류될 수 있는 범죄행위들을 모두 포함한다. 예컨대, 아무런 목적 없이 인신매매를 하더라도 우리 형법상으로는 단순인신매매죄(형법 제289조 제1항)로 처벌된다.<sup>104)</sup> 하지만 인신매매(0204)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 '착취의 목적'을 요구하는 ICCS 매뉴얼에 따르면, 우리 「형법」상의 단순인신매매죄는 [중분류 0204]의 인신매매에 해당할 여지가 없게 된다.

하지만 우리 「형법」 제289조 제1항의 단순인신매매죄는 이처럼 인신매매가 아무런 목적 없이 행해진 경우에만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목적을 갖고 인신매매를 하였지만, 그 목적이 우리 「형법」 제289조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형법」 제289조 제1항의 단순인신매매죄가 성립된다. 예컨대, 범죄를 실행할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한 경우를 가정한다면, 여기서 범죄 실행의 목적은 우리 「형법」 제28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행, 간음, 결혼, 영리, 노동력 착취, 성매매, 성적 착취, 장기적출, 또는 국외이송의 목적에는 해당하지 않게

104) 이처럼 단순인신매매죄(형법 제289조 제1항)가 성립하는데 일정한 목적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는 대표적으로 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2014, 166-167쪽.

되고, 따라서 이 경우에도 「형법」상의 단순인신매매죄가 성립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위의 <표 3-7-2>의 ‘인신매매’(0131080400) 등 죄명코드들은 ICCS의 분류체계에 따라서는 분류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갖는다.

#### 4. 강요죄

ICCS 매뉴얼에 따르면, [중분류 0205]의 강요는 “유형력의 행사, 협박, 위협, 불리한 정보 폭로에 대한 협박, 또는 명예훼손에 대한 위협을 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이와 같은 [중분류 0205]의 강요는 다시 [소분류 02051]의 갈취 또는 공갈과 [소분류 02052]의 기타 강요 행위로 분류된다. 여기서 [소분류 02051]의 갈취 또는 공갈은 “문자 또는 구두의 위협을 통해 특정한 행동을 요구하는 행위”로 정의되므로, 갈취 또는 공갈(02051)의 수단은 언어를 통한 협박으로 국한된다. 그 결과, 우리 「형법」, 「폭력행위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상의 강요죄에 관한 범죄구성요건들은 [중분류 0205]의 강요로 분류될 수 있을 뿐, 더 이상 [소분류 02051]의 갈취 또는 공갈과 [소분류 02059]의 기타 강요 행위로 분류될 수 없게 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분류 02051]의 갈취 또는 공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언어에 의한 협박만을 그 행위수단으로 하여야 하고, 다른 행위수단에 의하게 되면 [소분류 02059]의 기타 강요 행위로 분류될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우리 「형법」상으로는 강요행위의 수단이 폭행인지 아니면 협박인지에 따라 별도의 범죄구성요건을 구성하지 않을뿐더러, 특히 협박은 글이나 말과 같은 언어에 의해서도 가능하지만 거동에 의해서도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 결과 ICCS의 분류체계와 달리, 강요죄에 관한 우리의 죄명코드는 [소분류 02051]의 갈취 또는 공갈과 [소분류 02059]의 기타 강요 행위로 더 이상 분류될 수 없다는 점이 또 하나의 쟁점으로 남게 된다.

#### 5. 과실의 층위

[중분류 0206] 과실은 모든 유형의 과실범을 포섭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유기행위와 관련한 과실에 주목하고 있으며, 그 밖에 직무상 과실과 운송수단 운전과 관련한 과실 정도만을 별도로 취급하고 있다. 물론 유기행위와 직무수행은 각각 보호의무·

보호책임과 직무라는 일종의 신분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는 일정한 기준을 공유한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런데 우리 형사법체계 안에서는 유기행위와 같은 고유한 구성요건이 먼저 있고, 그 다음으로 그러한 구성요건 실현에 대한 고의나 과실, 또는 업무관련성과 같은 부가적 요소를 따진다. 요컨대 “과실”과 “유기”는 우리 형사법체계 안에서 층위가 다른 성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중분류 “과실” 항목을 우리 범죄분류체계에 그대로 차용하는 것은 우리 형사법체계를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으며, 따라서 우리 범죄분류체계를 국제분류체계와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손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6. 유기죄의 보호할 책임

[소분류 02061]의 “사람을 보호할 법적 의무 또는 책임”은 우리 형법상 유기죄의 보호의무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형법」 제271조는 “노유·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가 유기한 때”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보호 의무는 법문이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법률이나 계약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으며, 따라서 본 소분류상의 “사람을 보호할 법적 의무”와 동일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계약 또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계약에 의한 보호의무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유기죄 보호의무의 근거에 관해 오로지 법률과 계약에 의한 경우로 제한되며, 관습이나 조리에 의한 보호의무는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우리나라의 판례와 다수설의 견해이다.<sup>105)</sup> 그런데 본 소분류상 보호의무 및 보호책임에 대한 앞에서의 설명과 해석에 따르면 “사람을 보호할 책임”은 법률이 아닌 관습이나 조리에 의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소분류의 행위주체는 형법상 유기죄의 행위주체보다는 넓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동일한 아동학사의 구성요건도 신체에 위협한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와 생명에 위협한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가 있다. 우리 범죄코드는 이를 구분하고

105) 대법원 1977.1.11. 선고 76도3419 판결; 김성돈, 형법각론 제4판, 2016, 112쪽; 김성천·김형준, 형법각론 제4판, 2014, 117-118쪽; 김일수·서보학, 새로쓴 형법각론 제8판, 2015, 88-89쪽; 배종대, 형법각론 제8전정판, 2013, 26/7; 이재상, 형법각론 제9판, 2013, 6/11.

있지 않은데, ICCS의 분류기준에 따르면 양자는 엄밀히 구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7. 위험행위

어떠한 물건의 파괴나 손괴, 또는 위험한 물질을 다루는 행위 자체가 잠재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해악을 야기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이를 분류하는 데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 구성요건들이 있다. 우선 범죄분류코드상 관련 행위들은 다음과 같다.

<표 3-7-3> 위험행위(0207)로 분류하기 어려운 “위험한 행위” 및 그 결과적 가중범

항목 1	현존건조물등방화(0113020000) 현존기차방화(0113020200) 현존자동차방화(0113020400) 현존항공기방화(0113020600) 함선복물(0411060100) 항공기추락복물(0411060900) <교사, 방조, 예비, 음모 포함>	현존건조물방화(0113020100) 현존전차방화(0113020300) 현존선박방화(0113020500) 현존광경방화(0113020700) 함선파괴(0411060500) 항공기추락손괴(0411061300)
항목 2	폭발물파열(0113170000) 폭발성물건파열치상(0113170200) 전기방출(0113170500) 방사선방출(0113170700) 가스유출(0113170900) 증기유출(0113171100) 방사성물질유출(0113171300) 전기살포(0113171500) 방사선살포(0113171700) 가스방출치상(0113171900) 증기방출치상(0113172100) 방사성물질방출치상(0113172300) 전기유출치상(0113172500) 방사선유출치상(0113172700) 가스살포치상(0113172900) 증기살포치상(0113173100) <교사, 방조, 예비, 음모 포함>	폭발물파열(0113170100) 가스방출(0113170400) 증기방출(0113170600) 방사성물질방출(0113170800) 전기유출(0113171000) 방사선유출(0113171200) 가스살포(0113171400) 증기살포(0113171600) 방사성물질살포(0113171800) 전기방출치상(0113172000) 방사선방출치상(0113172200) 가스유출치상(0113172400) 증기유출치상(0113172600) 방사성물질유출치상(0113172800) 전기살포치상(0113173000) 방사선살포치상(0113173200)

위 <항목 1>의 현존건조물 등 방화행위도 기본적 구성요건이 사람이 현존할 것을 요하므로 그 행위 자체가 이미 신체에 대한 해악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고의로 폭발성물건을 파열시키거나 가스, 전기, 증기, 방사선 방출 내지 살포한 행위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구성요건 자체가 이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위협을 야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ICCS 상에는 현존건조물 방화뿐만 아니라 일련의 방화행위 및 재물손괴행위를 재물손괴(0504)로 분류하고 있다. 이 외에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서도 위 폭발물 등과 같은 포섭문제가 발생한다. 규제약물이나 알코올, 담배 등 중독성이 있는 물질의 생산, 거래, 유통, 소지, 사용 등의 행위는 [대분류 06] 규제약물 또는 기타 향정신성 물질 수반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행위들은 다른 한편으로는 잠재적으로 사람의 건강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기타 위협행위(02079)에 포섭될 여지도 있다.

또한 폭발물이나 가스, 전기, 증기, 방사선, 방사성물질 등과 관련된 과실행위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타 과실행위(02069)에 포섭됨에 반해, 고의로 인한 이와 같은 행위는 [대분류 09]의 무기, 폭발물 및 기타 파괴물질 관련행위(0901)와의 관계에서 포섭관계를 분명히 하기가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다. ICCS를 도입할 경우 분류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 8. 공연음란죄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에 대해 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이 때 ‘음란한 행위’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sup>106)</sup> 판례는 공연음란죄의 성립을 위해서 행위자에게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보고 있으며,<sup>107)</sup>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1호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 보이는 옷을 입거나 또는 가려야 할 곳을 내어 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과다노출행위와 차이를 음란성이라는 성적 속성에 대한 인식이 있는지 여부에서 보고 있다.<sup>108)</sup>

106)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도2413 판결;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937 판결;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889 판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도2911 판결 참조.

107)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선고 판결 참조.

108) 그러나 실제 판례들을 살펴보면, 공연음란죄와 과다노출행위와의 차이인 음란성에 대한 인식에 대한 판단이 명확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싸우는 도중에 엉덩이를 노출한 행위가 음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하지만(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선고 판

공연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범죄를 규정한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가 아닌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에 규정되어 있어, 그 범죄의 속성을 성풍속 내지 성도덕 등 성적인 공공질서를 침해위태화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동시에 공연음란죄는 「성폭력처벌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성폭력범죄’에 해당하기도 한다. 공연음란죄의 판례들을 살펴보면, “공중 앞에서 알몸이 되어 성기를 노출한 행위”<sup>109)</sup> 이외에도 “요구르트 제품의 홍보를 위하여 전라의 여성 누드모델들이 일반 관람객과 기자 등 수십명이 있는 자리에서, 알몸에 밀가루를 바르고 무대에 나와 분무기로 요구르트를 몸에 뿌려 밀가루를 벗겨내는 방법으로 알몸을 완전히 드러낸 채 음부 및 유방 등이 노출된 상태에서 무대를 돌며 관람객들을 향하여 요구르트를 던진 행위”<sup>110)</sup>나 “연극에서 여자 주인공이 전신 및 음부까지 노출된 완전나체 상태에서 남자 주인공이 그녀의 나신을 내려다보면서 자위행위의 연기를 7-8분간 행한 행위”<sup>111)</sup> 등 역시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

ICCS의 매뉴얼에서는 [중분류0802]인 성적인 공공질서를 위반한 행위 중 [소분류08029] 기타 행위의 예시로 공연음란(Public indecency)나 대중 앞에서 성적 행위를 공연하는 행위를 제시하고 있으며, [소분류03012]인 성폭행의 [세분류030129]인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성폭행의 분류 기준에 대한 예시로 신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출하는 행위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에 따르면 공연음란죄로 처벌되는 원치 않는 타인에 대해 성기를 노출하는 행위는 [세분류030129]에 해당하며, 홍보나 연극 등의 공연을 통해 알몸이나 성기를 노출하는 행위는 [소분류08029]에 해당한다. 공연음란죄가 공연한 음란행위라는 구성요건으로 성풍속 내지 성도덕에 대한 위반행위뿐 아니라 원치 않는 타인에 대해 성기를 노출하여 시각적인 형태의 성폭력을 저지르는 행위에도 적용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죄명코드는 ‘공연음란’이라는 하나의 죄명코

결), 싸우는 도중에 사람들 앞에서 옷을 모두 벗어 알몸의 상태로 성기를 노출한 채 바닥에 드러눕거나 돌아다니는 행위에 대해 음란성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아 음란행위로 보기도 한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 공연음란죄 규정과 판례상 해석에 대한 비판적 견해에 대해서는, 박강우, “공연음란죄에 대한 비판적 고찰”, 안암법학 제25호 상(2007.11), 2007, 367-390쪽; 이경재, “공연음란죄와 과다노출행위의 구분”, 『형사판례연구: 지송 이재상교수 화갑기념논문집 I』, 박영사, 2004, 983-996쪽; 조국, “공연음란죄의 내포와 외연”, 『형사판례연구 제10호』(2002.06), 박영사, 2002 등 참조.

109)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

110) 대법원 2006.1.13. 선고 2005도1264 선고 판결.

111)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980 판결.

드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ICCS의 분류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 9. 아동·청소년 윤락 및 성매매 행위

「성매매처벌법」으로 개정되기 전 성매매 관련 행위를 규정하던 (구)「윤락행위등방지법」에서는 윤락행위를 한 20세 미만의 자에 대해 범죄화 하고 있었으며, 다만 이들에 대해서는 선도보호시설에 선도보호<sup>112)</sup>를 위탁하는 보호처분(제8조 이하)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4.9.23. 시행된 「성매매처벌법」에 의해 19세 미만 청소년이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성매매피해자로 분류되어(제2조제1항제4호다목) 처벌되지 않으나, (구)「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해서는 범죄행위를 한 자로 분류되며, 이와 관련된 죄명코드로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청소년)’이 있다.

ICCS의 매뉴얼에 따르면, [세분류030222]인 아동 성매매에는 성매매 목적으로 아동을 모집, 유인·조달하거나 성매매 아동의 성적 서비스를 조달하는 아동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세분류030229]인 기타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에는 아동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행위가 해당된다. 성매매를 한 사람과 성매수행위를 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소분류08021]인 성매매에 해당한다. 그러나 ICCS 매뉴얼에는 [소분류08021]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로 아동 성매매를 규정하고 있어, 성매매를 한 아동은 [소분류08021]에 분류되지 않는다. 이는 ICCS의 분류체계가 성매매를 한 아동을 범죄화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르면,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청소년)’은 ICCS의 분류에 포함될 수 없다.

이와 유사한 문제는 현행 「아청법」상 제38조에서 규정하는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에 대한 제39조 이하 소년부 송치 및 보호처분에서도 발생한다. 이에 따르면 「아청법」 제13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은 피해자가 아닌 성매매범죄 행위자이나 미성년자이므로 소년부 송치의 대상이 된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된 대검찰청 죄명코드에서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죄명코드를 두고 있지 않으나, 소년부 송치 및 가정법원 송치가 되는 범죄행위에 대해 범죄발생건수로

112) 구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0조에 규정된 선도보호의 내용은 상담 및 치료(제1호), 개인의 정서안정과 인격향상을 위한 교육(제2호), 사회적응에 필요한 기술교육 및 취업안내(제3호), 의료보호·건강관리 및 생활지도(제4호), 기타 선도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성부령이 정하는 사항(제5호)이다.

집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 「아청법」상 ‘대상아동·청소년’의 ICCS 분류가 문제된다.

## 10. 강도죄

우리나라의 범죄분류체계는 강도의 행위유형, 즉 약취강도, 인질강도, 특수강도, 준강도로 구분하고 있을 뿐이며, 장소나 대상에 따라 구분하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강도장소를 고려한 개념은 해상강도가 있으나, 이는 해적행위를 다스리기 위한 것이지,<sup>113)</sup> 공공장소나 사적 장소라는 구분과는 거리가 있는 개념이다. 우리나라의 범죄분류체계는 강도의 발생장소가 어디인지, 강도의 대상이 누구 또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다고 볼 수 있다. 즉 ICCS와 우리나라 범죄분류코드는 그 기준 자체가 이질적이어서 ICCS상 강도(0401)의 분류체계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우리나라의 범죄분류코드 분류기준을 전면적으로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ICCS의 분류기준에 따르면 강도(0401)에는 우리 형법상 강도의 죄와 공갈의 죄가 모두 포섭된다. 그러나 법률과 판례, 학설은 모두 일치하여 강도와 공갈을 구분하고 있다. 즉 강도는 폭행이나 협박이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가 되어서 그 결과 피해자가 재산을 자의로 처분할 수 없는 상태를 야기해야 한다.<sup>114)</sup> 그에 반해 공갈은 피해자의 임의의사를 제한하는 정도로 족하며,<sup>115)</sup> 다만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 사정을 토대로 그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sup>116)</sup> 이와 같은 우리의

113) 김성천·김형준, 『형법각론』 제4판, 2014, 390쪽; 김일수·서보학, 『새로쓴 형법각론』 제8판, 2015, 280-281쪽; 배종대, 『형법각론』 제8전정판, 2013, 65/17; 손동권·김재운, 『새로운 형법각론』, 2013, 21/53; 이재상, 『형법각론』 제9판, 2013, 17/61; 임웅, 『형법각론』 제6정판, 2015, 378쪽.

114) 김성천·김형준, 『형법각론』 제4판, 2014, 366쪽; 김일수·서보학, 『새로쓴 형법각론』 제8판, 2015, 259쪽; 배종대, 『형법각론』 제8전정판, 2013, 64/13; 손동권·김재운, 『새로운 형법각론』, 2013, 21/8; 이재상, 『형법각론』 제9판, 2013, 17/15; 임웅, 『형법각론』 제6정판, 2015, 353쪽.

115) 대법원 1961.5.12. 선고 4294형상101; 2013.9.13. 선고 2013도6809 판결; 김성천·김형준, 『형법각론』 제4판, 2014, 442쪽; 김일수·서보학, 『새로쓴 형법각론』 제8판, 2015, 373쪽; 배종대, 『형법각론』 제8전정판, 2013, 71/4; 손동권·김재운, 『새로운 형법각론』, 2013, 23/6; 이재상, 『형법각론』 제9판, 2013, 19/6; 임웅, 『형법각론』 제6정판, 법문사, 2015, 442쪽.

116) 김일수·서보학, 『새로쓴 형법각론』 제8판, 2015, 374쪽; 배종대, 『형법각론』 제8전정판, 2013, 71/9; 손동권·김재운, 『새로운 형법각론』, 2013, 21/8; 이재상, 『형법각론』 제9판, 2013, 17/18; 임웅, 『형법각론』 제6정판, 법문사, 2015, 443쪽.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ICCS는 침입행위와 관련하여 절도목적은 전제로 하여, 장소적 특성을 분류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절도목적은 야간주거침입 절도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배제되어 있으며, 오히려 주거의 형태와 행위유형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ICCS의 분류기준에 따르면 위 표 항목 1에 열거한 단순주거침입죄를 비롯해 특별법상 상습주거침입, 특수주거침입,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이 포섭관계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다만 절도나 성범죄 등 별도의 목적이 없는 단순한 주거등 침입은 사생활침해(02111)로 분류될 수 있으나, 이처럼 분류하게 되면 주거침입행위의 내적 동기, 즉 절도목적이나 그 외의 것이냐에 따라 주거침입이라는 외적 행위가 서로 다른 범주로 분류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한편 위 표 <항목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성폭력특별법」 및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주거침입강간과 주거침입유사강간, 주거침입강제추행, 주거침입준강간, 주거침입준유사강간, 주거침입준강제추행을 처벌하고 있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결합법 처리의 문제로 귀결된다. 즉 ICCS의 분류체계를 따르게 되면 어쨌거나 강간이나 준강간 등 성범죄의 시발점이 되었던 “침입범죄”의 속성이 사라지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요컨대 주거침입에서 절도 목적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범죄(분류)체계와 ICCS의 절도목적 침입(0501)은 그 분류기준에 있어서 매우 이질적인 체계라 할 수 있다.

## 제8절 형법체계상 ICCS와 상이한 분류기준

### 1. 절도목적 침입(0501)과 절도(0502)의 포섭관계

절도목적 침입(0501)과 절도(0502)를 병렬적으로 구성해 놓은 것을 볼 때, 절도목적 침입(0501)은 오로지 “침입행위”를 핵심 구성요소로 삼고 있으며, 절도행위 자체는 별도로 고려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절도목적 사적 주거지 침입(05012)에 사적 주거지 침입에 의한 절도(theft by burglary of a dwelling)도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침입”과 “절도”를 모두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여지도 있다.<sup>117)</sup> 이는 우리나라 범죄분류체계와의 관계에서도 문제를 발생시킨다. 즉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경우 우리나라 「형법」 및 범죄분류체계상으로는 “절도의 죄” 가운데 하나로 분류되나, ICCS에 따르면 절도목적 침입(0501)으로 분류해야 할지, 절도(0502)로 분류해야 할지 논란의 여지가 남는다. 여기에서는 일단 “침입”에 방점을 찍고 절도목적 침입(0501)로 분류해 두었지만, 야간주거침입절도에서 행위의 본질이 절도에 있다고 본다면 — 그리고 우리 형법체계에 따르면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본 항목은 절도목적 침입(0501)이 아니라 절도(0502)로 분류해야 할 성질이라 할 수 있다.

한편 — 어쨌거나 — 절도목적 침입(0501)과 절도(0502)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 ICCS의 분류기준에 따르면 우리 「형법」에서 오롯이 절도(0502)에 포섭될 수 있는 것은 절도의 죄 가운데 야간주거침입절도를 제외한 구성요건이다. 다만 ICCS는 절도의 대상에 따라 소분류와 세분류를 구성하고 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의 「형법」과 범죄분류코드는 균용물을 제외하고는 절도의 대상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다. 즉 그것이 운송수단인지, 개인재물인지, 사업체 재물인지, 공공재물인지 묻지 않는다. 상점 절도의 경우도 강학상 존재하는 개념일 뿐 법률적으로나 범죄분류체계상으로는 실질적인 의미를 갖지 못한다. 대상별로는 오로지 불법사용에서 자동차와 선박, 항공기만을 구분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형법」상 절도와 특수절도, 상습절도, 상습특수절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균용물범죄법상 균용물절도, 균용물특수절도, 상습균용물절도, 상급균용물특수절도 등의 행위는 ICCS의 분류기준을 차용해 절도의 대상물이 무엇이냐에 따른 별도의 세부항목으로 재구성한 경우에 한해 각각의 소분류로 포섭될 여지가 있다. 다만 균용물의 경우에는 개인재물일 수 없기 때문에 [소분류 05022]로의 포섭만이 명백하게 부정된다 할 수 있다.

117) 이로써 ICCS의 분류체계에 이미 혼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즉 ICCS의 분류체계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상당히 불완전한 분류체계라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 2. 재물손괴와 관련해 포섭관계가 불분명한 범죄코드

앞서 언급한 위험행위(0207)와 포섭관계가 중첩될 수 있는 영역을 제외하고, 오로지 손괴의 죄와 관련하여 포섭관계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 구성요건 내지 범죄코드는 아래와 같다.

〈표 3-8-1〉 손괴의 죄에서 포섭관계가 불분명한 범죄코드

항목 1	재물은닉(0142010200) 문서는닉(0142010400) (교사, 방조, 미수 포함)	문서손괴(0142010300)
항목 2	전자기록등손괴(0142010500) (교사, 방조, 미수 포함)	전자기록등은닉(0142010600)

우선 ICCS의 분류기준과 관련하여 우선 은닉행위가 손괴행위에 포섭될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다. ICCS는 오로지 대상물에 적극적으로 변형을 가하여 효용을 없애거나 감소시키는 행위만을 예정하고 있다. 따라서 은닉행위는 손괴행위의 개념범주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ICCS는 문서의 재물성에 관해서는 어떠한 고려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로지 허위문서 작성/위변조(0702)에서 문서의 진실성에 관한 사항만 취급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문서도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 물리적 실체가 있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손괴의 객체가 될 수 있다. ICCS의 분류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문서손괴는 재물손괴(0504)의 범주에 포섭될 수 있으나, 은닉행위는 손괴의 범주 안에 포섭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보충적 분류범주인 아래의 기타 재산침해행위(0509)에 포섭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 ICCS는 컴퓨터시스템이나 컴퓨터데이터에 관한 사항은 모두 컴퓨터시스템 대상 행위(0903)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 「형법」 및 범죄분류기준에 따르면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도 손괴의 범주에 포함된다. 「형법」상 재물은닉과 문서손괴, 문서는닉, 전자기록등손괴 내지 은닉은 모두 손괴의 죄에 속한 범죄이다.

이와 같이 분류기준의 이질성으로 인해 ICCS와 우리나라 범죄분류체계를 상호 매칭시키는 데에는 적지 않은 난맥이 존재한다.

## 제9절 위법행위를 포괄하는 ICCS 범죄행위 개념의 문제

현재 한국에서 생산되는 범죄통계는 사법기관에 의해 생산되고 있으며, 통계분류를 위한 기초단위로 해당행위에 적용되는 법조문에 근거한 죄명코드를 활용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범죄통계가 형벌법규에 의해 형벌을 부과하는 행위를 범죄로 보는 형식적 범죄개념에 기초해서 이루어진다는 의미이다. ICCS에서는 아동의 개념 등에 대해 국내법의 정의에 따르도록 하는 등 국내 형사법의 기초 하에 범죄를 분류하는 지침을 두기도 하나, 범죄행위와 결과를 중심으로 구성된 분류체계라는 점에서 사회적 유해성 내지 법익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범죄로 하는 실질적 범죄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가 간의 비교와 국제적인 범죄통계 생산을 위해서는 형사법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이고 토착적인 성격을 고려할 때에 실질적 범죄 개념에 기초하여 범죄분류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ICCS 매뉴얼에서는 범죄통계의 생산 자체가 형식적 범죄 개념에 기초할지 실질적 범죄개념에 기초할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현재 ICCS 분류체계에 해당하나 한국에서는 국내법상 형벌이 부과되는 범죄가 아닌 위법행위에 대해 ICCS 분류에 포함시킬지 여부와 포함시킨다면 관련 통계자료의 생산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국내법에 의해 징계벌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정벌이 부과되는 행위이나 ICCS 분류체계상 범죄유형의 경우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정 공동체나 특정권력관계 내에서의 내부질서 유지를 위한 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벌이 부과된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의 사법기관 중심의 범죄통계자료 생산체계로는 자료수집이 불가능하므로 별도의 범죄통계자료생산의 방식 및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해당되는 범죄분류로는 [소분류02081]인 괴롭힘, [중분류0210]인 차별, [소분류20111]인 사생활 침해가 있다.

## 제10절 ICCS 기타 분류의 문제

ICCS 매뉴얼은 범죄가 기존의 분류 항목으로는 분류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기타’라는 항목명을 가지는 보충적 분류 항목을 마련해 두고 있다.<sup>118)</sup> 하지만 이와 동시에 ICCS 매뉴얼은 이와 같은 보충적 분류 항목으로의 분류를 가급적 삼갈 것 또한 요구하고 있다.<sup>119)</sup> 이와 같은 ICCS 매뉴얼의 입장은 불가피하게 보충적 분류 항목으로 분류해야 하는 범죄가 존재할 것이라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가급적 그와 같은 분류를 지양하도록 하여 통계의 유의미성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명코드들을 ICCS의 분류체계에 따라 분류하다 보면 다음과 같이 보충적 분류 항목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죄명코드들이 너무 많은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통계의 유의미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고, ICCS를 도입하는데 있어 하나의 큰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1. [중분류 0109]의 기타 다른 사람의 사망을 초래하거나 의도한 행위의 보충적 분류 항목

사망을 중한 결과로 하는 결과적 가중범 중 고의의 기본범죄가 사망한 피해자를 행위객체로 하지 않는 결과적 가중범의 범죄유형들이 [중분류 0109]의 기타 다른 사람의 사망을 초래하거나 의도한 행위로 분류되는 것은 ICCS의 분류체계상 불가피한 결과이다.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대분류 01]의 다른 사람의 사망을 초래하거나 의도한 행위로 분류되어야 하지만, 보충적 분류 항목인 [중분류 0109]를 제외하고는 [대분류 01]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중분류]들로 분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또는 피해자에게 중대한 신체 상해를 가하겠다는 고의가 없다는 점에서 [중분류 0101]의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분류될 수 없을뿐더러, 피해자에게 일반적인 해악을 가하겠다는 고의 또한 결여되어 있어 [소분류 01031]의 살인 고의 및 중한 상해 고의 이외의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도

118) UNODC,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s, Version 1.0(2015.3), p. 19.

119) UNODC,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s, Version 1.0(2015.3), p. 19.

분류될 수 없다. 하지만 이처럼 보충적 분류 항목으로의 분류가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보충적 분류 항목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죄명코드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점은 통계의 유의미성이란 관점에서 ICCS를 도입하는데 있어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2. 의미 없는 보충적 분류인 기타 사람에 대한 폭력 또는 협박을 수반한 재산 침해행위위험행위(0409)

우리 형법(특별형법 포함)상 폭행이나 협박을 통한 재산침해행위는 강도의 죄와 공갈의 죄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손괴의 죄도 폭행을 수반하기도 한다. 다만 손괴의 죄는 이미 재물손괴(0504)에 포섭되므로 여기에서는 제외된다. 따라서 본 중분류에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강도의 죄와 공갈의 죄 뿐이다. 우리 법제에서 강도의 죄와 공갈의 죄는 오로지 피해자의 자유침해 정도를 기준으로만 구분되는 개념이다. 그런데 ICCS는 피해자의 자유침해 정도가 아닌, 장소와 대상을 기준으로만 [대분류 04]를 분류하고 있다. 즉 강도의 죄와 공갈의 죄는 모두 강도(0401)에 포섭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ICCS가 예시로 들고 있는 “불특정 장소로부터의 강탈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ICCS도 아무런 설명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이는 구체적인 예시라고 할 수도 없으며, 다만 공공장소와 사적 장소 외에 다른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미루어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공공장소와 사적 장소 외에 제3의 성격을 갖는 장소가 있을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따라서 본 중분류는 강도(0401)에 대한 보충적 분류범주로 제시되고 있으나, 사실상 아무것도 보충할 수 없는 분류범주라 할 수 있다.

## 제11절 지나치게 포괄적인 분류인 지적재산 범죄

네트워크의 활용이 보편화되면서 지적재산의 창출과 활용양상도 급변하고 있다. 그에 따라 지적재산권 침해의 양도 급증하고 있으며, 침해의 양상도 다변화되고 있다. 예컨대 영상물과 음원, 서적뿐만 아니라 회사나 단체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각종 징표 등 침해대상도 다변화되고 있고, 침해도 웹하드나 토렌트, P2P 서비스 등을 통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법규는 위와 같은 저작권이나 특허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 침해행위뿐만 아니라 지적재산 침해행위와는 무관한 다른 유형의 행위, 예컨대 비밀유지의무위반이나 허가받지 않은 저작권위탁관리업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행위들도 함께 규율하고 있다. 예컨대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행위 외에 저작인격권 침해(제136조 제2항 제1호)에서부터 저작권 허위등록(같은 항 제3호), 허위명의 저작물 공표(제137조 제1항) 등 다양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sup>120)</sup> 그런데 우리나라의 범죄분류체계는 이러한 행위들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저작권 법위반이나 특허법위반 등으로 묶어 분류하고 있다.

이처럼 대상이나 방법에서 다변화되고 있는 지적재산권 침해행위를 오로지 하나의 코드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 범죄분류체계뿐만 아니라 ICCS 분류체계에도 함께 내포되어 있는 중대한 흠결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구체적인 침해대상이나 양상을 파악하는 데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20) 다만 특허법과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은 지적재산권 침해죄 외에 비밀누설죄, 위증죄, 허위표시죄, 거짓행위죄, 비밀유지명령위반죄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다. 상표법은 비밀누설죄가 없으며, 다만 거짓표시죄를 별도로 두고 있다.

---

## 참고문헌

- 강지현, 김지선, 김한균, 박형민, 안성훈, 이원상, 최수형, 홍영오(2012). 경찰 범죄통계 활용도 제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성돈(2015), 『형법총론』,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김성돈(2016), 『형법각론』,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김성천·김형준(2014), 『형법총론』, 소진.
- 김성천·김형준(2014), 『형법각론』, 소진.
- 김일수·서보화(2015), 『새로 쓴 형법각론』, 박영사.
- 김은경(2008). 국가 범죄통계관리 개선방안 연구, 대검찰청 용역보고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은경, 박성민, 서주연, 박혜석(2015). 범죄통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 - 한국/미국/일본 3개국 관리체계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대검찰청.
- 김은경, 박정선, 정병하, 탁종연, 황정인(2010). 검찰 범죄통계업무 개선방안연구, 법무연수원.
- 김준호, 이동원(1991). 범죄통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지선, 홍영오(2014). 범죄백서 활용도 제고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지선, 홍영오(2015), 범죄분석 활용도 제고방안에 대한 연구, 대검찰청.
- 김한균, 이창진, 조성현, 박소영, 백혜원(2015), 동북아시아 지역 국제형사법 통계기준 실행 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상우(2007), 공연음란죄에 대한 비판적 고찰, 안암법학, 25:367-390.
- 배종대(2016), 『형법총론』, 홍문사.
- 배종대(2013), 『형법각론』, 홍문사.
- 신동운(2014), 『형법총론』, 법문사.
- 오영근(2014), 『형법총론』, 박영사.

- 윤동호(2008), 성(性)형법의 체계적 정비방안, 비교형사법연구, 10(1), 한국비교형사법학.
- 이경재(2004), 공연음란죄와 과다노출행위의 구분, 형사판례연구: 지송 이재상교수 화갑기념논문집 I, 박영사. 983-996.
- 이상돈(2015), 『형법강론』, 박영사.
- 이재상(2011), 『형법총론』, 박영사.
- 이재상(2013), 『형법각론』, 박영사.
- 임웅(2014), 『형법총론』, 법문사.
- 임웅(2016), 『형법각론』, 법문사.
- 조국(2002), 공연음란죄의 내포와 외연, 형사판례연구, 10, 박영사.
- 최석운(2010), 의사의 과실에 의한 태아의 사망과 임부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한양법학, 30, 한양법학회.
- 탁종연(2007), 한국 범죄통계관리 분석과 발전방안: 경찰 범죄정보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17(3):169~194.
- 탁종연, 박성민(2014), 범죄통계 개념의 재정립을 위하여, 경찰학연구, 40:177~220.
- 탁종연, 노성훈(2014), 범죄통계 개편안의 내용과 효과: 범죄 건수, 피의자 수, 피해자 수의 산정을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13(4), 315~336.
- 탁종연, 노성훈, 신동준, 최의인(2012), 경찰 범죄통계 수집 및 활용방안 연구, 경찰청.
- 탁종연, 전영실, 이희길, 심수진(2008), 국가공식 범죄통계 연구, 통계개발원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 홍영오, 김한균(2012), 공식 범죄통계의 현황 및 개선방안, 경찰 「범죄통계」 활용도 제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황지태, 김지영, 박희정(2016), 국제표준범죄분류체계(ICCS) 국내적용방안 기초연구, 검찰.
- Joshua Dressler (2009), Criminal Law(5th ed), West.
-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s, version1.0(2015),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

# Abstract

## Framework Research for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Classification of Crime

Chang, Da-hye · Lim, Suk-sun · Jee, Yu-mi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s (ICCS) is a classification of criminal offences which is based on internationally agreed concepts, definitions and principles in order to enhance the consistency and international comparability of crime statistics, and improve analytical capabilities at both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The ICCS was approved at the 46th session of the United Nations Statistical Commission held in March 2015, and the 24th session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held in May of the same year, which means now Korea is required to establish implementation plans for the ICCS. A number of institutions are involved in producing crime statistics in Korea, and the classification systems employed by those institutions vary depending on their disparate needs. In this context, considering the adoption of the ICCS may provide opportunities to review and evaluate the crime statistics/classification systems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duct a framework research for the development of a Korean system for crime classification based on the ICCS. To this end, this Study considers whether the ICCS is suited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classification and statistics of crimes in Korea, and if not, what the possible issues are for the adoption of the ICCS in Korea. The findings will inform

the development of a long-term roadmap for the classification and statistics of crime in Korea. This Study was conducted as a part of the Framework Research Task Force for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Classification of Crime project, a joint efforts by Statistics Korea, Police Science Institute, and the Korea Institute of Criminology.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Korea's own crime classification system through framework research efforts aimed at the implementation of the ICCS.

The key poi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involves the development of an official Korean translation of the ICCS text. The translated version will use lay terms rather than legal jargons in describing each crime, as a reflection of the action-based characteristic of the ICCS. Second, Secondly, the Study re-classifies the crime codes of the Korea Crime Statistics and Classification and match them with the ICCS, so as to determine their fit with the latter and derive possible issues with the application of the ICCS. Thirdly, this Study looks into why some of the crimes under the Korean law do not match the ICCS, identifies regularities, and estimates the applicability of the ICCS in Korea.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finally proposes possible issues and challeng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Classification of Crime.

---

## 부록1

통계 목적 국제 범죄 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s, ICCS) 번역(대분류01-05)

대분류01 다른 사람의 사망을 초래하거나 의도한 행위		
<b>0101 고의에 의한 살인</b> 사망 또는 중한 상해에 이르게 하려는 의도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위법한 행위(중상해치사 포함)	+	포함: 모살, <sup>121)</sup> 명예 살해, <sup>122)</sup> 중한 상해 또는 살인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행한 폭행에 의한 사망 야기 중한 폭행, <sup>123)</sup> 테러 활동으로 인한 사망 <sup>124)</sup> 지참금 관련 살해, <sup>125)</sup> 여성 살해, <sup>126)</sup> 영아 살해, <sup>127)</sup> 자외에 의한 살인, <sup>128)</sup> 비사법적 살해, 법집행인/국가 공무원의 과도한 유형력 행사에 의한 살해 <sup>129)</sup>
	-	제외: 법적 개입에 의한 사망, <sup>130)</sup> 정당방위에 의한 살인, <sup>131)</sup> 고의에 의한 살인 미수 (0102), 고의 요소 없는 살인, 즉 고의에 의하지 않은 살인 (0103), 과실에 의하지 않은 살인 또는 자외에 의하지 않은 살인 <sup>132)</sup> (01031); 자살 방조 또는 자살 교사 (0104), 불법 낙태 (0106), 안락사 (0105)

- 121) 모살은 사람을 사망 또는 중상해에 이르게 하려는 목적으로 사람을 불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계획에 의한 행위 및/또는 행위 이전에 품은 살의에 의한 행위를 포함한다.
- 122) 명예 살해는 친족 또는 기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실제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한 것으로 여겨지는 성규범 또는 행동 규범 위반과 관련하여, 그 가족이 불명예를 입었다고 인식하여 그 불명예 대한 보복 행위의 결과로, 또는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목적으로, 사람을 불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성규범 또는 행동 규범 위반이란 간통, 혼외 성교 또는 임신을 포함한다 (World Health Organization. Understanding and addressing violence against women. 2012. Web: <[http://apps.who.int/iris/bitstream/10665/77421/1/WHO\\_RHR\\_12.38\\_eng.pdf](http://apps.who.int/iris/bitstream/10665/77421/1/WHO_RHR_12.38_eng.pdf)>).
- 123) 중한 상해 또는 살인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행한 폭행에 의한 사망 야기는, 사망 또는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실행한 폭행에 의하여 사람을 불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124) 테러 활동으로 인한 사망은 전투원이 아닌 사람 (즉, 분쟁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 또는 중상해에 이르게 하려는 목적으로 실행한 행위에 의하여 사람을 불법 살해하는 행위로서, 그 성격 또는 맥락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행위가 특정 집단을 위협하거나 특정 국가 기관 또는 국제 기구로 하여금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강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 1999. E/RES/54/109, Article 2(1b)).
- 125) 지참금 관련 살해는 혼인 전, 혼인 진행 중, 또는 혼인 후 등 시점을 불문하고 지참금의 지급 또는 수령과 관련하여 여성을 불법으로 살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지참금은 혼인의 한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재산 또는 자산을 의미한다. United Nations. (United Nations Division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Good Practices in Legislation on "Harmful Practices" Against Women. Addis Ababa, Ethiopia. 2009. Web: <[http://www.un.org/womenwatch/daw/egm/vaw Legislation\\_2009/Final report EGMGPLVAW.pdf](http://www.un.org/womenwatch/daw/egm/vaw Legislation_2009/Final report EGMGPLVAW.pdf)>.)
- 126) 여성 살해는 여성혐오 또는 젠더 관련 이유에 의하여 여성을 고의로 살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127) 영아 살해는 만 1세 미만의 아동을 살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128) 자외에 의한 살인은 도발 등의 책임 감경 사유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람의 사망을 유발하려는 목적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129) 법집행인 또는 기타 국가 공무원의 과도한 위력 행사로 인한 사망은 법집행인 또는 기타 국가 공무원이 임무 수행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거나 요구되는 국내 또는 국제 기준상의 제한을 벗어난 위력 행사 결과 발생한 사망을 의미한다.
- 130) 법적 개입에 의한 사망은 경찰, 기타 - 임무 중인 군인을 포함하여 - 법집행인이 범법자를 체포하거나, 범법자 체포를 시도하거나, 소요를 진압하거나, 질서 유지 활동을 하거나, 그 밖에 인명 보호를 위하여 법집행인에 의한 위력 사용이 필요한 합법적인 행위를 하던 중,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의미한다.
- 131) 정당방위에 의한 살인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방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살해 행위로서, 임박한 사망 또는 중상해의 위험에 대하여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서는 살해 외에 다른 덜 극단적인 방법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경우를 말한다.
- 132) 과실에 의하지 않은 살인 또는 자외에 의하지 않은 살인은 사람에게 해악을 가하려는 일반적인 목적은 있으나 사망 또는 중상해에 이르게 하려는 목적 없이 사람을 불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254 한국범죄분류 개발 기초연구

대분류01 다른 사람의 사망을 초래하거나 의도한 행위			
0102 고의에 의한 살인 미수 사망 또는 중한 상해에 이르게 하려는 의도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려 시도하는 위법한 행위		+	포함: 모살 미수, 테러 활동에 의한 살해 미수, 영아 살해 미수, 여성 살해 미수
		-	제외: 불법 낙태 촉탁 또는 실행 음모(0106)
0103 고의에 의하지 않은 살인 사람이 다른 사람을 고의 없이 위법하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	포함: 자의에 의하지 않은 살인, 위험운전치사, 01031-01032에 포함된 사항 전부 포함
		-	제외: 중한 폭행에 의한 사망 유발 (0101), 자의에 의한 고살 (0101)
01031 살인 고의 및 중한 상해 고의 이외의 고의에 의한 살인 사람에게 해악을 가하려는 일반적인 목적은 있으나 사망 또는 중한 상해를 유발하려는 목적 없이 사람을 불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	포함: 자의에 의하지 않은 살인, 중한 상해의 고의 없이 신체 상해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	제외: 0103의 제외 사항 모두 제외
01032 과실에 의한 살인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그 대상으로 하지 않은 과실 행위 또는 비자의적 행위로 고의 없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sup>133)</sup>		+	포함: 형사상 과실에 의한 살인, 기업 살인, 차량에 의한 살인. 010321-010322의 포함 사항 모두 포함
		-	제외: 사망에 이르지 않은 과실 행위 (0206). 0103의 제외 사항 모두 제외
010321 운송수단에 의한 살인 운송수단 운전 중,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그 대상으로 하지 않은 과실 행위, 무모한 행위, 또는 비자발적 행위로 고의 없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sup>134)</sup> - 과실의 의미는 주48에서 정의		+	포함: 사망에 이른 위험 운전, 사망에 이른 교통 안전 법규 위반, 사망에 이른 약물 또는 알코올 영향 하에서의 운전, 운송수단에 의한 살인
		-	제외: 사망에 이르지 않은 교통 관련 과실 (02063), 사망에 이르지 않은 항정신성 물질 영향 하에서의 운송수단 운전 (02072). 01032의 제외 사항 모두 제외
010322 운송수단에 의하지 않은 살인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그 대상으로 하지 않은 과실 행위 또는 비자발적 행위로 고의 없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 과실의 의미는 주48에서 정의		+	포함: 중과실에 의한 살인, 사망에 이른 업무상 과실
		-	제외: 01032의 제외 사항 모두 제외
0104 자살 방조 또는 교사 고의에 의하여 사람의 자살을 불법으로 돕거나 조장하는 행위		+	포함: 01041-01049의 포함 사항 모두 포함
		-	

133) 과실은 동일한 상황에서 합리적이거나 신중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에 대하여 하였을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합리적이거나 신중한 사람이라면 하지 않았을 행동을 취함을 의미한다.

134) 운송수단은, 최소한, 사람 또는 물건을 운송하는 장치 또는 구조물을 의미하며, 승용차, 오토바이, 트럭, 버스, 기차, 선박, 항공기, 자전거, 말, 트랙터, 등을 포함한다.

대분류01 다른 사람의 사망을 초래하거나 의도한 행위				
01041	자살 방조 자살을 원하는 타인이 스스로 사망에 이르게 하도록 직접 돕거나, 지식이나 방법, 또는 양자를 모두 제공하여 그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sup>135)</sup>	+	포함: 안락사에 해당하지 않는 의사의 방조에 의한 자살, 방조에 의한 자살	
		-	배제: 고통 없이 사망에 이르게 하려는 의도 또는 치료가 어려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려는 의도로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0105), 도움을 주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0109)	
01042	기타 자살 방조 또는 교사 행위 01041에 정하는 행위 외에 다른 사람을 자살에 이르게 하는 행위	+	포함: 설득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한 자살 교사	
		-		
<b>0105 안락사</b> 당사자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고통 없이 사망에 이르게 하려는 의도, 치료가 어려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려는 의도, 또는 불치병이나 회복 불가능한 혼수상태의 경우에 자연적 원인으로 인한 사망을 방지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sup>136)</sup>			+	포함: 자발적 의사가 없는 안락사, 명백한 의사에 반하는 안락사
			-	배제: 자살을 원하는 사람의 사망에 대한 조력
<b>0106 불법 낙태</b> 사람이 고의로 직접 또는 다른 사람에게 촉탁하여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sup>137)</sup>			+	포함: 불법 낙태, 국내법에서 정의하는 낙태 범죄, 시체의 은밀한 처리에 의한 출생 사실 은닉, 고의에 의한 유산 및 사산, 불법 낙태 촉탁, 낙태 규정에 위반한 낙태, 강제 낙태 <sup>138)</sup>
			-	배제: 합법적 낙태, 의학 기술 없는 자에 의한 낙태 시술(02071)
<b>0107 무력 분쟁 관련 불법 살해</b> 전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무력 분쟁 중 불법 살해 - 전쟁 범죄는 1101에서 정의			+	포함: 전투원에 의한 살해로서, 국내법상으로 범죄로 인정되지만 (그리고 범죄로서 소추되지만), 전쟁 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 행위
			-	제외: 고의에 의한 살인에 해당하는 무력 분쟁 중 살해 (0101), 전쟁 범죄에 해당하는 무력 분쟁 관련 살해(11013)
<b>0109 기타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을 야기할 의도로 하는 행위</b>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0101-0107의 각 범주에서 기술하지 않는 행위			+	포함: 도움을 주지 않음으로써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	

135)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Centre for Health Development. Glossary of Terms for Community Health Care and Services for Older Persons. 2004. Web:([http://www.who.int/kobe\\_centre/ageing/ahp\\_vol5\\_glossary.pdf](http://www.who.int/kobe_centre/ageing/ahp_vol5_glossary.pdf)).

136)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Centre for Health Development. Glossary of Terms for Community Health Care and Services for Older Persons. 2004. Web:([http://www.who.int/kobe\\_centre/ageing/ahp\\_vol5\\_glossary.pdf](http://www.who.int/kobe_centre/ageing/ahp_vol5_glossary.pdf)).

137) 국내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 태아에 대한 불법 살해. 태아에 대한 살해는 임신 기간, 태아의 체중 등에 근거하여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도 있고, 상황 여하를 불문하고 금지될 수도 있으며, 또는 다른 사유에 근거해서만 금지될 수도 있다/

138) 대상 여성에 대한 사실 고지 및 대상 여성의 사전 동의 없이 행하는 낙태 행위, 또는 대상 여성에 대한 사실 고지 및 대상 여성의 사전 동의 또는 절에 대한 이해 없이 해당 여성의 자연 생식 능력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효과를 지니는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행위 (Council of Europe.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preventing and combating violence

256 한국범죄분류 개발 기초연구

대분류02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초래하거나 의도한 행위		
<b>0201 폭행과 협박</b> 상해 또는 해악을 야기하기 위한 유형력의 사용 또는 상해 또는 해악을 야기하겠다는 협박		+ 포함: 02011-02019의 포함 사항 모두 포함
		- 제외: 살인 고의 및 중한 상해 고의 이외의 고의에 의한 살인 중한 폭행(0101), 성적 성격의 모든 상해 행위 (03), 유형력 사용에 의한 재물 탈취 (04), 유형력을 사용하겠다는 협박을 이용하여 사람에게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0205)
02011	폭행 사람의 신체에 고의적으로 또는 무모하게 물리적 유형력을 가하는 행위 <sup>139)</sup>	+ 포함: 020111-020112의 포함 사항 모두 포함
		- 제외: 0201의 제외사항 모두 제외
020111	중한 폭행 사람의 신체에 고의적으로 또는 무모하게 중대한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여 중상해에 이르게 한 행위 <sup>140)</sup> - 무모한 행위는 주54에서 정의	+ 포함: 심대한 신체적 해악을 가하는 행위, 부상을 당하게 하는 행위, 가중 폭행, 가중 사유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신체 상해를 가하는 행위, 폭행, 산성 물질을 이용한 공격, 여성 할례, 중독, 무기를 이용한 공격, 강제 불임 수술, <sup>141)</sup> 폭력을 사용하여 사람의 혈액, 장기, 또는 조직을 취하는 행위
		- 제외: 중대한 신체 상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020121), 고문 (11011), 02011의 제외 사항 모두 제외
020112	경미한 폭행 사람의 신체에 고의적으로 또는 무모하게 경미한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상해에 이르지 않거나 또는 경미한 상해에만 이르게 한 행위 <sup>142)</sup> - 무모한 행위는 주54에서 정의	+ 포함: 경미한 신체적 해악을 가하는 행위, 단순 폭행, 밀거나, 치거나, 차거나, 때리거나, 약물을 주입하거나, 찌르는 행위
		- 제외: 경미한 신체적 상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020122), 02011의 제외 사항 모두 제외
02012	협박 협박의 내용을 실현할 것이라고 믿을 정도의, 모든 유형의 협박 행위 <sup>143)</sup>	+ 포함: 020121-020122의 포함 사항 모두 포함
		- 제외: 유형력을 사용하겠다는 협박을 이용하여 사람에게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0205), 증인, 사법 공무원, 또는 법집행 공무원에 대한 협박 (08061), 투표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유권자를 협박하는 행위 (08071), 재물 탈취 목적으로 유형력을 사용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0401), 성적 성격의 모든 상해 행위 (03), 착취의 목적으로 유형력에 대한 위협을 통해 사람을 모집, 수송, 이전, 구금, 또는 수령하는 행위 (0204), 0201의 제외 사항 모두 제외

against women and domestic violence (Istanbul Convention). Art. 39. 2011).

139) 무모한 행위는, 최소한, 그 결과에 대해 생각 없이 또는 신경쓰지 않고 행위하는 것을 의미한다.

140) 중대한 신체 상해는, 최소한, 총상 또는 탄환에 의한 부상, 칼에 의한 부상 또는 자상, 신체 절단, 골절 또는 치아 탈락, 내상, 의식 상실, 기타 심하거나 심각한 상해를 의미한다.

141) 여성 또는 남성의 자연적인 생식 능력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또는 그러한 효과를 가지는 수술을, 사전의 당사자의 정보화된 동의 없이 또는 그와 같은 수술의 절차에 대한 당사자의 이해 없이 실시하는 행위.

142) 경미한 신체 상해는, 최소한, 타박상, 베인 상처, 찰과상, 치아 파손, 부종, 눈 부위의 멍, 및 기타 경미한 상해를 포함한다.

경미한 물리적 유형력은, 최소한, 때리기, 치기, 밀기, 발 걸기, 넘어뜨리기, 및 기타 경미한 신체 상해에 이를 가능성이 있는 위력의 사용을 포함한다.

대분류02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초래하거나 의도한 행위			
020121	중한 협박 사망 또는 중대한 해악을 야기하려는 의도의 협박 <sup>144)</sup> - 협박은 02012에서 정의	+	포함: 사망 또는 중대한 상해에 이르게 하겠다는 협박, 친족, 친구, 또는 기타 사람을 사망 또는 중대한 상해에 이르게 하겠다는 협박
		-	제외: 02012의 제외사항 모두 제외
020122	경미한 협박 경미한 해악을 야기하려는 의도의 협박 <sup>145)</sup> - 협박은 02012에서 정의	+	포함: 경미한 상해에 이르게 하겠다는 협박, 친족 또는 친구를 경미한 상해에 이르게 하겠다는 협박
		-	제외: 02012의 제외 사항 모두 제외
02019	기타 폭행과 협박 상해 또는 해악을 야기하거나 상해 또는 해악으로 협박하는 행위 중 02011-02012의 각 범주에서 기술하지 않는 행위	+	
		-	제외: 0201의 제외 사항 모두 제외
<b>0202 자유에 반하는 행위</b> 사람의 이동 또는 자유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sup>146)</sup>			포함: 02021-02029의 포함 사항 모두 포함
02021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성년자를 그 법정 후견인 또는 양육자인 부모로부터 불법으로 유괴하거나, 은닉하거나, 구금하는 행위	+	포함: 020211-020219의 포함 사항 모두 포함
		-	제외: 석방을 대가로 부당한 이득을 요구하려는 목적으로 사람을 불법으로 구금하는 행위 (020221), 불법 입양 (020291), 0202의 제외 사항 모두 제외
020211	부모에 의한 미성년자 약취 배타적 양육권이 없는 부모에 의한 미성년자 약취 - 미성년자 약취는 02021에서 정의	+	포함: 부모에 의한 미성년자 국제 약취, 부모에 의한 미성년자 국내 약취
		-	제외: 02021의 제외 사항 모두 제외
020212	기타 친족에 의한 미성년자 약취 부모도 아니고 배타적 양육권도 없는 기타 친족에 의한 미성년자 약취 - 미성년자 약취는 02021에서 정의	+	
		-	제외: 02021의 제외 사항 모두 제외

143) 협박 행위는, 최소한, 상해 또는 해악에 대한 두려움을 일으키는 고의적인 행동을 의미한다.

144) 중대한 해악은, 최소한, 주13에서 정의한 중대한 신체 상해 또는 중대한 물리적 위력을 포함한다.

145) 경미한 해악은, 최소한, 주58에서 정의한 경미한 신체적 상해 또는 경미한 물리적 위력을 포함한다.

146) 자유는, 최소한, 공공 영역에서의 자유, 구속, 억압, 또는 전체적 통치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United Nations.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Web: <<http://www.un.org/en/documents/udhr/>>.).

258 한국범죄분류 개발 기초연구

대분류02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초래하거나 의도한 행위			
020213	법정 후견인에 의한 약취 부모 및 기타 친족도 아니고 배타적 양육권도 없는 법정 후견인에 의한 미성년자 약취 - 미성년자 약취는 02021에서 정의	+	
		-	제외: 02021의 제외 사항 모두 제외
020219	기타 미성년자 약취 020211-020213 의 각 범주에서 기술하지 않는 행위 - 미성년자 약취는 02021에서 정의	+	
		-	제외: 02012의 제외 사항 모두 제외
02022	자유의 박탈 사람을 그 의사에 반하여 불법으로 구속하는 행위	+	포함: 납치, 불법 구속, 운송수단 납치, 020221-020229의 포함 사항 모두 포함
		-	제외: 미성년자 약취 (02021), 0202의 제외 사항 모두 제외
020221	납치 석방을 대가로 부당한 이득이나 기타 경제적 이득 또는 물질적 이 득을 요구하려는 목적으로,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강제할 목적으로, 사람을 그 의사에 반하여 구 속하여 유괴하는 행위	+	포함: 납치, 급행 납치
		-	제외: 미성년자 약취 (02021), 인신매매 (0204), 불법 입양 (020291), 인질 행위 (020222), 02022의 제외 사항 모두 제외
020222	불법 구속 사람을 그 의사에 반하여 구속하는 행위로서, 그 사람을 다른 장 소로 이송하지 않는 경우	+	포함: 인질 행위, 불법 감금, 자유의 불법적인 박탈, 불법 구속, 강제 실종 <sup>147)</sup>
		-	제외: 미성년자 약취 (02021), 인신매매 (0204), 불법 입양 (020291), 강제 혼인 (020292), 석방 을 대가로 부당한 이득을 요구하려는 목적으로 사람을 불법으로 구금하는 행위 (020221), 02022 의 제외 사항 모두 제외
020223	차량 등 운송수단 납치 유형력을 사용하거나 유형력을 사용하겠다고 협박하여 운송수단 및 그 승객을 불법으로 장악하는 행위	+	포함: 항공기, 승용차, 버스, 선박, 또는 기타 동력 운송수단 납치
		-	제외: 전자/통신 관련 운송수단 납치 (0903), 공해상의 민간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 또는 승객 이, 다른 선박, 항공기, 또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사람 또는 재물을 대상으로, 사적인 목적으로 행하 는 폭력, 구속, 강간, 또는 약탈 행위 (11012), 동력 운송수단 절도 또는 기타 유형의 절도 (0502), 강도 (0401), 02022의 제외 사항 모두 제외
020229	기타 자유의 박탈 020221-020223의 각 범주로 분류되지 않는 자유의 박탈	+	
		-	제외: 02022의 제외 사항 모두 제외

147) 강제 실종은 “정부내 각 부 또는 각 급의 공무원이, 또는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 동의 또는 묵인 하에 행동하거나 정부를 대리하여 행동하는 조직 또는 개인이, 사람을 그 의사에 반하여 체포하거나, 구속하거나, 약취한 후, 해당인의 상황 또는 소재를 공개하지 않거나 그 자유 박탈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로서, 그로 인하여 해당인이 법의 보호 범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대분류02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초래하거나 의도한 행위			
02029	기타 자유에 반하는 행위 자유에 반하는 행위 중 02021-02022의 각 범주에서 기술하지 않는 행위 - 자유는 주61에서 정의	+	포함: 불법 입양, 강제 혼인, 020291-02039의 포함 사항 모두 포함
		-	제외: 0202의 제외 사항 모두 제외
020291	불법 입양 아동의 불법 입양 및/또는 입양을 목적으로 불법으로 알선하거나, 방조하거나, 아동을 통제하는 행위 <sup>148)</sup>	+	포함: 입양 사기, 불법 입양
		-	제외: 미성년자 약취 (02021), 인신매매 (0204), 인질 행위 (02022), 02029의 제외 사항 모두 제외
020292	강제 혼인 유효한 동의 없는 혼인 또는 위협, 유형력, 사기, 강요, 협박, 기망, 약물 또는 알코올의 사용, 권력의 남용 또는 취약한 지위의 이용으로 인한 동의에 의한 혼인 <sup>149)</sup>	+	포함: 강제 혼인, 아동 혼인
		-	제외: 미성년자 약취 (02021), 강제 혼인 목적 인신매매 (0204), 인질 행위 (02022), 노예 행위 및 착취 (0203), 02029의 제외 사항 모두 제외
020299	기타 자유에 반하는 행위 자유에 반하는 행위 중 020291-020292의 각 범주에서 기술하지 않는 행위 - 자유는 주61에서 정의	+	
		-	제외: 미성년자 약취 (02021), 인신매매 (0204), 인질 행위 (02022), 02029의 제외 사항 모두 제외
<b>0203 노예 행위 및 착취</b>		+	포함: 02031-02039의 포함 사항 모두 포함
재산상 이익 또는 기타 이익을 얻기 위한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유괴하거나 사람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인신매매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		-	제외: 인신매매 (0204), 성적 착취 (0302), 강제 혼인 (020292), 노동법 위반 행위 (0808)
02031	노예 행위 사람을, 그 사람에 대한 소유권에 부여된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가 행사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상태에 처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불법으로 포획, 획득, 또는 처분하는 행위, 사람을 판매 또는 교환하기 위한 목적의 노예 획득에 관련된 모든 행위, 판매 또는 교환을 목적으로 획득한 노예의 판매 또는 교환 등 모든 처분 행위, 일체의 노예 거래 또는 운송 행위	+	포함: 노예 행위, 부채에 의한 예속, 예속에 의한 노동 또는 예속 상태, 자의에 의하지 않은 예속 상태
		-	제외: 처벌의 위협에 의한 불법 근로 또는 서비스 제공으로서, 해당인이 자의에 의하여 제공하지 않은 근로 또는 용역 (02032), 0203의 제외 사항 모두 제외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GA Resolution 47/133 of 18 December 1992. Web: <http://www.un.org/en/events/disappearancesday/background.shtml>.

148)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Child Adoption: Trends and Policies. 2009. Web: [http://www.un.org/esa/population/publications/adoption2010/child\\_adoption.pdf](http://www.un.org/esa/population/publications/adoption2010/child_adoption.pdf).

149) United Nations. Division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Forced and Early Marriage: A Focus on Central and Eastern Europe and Former Soviet Union Countries with Selected Laws from other Countries. Expert paper by Thomas, Cheryl. 2009. Web: [http://www.un.org/womenwatch/daw/egm/vaw/legislation\\_2009/Expert\\_Paper\\_EGMGPLHP\\_Cheryl\\_Thomas\\_revised\\_.pdf](http://www.un.org/womenwatch/daw/egm/vaw/legislation_2009/Expert_Paper_EGMGPLHP_Cheryl_Thomas_revised_.pdf).

260 한국범죄분류 개발 기초연구

대분류02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초래하거나 의도한 행위			
02032	강제 노동 처벌의 위협에 의한 불법 근로 또는 서비스 제공으로서, 해당인이 자의에 의하여 제공하지 않은 근로 또는 용역	+	포함: 020321-020329의 포함 사항 모두 포함
		-	제외: 노예 행위 (02031), 강제 노동 또는 용역 목적 인신매매 (02042), 0203의 제외 사항 모두 제외
020321	강제 가사 노동 제3자의 개인 가구를 위한 용역을 제공하는 강제 노동 - 강제 노동은 02032에서 정의	+	포함: 강제 가사 노동, 가사 노동 착취
		-	제외: 02032의 제외 사항 모두 제외
020322	강제 산업 노동 산업 용역을 제공하는 강제 노동 <sup>150)</sup> - 강제 노동은 02032에서 정의	+	포함: 농업, 건설, 제조, 연예, 어업, 착취 공장, 농장에서의 강제 노동
		-	제외: 02032의 제외 사항 모두 제외
020323	강제 공무 또는 군무 국가 또는 군을 위한 용역을 제공하는 강제 노동 - 강제 노동은 02032에서 정의	+	포함: 노동 수용소에서의 불법 노동
		-	제외: 미성년자에 대한 군 징집 또는 편입 (110135), 02032의 제외 사항 모두 제외
020329	기타 강제 노동 강제 노동 중 020321-020323의 각 범주에서 기술하지 않는 행위 - 강제 노동은 02032에서 정의	+	포함: 강제 구결
		-	제외: 02032의 제외 사항 모두 제외
02039	기타 노예 행위 및 착취 노예 행위 및 착취 중 02031-02032의 각 범주에서 기술하지 않는 행위	+	
		-	제외: 0203의 제외 사항 모두 제외
<b>0204 인신매매</b> 착취를 목적으로, 유형력을 사용하거나 유형력을 사용하겠다고 협박하여, 또는 기타 형태의 강요, 약취, 사기, 기망, 권력 남용, 또는 취약한 지위의 이용에 의하거나, 해당인에 대하여 통제권을 지닌 사람의 동의를 획득하기 위하여 금전 기타 이익을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방법에 의하여, 사람을 모집, 운송, 이전, 구금 또는 수령하는 행위. 여기에서 착취란, 최소한, 타인에 대한 성매매 착취 또는 기타 성적 형태의 착취, 강제 노동 또는 용역, 노예 행위 또는 그와 유사하는 행위, 예속 상태, 또는 장기 적출을 포함한다. <sup>151)</sup>		+	포함: 성인 인신매매, 아동 인신매매, 02041-02049의 포함 사항 모두 포함
		-	제외: 노예 행위 (02031), 강제 노동 (02032), 노동법 위반 행위 (0808), 강제 혼인 (02029), 성적 성격의 모든 상해 행위 (03), 폭행 및 협박 (0201), 자유에 반하는 행위 (0202), 공공의 성적 기준에 반하는 행위 (0802), 이민자 밀수 및 기타 이민 관련 범죄 (0805)

150)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Forced Labour Convention 1930 (No. 29) Convention concerning Forced or Compulsory Labour (Entry into force: 01 May 1932). Geneva, Switzerland. Web: <[https://www.ilo.org/dyn/normlex/en/f?p=1000:12100:0::NO::P12100\\_INSTRUMENT\\_ID:312174](https://www.ilo.org/dyn/normlex/en/f?p=1000:12100:0::NO::P12100_INSTRUMENT_ID:312174)>.

151) United Nations.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2000. Web: <[http://www.uncjin.org/Documents/Conventions/dcatoc/final\\_documents\\_2/convention\\_traff\\_eng.pdf](http://www.uncjin.org/Documents/Conventions/dcatoc/final_documents_2/convention_traff_eng.pdf)>.

대분류02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초래하거나 의도한 행위			
02041	성적 착취 목적 인신매매 성적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 인신매매는 0204에서 정의 - 성적 착취는 0302에서 정의	+	포함: 성적 착취 목적 인신매매, 타인 성매매 착취 목적 인신매매, 상업적 성적 착취 목적 인신매매
		-	제외:성인에 대한 성적 착취로서 인신매매가 아닌 경우 (03021), 0204의 제외 사항 모두 제외
02042	강제 노동 또는 용역 목적 인신매매 강제 노동 또는 용역 목적의 인신매매 <sup>152)</sup> - 강제 노동은 02032에서 정의	+	포함: 강제 노동 목적 인신매매, 노예 행위 또는 유사 행위 목적 인신매매, 계약 노동 목적 인신매매, 가사 노동 목적 인신매매
		-	제외:0204 제외 사항 모두 제외
02043	장기 적출 목적 인신매매 장기 적출을 목적의 인신매매 <sup>153)</sup> - 인신매매는 0204에서 정의	+	포함: 장기 적출 목적 인신매매, 간 적출 목적 인신매매
		-	제외: 건강상 위험 유발 행위 (02061), 건강 및 안전에 반하는 행위 (0902), 0204의 제외 사항 모두 제외
02049	기타 목적 인신매매 02041-02043의 각 범주로 분류되지 않는 착취 목적을 위한 인신매매 - 인신매매는 0204에서 정의	+	포함: 강제 혼인 목적 인신매매, camel jockeying(낙타 경주 기수로 삼기 위한 아동 인신매매; 역주), 범죄 실행 목적 인신매매
		-	제외: 0204의 제외 사항 모두 제외
<b>0205 강요</b> 유형력의 사용, 협박, 위협, 불리한 정보의 폭로, 또는 명예 훼손의 위협을 통하여 특정한 행동을 요구하는 행위 - 명예훼손은 0209에서 설명		+	포함: 강요, 갈취, 공갈, 02051-02059의 포함 사항 모두 포함
		-	제외: 강요에 의한 성적 행위 교사 및 성적 성격의 모든 상해 행위 (03), 유형력의 사용, 협박, 또는 유형력 사용의 협박을 통한 재물 갈취 (0401), 인신매매 (0204), 노예 행위 및 착취 (0203), 폭행 및 협박 (0201), 공포 또는 정서적 고통 유발 목적 행위 (0207), 증인, 사법 공무원 또는 법집행 공무원 협박 (08061), 투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유권자 협박 (08071), 명예훼손 또는 모욕 (0209)
02051	갈취 또는 공갈 문자 또는 구두에 의한 위협을 통하여 특정 행동을 요구하는 행위 <sup>154)</sup>	+	포함: 사람, 업체, 또는 기관 대상 갈취
		-	제외: 0205의 제외 사항 모두 제외
02059	기타 강요 행위 02051로 분류되지 않는 강요 행위 - 강요는 0205에서 정의	+	포함:
		-	제외: 0205의 제외 사항 모두 제외

152) 용역은, 최소한, 사람이 자의에 의하여 제공하지 않은, 협박에 의하여 강제한 근로를 의미한다.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Forced Labour Convention 1930 (No. 29) Convention concerning Forced or Compulsory Labour (Entry into force: 01 May 1932). Geneva, Switzerland: , Web: [https://www.ilo.org/dyn/normlex/en/?p=1000:12100:0::NO::P12100\\_INSTRUMENT\\_ID:312174](https://www.ilo.org/dyn/normlex/en/?p=1000:12100:0::NO::P12100_INSTRUMENT_ID:312174)).

153) 장기는 유의미한 수준의 수의성을 지니며 뚜렷이 구분되는 인간 신체의 중요 부분으로서, 그 구조, 혈관 생성, 및 생리학적 기능 발현 능력을 유지하는 다양한 조직으로 구성된다. (World Health

262 한국범죄분류 개발 기초연구

대분류02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초래하거나 의도한 행위			
0206 과실 사람의 과실 행위, 무모한 행위, 또는 부주의한 행위에 의한 신체적 해악 또는 신체적 해악 가능성 - 과실은 주48에서 정의 - 무모함은 주 54에서 정의		+	포함: 02061-02069의 포함 사항 모두 포함
		-	제외: 과실에 의한 살인 (01032), 신체 상해를 야기하거나 신체 상해에 이르게 하는 위험 행위 (0207)
02061 보호를 받는 사람에 대한 과실 사람을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거나 책임이 있는 자가 과실로 그 사람에게 신체적 해악을 가하거나 그 가능성을 유발하는 행위 <sup>155)</sup> - 과실은 주48에서 정의가능성을 유발하는 행위		+	포함: 020611-020619의 모든 포함 사항 포함
		-	제외: 0206의 모든 제외 사항 제외
020611 보호를 받는 아동에 대한 과실 아동을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거나 책임이 있는 자가 과실로 그 아동에게 신체적 해악을 가하거나 그 가능성을 유발하는 행위 - 과실은 주48에서 정의 - 보호 의무는 주70에서 정의 - 아동은 각 국가법에서 정의		+	포함: 보호를 받는 아동의 방치, 아동 방치, 아동 유기
		-	제외: 02061의 모든 제외 사항 제외
020612 기타 보호를 받는 사람에 대한 과실 요부조자를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거나 책임이 있는 자가 과실로 그 요부조자에게 신체적 해악을 가하거나 그 가능성을 유발하는 행위 <sup>156)</sup> - 과실은 주48에서 정의 - 보호 의무는 주70에서 정의		+	포함: 노인 방치, 보호를 받는 성인 방치, 보호를 받는 노인 방치, 돌봄을 요하는 노인 유기
		-	제외: 02061의 모든 제외 사항 제외

Organization. Global Glossary of Terms and Definitions on Donations and Transplantation. Geneva, Switzerland, 2009. Web:<<http://www.who.int/transplantation/activities/GlobalGlossaryonDonationTransplantation.pdf>>.

154) 특정한 행동은, 최소한, 재산 박탈, 금전 박탈, 용역 또는 이익의 제공을 포함한다.

문자 또는 구두에 의한 협박은, 최소한, 정보 공개의 협박, 명예 훼손의 협박, 위력 사용의 협박, 신체 상해의 협박, 또는 형사 기소의 협박을 의미한다.

155) 돌봄 의무는, 최소한, 동일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취하였을 수준의 주의, 관심, 신중함으로 다른 사람 및 공중 일반에 대하여 행동할 의무를 의미한다.

156) 요부조자는, 최소한, 하나 이상의 다른 사람이 제공하는 돌봄 또는 부조에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그 돌봄 또는 부조가 없을 시 위험에 처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대분류02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초래하거나 의도한 행위			
020619	보호를 받는 사람에 대한 기타 과실 사람을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거나 책임이 있는 자가 과실로 신체적 해악을 가하거나 그 가능성을 유발하는 행위로서, 020611-020612 각 범주에서 기술하지 않는 행위 - 과실은 주48에서 정의 - 보호 의무는 주70에서 정의	+	포함: 가족 관련 과실, 가족에 대한 의무 위반, 하인/도제의 생활 유지 의무 미이행
		-	제외: 반려동물에 대한 적절한 보호 의무에 관련된 과실 (10091), 02061의 제외 사항 모두 제외
02062	직무상 과실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준수하였을 직무상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신체적 해악을 가하거나 그 가능성을 유발하는 행위	+	포함: 처방에서의 의료 과실, 의료 행위 수행에서의 중과실, 전문가 과실, 직무상 의무 이행에서의 중과실 행위, 조종사, 선장, 기타 직무상 운송수단 운행인의 형사상 과실
		-	제외: 사망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 (010322), 0206의 제외 사항 모두 제외
02063	운송수단 운전 관련 과실 운송수단 조작 중의 과실 행위, 무모한 행위, 또는 부주의한 행위로 사람에게 신체적 해악을 가하거나 그 가능성을 유발하는 행위 - 과실은 주48에서 정의 - 무모함은 주54에서 정의 -운송수단은 주49에서 정의	+	포함: 운송수단의 과실 운행 또는 운전, 운전 중 문자 메시지 작성, 동력 운송수단 운행 시 주의 의무 관련 과실,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뺑소니
		-	제외: 조종사, 선장, 기타 직무상 운송수단 운행인의 형사상 과실 (02062), 항정산성 약물의 영향 하에서의 운송수단 운행 (02072),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과실 운전 (010321), 0206의 제외 사항 모두 제외
02069	기타 과실 행위 과실 행위, 무모한 행위, 또는 부주의한 행위로 사람에게 신체적 해악을 가하거나 그 가능성을 유발하는 행위로서 02061-02063 각 범주에서 기술하지 않는 행위 - 과실은 주48에서 정의 - 무모함은 주54에서 정의	+	포함: 상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부조 미이행, 보행자 과실 범죄
		-	제외: 0206의 제외 사항 모두 제외
<b>0207 위험 행위</b> 해악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행한 위험한 행위로 사람에게 신체적 해악을 가하거나 그 가능성을 유발하는 행위 <sup>157)</sup>		=	포함: 02071-02079의 포함 사항 모두 포함
		-	제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위험 행위 또는 행동 (01), 과실 행위에 의한 신체적 해악 (0206)

157) 위험 행위는, 최소한, 상해 또는 해악을 가할 수 있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행위 또는 행동을 의미한다.

264 한국범죄분류 개발 기초연구

대분류02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초래하거나 의도한 행위			
02071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건강을 위태롭게 하거나 그와 같은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행위 <sup>158)</sup> - 위험은 주72에서 정의	+	포함: 불량 식품 및 의약품 제조, <sup>159)</sup> 유해 식품 또는 음료 판매, 접착제, 용제, 또는 기타 중독으로 인한 남용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조달, 판매, 또는 유통, 형사상 HIV/AIDS 전파
		-	제외: 전문가 의무의 해태를 통하여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 (02062), 의약품 및 처방전 물품의 위조 (07022), 0207의 제외 사항 모두 제외
02072	향정신성 물질의 영향 하에서 행하는 운송수단 운행 향정신성 물질 또는 기타 규제 약물의 영향 하에서 운송수단을 운행함으로써 사람을 신체적 해악에 이르게 하거나 신체적 해악 가능성을 유발하는 행위 - 향정신성 약물은 주98에서 정의 - 운송수단은 주49에서 정의	+	포함: 알코올 또는 약물의 영향 하에서의 운송수단 운전 또는 운행 중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는 행위, 020721-020729의 포함 사항 모두 포함
		-	제외: 향정신성 약물의 영향 하에서의 운송수단 운행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010321), 상해에 이르지 않은 교통 법규 위반 (0907), 규제 약물 또는 전구물질을 수반하는 불법적 행위 (0601); 조이라이딩 또는 기타 동력 운송수단의 불법 사용 (050212), 운송수단 운행 관련 과실 (02063), 0207의 제외 사항 모두 제외
020721	알코올의 영향 하에서 행하는 운송수단 운행 알코올의 영향 하에서 운송수단을 운행함으로써 사람을 신체적 해악에 이르게 하거나 신체적 해악 가능성을 유발하는 행위 - 운송수단은 주49에서 정의	+	포함: 알코올의 영향 하에서의 운전, 알코올의 영향 하에서의 사고 유발
		-	제외: 알코올 수반 불법 행위 (0602), 02072의 모든 제외 사항 제외
020722	불법 약물의 영향 하에서 행하는 운송수단 운행 불법 약물의 영향 하에서 운송수단을 운행함으로써 사람을 신체적 해악에 이르게 하거나 신체적 해악 가능성을 유발하는 행위 - 불법 약물은 주98에서 정의 - 운송수단은 주49에서 정의	+	포함: 불법 약물의 영향 하에서의 운전, 불법 약물의 영향 하에서의 사고 유발
		-	제외: 규제 약물 또는 전구물질 수반 불법 행위 (0601), 02072의 제외 사항 모두 제외
020729	기타 향정신성 물질의 영향 하에서 행하는 운송수단 운행 기타 향정신성 약물의 영향 하에서 운송수단을 운행함으로써 사람을 신체적 해악에 이르게 하거나 신체적 해악 가능성을 유발하는 행위 - 향정신성 물질은 주98에서 정의 - 운송수단은 주49에서 정의	+	
		-	제외: 규제 약물 또는 기타의 향정신성 물질을 수반하는 행위로서, 운송수단의 운행에는 해당하지 않는 행위 (06), 02072의 모든 제외 사항 제외

158) 건강은, 최소한, 질병 또는 상해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159) 불량 식품 및 의약품 제조는, 특정 인상 또는 가치를 허위로 만들어내거나 결함을 감추려는 목적으로, 식품에 불순물, 저급 물질 또는 비활성 물질을 첨가하거나, 중요하거나 필수적인 재료를 식품으로부터 제외시키거나 제거하여 불량 식품 및 의약품을 제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Perspectives and guidelines on food legislation, with a new model food law Page 209. Rome, Italy, 2005. Web: <[http://www.fao.org/fileadmin/user\\_upload/legal/docs/ls87-e.pdf](http://www.fao.org/fileadmin/user_upload/legal/docs/ls87-e.pdf)>.).

대분류02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초래하거나 의도한 행위			
02079	기타 위험 행위 위험한 행동 또는 행위에 의하여 사람을 신체적 해악에 이르게 하거나 신체적 해악 가능성을 유발하는 행위로서 02071-02072 각 범주에서 기술하지 않는 행위 - 위험은 주72에서 정의	+	포함: 대인용 함정 설치
		-	제외: 0207의 제외 사항 모두 제외
<b>0208 공포감 또는 정서적 고통을 유발할 의도로 하는 행위</b> 공포 또는 정서적 고통을 야기하는 행위 또는 행동 - 정서적 고통은, 최소한, 정신적이거나 심리적인 고통을 의미한다.		+	포함: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성적 성격이 아닌 괴롭힘, 지속적인 통화 시도, 02081-02089의 포함 사항 모두 포함
		-	제외: 규제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 신념 및 규범과 관련된 행위 (08032), 고의적 발언, 행동, 또는 교신에 의하여 타인의 평판, 명망, 또는 기밀을 해하거나, 타인에 대해 적대적이거나 부정적인 견해 또는 감정을 유발하는 행위 (0209)
02081	괴롭힘 사람을 괴롭히는 행위 또는 괴롭힐 의도로 행하는 행위 <sup>160)</sup>	+	포함: 괴롭힘, 불쾌한 자료의 공유, 020811-020819의 포함 사항 모두 포함
		-	제외: 성적 괴롭힘 (030122), 유형력의 사용, 협박, 위협, 불리한 정보의 폭로, 또는 명예 훼손의 위협을 통하여 특정한 행동을 요구하는 행위 (0205), 폭행 및 협박 (0201), 사람의 평판을 해하려는 목적의 교신 (0209), 0208의 제외 사항 모두 제외
020811	직장 내 괴롭힘 동료, 상사, 또는 기타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에 의한 근무 환경에서의 또는 고용과 관련된 괴롭힘 - 괴롭힘은 각주 75에서 정의	+	포함: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다중에 의한 위력 행사, 직장 내 따돌림
		-	제외: 02081의 제외 사항 모두 제외
020819	기타 괴롭힘 근무환경 외에서 고용과 무관한 괴롭힘 - 괴롭힘은 각주 75에서 정의	+	포함: 직장 외에서의 군중에 의한 위력 행사 또는 따돌림,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 악의적인 전화 연락, 사적 생활방해, 놀라게 하거나 감정적 고통에 이르게 하는 행위
		-	제외: 02081의 제외 사항 모두 제외
02082	스토킹 원치 않는 연락, 따라다님 또는 지켜봄	+	포함: 사이버 스토킹, 스토킹
		-	제외: 성적 성격의 스토킹 (030122),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불법적이고 부당 침해 (0211), 0208의 제외 사항 모두 제외

160) 괴롭힘은, 최소한, 그와 같은 행위가 타인에게 불쾌할 것이라는 점을 합리적으로 인식하고도 타인에 대하여 불쾌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사람을 비하 또는 무시하거나, 사람에게 수치심이나 창피함을 유발하는, 무례하거나 또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가 포함된다. (United Nations. Policy on Prevention of Harassment. Web: [http://www.un.org/womenwatch/osagi/UN\\_system\\_policies/\(FAO\)Policy\\_on\\_the\\_prevention\\_of\\_harassment.pdf](http://www.un.org/womenwatch/osagi/UN_system_policies/(FAO)Policy_on_the_prevention_of_harassment.pdf)).)

266 한국범죄분류 개발 기초연구

대분류02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초래하거나 의도한 행위			
02089	기타 공포감 또는 정서적 고통을 유발할 의도로 하는 행위 사람의 행동 또는 행위에 의하여 공포 또는 정서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서, 02081-02082 각 범주에서 기술하지 않는 행위	+	포함: 심리적 폭력
		-	제외: 0208의 제외 사항 모두 제외
0209	<b>0209 명예훼손 또는 모욕</b> 고의적 발언, 행동, 또는 (구두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한) 교신에 의하여 타인의 평판, 명망, 또는 기밀을 해하거나, 타인에 대해 적대적이거나 부정적인 견해 또는 감정을 유발하는 행위	+	포함: 구두 명예훼손, 문서 명예훼손, 모욕, 중상모략, 명예의 손상, 02091-02099의 모든 포함 사항 포함
		-	제외: 특정 행동을 요구하기 위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위협 (0205), 사람의 평판을 해할 의도 없는 부적절한 행동 (0208)
02091	피해자의 특성 또는 생래적 속성에 기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 피해자의 특성 또는 생래적 속성에 근거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 <sup>161)</sup> - 명예훼손 또는 모욕은 0209에서 정의	+	포함: 구두 명예훼손, 문서 명예훼손, 모욕, 중상모략, 명예의 손상
		-	제외: 특정한 요구를 위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위협 (0205), 사람의 평판을 해할 의도 없는 부적절한 행동 (0208)
02092	피해자의 생래적 신념 또는 가치에 기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 피해자의 생래적 신념 또는 가치에 근거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 <sup>162)</sup> - 명예훼손 또는 모욕은 0209에서 정의	+	포함: 종교, 정치적 견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견해에 근거한 모욕 또는 명예훼손
		-	제외: 피해자의 신념 및 가치가 동기부여 요인인 범죄, 신념 또는 가치에 근거한 불법적인 구별, 배제, 제한, 또는 우대 (2010), 0209의 제외 사항 모두 제외
02099	기타 명예훼손 또는 모욕 명예훼손 또는 모욕으로서 02091-02092 각 범주에서 기술하지 않는 행위 - 명예훼손 또는 모욕은 0209에서 정의	+	포함: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근거가 밝혀지지 않은 구두 명예훼손, 문서 명예훼손, 모욕, 중상모략, 명예의 손상, 명예 및 존엄성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
		-	제외: 0209의 제외 사항 모두 제외
0210	<b>0210 차별</b> 인종, 피부색, 연령, 성, 언어, 종교, 견해, 혈통, 국적, 또는 민족적 출신을 근거로 개인 또는 집단을 구별하거나, 배제하거나, 제한하거나, 불법적으로 처하거나 우대하는 행위로서, 인권의 평등한 인정, 향유, 또는 행사 및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타 공적 생활의 다른 영역에서 근본적인 자유를 좌절시키거나 막는 행위 <sup>163)</sup>	+	포함: 개인에 대한 차별, 집단에 대한 차별, 생래적 신념 및 가치 또는 속성 및 특성에 근거한 차별, 02101-02109의 포함 사항 모두 포함
		-	제외: 표현의 자유 또는 표현의 규제에 관계된 행위 (0803)
02101	개인에 대한 차별 사람을 차별하고 불법적으로 처우하는 행위. - 차별은 0210에서 정의	+	포함: 사람에 대한 고용 차별, 임금 차별, 주거 차별
		-	제외: 집단에 대한 차별 (02102)

161) 특성 및 속성은, 최소한, 성, 젠더, 성적 지향, 연령, 언어, 민족 출신, 장애 및/또는 인종을 포함한다.

162) 신념 또는 가치는, 최소한, 종교적 신념, 정치적 견해, 및/또는 경제적인 견해 및 사회적 견해를 포함한다.

대분류02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초래하거나 의도한 행위			
02102	집단에 대한 차별 하나의 전체를 이루는 사람들의 집단에 대해 차별하고 불법적으로 처우하는 행위 - 차별은 0210에서 정의	+	포함: 집단에 대한 고용 차별, 임금 차별, 주거 차별, 젠더, 성, 연령, 장애, 인종, 성적 지향, 종교, 정치적 견해, 사회적 견해, 또는 경제적 견해에 근거한 집단에 대한 차별
		-	제외: 집단의 표현의 자유 또는 표현의 규제에 관련된 행위 (0803), 개인에 대한 차별 (02101)
02109	기타 차별 차별 및 불법적인 처우로서 02101-02102 각 범주에서 기술하지 않는 행위 - 차별은 0210에서 정의	+	포함: 사람 또는 집단에 대한 차별을 행하도록 다른 사람을 교사하는 행위
		-	제외: 0210의 제외 사항 모두 제외
<b>0211 사람에 대한 침해 행위</b> 사람의 사생활이나 다른 권리에 대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침해 <sup>164)</sup>		+	포함: 02111-02119의 포함 사항 모두 포함
		-	제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컴퓨터 데이터 또는 컴퓨터 시스템 침해 (0903), 원치 않는 따라다님, 지켜봄, 또는 연락 (02082), 성적 사생활 침해 또는 기타 성적 성격의 행위 (03), 재산에 대한 침해 (0509)
02111	사생활 침해 사생활 침해 또는 간섭 - 사생활은 주79에서 정의	+	포함: 사생활 침해, 우편 비밀 침해, 전화 도청, 고립성 또는 개인적 사항에 대한 침해, 사적인 컴퓨터 파일에 대한 침해, 우편 방해
		-	제외: 0211의 제외 사항 모두 제외
02119	기타 사람에 대한 침해 행위 사람의 사생활이나 다른 권리에 대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침해로서 02111에서 기술하지 않는 행위 - 사생활은 주79에서 정의	+	포함: 사체 훼손, 장기 또는 조직 적출 목적 인신매매에 해당하지 않는 신체 부위 밀매, 분묘 손괴, 사체의 불법적인 사용, 분묘 발굴
		-	제외: 0211의 제외 사항 모두 제외
<b>0219 기타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초래하거나 의도한 행위</b> 해악을 야기하거나 해악을 야기할 것을 의도로 하는 행위로서 0201-0211 각 범주에서 기술하지 않는 행위		+	포함: 신체적 학대 또는 정신적 잔학행위를 통한 부당 대우
		-	제외: 0201-0211의 제외 사항 모두 제외

163)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1969. Web: <<http://www.ohchr.org/EN/ProfessionalInterest/Pages/CERD.asp&xtg:>>.

164) 사생활은, 최소한, 사람의 개인적인 자율성이나 다른 사람에 의해 관찰되거나 방해 받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268 한국범죄분류 개발 기초연구

대분류03 성적 성격의 유해행위			
		+	포함: 03011-03012의 포함 사항 모두 포함
	<b>0301 성폭력</b> 유효한 동의 없이 또는 위협, 유형력, 사기, 강요, 협박, 기망, 약물 또는 알코올의 사용, 권력의 남용 또는 취약한 지위를 이용하여 얻은 동의에 의해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하거나,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시도하거나, 또는 당사자/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적 관심을 갖고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	-	제외: 성매매 또는 성적 행위로부터 금전적, 사회적, 또는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취약한 지위를 이용하거나, 권력 또는 신뢰를 남용하거나, 유형력을 사용하거나 또는 사용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0302), 강요 (0205), 성매매 범죄, 포르노그래피 범죄, 및 기타 근친상간과 같은 공공의 성적 기준에 반하는 행위로서, 강간 및 노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 (0802), 폭행 및 협박 (0201), 노예 행위 및 착취로서 성적 성격의 유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 (0203), 성적 착취 목적 인신 매매 (02041), 괴롭힘 및 스토킹 (0208)
03011	강간 유효한 동의 없이 또는 위협, 유형력, 사기, 강요, 협박, 기망, 약물 또는 알코올의 사용, 권력의 남용, 취약한 지위의 이용, 또는 이익의 공여나 수령으로 얻은 동의에 의한 성적 삽입 행위 <sup>165)</sup>	+	포함: 030111-030119의 포함 사항 모두 포함
		-	제외: 0301의 제외 사항 모두 제외
030111	유형력에 의한 강간 유효한 동의 없이 유형력으로 행한 성적 삽입 행위 - 성적 삽입은 각주80에 정의	+	포함: 물리적 유형력에 의한 성적 삽입 행위
		-	제외: 의제 강간 (030113), 03011의 제외 사항 모두 제외
030112	유형력에 의하지 않은 강간 유효한 동의 없이 유형력에 의하지 않고 행한 성적 삽입 행위 - 성적 삽입은 각주 80에 정의	+	포함: 성관계를 갖기 위한 기망, 약물에 의한 강간, 물리적 유형력에 의하지 않고 동의도 없이 행해진 성적 삽입 행위
		-	제외: 의제 강간 (03011), 03011의 제외 사항 모두 제외
030113	의제 강간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동의할 수 있는 연령 미만의 사람 또는 법률상의 사유로 동의능력 없는 사람과 행한 성적 삽입 행위 - 성적 삽입은 각주 80에 정의	+	포함: 동의할 수 있는 연령 미만의 사람과의 성관계, 동의능력 없는 사람과의 성관계
		-	제외: 03011의 제외 사항 모두 제외
030119	기타 강간 강간으로서 030111-030113 각 범주에서 기술하지 않는 행위 - 강간은 03011에서 정의	+	
		-	제외: 03011의 제외 사항 모두 제외

165) 성적 삽입 행위는, 최소한, 질, 항문, 또는 구강에 신체의 일부 또는 물건을 삽입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대분류03 성적 성격의 유해행위			
03012	성폭행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하거나,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시도하거나, 원치 않는 성적 관심을 갖고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로서, 강간에는 이르지 않는 행위 - 강간은 03011에서 정의	+	포함: 악물에 의한 성폭행, 성적 괴롭힘, 배우자에 대한 성폭행, 방어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성폭행, 030121-030129의 포함 사항 모두 포함
		-	제외: 강간 (03011), 0301의 제외 사항 모두 제외
030121	신체적 성폭행 신체적 접촉에 의한 성폭행 - 성폭행은 03012에서 정의	+	포함: 악물에 의한 성폭행, 원치 않는 더듬기 또는 애무, 지위의 남용에 의한 성폭행
		-	제외: 03012의 제외 사항 모두 제외
030122	비신체적 성폭행 신체적 접촉에 의하지 않은 성폭행 - 성폭행은 03012에서 정의	+	포함: 성적 괴롭힘, 성적 성격의 협박
		-	제외: 03012의 제외 사항 모두 제외
03012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성폭행 성폭행으로서 030121-030122 각 범주에서 기술하지 않는 행위 - 성폭행은 03012에서 정의	+	포함: 관음 <sup>166)</sup>
		-	제외: 03012의 제외 사항 모두 제외
03019	기타 성폭력 행위 성폭력으로서 03011-03012 각 범주에서 기술하지 않는 행위 - 성폭행은 03012에서 정의	+	
		-	제외: 0301의 제외 사항 모두 제외
<b>0302 성적 착취</b>		+	포함: 03021-03029의 포함 사항 모두 포함
성매매 또는 성적 행위로부터 금전적, 사회적, 또는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취약한 지위를 이용하거나, 권력 또는 신뢰를 남용하거나, 또는 유형력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sup>167)</sup>		-	제외: 강간 (03011), 성폭력 (0301), 성매매 범죄, 포르노그래피 범죄, 기타 근친상간 및 노출 등 공공의 성적 기준에 반하는 행위 (0802), 직위의 남용 (07033), 폭행 및 협박 (0201), 노예 행위 및 착취로서 성적 성격의 유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 (0203), 성적 착취 목적 인신매매 (02041), 괴롭힘 및 스토킹 (0207), 신분범 (11021)
03021	성인에 대한 성적 착취 성인에 대한 성적 착취 - 성적 착취는 0302에서 정의	+	포함: 성매매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유인 또는 조달하는 행위, 포주 행위, 성매매 업소 유지, 운영, 또는 성매매 업소임을 인식하고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 타인의 성매매를 목적으로 건물 기타 장소를 임대하는 행위
		-	제외: 0302의 제외 사항 모두 제외

166) 관음은 신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 중인 사람을, 해당인이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찰함으로써 성적 만족을 얻는 행위를 의미한다.

167) 성매매는, 최소한, 성적 활동에 대하여 금전 또는 기타 형태의 보상을 교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270 한국범죄분류 개발 기초연구

대분류03 성적 성격의 유해행위			
03022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 - 성적 착취는 0302에서 정의 - 아동은 각 국내법에서 정의	+	포함: 아동 포르노그래피 소지, 아동 포르노그래피 제작, 성매매 목적으로 아동을 모집, 유인, 조달하는 행위, 포주 행위, 아동 성매매 업소 유지, 운영, 또는 아동 성매매 업소임을 인식하고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 아동 성매매를 목적으로 건물 기타 장소를 임대하는 행위, 030221-030229의 포함 사항 모두 포함
		-	제외: 의제 강간 (030113), 0302의 모든 제외 사항 제외
030221	아동 포르노그래피 아동 포르노그래피 제작 및/또는 아동 포르노그래피 소지, 배포, 방송, 전송, 전시,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아동을 조달, 알선, 방조, 또는 통제하는 행위 <sup>168)</sup> - 아동은 각 국내법에서 정의	+	포함: 아동 포르노그래피 소지, 아동 포르노그래피 공유, 아동 포르노그래피 제작, 아동 포르노그래피 다운로드, 아동으로부터 성적 영상 또는 기타 아동 학대 자료를 조달하는 행위
		-	제외: 포르노그래피 범죄 (08022), 03022의 제외 사항 모두 제외
030222	아동 성매매 성매매를 목적으로 아동을 모집, 유인 및/또는 조달하거나 성매매 아동의 성적 서비스를 조달하는 행위 <sup>169)</sup> - 성매매는 각주82에서 정의 - 아동은 각 국내법에서 정의	+	포함: 아동의 성적 서비스에 대한 대가 지급, 성매매 목적으로 아동을 모집, 유인 또는 조달하는 행위, 포주 행위, 아동 성매매 업소 유지, 운영, 또는 아동 성매매 업소임을 인식하고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 아동 성매매를 목적으로 건물 기타 장소를 임대하는 행위
		-	제외: 03022의 제외 사항 모두 제외
030223	성적 목적 아동 유인 아동과 접촉한 후, 성적 목적의 만남에 이르게 하는 물리적 행위 <sup>170)</sup> - 아동은 각 국내법에서 정의	+	포함: 사이버 유인, 인터넷을 통하여 아동과 접촉한 후 아동을 성적으로 노골적인 자료에 노출시키는 행위, 아동을 성적으로 노골적인 자료에 점차적으로 노출시키기 위해 아동과 직접 접촉하는 행위
		-	제외: 0302의 제외 사항 모두 제외
030229	기타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로서 030221-030223 각 범주에서 기술하지 않는 행위 - 성적 착취는 0302에 정의 - 아동은 각 국내법에서 정의	+	포함: 아동과의 중대하게 부적절한 행위, 아동에 대한 유혹, 아동으로 하여금 성적 행위 또는 포르노그래피를 보도록 강제하는 행위, 아동대상 성관광 <sup>171)</sup>
		-	제외: 03022의 제외 사항 모두 제외

168) 아동 포르노그래피는, 최소한, 성적으로 노골적인 행동을 하는 아동에 대한 시각적 표현 또는 묘사, 성적으로 노골적인 행동에 연루되었거나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 아동으로 보이는 - 실제 사람에 대한 시각적 표현 또는 묘사, 또는 성적으로 노골적인 행동에 연루된 실제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실제적 영상을 의미한다. (Article 20 of the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gainst Sexual Exploitation and Sexual Abuse).

169) Article 3(1) I (b) of the 2000 UN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170) Council of Europe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 The European legislative framework and outline of Council of Europe conventions and European Union policy.", Page 63. Web: <<http://www.coe.int/t/dg3/children/1in5/Source/PublicationSexualViolence/Ruelle.pdf>>.

171) 아동 대상 성관광은 사람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이동한 장소에서 아동과 성적 행위를 행하는 형태의 아동에 대한 상업적인 성적 착취를 의미한다. (UNICEF, Commercial Sexual

대분류03 성적 성격의 유해행위			
03029	기타 성적 착취 행위 성적 착취로서 03021-03022 각 범주에서 기술하지 않는 행위 - 성적 착취는 0302에 정의	+	
		-	제외: 0302의 제외 사항 모두 제외
0309	기타 성적 성격의 유해행위 성적 성격의 가해행위로서 0301-0302 각 범주에서 기술하지 않는 행위	+	포함:
		-	제외: 성폭력 (0301), 성적 착취 (0302), 강요 (0203), 성매매 범죄, 포르노그래피 범죄, 기타 근친상간 및 노출 등 공공의 성적 기준에 반하는 행위 (0802), 직위의 남용 (07033) 폭행 및 협박 (0201), 노예 행위 및 착취로서 성적 성격의 유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 (0203), 성적 착취 목적 인신매매 (02041), 괴롭힘 및 스토킹 (0207)
대분류04 다른 사람에게 폭력이나 협박을 가한 재산 침해 행위			
0401	강도 사람 또는 단체로부터 재물을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취할 의도로 사람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것을 협박하여 재산을 불법적으로 취하거나 획득하는 행위	+	포함: 폭력에 의한 절도, 강도 행위, 약탈 행위, 04011-04019의 포함 행위 모두 포함
		-	제외: 절도 목적 침입, 절도 및 기타 재물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 (05), 폭행 및 협박 (0201), 장물 소지, 장물 수령, 취급, 처분, 판매 또는 매매, 장물 부품을 이용한 기타 물품 제작, 장물 은닉 (0704), 재물 손괴 (0504), 납치 (02022), 문자 또는 구두 협박을 통한 특정 행동 요구 (02051)
04011	사람에 대한 강도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한 개인 재산에 대한 강도 <sup>172)</sup> - 강도는 0401에서 정의	+	포함: 040111-040119의 포함 사항 모두 포함
		-	제외: 0401의 제외 사항 모두 제외
040111	공공 장소에서의 사람에 대한 강도 공공 장소에서 사람으로부터의 개인 재산에 대한 강도 <sup>173)</sup> - 강도는 0401에서 정의 - 개인 재물은 각주87에서 정의	+	포함: 거리 강도, 강도, 날치기
		-	제외: 04011의 제외 사항 모두 제외
040112	사적 장소에서의 사람에 대한 강도 사적 장소에서 사람으로부터의 개인 재산에 대한 강도 <sup>174)</sup> - 강도는 0401에서 정의 - 개인 재산은 각주87에서 정의	+	포함: 절도 목적의 침입 과정에서 절취를 위해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행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	제외: 04011의 제외 사항 모두 제외

Exploitation of Children (CSEC) and Child Sexual Abuse (CSA) in the Pacific: A regional report. Suva, Fiji, 2006. Web: [http://www.unicef.org/eapro/Pacific\\_CSEC\\_report.pdf](http://www.unicef.org/eapro/Pacific_CSEC_report.pdf).

172) 개인 재산은, 최소한, 사람의 자산 중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자산을 의미한다.

173) 공공 장소는, 최소한, 공개되어있고 일반인이 접근 가능한 장소를 의미한다.

174) 사적 장소는, 최소한, 개인적 목적 또는 사적 모임에 국한하여 쓰이는 장소로서 일반인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없는 장소를 의미한다.

272 한국범죄분류 개발 기초연구

대분류04 다른 사람에게 폭력이나 협박을 가한 재산 침해 행위			
040119	기타 사람에 대한 강도 사람에 대한 강도로서 040111-040112의 각 범주에서 기술하지 않는 행위 - 강도는 0401에서 정의	+	포함: 기타 장소에서의 사람에 대한 강도
		-	제외: 040111의 제외 사항 모두 제외
04012	이동 중인 귀중품 또는 물품에 대한 강도 이동 중인 재물에 대한 강도 - 강도는 0401에서 정의	+	포함: 040121-040122의 포함 사항 모두 포함
		-	제외: 0401의 제외 사항 모두 제외
040121	승용차 또는 운송수단 강도 이동 중인 운송수단을 해당 운송수단의 운행인 또는 그 승객으로 부터 취하는 강도 행위 - 강도는 0401에서 정의 - 운송수단은 각주49에서 정의	+	포함: 운송수단 납치, 이동 중 운송수단 내 재물에 대한 강도, 택시 강도, 보안 운송수단에 대한 강도, 철도 내 강도 또는 철도에 대한 강도
		-	제외: 동력 운송수단 또는 그 부품에 대한 절도 (05021), 04012의 제외 사항 모두 제외
040129	기타 이동 중인 귀중품 또는 물품 강도 이동 중인 귀중품 또는 물품에 대한 강도로서 040121에서 기술하지 않는 행위 - 강도는 0401에서 정의	+	포함: 고속도로상에서의 화물에 대한 강도
		-	제외: 04012의 제외 사항 모두 제외
04013	시설 또는 기관에 대한 강도 시설 또는 기관에 대한 강도 - 강도는 0401에서 정의	+	포함: 040131-040132의 포함 사항 모두 포함
		-	제외: 0401의 제외 사항 모두 제외
040131	금융 기관에 대한 강도 금융 기관에 대한 강도 <sup>175)</sup> - 강도는 0401에서 정의	+	포함: 은행 강도, ATM 강도
		-	제외: 04013의 제외 사항 모두 제외
040132	비금융 기관에 대한 강도 비금융 기관에 대한 강도 - 금융 기관은 각주90에서 정의 - 강도는 0401에서 정의	+	포함: 우체국 강도, 주유소 강도, 사업체 강도, 점포 강도
		-	제외: 04013의 제외 사항 모두 제외

175) 금융 기관은 최소한, 투자, 대출, 및 예금 등 금융 거래 취급을 주목적으로 하는 공공 또는 민간 시설을 의미한다.

대분류04 다른 사람에게 폭력이나 협박을 가한 재산 침해 행위			
04014	가축에 대한 강도 가축을 그 관리인으로부터 취하는 강도 행위 <sup>176)</sup> - 강도는 0401에서 정의	+	포함: 소, 염소, 양, 닭, 기타 가축에 대한 강도, 소 절도
		-	제외: 가축 절도 (05025), 0401의 제외 사항 모두 제외
04019	기타 강도 행위 04011-04014 각 범주로 분류되지 않는 강도 행위 - 강도는 0401에서 정의	+	
		-	제외: 0401의 제외 사항 모두 제외
0409	기타 사람에게 대한 폭력 또는 협박을 수반한 재산 침해 행위 사람에 대한 폭력 또는 협박을 수반한 재산 침해 행위로서 0401에서 기술하지 않는 행위	+	포함: 불특정 장소로부터의 강탈 행위, 약탈
		-	제외: 재물 손괴 (0504), 절도 목적 침입, 절도, 및 기타 재물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 (05), 폭행 및 협박 (0201), 장물 소지, 장물 수령, 취급, 처분, 판매 또는 매매, 장물 부품을 이용한 기타 물품 제작, 장물 은닉 (0704), 강도 (0401), 납치 또는 인질 행위 (02022)
대분류05 단순한 재산 침해 행위			
0501	절도목적 침입 절도를 범할 의도로 또는 실제 절도의 범행 중 유형력 행사 여부를 불문하고 건물이나 주거 또는 장소의 일부에 불법으로 침입하는 행위 - 절도는 0502에서 정의	+	포함: 불법 침입, 절도를 범할 의도에서의 불법침입, 절도 목적의 기망에 의한 진입, 05011-05019의 포함 사항 모두 포함
		-	제외: 동의 없이, 그리고 유형력의 사용, 유형력 또는 폭력을 사용하겠다는 협박, 강요 또는 기망 없이, 사람 또는 단체로부터 재물을 영구 또는 임시로 박탈하려는 목적으로, 해당 재물을 불법으로 취득하거나 획득하는 행위 (0502), 장물 소지, 장물 수령, 취급, 처분, 판매 또는 매매, 장물 부품을 이용한 기타 물품 제작, 장물 은닉 (0704), 재물 손괴 (0504), 유형력을 사용하거나 유형력을 사용하겠다고 협박하여 사람 또는 단체로부터 재물을 영구 또는 임시로 박탈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해당 재물을 불법으로 취득하거나 획득하는 행위 (0401)
05011	절도목적 사업장 침입 사업장에서의 절도 목적 침입 <sup>177)</sup> - 침입은 0501에서 정의	+	포함: 사업장 불법 침입, 램-레이딩(ram-raiding), 절도를 범할 의도에서의 사업장 불법 침입
		-	제외: 0501의 제외 사항 모두 제외

176) 가축은, 최소한, 식량, 섬유 및 노동력 제공 목적으로 쓰이는 길들인 동물을 의미하며, 소, 양, 돼지, 말, 및 기타 종을 포함한다. (United Nations.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Livestock Statistics. Web: <www.fao.org/.../eufao.../SUA\_FBS\_Workshop\_Background\_LivestockStatics>).

177) 사업장은, 최소한, 상업 또는 산업 업체가 위치한 구조물 또는 부지를 의미하며, 사옥, 점포, 클럽, 은행, 공장, 영업소, 호텔, 쇼핑몰, 소매 점포, 농지, 창고, 및 기타 부지 또는 건물을 포함한다.

274 한국범죄분류 개발 기초연구

대분류05 단순한 재산 침해 행위			
05012	절도목적 사적 주거지 침입 사적 주거지에의 절도 목적 침입 <sup>178)</sup> - 침입은 0501에서 정의	+	포함: 주거지 불법 침입, 절도를 범할 의도에서의 주거지 불법 침입, 주거지 불법 침입 및 절도, 절도를 범할 의도에서의 주거지 침입에 의한 절도, 사적 주거지에 딸린 창고/차고에의 절도 목적 침입, 주택 침입
		-	제외: 0501의 제외 사항 모두 제외
050121	절도목적 상시 주거지 침입 피해자가 한 해의 대부분의 기간을 거주하는 사적 주거지에의 절도 목적 침입 - 침입은 0501에서 정의	+	포함: 주택, 아파트, 기타 피해자의 주 주거지에의 절도 목적 침입
		-	제외: 0501의 제외 사항 모두 제외
050122	절도목적 임시 주거지 침입 피해자가 한 해 중 임시로만 거주하는 주거지에의 절도 목적 침입 - 침입은 0501에서 정의	+	여름 별장(summer house)에 대한 절도 목적 침입, 별장(secondary house)에 대한 절도 목적 침입, 호텔 객실 또는 기타 임시 임대 부지에 대한 침입 및 절도
		-	0501의 제외 사항 모두 제외
05013	절도목적 공공장소 침입 공공장소에의 절도 목적 침입 <sup>179)</sup> - 침입은 0501에서 정의	+	공공장소에서의 침입, 범행을 목적으로 한 공공 재산에 대한 위법한 침입
		-	0501의 제외 사항 모두 제외
05019	절도목적 기타 침입행위 절도 목적 침입 행위로서 05011-05013 각 범주에서 기술하지 않는 행위 - 침입은 0501에서 정의	+	이동형 가옥에 대한 절도 목적 침입, 공공장소, 사적 장소, 사업체 건물/토지에 속하지 않는 건물/토지에 대한 절도 목적 침입
		-	0501의 제외 사항 모두 제외
<b>0502 절도</b>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리고 유형력 사용이나 유형력 또는 폭력을 사용하겠다는 협박, 강요, 기망 없이 사람이나 단체로부터 재물을 영구적으로 박탈하려는 의도로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거나 획득하는 행위		+	05021-05029의 포함 사항 모두 포함
		-	장물 소지, 장물 수령, 취급, 처분, 판매 또는 매매, 장물 부품을 이용한 기타 물품 제작, 장물 은닉(0704), 기망 또는 부정직한 행위를 통하여 금전 기타 이득을 취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0701), 강도(0401), 재물 손괴(0504), 절도 목적 침입(0501), 지적재산 절도(0503), 신원절도(07019)
05021	동력 운송수단 또는 그 부품 절도 동력 운송수단 또는 동력 운송수단 부품 절도 <sup>180)</sup> - 절도는 0502에서 정의 - 동력 운송수단은 각주95에서 정의	+	050211-050219의 포함 사항 모두 포함
		-	승용차 또는 운송수단 강도(040121), 0502의 제외 사항 모두 제외

178) 개인 주거지는, 최소한, 사람이 소유하거나 임대하거나 리스한 부동산을 의미한다.

179) 공용 건조물/토지는, 최소한, 정부 또는 기타 공공 기관이 소유, 임대, 또는 리스한 부동산을 의미한다.

180) 동력 차량은 엔진 또는 모터로 추진하는 모든 자가 추진 차량을 의미하며, 승용차, 오토바이, 선박, 및 항공기를 포함한다. 동력 지상 차량은 엔진을 장착하여 도로를 주행하는 모든 지상 차량을

대분류05 단순한 재산 침해 행위			
050211	지상 동력 운송수단 절도	+	포함: 차량, 밴, 트럭 절도, 오토바이 절도
	지상 동력 운송수단 절도 - 절도는 0502에서 정의 - 지상 동력 운송수단은 각주95에서 정의	-	제외: 동력 운송수단 불법 사용 (050212), 동력 운송수단 부품 절도 (050213), 동력 운송수단 내 개인 재물 절도 (050221), 05021의 제외 사항 모두 제외
050212	지상 동력 운송수단 불법 사용	+	포함: 차량 절도 후의 폭주(joyriding)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리고 유형력 사용이나 유형력 또는 폭력을 사용하겠다는 협박, 강요, 기망 없이 사람이나 단체로부터 재물을 일시적으로 박탈하려는 의도로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거나 획득하는 행위 - 지상 동력 운송수단은 각주 95에서 정의	-	제외: 영구적 박탈 목적으로 동력 운송수단을 불법으로 취득하거나 획득하는 행위 (050211), 동력 운송수단 부품 절도 (050213), 선박, 항공기 및 기타 차량 절도 (050219), 동력 운송수단 내 개인 재물 절도 (050221), 05021의 제외 사항 모두 제외
050213	지상 동력 운송수단 부품 절도	+	포함: 승용차 타이어, 모터, 트랜스미션, 창 등의 절도
	지상 동력 운송수단 부품 절도 - 절도는 0502에서 정의 - 부품은 각주95에서 정의 - 지상 동력 운송수단은 각주95에서 정의	-	제외: 연료 절도 또는 동력 운송수단 내 개인 재물 절도 (050221), 05021의 제외 사항 모두 제외
050219	기타 동력 운송수단 또는 그 부품 절도	+	포함: 선박 또는 항공기 절도, 선박 또는 항공기 부품 절도
	동력 운송수단 또는 동력 운송수단 부품 절도로서 050211-050213 각 범주로 분류되지 않는 동력 운송수단 - 절도는 0502에서 정의 - 동력 운송수단은 각주95에서 정의	-	제외: 연료 절도 또는 동력 운송수단 내 개인 재물 절도 (050222), 승용차 및 항공기 납치 (020223), 05021의 제외 사항 모두 제외,
05022	개인 재물 절도	+	포함: 합법적 침입 후의 절도, 050221-050229의 포함 사항 모두 포함
	개인 재물 절도 - 절도는 0502에서 정의 - 개인 재물은 각주87에서 정의	-	제외: 지상 동력 운송수단 또는 지상 동력 운송수단 부품 절도 (05021), 사업체 재물 절도 (05023), 공공 재물 절도 (05024), 가축 절도 (05025), 반려동물 절도 (05025), 0502의 제외 사항 모두 제외,
050221	사람으로부터의 개인 재물 절도	+	포함: 소매치기, 강도에 이르지 않은 날치기
	사람이 소지한 개인 재물 절도 - 절도는 0502에서 정의 - 개인 재물은 각주87에서 정의	-	제외: 자전거 절도 (050229), 05022의 제외 사항 모두 제외

의미하며, 자동차, 오토바이, 버스, 탱크로리, 건설 차량 및 농업용 차량을 포함한다. 차량 부품은 특정 차량 전용으로 설계된 부품 또는 교체 부품으로서, 차량의 운행에 필수적인 것을 의미한다. 엔진, 트랜스미션, 타이어, 및 창 등을 포함한다.

276 한국범죄분류 개발 기초연구

대분류05 단순한 재산 침해 행위			
050222	운송수단으로부터의 개인 재물 절도 운송수단으로부터의 개인 재물 절도 - 절도는 0502에서 정의 - 운송수단은 각주49에서 정의 - 개인 재물은 각주87에서 정의	+	포함: 운송수단으로부터의 지갑 절도, 운송수단으로부터의 전자 기기 절도, GPS 기기 절도, 연료 절도
		-	제외: 동력 운송수단 부품 절도 (050213), 05022의 제외 사항 모두 제외
050229	기타 개인 재물 절도 개인 재물 절도로서 050221-050222 각 범주에서 기술하지 않는 행위 - 절도는 0502에서 정의 - 개인 재물은 각주87에서 정의	+	포함: 불법 침입에 의하지 않은 절도, 주거 외부에서의 재물 절도, 주거로 통하는 문이 없는 차고 또는 창고 대상 절도, 자전거 절도, 반려동물 절도
		-	제외: 05022의 제외 사항 모두 제외
05023	사업체 재물 절도 사업체로부터 운송수단 아닌 동산의 절도 - 동산은 부동산 외의 자산 일체를 의미한다. - 절도는 0502에서 정의 - 운송수단은 각주49에서 정의	+	포함: 무전취식, 대금 미지급 후 도주, 피고용인에 의한 절도, 050231-050239의 포함 사항 모두 포함
		-	제외: 절도 목적 사업장 침입 (05011), 시설 또는 기관에 대한 강도(04013), 공공 재물 절도 (05024), 개인 재물 절도 (05022), 가축 절도 (05025), 운송수단 또는 운송수단 부품 절도 (05021), 0502의 제외 사항 모두 제외
050231	점포 대상 절도 소매업장에서의 사업체 재물 절도 - 절도는 0502에서 정의	+	포함: 상점절도, 점포에서의 판매품 절도
		-	제외: 05023의 제외 사항 모두 제외
050239	기타 사업체 재물 절도 소매업장 이외의 장소로부터의 사업체 재물 절도 - 절도는 0502에서 정의	+	포함: 피고용인에 의한 사업체 / 사무실 비품 절도, 자동판매기 대상 절도, 호텔, 식당, 영화관, 극장, 유흥업소, 사무실, 작업장 대상 절도
		-	제외: 05023의 제외 사항 모두 제외
05024	공공 재물 절도 운송수단 이외의 공공 동산 절도 <sup>181)</sup> - 절도는 0502에서 정의 - 운송수단은 각주49에서 정의	+	포함: 공공 재물 절도, 국립 공원의 시설 절도
		-	제외: 전력, 수도, 기타 공용 서비스 절도 (05026), 시설 또는 기관 대상 강도 (04013), 운송수단 또는 운송수단 부품 절도 (05021), 개인 재물 절도 (05022), 사업체 재물 절도 (05023), 가축 절도 (05025), 0502의 제외 사항 모두 제외

181) 공공 재물이란 정부가 소유한 재물로서 부동산 외의 것을 의미한다.

대분류05 단순한 재산 침해 행위			
05025	가축 절도	+	포함: 소, 닭, 양, 어류 등 절도
	가축 절도 - 절도는 0502에서 정의 - 가축은 각주91에서 정의		- 제외: 가축 강도 (04014), 반력동물 절도 (050229), 0502의 제외 사항 모두 제외
05026	옹역 절도	+	포함: 전력, 수도, 기타 공공 서비스 절도, 텔레비전/케이블 방송 신호 절도, 무임승차, 서비스로 지급 회피
	옹역 절도 - 절도는 0502에서 정의		- 제외: 사기 (0701), 0502의 제외 사항 모두 제외
05029	기타 절도 행위	+	포함: 우편 절도, 점유물 횡령
	재물 절도 중 05021-05026 각 범주에서 기술하지 않는 행위 - 절도는 0502에서 정의		- 제외: 0502의 제외 사항 모두 제외
0503 지적 재산 범죄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또는 기타 지적 재산에 대한 불법 복제, 사용, 전재 또는 기타 침해 <sup>182)</sup>		+	포함: 지적 재산 절도, 저작권 침해, 저작권 불법 유통, 컴퓨터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산업 스파이 행위로서 허위문서작성 또는 위변조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
			- 제외: 상표, 특허, 라이선스 상품 또는 기타의 보호를 받는 제품에 대한 위조품 제작, 제조, 전달, 또는 소지 (07022), 절도 (0502), 장물 소지, 장물 수령, 취급, 처분, 판매 또는 매매, 장물 부품을 이용한 기타 물품 제작, 장물 은닉 (0704), 신원절도 (07019), 허위문서작성/위변조 (0702), 컴퓨터 시스템 침해 행위로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 (0903)
0504 재물 손괴 재물에 대한 고의적인 파괴, 훼손, 또는 외관 훼손		+	포함: 방화, 폭발에 의한 재물 손괴, 반달리즘, 그라피티, 위험 행위 또는 과실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보타주, 불법 침수 행위, 위험 행위 또는 과실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보타주, 뱃소니에 의한 재물 손괴, 동력 운송수단의 의도적 손괴, 05041-05049의 포함 사항 모두 포함
			- 제외: 재물에 대한 불법 침입 (0501), 컴퓨터 시스템 손괴 또는 컴퓨터 데이터 손괴는 컴퓨터 시스템 대상 행위로 분류 (0903), 동물 살해 또는 상해 (10091), 환경 훼손 (10)

182) 지적 재산은, 최소한, 발명, 문학 및 예술 작품, 상업 활동에 쓰이는 기호, 이미지 및 명칭으로 정의한다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Basic Definitions. Geneva, Switzerland: Web: <[http://www.wipo.int/about-ip/en/studies/publications/ip\\_definitions.htm](http://www.wipo.int/about-ip/en/studies/publications/ip_definitions.htm)>).

특허는 발명에 부여되는 배타적 권리를 의미한다. 발명은 작업을 수행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거나, 문제에 대한 새로운 기술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제품 또는 공정을 의미한다.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Basic Definitions. Geneva, Switzerland: Web: <[http://www.wipo.int/about-ip/en/studies/publications/ip\\_definitions.htm](http://www.wipo.int/about-ip/en/studies/publications/ip_definitions.htm)>).

저작권은 문학예술 작품의 창작자에게 주어지는 해당 작품에 관한 권리를 의미하는 법률 용어로 정의한다.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Basic Definitions. Geneva, Switzerland: Web: <[http://www.wipo.int/about-ip/en/studies/publications/ip\\_definitions.htm](http://www.wipo.int/about-ip/en/studies/publications/ip_definitions.htm)>).

상표는 특정인 또는 기업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를 식별하게 해 주는 고유의 기호로 정의한다.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Basic Definitions. Geneva, Switzerland: , Web: <[http://www.wipo.int/about-ip/en/studies/publications/ip\\_definitions.htm](http://www.wipo.int/about-ip/en/studies/publications/ip_definitions.htm)>).

278 한국범죄분류 개발 기초연구

대분류05 단순한 재산 침해 행위			
05041	공공 재물 손괴 공공 재물에 대한 고의적인 파괴, 훼손, 또는 외관 훼손 - 공공 재물은 각주96에서 정의	+	포함: 정부 시설 파괴, 학교 내 공공 재물에 대한 물리적 손괴
		-	제외: 0504의 제외 사항 모두 제외
05042	개인 재물 손괴 개인 재물에 대한 고의적인 파괴, 훼손, 또는 외관 훼손	+	포함: 개인 주거 파괴, 개인 재물 손괴
		-	제외: 0504의 제외 사항 모두 제외
05043	사업체 재물 손괴 사업체 재물에 대한 고의적인 파괴, 훼손, 또는 외관 훼손	+	포함: 사업체 재물 파괴, 사업체 재물 손괴
		-	제외: 05042의 제외 사항 모두 제외
05049	기타 재물 손괴 재물에 대한 고의적인 파괴, 훼손, 또는 외관 훼손으로서 05041-05043 각 범주에서 기술하지 않는 행위	+	
		-	제외: 0504의 제외 사항 모두 제외
<b>0509 기타 재산 침해 행위</b> 재산 침해 행위로서 0501-0504 각 범주에서 기술하지 않는 행위		+	포함: 재산의 불법 유용, 불법 점거, 주택 또는 토지의 불법 획득, 형사상 침입, 강제 진입 및 점거
		-	제외: 재물 손괴 (0504), 컴퓨터 시스템 손괴 (0903), 환경 훼손 (10)

## 부록2 용어집

영문	국문	분류	비고
abduction	약취	행위	.
abuse of power	권력의 남용	개념	.
acquisition	획득	행위	.
aggravated	가중	수식어	.
amounting to	~에 해당하는	연결구문	.
armed conflict	무력 분쟁	개념	.
as a result of	~로 인한	연결구문	.
ascribed	부여된	수식어	증오범죄 관련
assault	폭행	행위	.
at minimum	최소한	수식어	.
attack	공격	행위	.
attempted	미수	수식어	.
attribute	속성	개념	증오범죄 관련
based on	근거한	연결구문	.
bodily harm	신체적 해악	개념	.
bodily injury	신체적 상해	개념	.
bondage	예속	개념	.
bullying	왕따	행위	.
burglary	절도목적 침입	행위	.
care	돌봄	개념	.
caused by	~에 의한	연결구문	.
causing	야기/초래	행위	.
child	아동	개념	.
characteristic	특성	개념	증오범죄 관련
communication	교신	개념	.
coercion	강요	행위	.
conspiracy	모의	행위	.
counterfeiting	위변조	행위	.

영문	국문	분류	비고
criminally negligent	형사상 과실에 의한	수식어	-
damage	손괴/훼손	행위	일반개념인 경우 / destruction과 같이 등장하는 경우
death	사망	결과	-
destruction	파괴	행위	-
detain	구속	행위	-
directed at	~을 대상으로	연결구문	-
due to	~에 의한	연결구문	-
duty to care	보호 의무	개념	-
dwelling	주거	개념	-
endanger	위태롭게하다	행위	-
excessive	과도한	수식어	-
explicit	(성적으로) 노골적인	수식어	-
exploitation	착취	행위	-
force	유형력	개념	-
forced	강제	수식어	-
forge	허위문서 작성	행위	-
fraud	사기	행위	-
gross negligent	중과실	수식어	-
harm	해악	결과	-
harassment	괴롭힘	행위	-
hijacking	차량 납치	행위	-
homicide	살인	행위	-
illegal	불법	수식어	-
inflicting	가하는 행위	연결구문	-
injury	상해	결과	-
intending to	~할 의도로	연결구문	-
intent	목적	개념	-
intentional	고의(에 의한)	수식어	-
intentional death of	~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행위	-
intentionally	고의로	수식어	-
intimidation	위협	행위	-
intrusion	간섭	행위	-

영문	국문	분류	비고
invasion	침해	행위	.
involuntary	자의에 의하지 않은 (비자의적)	수식어	.
killing	살해	행위	.
labor	노동	개념	.
leading to	(어떠한 결과에) 이르게 하는	연결구문	.
leading to death	사망에 이른	수식어	.
manslaughter	살인	행위	.
minor	미성년자	개념	.
minor	경한	수식어	.
mobbing	군중에 의한 위력 행사	행위	.
motor vehicle	동력 차량	개념	.
motorized land vehicle	지상 동력 차량	개념	.
movement	이동	개념	.
murder	모살	행위	.
negligent	과실(에 의한)	수식어	.
non-negligent	무과실	수식어	.
not described in categories~	~에서 기술하지 않는 (행위)	연결구문	.
nuisance	생활방해	행위	.
offensive	불쾌한	수식어	.
pet	반려동물	개념	.
physical	신체적/물리적	수식어	.
physical force	물리적 위력	개념	.
premise	주거지/사업장/공공 건물&토지	개념	.
procure	조달	행위	.
professional	직무상	수식어	직무상 과실 등의 경우
property	재산/재물	개념	법익에 관한 경우 / 물리적 행위 대상에 관한 경우
reckless	무모한	수식어	.
recruit	모집	행위	.
seizure	장악	행위	.
serious	중한	수식어	.

영문	국문	분류	비고
serious injury	중상해	개념	.
service	용역/서비스	개념	일을 의미하는 경우 / 공공 서비스 등을 의미하는 경우 (수도, 전기 등)
servitude	예속 상태	개념	.
taking away	유괴	행위	.
temporary	일시적	수식어	.
threat	협박	행위	.
threat of (use of) force	~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행위	.
trafficking	(인신) 매매	행위	.
transgression	규범 위반	행위	도덕적/사회적 규범 위반
transport	이송	행위	.
unlawful	위법한	수식어	.
unwarranted	부당한	수식어	.
use of force	위력의 사용	행위	.
vehicle	운송수단	개념	.
violence	폭력	개념	.
voluntary	자의에 의한	수식어	.
vulnerable position	취약한 지위	개념	.
work	근로	개념	.

연구총서 16-AB-06

## 한국범죄분류 개발 기초연구

---

발행 | 2016년 12월  
발행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행인 | 김진환  
등록 | 1990. 3. 20. 제21-143호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전화 | (02)575-5282  
홈페이지 | [www.kic.re.kr](http://www.kic.re.kr)  
정가 | 10,000원  
편집·인쇄 | (사)아름다운사람들복지회 T. 1833-9650  
ISBN | 979-11-87160-33-5 93330

---

연구원의 허락 없이 보고서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사하거나 전재하는 행위를 금합니다.